2010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 대만(타이뻬이)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캄보디아 · 태국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필리핀 · 호주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발간사

우리나라는 작년 4,674억불을 수출하여 세계 7대 수출대국이 되었고, 올해는 1조불 교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GDP 대비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BRICs 등 신흥개도국과의 교역비중이 1990년 35.8%에서 2011년 69.1%로 증가하고 있어, 신흥개도국 시장개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통상협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주요 교역대상국의 통상환경을 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동 책자는 "지역별 통상환경"(4권)과 "분야별 통상환경"(1권)으로 구성됩니다. 지역별 통상환경은 올해 벨라루스, 세네갈, 우루과이, 코트디부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푸아뉴기니 6개국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93개국의 경제동향, 우리와의 무역관계, 각종 통상환경 및 제도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통상환경은 각국의 통상환경을 관세,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보조금, 기술장벽, 투자환경 등 15개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동 책자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정부 및 민간의 대외 협력 및 협상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에 대한 현지 정보의 부족으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동 책자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책자의 개선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책자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경제통상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책자 발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재외공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종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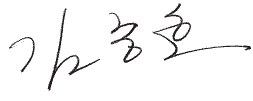

목차

분야별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중동

뉴질랜드 2
대만(타이뻬이) 10
라오스 25
말레이시아 38
몽골 68
미얀마 78
방글라데시 95
베트남 115
브루나이 138
스리랑카 144
싱가포르 158
인도 173
인도네시아 192
일본 223
중국 239
캄보디아 345
태국 358
파키스탄 378
파푸아뉴기니 394
필리핀 399
호주 411

2010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태평주

뉴질랜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관세인하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총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의류, 신발, 섬유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의류, 신발, 모자 : 10%
- 냉장고 및 세탁기 : 5%
- 플라스틱, 철강제품, 종이제품, 가구, 식품류 : 5%

뉴질랜드 정부는 관세인하계획(2003.9.30일 예고)에 따라 의류, 신발, 카페트 등 일부 공산품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의 수입관세를 2006.7월부터 점차로 인하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의 인하 현황

	2006.7월 관세율	2007.7월 관세율	2008.7월 관세율	2009.7월 이후 관세율
의류, 신발, 모자	17%	15%	12.5%	10%
냉장고 및 세탁기	10%	7.5%	5%	5%
플라스틱, 철강제품, 종이제품, 가구, 식품류	5~7.5%	5~7.5%	5%	5%

한때, APEC 논의를 존중하여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문

제도 검토한 바 있으나, 2008.4월 관세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수립함에 따라 2009.8.1일부터 2011.6.30일까지 관세를 동결하고 있다.

수입규제

1984년 이후 실시된 경제개방개혁정책을 통해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이행 부과 등 모든 수입규제제도를 철폐하였다. 수입허가 제도는 의류제품에 대해 자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시행했으나 1992.7.1일 폐지되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거의 장애가 없으며 국민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이 남아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1996년 이래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검사 시 통관 지연 사례와 통관절차상 규제 등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및 국민보건 목적상 엄격한 검역 및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등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과일, 채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뉴질랜드의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해 對뉴질랜드 수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 원산지 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채택하고 있다. 뉴질랜드로부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 특혜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업무는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ies Group)가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1988년도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1990년 덤핑 및 상계관세수정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Amendment Act)에 의거하고 있다.

덤핑제소가 무역구제위원회에 접수되면 예비조사, 예비판정(예비조사 60일 이내), 최종판정(예비판정 후 90일 이내) 절차를 거쳐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한다.

1991년 이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12건이며 이 중 9건이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철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 20~7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가 2001.6월부터 부과되어 오다가 2006.6월 해제되었다.

또한,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2004.7월 개시되어 2005.1.17일 덤핑으로 최종 판정되어 최고 15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2006.4월 재조사가 들어갔으나, 뉴질랜드 제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사실상 덤핑판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07.3월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가 실시되었으나, 2007.10월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종료)에 의거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종료하였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

쟁,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거래 및 이행비용(transaction and compliance costs)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야채 및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 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은 엄격한 관리 하에 놓여있다. GMO와 GMF의 개발, 수입, 실험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환경위험관리청(ERMA: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에 의한 승인이 요구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GM(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GM 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3.10.29일자로 이를 해제하였다.

GMF의 경우 GM 상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중 일부에 GM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표시 옆에 GM성분이 포함되었다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GM 상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이며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GM 동·식물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

품목별 장벽

2001.6월부터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20~7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해제되었고, 2005.1.17일에는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재판정이 있었으나 현지 제조업체의 폐업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2007.3월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미소물량 수입으로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현재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는 상태다.

외국기업 덤핑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덤핑 제소를 제외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과거 주요 외화수입원인 양모와 육류 등 1차 산업부문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보상금지급 및 세제특혜부여 등 각종 수출 지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fe) 등 국제사회로부터 폐지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1985년부터 수출인센티브를 점차 축소, 1988년에 전면 폐지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 한다는 개방적인 자유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집중구매 방식이 아님). 그러나 입찰공고 등 행정조치는 GETS(www.gets.govt.nz)라는 정부조달 웹사이트를 창구로 일원화하고 있다.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다만,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안내서를 보내는 기관이 많으므로 미리 입찰을 희망하는 부서에 업체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WTO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특별한 자격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통신, 건설, 초·중·고등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 분야에서 특별한 장벽은 없다. 다만, 주재국 통신, 항공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나 법인에 대해 일정한 지분 소유 제한이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투자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입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2005.6월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5천만 뉴불 이상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이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정부승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동 요건을 1억 뉴불 이상, 25% 지분 이상 취득 기업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1,000만 뉴불 이상의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할 경우 정부 승인이 필요했는데, 5헥타르 이상 농지 매각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승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유적지, 환경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매입신청을 할 때,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일반인의 접근 보장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매입자는 상기 계획서의 이행 및 정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들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감시하게 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갯벌 및 해저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토지에 대한 투자는 토지정보부의 해외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로부터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0.4헥타르 이상의 도서, 해안 인접토지, 호수 인접토지 및 보존목적으로 지정된 토지는 민감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어, OIO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속토지를 포함한 토지 총 면적이 5헥타르를 넘을 경우 OIO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 관련 투자는 새로운 고용기회창출, 새로운 기술 및 경영 기법 도입, 신 수출시장개척 또는 판매망확대, 시장경쟁력,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등 뉴질랜드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해 주고 있다.

아울러 수산어획분야는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의 특수이익을 인정,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상업적 어획쿼터는 뉴질랜드 국민에게만 할당하며(동 쿼터 라이센스를 외국인에 임대가능), 어획분야 합작의 경우에도 지분을 25%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국제선 운행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과거 총 외국항공사지분 소유합계는 35% 초과 금지, 단일 외국 항공사 지분소유는 25%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2008.4월 오클랜드 국제공항은 OIO의 승인을 얻어 캐나다 연금기금(PPIB: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측에 40%의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

주재국 Telecom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시 정부 및 Telecom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내국인도 해당)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의 경우 49.9% 이상 지분 소유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Telecom 이사회는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국적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과거 외환관리제도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엄격하게 통제했으나, 1984.12월부터 대폭완화, 수입신용장 개설, 해외여행자의 외화 소지, 해외투자 및 송금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자유화하였으며, 1985.3월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하면서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 관련 송금액 및 재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현지금융조달상의 제한도 없다.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의한 제한

뉴질랜드 토지 매입과 사용에 대해서 투자자의 대부분은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주변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쟁정책

1980년대 중반이후 뉴질랜드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의 결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경쟁관련 법규와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유통망 독점, 외국업체 영업활동 제한 등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없다.

기타 장벽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또는 지사, 사무소 설치상 제약이나 국산화 및 수출이행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감 부문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취득상 제한도 없다. 아울러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

뉴질랜드의 최근 거시 경제지표

(단위: 백만 뉴불(1인당 GDP는 뉴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3.2	2.5	1.3	2.4	−2.3	0.7
GDP		127,499	161,595	132,302	182,106	184,392	189,541
1인당 GDP		30,871	38,650	31,307	42,688	42,772	43,423
교역규모	수출	30,770	33,868	34,591	41,973	41,588	41,796
	수입	36,539	40,051	40,878	47,022	43,257	40,875
	총계	67,309	73,919	75,469	88,998	84,845	82,671
물가상승률(%)		3.4	3.5	1.8	5.1	1.7	1.5
실업률(%)		3.7	3.6	3.6	4.0	5.9	6.8
외환보유고		2,033.5	4,722.1	14,385.6	12,769.5	14,303.9	16,393.6

1) 자료원: 뉴질랜드통계청(Statistics NZ), 뉴질랜드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
2) 경제성장률, GDP, 1인당 GDP는 2009.7월~2010.6월 회계연도 기준
3) 교역규모는 2009.10월~2010.9월 회계연도 기준
4) 물가상승률은 2009.10월~2010.9월 회계연도 기준
5) 실업률은 2010년 2/4분기 기준
6) 외환보유고는 2010.9월 기준

대만(타이베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품목이며, 2011년도 평균 관세는 5.86%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3.88%, 4.18%이다.

향후 평균 관세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산물	13.16%	13.73%	13.88%	13.88%
공산품	4.09%	4.18%	4.18%	4.18%
전체	5.56%	5.71%	5.86%	5.86%

자료원: 재정부 관정사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經濟部 能源局(경제제부 능원국: 에너지자원국)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 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	14	446
2001	8	222
2002	2	13
2003	2	30
2004	1	11
2005	1	11
2006	1	2
2007	1	7
2008	6	30
2009	10	40

자료원: 재정부 관정사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WTO 원산지 협정"에 따른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으며 2010.9월말 기준 총 2,248개의 농·공산품(농산품 800개 품목, 공산품 1,368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금지되고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조치가 2008.5월로 종료된 이

후 2010.10월 기준 대만의 對한국 수입 규제 품목은 없다.

한편, 2010년도 중화민국공업협회의 수입품목위협현황 조사에 따르면, 총 158개 위협품목 중 한국 제품은 65개가 지목되었다. 품목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대만 산업 위협 수준이 중국 다음으로 높으며, 총 위협 품목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위협 품목은 오히려 증가하여 대만 산업계의 한국 제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철강 제품이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다.

수입산 위협 품목에 대해 대만 업체들은 세이프가드 실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원산지 증명제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22종의 농산품과 소형 자동차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농산품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할당량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2,667	총량할당
녹용	5	50kg	–	비례할당
동양배	9,800	20	–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땅콩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할당기간마다 입찰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야자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원: 재정부 관정사

●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며 2011년부터는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될 예정이다.

수입할당제가 적용되는 소형 자동차로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한다. 할당 방식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미국, EU국가, 캐나다에 한해 총량 할당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타 WTO 회원가입국의 경우 협정 할당 방식이 적용된다.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단위: 대, %)

구분/년도		2008	2009	2010	2011
할당량	미국	29,860	35,832	42,998	∞
	EU 국가	475,428	570,514	684,617	∞
	캐나다	38,555	42,266	55,519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국가당)	29,860	35,832	42,998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0.3	18.9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30.0	30.0	30.0	17.5

자료원: 재정부 관정사

반덤핑 및 상계관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사항은 없으며 2010년 기준 신규 제소건도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 수출 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WTO 가입 시 약속한 4,491개 농·공산품 관세 인하 개황은 아래와 같다.

년도	2001년	2011년 최종인하세율	인하폭	인하 품목수
농산물 공산품	20.02% 6.03%	13.88% 4.18%	30.67% 30.68%	1,021개 3,470개

전자·IT제품의 경우 WTO 가입 전 1997.3.26일 ITA 협정 체결에 의거하여 정보, 통신, 전자, 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등 총 274개 품목이 1997~2000년도에 총 4차례에 걸쳐 무관세화 되었으며 1997~2002년도에는 15개 품목이 총 6차례에 걸쳐 무관세로 조정되었다.

– 0 대 0 관세 인하 프로젝트:
총 897개 항목에 대해 그 관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
• 2002년 실시: 약품 (141개 품목), 건설장비(67개), 의료기기(78개),

가구(24개), 농업용 기계(30개), 도수 높은 술(2개), 종이류(116개), 완구(35개)

- 2004년 실시: 철강(353개)
- 2005년 실시: 맥주(1개)

– 화학품 일치성 프로젝트: 총 1,405항목

세관 Tariff No.		2011년 최종 인하세율
제28장 (무기 화학품)		5.5%
제29장 (유기 화학품)	2901~2902 2903~2915 2916~2942	0.0% 5.5% 6.5%
제30장 (의약품)		0.0%
제31~39장 (기타 화학품)		6.5%

자동차의 경우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에 한해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쿼터 내 관세율은 17.5%로 수입량은 42,998대로 한정하고 있다. 2011년 도부터는 쿼터 제한이 풀리게 된다.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최종인하세율
쿼터내 관세율 (쿼터수량)	21.8% (24,883대)	20.3% (29,860대)	18.9% (35,832대)	17.5% (42,998대)	17.5% (제한없음)
쿼터외 관세	30%	30%	30%	30%	17.5%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對대만 수출을 금지했음.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9.5.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 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2008.12.9일에 대만은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7.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 정부), 대만성, 타이베이시, 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 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 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 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태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이 2009.7.15일 GPA 가입 후 2010.6월 말 기준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2,094건(표결 금액 기준 2,642억 대만 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315건(15% 비중)이며 낙찰 금액은 총 192억 대만 달러(7% 비중)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GPA 가입 후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119	1,694.62	1	0.84	4.35	0.26
구매입찰	682	459.13	298	43.7	180.91	39.40
용역입찰	1,293	471.16	16	1.24	6.67	1.42
합계	2,094	2,624.91	315	15.04	191.93	7.31

자료원: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지식재산권 보호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 전문경찰(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와 영업비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著作權法)≫, ≪특허법(專利法)≫, ≪상표법(商標

法)≫,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집적회로 보호법(積體電路保護法)≫, ≪CD관리조례(光碟管理條列)≫,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등이 있음.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公平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자 19명을 2004.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센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이 대만 업체에 CD-R 강제 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1) 투자 제한분야

대만은 2003년도에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 및 내수 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08.5.16일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아래표 내용과 같다.

투자 금지 분야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임업·벌목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화학원료 제조업	기본화학공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우대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우대
		CFC, Halons,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경제부	내국인 우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독성화학물제조업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우대
		도화선 등 인화제품	국방부	
	농약·환경용약품 제조업	농약생산업 ('농약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우대
		환경용약품제조업 ('환경용약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우대
금속기본 공업	기타 금속기본 공업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우대
기계설비 제조·수리업	미분류 기타 기계 제조·수리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육상 운수업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가능
	택시업	–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우대
금융·관련 산업	우편·저축, 환금, 송금업	–	교통부, 행정원 금융 감독관리위원회	내국인 우대
법률·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라디오·TV 방송업	라디오방송업	공중파 라디오방송	국가통신방송위원회	
	TV방송업	공중파 TV방송	–	–
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투자 제한 분야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잡곡·특용작물·야채·과일·식용버섯·사탕수수·화초농사	–	행정원 농업위원회	–
	기타 농업 및 원예업			
	소·돼지·닭·오리 사육 및 기타 축목업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식품·음료 제조업	주류 제조업	–	재정부	내국인 우대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우대
화학원료 제조업	기본화학공업	상업용 Nitroglycerol 제조	경제부	–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독성화학물질제조('독성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우대
		도화선 등 인화제품	경제부	–
	양약 제조업	–	행정원 위생서	내국인 우대
	한약 제조업			
	농업 및 환경용 약품제조업	농업생산업 ('농업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우대
		환경용약품제조업 ('환경용약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우대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수공구제조업	칼 제조업	내정부	내국인 우대
기계설비 제조·수리업	미분류 기타 기계 제조·수리업	총기수리, 탄약	내정부	내국인 우대
운수도구 제조·수리업	항공기제조·수리업	군용항공기제조·수리	국방부, 경제부	–
	항공기부품제조업			
정밀·광학·의료기기·시계 제조업	–	군사용측정기기 설비	국방부	–
기타 공업 제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공업 제품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우대
전력공급업	–	–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용수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육상운수업	자동차 화물업	자동차 화물, 자동차 컨테이너	교통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대여	교통부	화교 가능
	하천·호수운수업			
항공운수업	민용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가능
	일반 항공업			
운수보조업	항공화물운송업	항공화물 집하장, 에어카고 서비스 등	교통부	–
	항공운수보조업			
	기타운수보조업			
	항구업	항구 및 관련 서비스업	교통부	내국인 우대
	기타 수상운수 보조업			
전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방송위원회	–
금융 및 관련 산업	본국·외국은행업	–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내국인 우대
	신용합작사업			
	신탁투자업			
	증권금융업			
	신용카드업			
임대업	자동차 대여업	소형 화물·여객차 대여	교통부	–
보험업	생명·재산보험업	–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내국인 우대
	보험보조업			
법률·회계 서비스업	변호사업	–	법무부	–
	행정사업	–	내정부	–
	회계 서비스업	–	재정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내국인 우대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건축·기술 서비스업	–	–	내정부	내국인 우대
라디오·TV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TV방송 사업	국가통신방송위원회	–
	TV 방송업			

자료원: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 구역(예: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지정사가 제정한 "토지법(2006.6.14일 수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및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공관, 공익단체 회의장, 묘지 등의 목적)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해당 관할 구청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해외송금액 제한이 따른다.

- 사업체: 1년 누적송금 총액 5천만 달러 이하
- 개인(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1년 누적송금 총액 5백만 달러 이하
- 비거주자(사업체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송금 건당 10만 달러 이하

단, 송금액이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체: 송금 건당 100만 달러 이상

- 개인: 송금 건당 50만 달러 이상
-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선물거래 관련 송금
- 대만 경내 거래이나 대만 경외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송금할 경우
- 그 외 은행 측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송금

경쟁정책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정사 자료에 따르면, 2010.10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5건으로 중국산 수건, 구두, 과산화벤조일, 론갈리트, 일본산 본드지가 있다.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불의의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의 생

산액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立及管理辦法 2001.9.4일 제정, 2005.12.13일 개정)에 따라 외국 은행의 대만 지점 설립 구비 조건 중 대만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이 1억 5천만 대만 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1억 2천만 대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 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1.1일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며, 음반 복제 문제가 심각하여 현재 음반물 불법 복제 판매 신고 시, 최고 1천만 대만 달러 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한 결과 미국 BSA가 발표한 2009년 세계 각국의 불법복제율이 43%로 전년대비 2%P 상승한 반면 대만의 불법복제율은 38%로 전년대비 1%P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7.1.1일부터는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9인승 봉고차 포함)의 물품세를 35%에서 30%로 인하했고, 2011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쿼터 제한 없이 17.5%의 관세가 적용된다.

2009.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라오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및 수입부과금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9.6월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라오스의 경우, 2015년까지 일반품목군의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하고 2018년까지 관세 철폐를 완료할 예정이며, 일반민감품목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20%로 인하하여 2024년까지 0~5%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10~90%, 판매세 10%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판매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판매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도에 제정, 이를 2010.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동 법률을 2009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연기하게 되었다.

라오스 소재 기업 중에서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제도가 적용되어 세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납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0%의 세율

이 적용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라오스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를 도입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뇌물수수도 만연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 Reforming Through Difficult Times" 제하 연례보고서는 對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83개 국가 중 168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위의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만 해도 주변국인 태국(3), 인도네시아(6), 말레이시아(7) 등에 비해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8일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②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③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Customs transit document, ⑦Import license, ⑧Packaging list, ⑨Bill of lading, ⑩Cargo release order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

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오스는 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관련 당국에 의해 금지된 음식, 의약품, 의료 관련 제품, 아이들의 안전과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난감, 라오스 국가 정책에 반하는 문학작품, 음란물 및 관련 인쇄 매체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 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라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용 철강과 시멘트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조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간 수출 농산물에 대해 국가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 투자자는 국내 투자법에 따라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재정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면세기간(tax holiday)부여, 수입 관세의 경감 및 원자재 생산설비 등의 면세 혜택이 있다.

독점규제

2004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라오스는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지원 하에 독점규제령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령의 목

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카르텔의 형성이나 독점, 덤핑, 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규제령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Trade Competition Commission)과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독점규제와 관련된 모든 체계가 갖추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는 라오스의 경우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제 관련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 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역에서는 경쟁저해요소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역에서는 일부 경쟁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 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달 대상은 모든 정부 부처, 행정기관, 국영기업 등이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내가격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OST) 산하 지적재산표준화국(DISM)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라오스는 1995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지적재산 협력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에도 가입하였다.

라오스는 1995년에 상표권에 관한 법령, 2002년에 특허권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2007년에 최초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법을 제정하였다. 상표권의 경우,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출원한 순서에 따라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후 10년 단위로 등록연장이 가능하다(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특허권은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해당 저작물의 작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개시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저작일로부터 50년간 존속되고, 저작물이 공시된 경우에는 저작물이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된다.

서비스 장벽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외국 국적 변호사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과거 외국 기업인들은 법적 분쟁에서 일부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 등 법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

외국인 투자법은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를 장려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외환 시장

외환 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되는 교통비, 보험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와 정부의 승인하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등의 목적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중앙은행(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N화의 기준 환율을 매일 단위로 정하고 있다. 환율 변동 범위는 미국 달러화의 경우 +/−0.25%, 유로화와 태국 바트화의 경우 +/−0.5%,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2%로 제한을 두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BOL은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던 외환거래 관련 필요 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절차를 완화하는 등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라오스 국영기업 또는 정부와 합작을 해야 한다.

현재 태국, 중국 등 5개의 통신회사들이 CDMA, GSM 기술을 활용,

라오스에서 영업 중이며, 이중 한 개의 회사만이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오스 통신시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은 통신시장내 추가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주요 도시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도 아직은 부족하다.

투자 장벽

개요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다만, 광산업의 경우 국가자연환경 보호 및 국가자산 보존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 자연환경과 국가안보,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는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2001년 통과된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금지 분야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별다른 차별은 없지만, 라오스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정책에 따라 관광업, 숙박업, 복권업, 정유 유통 등 외국인 100% 지분 취득 금지 분야를 설정해 놓았다. 또한, 장례업의 경우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의 여러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 후반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 하락한 것에 반해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의 폭발적 증가(특히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원 개발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010.10.10일로서 한국거래소와 합작으로 증권거래소를 개장하였

고, 이러한 자본시장의 형성 및 대외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의 라오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라오스는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는바,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통합투자촉진법은 2010년 말 또는 2011년 초 구체적 시행령 제정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적용되고 있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해외 투자자는 최대 100%에서 합작투자의 경우 최소 30%까지의 지분(최소 지분소유 요건사항은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10% 줄어들 예정)을 소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오스 국내 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 국내외 투자자간의 합작사업: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 및 등록하여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외국인 투자자는 총 자본금의 최소 3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의 성격, 규모 및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투자허가증 유효기간이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최대 75년까지 연장 가능함.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드시 합작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100% 외국 투자자 단독소유기업: 외국인이 단독으로 라오스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외국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도 해당됨(단,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

며, 현지 정보수집과 투자기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음. 외국 은행 설립의 경우, 설립 장소가 수도인 Vientiane으로 제한되어 있음).

투자법인 설립은 투자기획부(MPI)의 투자 허가 절차로부터 시작된다. MPI는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 분야에 따라 정해지지만 최대 45일이다. MPI 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은 뒤 산업통상부에 법인등록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산업통상부는 사업을 관할하는 부처와 함께 관련 서류를 검토, 법인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이후 세금 신고 서류를 재무부 산하 세무부(Tax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가 처리되는 데는 최대 10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허가증 및 등록증 취득과 법인설립 외에도 모든 투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라오스중앙은행의 외자유치증서, 공안부의 회사인감 및 정보문화부의 회사인감 승인 등이 있다. 아울러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부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라이센스(공장운영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처리 허가증 등)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라오스 정부는 해외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고, 동 법령이 시행되면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사항이 상당부분 철폐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금지되던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취득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에서 일반 사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기간에 대한 제한이 철폐될 예정이다. 일반투자는 기획투자부가 지정한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허가증 없이 기업법에 따라 기업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된다.

토지사용권제도

라오스정부는 토지사용권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되었으나, 곧 시행될 예정인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자본금이 USD 500,000 이상 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토지관리청에서 지정한 지역 및 면적 내에서만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하다. 통합투자촉진법이 아직 시행 전이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최근 발간된 현지신문 기사에 따르면 라오스 국가토지관리청에서는 2010년 말까지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에 주택 및 건물을 건설하려면 지방행정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규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MPI 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고용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금융상의 제한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 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자본 회수(repatriation), 납세 증명서(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surrender)와 같은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당금의 해외반출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당금을 해외로 반출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오스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서 외국환을 매입하여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해외송금 신청서
② 예금계좌 사본
③ 중앙은행이 발행한 외자유치증서
④ 납세증명서
⑤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의사록

회계처리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회계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계산서 및 회계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시행하여야 하는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소규모기업은 기본회계시스템(현금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갖춘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계산서는 라오어와 킵(Kip)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문서는 최소한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한부기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무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라오스는 세금 징수 시스템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중 하나이다.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설립된 투자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의 사업 실적상 순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라오스 국적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5%이지만 합작법인을 포함한 외국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 세율은 투자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면세혜택기간 종료

후,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의 위치에 따라 10~20%이다. 투자 법인은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의 5~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세금납부 의무에 있어서도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며 조세법에 명시된 법인세율이 외국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조세법이 곧 개정될 예정이며, 법인세율이 27~28% 수준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목재) 탐사를 위한 산업이나 기업은 천연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가 혹은 1큐빅미터(m^3)에 따라 2~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목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커피, 차(茶), 화훼 종자에도 관련 세율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지적재산권 사용료(royalty)에 과세되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국제중재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라오스 법원에 의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필요시 국제중재절차에 의존한다. 다만, 판례가 부족하고 정부 및 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계약 작성시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오스 정부는 1998년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정'을 서명하였다.

라오스 계약법상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중재판정에 관

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계약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행상 라오스 정부는 이와 같은 방법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 현황

1989년 라오스 국영은행이 국영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분리되면서 상업 부분의 96개 라오스 국영은행 지사가 7개의 국영 상업 은행으로 전환되고, 1999년에 BCEL,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등 3개의 은행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이후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두 은행이 라오스 개발은행(Lao Development Bank)으로 통합되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오스 국영은행은 통화와 환율 정책을 총괄하며 라오스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는 라오스 국영은행 외 3개의 국영 상업은행(BCEL, 라오스 개발은행, 라오스 농업진흥은행)과 다수의 일반 상업은행이 있다. 이중에는 한국인이 영업중인 2개의 상업은행(인도차이나 뱅크, 부영라오 은행)과 다수의 국외 은행 지사, 합작 은행, 상업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이자율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상업은행은 단기 대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영 상업은행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장기 예금, 대출 금리 설정 등 민간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제·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2차 산업의 기반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6.10일 Najib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2011~2015)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의 목표, 10대 전략적 중점육성 분야 및 12대 국가 핵심경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제10차 계획의 목표
  - 경제성장률(계획기간 중 연평균) : 6.0%
  - 2015년 1인당 GDP : 38,850 링깃(USD 12,140)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 5.3%(2010년) → 3.0%(2015년)

- 민간투자(계획기간 중 연평균) : 12.8% 성장(연평균 1,150억 링깃 신규투자)
- 고용(계획기간 중 연평균) : 2.4% 증가, 140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 10대 전략적 중점 육성 분야
- 내부 역량강화 및 외부 변화 활용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문화를 통한 고소득 사회로의 전환
- 생산성에 기반한 성장과 혁신 장려
- 최고급 인력의 육성, 유지 및 강화
- 균등기회 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른 성장 발전 추구
- 정부와 민간 기업간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
- 천연 부존자원의 효용가치 극대화
- 정부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

• 12대 국가핵심 경제 분야
- 석유 및 가스, 팜오일 및 연관 상품, 금융 서비스, 도소매업, 관광산업, 전자 및 전기, 민간 의료산업, 교육,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농업서비스, 광역 쿠알라룸푸르 구축

제10차 말레이시아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인 New Economic Model(NEM)을 발표·추진 중인 바, NEM의 기반이 된 기본원칙은 'High Income, Sustainability, Inclusiveness'로서

· High Income : 현재 1인당 GDP 7천불에서 10년 내에 1만 5천불로 도약
· Sustainability :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배려로 삶의 질 향상
· Inclusiveness : 인종에 무관한 빈곤탈피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NEM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민간부문 주도의 경제발전, 지방자치에 따른 결정, 클러스터 및 경제구역 기반 경제활동 강화, 기술산업 및 기업 우대, 아시아 및 중동지역 중시, 고급 기술인

력 유치 등과 같은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말레이시아는 상기 국가전체 차원의 발전전략과는 별도로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도 동시 추구하고 있다.

지역별 발전전략은 Johor주 등 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Iskandar Development Corridor', Kedah주 등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Northern Development Corridor', Sabah주 지역 및 Sarawak주 지역 개발을 위한 'Sabah Iskandar Development Corridor' 및 'Sarawak Iskandar Development Corridor'를 각각 추진 중이다.

최근 경제동향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 말레이시아는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는바 이러한 고도성장에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와 수출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7~1998년 기간 중의 아시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성장세를 회복하여 제8차 말레이시아 경제계획기간(2001~2005년) 중에는 연평균 4.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제9차 말레이시아 경제계획기간(2006~2010년)중에는 연평균 6%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전됨에 따라 2008.11월 제1차 경기부양정책(70억 링깃)에 이어 2009.3월 600억 링깃 규모의 제2차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하였는바, 1) 실업축소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20억 링깃을 투입, 2)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을 위해 100억 링깃을 투입, 3) 중소기업 대출확대, 자동차산업 지원 확대 등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촉진을 위해 290억 링깃 투입, 4) 교통, 기술, 관광, 농업 및 생명과학분야에 정부투자기금 100억 링깃을 투입하고 5) 국제공항 확충 및 서비스 분야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90억 링깃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과 수출 및 투자 급감, 국내소비 위축 등의 악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2009년 1/4분기 중에는 −6.3%에 달하는 큰 폭의 GDP 성장률 하락세를 보였으나 상기 경기부양책 및 과감한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2009년 4.4분기 4.4% 성장세를 기록한 후 2010년 1/4분기 10.1%, 2/4분기 8.9%의 빠른 성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연간 전체로는 약 8% 정도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6년 3.6%, 2007년 2.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에는 유가급등 등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5.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성장둔화와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연간 0.6% 수준의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경상수지는 석유가스, 팜오일, 고무 등 천연자원 및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에 힘입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흑자기조를 유지하여 온 바, 2006년에는 254억 달러 흑자, 2007년에는 292억 달러 흑자, 2008년에는 4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 감소가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하락이 지속되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33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 외환보유액은 2004년 667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6월 말 1,257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9년 말에는 960억불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환율의 경우 2008년 하반기 이후 약세를 나타내면서 2009년 초 미 달러당 3.61 링깃 수준까지 절하되었으나 최근 빠른 경제회복세 등을 반영하여 다시 절상추세로 반전하여 2010년 4월말 현재 미 달러당 3.1835 링깃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근 거시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6.8	5.3	5.8	6.2	4.6	−1.7
GDP(억USD)	1,122	1,185	1,295	1,469	1,525	1,475
1인당 GDP(USD)	4,877	5,280	5,878	6,849	7,991	6,972
물가상승률(%)	1.4	3.0	3.6	2.0	5.4	0.6
실업률(%)	3.5	3.5	3.3	3.2	3.3	3.5
외환보유액(억USD)	659	699	822	1,010	913	960

교역동향 및 교역환경

교역동향

(1) 전반적 교역동향

2009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1,572억 달러, 수입은 1,236억 달러를 기록하여 33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1997.11월 이후 무역흑자 기조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세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	1,759.0	1,992.5	1,572
수입	1,466.9	1,566.1	1,236
수지	292.2	426.4	336

자료: MATRADE(말레이시아 무역진흥기관)

2009년 주요 교역국가와의 수출입실적을 분석하면, 말레이시아 수출대상 1위 국가는 2008년과 동일하게 싱가포르가 기록하였으나 중국이 2008년 4위에서 2009년 2위로 부상하는 등 기존 미국, 유럽 및 일본 중심의 수출시장이 싱가포르 중국, 태국, 한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 중국이 2008년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이후 2009년에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과 같이 7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수출〉

(단위: RM Billion)

순위	국가명(2008순위)	수출금액(비중)
1	싱가포르(1)	77.2(14.0%)
2	중국(4)	67.2(12.1%)
3	미국(2)	60.7(11.0%)
4	일본(3)	54.4(9.8%)
5	태국(5)	29.9(5.4%)

〈수입〉

(단위: RM Billion)

순위	국가명(2008순위)	수출금액(비중)
1	중국	60.7(14.0%)
2	일본	54.3(12.5%)
3	미국	48.6(11.2%)
4	싱가포르	48.1(11.1%)
5	태국	26.3(6.0%)

순위	국가명(2008순위)	수출금액(비중)
6	홍콩(6)	28.8(5.2%)
7	한국(7)	21.1(3.8%)
8	호주(8)	20.0(3.6%)
9	뉴질랜드(9)	18.4(3.3%)
10	인도네시아(10)	17.3(3.1%)

순위	국가명(2008순위)	수출금액(비중)
6	인도네시아	23.0(5.3%)
7	한국	20.1(4.6%)
8	대만	18.5(4.2%)
9	독일	18.4(4.2%)
10	홍콩	10.8(2.5%)

※ 자료 : MATRADE(달러환산시 1USD당 3.52적용)

2009년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팜오일,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원유 등이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수출 품목 1위(약 647억불, 총수출대비 비중 41.2%)를 기록하였으며 팜오일, 천연가스, 원유의 경우 수출품목 순위 각각 2, 4, 5위를 기록하였으나 국제자원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 한·말 교역동향

2009년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43.24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25.4%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對말레이시아 수입 역시 전년대비 -23.6% 감소한 75.74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32.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8년 41.15억 달러 적자 대비 감소)

2010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빠른 경제회복 성장세 등에 기인, 전년 동기 대비 69.2%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10년 연간 전체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의 교역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6월
수출	금액	5,227	5,704	5,794	4,324	3,062
	증가율	13.4	9.1	1.6	-25.4	69.2
수입	금액	7,242	8,442	9,909	7,574	4,909
	증가율	20.5	16.6	17.4	-23.6	27.0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6월
합계	금액	12,469	14,146	15,703	11,898	7,971
	증가율		13.4	11.0	-24.2	40.5
수지		-2,015	-2,738	-4,115	-3,250	-1,487

출처 : 한국무역협회 KOTIS

최근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동향은 수출 1위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가 2009년 대비 53.5%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 선박, 합성수지, 냉연강판 승용차, TV 등 수출 주요 품목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09년		2010년(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평판디스플레이	670,282	23.8	698,737	64.1
집적회로반도체	553,633	-50.9	408,130	9.9
선박	141,057	404.4	242,154	332,528.9
합성수지	153,986	-19.3	173,754	90.3
냉연강판	209,364	-5.4	152,455	17.5
인쇄회로	182,058	-25.9	140,527	33.5
승용차	37,313	-67.2	106,733	1,187.3
칼라TV	68,971	-60.0	88,628	72.8
합성고무	53,073	7.8	88,143	223.9
동조가공품	90,178	-14.2	86,929	88.5
총계	4,324,822	-25.4	3,980,564	53.5

자료 : KOTIS 자료(MTI 4단위 분류)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단순평균 실행 관세율은 약 8.1%로서 단순평균 양허 관세율이 16.2%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관세율 인하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원료, 필수 식품류, 의약품, 기계류 및 여타 공산품 등의 경우 거의 무관세이거나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수산업을 갖고 있는 가전, 화학, 고무제품, 철강,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약 30~50%의 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완전 면제된다.

말레이시아의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세부단위는 9단위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수출입 통계자료에 한해 SITC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관련 HS CODE를 병기 혼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HS(Harmonized System)에 따라 분류되고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19개 품목(HS 9단위 기준 73개 물품)에 대하여는 TRQS(Tariff Rate Quotas)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들 품목은 주로 가축, 낙농제품, 담배, 커피, 밀, 설탕 등이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7.6.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tariff.cus toms.gov.my)에서 검색 가능하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Harmonized System)를 토대로 9단위 기준으로 10,579개 물품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

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 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 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이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 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custom form no.1이 요구되고,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custom form no.2가 요구되며, custom form no.3는 말레이시아 내 물품 운송 시, custom form no.8은 환적용, custom form no.9는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에 대해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ASEAN CEPT와 관련하여서는 특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CEPT 제도는 ASEAN 국가들이 1)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2)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40% 부가가치 산출시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1) 수입금지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의 1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최대 5천 말레이시아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파랴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2) 수입 허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식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수입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및 소고기, 계란, 쌀, 설탕, cement clinker, 폭죽, 비디오 및 오디오용 마그네틱테이프, 폭발물, 목재, 안전 헬멧, 다이아몬드, rice-milling machinery, 칼라복사기, 일부 통신장비, 무기 및 탄환 등이다.

-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건설장비, 농업, 광업, 자동차 분야의 경우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는바, 건설용 중장비의 수입은 통상산업부의 수입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가되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수입허가 및 국내 판매권한을 수입허가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자동차 수입 허가제도(approved permits)를 운영하고 있는바, 동 제도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업종에 부미푸트라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 다만, 2008.9.29일부터 중장비와 포트 기중기(port crane) 등 일부 건설용 중장비 품목의 수입허가가 폐지되었으며,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조만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 밖에 수입 시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수준 유지를 위해 우유, 양배추 및 커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량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바,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 중.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 동물, 동물제품, 식물 및 식물제품, 담배, 흙, 동물성 비료, 방탄조끼, 전기장치, 안전벨트 및 모조 무기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으며, 중간재 수입·가공 후 완제품 수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무역 제재가 미미한 편으로 연간 반덤핑이나 보조금 조사 건수는 평균 1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반덤핑 관세 조치를 받은 한국 수출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품목이 있다.

품목	HS코드	사건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인쇄용지	4801.00	반덤핑	2003.1.16	PD:2003.5.29일 FD:2003.9.26일 DD:2009.3.20일 (2014.3.18일로 연장)	43.24%
말레산 무수물 (maleic anhydride)	2917.14000	반덤핑	2004.1.10	PD:2004.10.7일 FD:2005.2.4일 DD:2010.2.3일	26.34%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염산	3907.60000	반덤핑	2005.1.27	PD:2005.6.25일 FD:2005.10.23일 DD:2010.10.23일	17.09%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8.9.22일자로 한국,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산 신문용지(roll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2009.3.21일부터 2014.3.18일까지 관세를 다음과 같이 연장해서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최초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한국기업의 당해품목 對말레이시아 수출물량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기업	부과 관세
Bowater Korea Ltd(Bowater-Halla Paper Co.Ltd)	43.24%
Daehan Paper Co.Ltd.	43.24%
Pan Asia Paper Co.	43.24%
Paper Corea Inc.(당초 조사시 Sepong Corp)	43.24%
기타	43.24%

자료: MITI(통상산업성)

한편, 그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 왔던 한국산 말레산 무수물은 2010.2월부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되었으며, 폴리에틸렌 텔레프탈염

산의 경우에는 2010.10월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를 위한 행정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조달 관련 제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2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공사는 재무부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투자기업(Government-linked companies; GLCs) 구매시에도 정부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바 Petronas, Telecom Malaysia, Tenanga Nasional은 1억 링깃을 초과하는 물품과 용역의 조달 시 재무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바, 부미푸트라 입찰기업(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격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 간의 joint-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의 표준화 및 인증담당기관은 과학기술혁신부 산하에 있는 The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DSM)이다. 동 기관은 '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표준 및 인증 촉진 등이다. 산하에 정부출연회사인 SIRIM Berhad

를 운영하고 있으며, SIRIM은 표준화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y Act 1965)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바, 인증에의 참여는 자발적이나 일부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 전기제품(Electrical Products)
- 위생 및 타일제품(some house hold products, ex: sanitary, tiles.)
- 가스 조리기구(gas cooking appliances)
- 안전벨트(safety belt) 등

한편,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철강제품 수입관련 제도' 변경을 통해 저급·불량 철강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또는 국내 생산된 봉형강(long products) 및 강판(flat products) 제품에 대한 강제 품질 인증 제도를 2009.8.1일부터 시행 중이다.

SIRIM외에 일부 단체가 표준설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관에는 Cement and Concrete Association, Malaysian Plast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Electrical and Electronic Association of Malaysia, Malaysian Cab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등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표준의 약 51%는 국제표준에 부합되며 새로운 표준의 약 80%도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설정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 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가공육류,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a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로부터 halal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보호로 구성되며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약과 베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조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룰 21개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의 설립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말레이시아가 많은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로 인해 국제 감시 국가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보인다.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등록 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이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및 비거주자인 출원인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의장

말레이시아에서 의장의 보호는 1996년 의장법과 1999년 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의장법은 등록된 의장에 대한 권리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격, 보호의 범위와 보호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간으로 하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으로 한다. 또한 동 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징은 강제 집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 바, 동 규정은 법을 집행할 특별 수사반이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 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 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

2000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 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예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http:// www.myipo.gov.my)에서 조회할 수 있다.

투자동향 및 투자환경

투자동향

(1) 전반적 투자동향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2007년 투자액이 2006년 55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08년에는 138억 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는바 이러한 투자액의 급격한 증가는 호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증가(39억 달러)에 기인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의 경우 63.6억불, 2010년 상반기에는 12억불의 부진한 투자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경기위축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으로 투자확대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말레이시아 해외자본 유입(제조업 분야)

(단위: 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투자유입액	9,717	13,844	6,356	1,194

자료: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2010년 상반기에 FDI로 승인된 주요 품목으로는 전기전자 제품, 합성금속 제품, 식품, 기초금속, 화학제품, 운송장비, 기계류 등이다.

(2) 한·말 투자동향

2009년도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총 11개 프로젝트에 약 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요 투자 분야로는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합성금속제품 분야 등이었다.

2010년 상반기의 경우 총 4개 프로젝트에 3백8십만 달러가 투자되었는바, 구체적으로는 기계 및 장비 2건(1백7십만불), 전기전자 1건(5백만불), 합성금속제품 1건(1백6십만불)이었다.

최근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투자 실적

(단위: 백만)

분야	2008		2009		2010 상반기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합성금속제품	3	10.81	2	92.0	1	1.6
전기전자	–	–	4	20.7	1	0.5
기초금속제품	1	30.03	1	13.7	–	–
운송장비	1	0.30	1	0.57	–	–
식품제조	–	–	–	–	–	–
종이인쇄출판	–	–	–	–	–	–
화학및화학제품	–	–	1	2.3	–	–
플라스틱 제품	–	–	–	–	–	–
기계및장비	3	5.71	2	0.17	2	1.7
기타	1	12.61	–	–	–	–
총계	**9**	**59.46**	**11**	**129.4**	**4**	**3.8**

자료원 : MIDA,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기준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n)이 55,000링깃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주로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진출 이후에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약 80여개 이상의 대기업, 중견기업 등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이 2009.11.25일 설립·운영 중에 있다.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제조업	삼성전자, 삼성코닝, 삼성SDI, 고려제강, 포스코, 동화기업, 풍산 마이크로텍, 성우테크, 효성중공업, KCC,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삼성중공업 등
도소매업	쌍용, 대우,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효성, LG상사 등
운수업	고려해운, 한진해운, 현대상선, 흥아해운 등
건설업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대우건설 등
공기업	KOTRA,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금융업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연락사무소)
교육, 서비스	대교, 대산컨설팅, 동국텍코, 와이티엔, PDF글로벌

투자환경

(1) 투자환경 일반

세계은행(World Bank) 2010년 사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사업경영환경 평가에서 총 183개국 중 23위를 차지하였는바 이는 2008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평가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 평가항목에서는 4위를 차지하는 등 사업 환경이나 투자환경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창업은 88위, 자산 등록은 86위 등 행정절차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라이센스의 처리를 위해 평균 25단계를 거치게 되어, 아시아 지역평균인 17.6단계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기업의 설립 시에도 9단계를 거쳐 통상 30일 이상이 소요되어 지역 평균 8.2단계를 초과하고 있다.

반면, 수출입 선적 비용이 지역 대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의 투명성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자기 거래에 대한 책임, 직권 남용 경영진

을 고소하는 주주 권리 등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의 외국인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진출 시 관료주의 만연에 따른 시간지연, 불필요한 비용 소모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 증가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2월부터 비즈니스 지원 테스크포스팀을 의미하는 'Pemudah'를 구성·운영 중에 있는바, 동 테스크포스팀은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과 국내외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료주의 개선,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영어상용, 우수한 사회 인프라, 석유, 가스, 팜오일, 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상황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슬람권 및 아세안 수출기지로서의 유망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반면,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절차의 지연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 관련 세부 분야별 환경

- 고용 및 해고

고용 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1955년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하며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바 1)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 2) 조합의 간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3)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 계약은 계약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어느 일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까지 유효하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통보 기한이나 통보 유효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1)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2)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3)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외환관리

1998.9.1일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화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링깃화의 해외 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외환관리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까지 링깃화의 해외거래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다만 환율제도는 1998.9월 고정 환율제 실시 이후 안정적 경제성장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이는 관리형 변동 환율제도를 실시 중이다.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를 대외 계좌라고 지칭하는바, 대외 계좌간의 계좌 이체의 경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나,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 가능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

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국내 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 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리 활동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5만 5천 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별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문 감면과 함께 추가 감면 혜택으로 사바주, 사라왁주와 말레이 반도의 동쪽 회랑에 위치하는 회사는 5년간 세금 감면기간 동안 법정 소득액의 15%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하이테크 기업으로 권장 활동에 종사하거나 신기술 분야 권장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경우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최초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60%의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다음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 받은 회사의 경우 1) 회사가 수익을 낸 첫해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2) 5년내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 전액 공제, 3) 바이오넥서스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및 4)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경쟁정책 및 경제자유화 조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9.4.22일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 참여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종전 최소 30%) 규정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말레이계 이외의 내국인(주로 중국계 및 인도계)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9.4.27일에는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상업은행 분야를 제외(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30% 투자지분 상한규정을 유지)한 이슬람 은행과 투자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상한을 종전의 49%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2009~2012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람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주재국내 외국계 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개설을 허용하며 2009년부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9.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Onshore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산업 동향

주요 산업 개관

(1) 주요 산업별 성장률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건설업의 성장이 5.7%로 가장 높은 반면, 제조업은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9.3% 감소하였다.

2010년 상반기에는 제조업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15.9%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비스업도 7.3% 성장으로 경기회복세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농수산업, 광업, 건설업 등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4.6	△1.7	3.5
농수산업	3.8	0.4	2.4
광업	△0.8	△3.8	1.9
제조업	1.3	△9.3	15.9
건설업	2.1	5.7	4.1
서비스업	7.3	2.6	7.3

자료: 중앙은행

(2) 주요 제조업 매출액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부존자원 등 일차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황을 교훈으로 삼아 외자 도입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펼쳐왔다.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인 주요 제조업의 매출액은 정제·석유제품의 매출액이 가장 높으며 컴퓨터, 반도체 장비 등 전기전자 산업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위: 10억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정제석유제품	37.5	24.1	14.3
반도체 장비	12.0	13.0	6.3
컴퓨터 및 부품	17.4	10.8	5.6
TV, 라디오 수신기, 녹음재생기	7.1	6.9	4.6
전자밸브, 튜브, PCB	8.5	6.7	3.9
기초화학(비료제외)제품	7.8	5.8	4.2
기초금속, 철강제품	8.5	4.6	3.3
자동차	4.7	3.9	3.2
TV, 라디오, 전화, 전신	4.4	3.0	1.4
플라스틱, 합성고무	4.3	2.6	–
총계	174.0	133.4	–

자료: 통계청

(3) 산업 생산지수

2009년 전체 산업 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I)는 2007년 대비 8.2% 감소하였는바, 이는 주로 세계 금융위기로 제조업, 광업의 생산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다.

	2008	2009	2010상반기
광업	99.1	94.9	94.9
제조업	112.1	101.1	111.1
전기	110.5	111.4	121.5
산업합계	108.0	99.8	327.5

자료: 중앙은행
주: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지수 산정

주요 산업 동향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수출주력 제품 중의 하나가 철강제품인 바, 말레이시아는 자국 전기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봉형강류, 판재류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석유가스 등의 산업분야에서는 철강제품의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공급이 되지 않는 강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여 왔다.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시장에 있어 국내 제조업체 생산 철강소재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8.1일부터 새로운 '철강제품 수입제도'를 발표·시행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a) 봉형강 및 강판제품의 제조인가는 앞으로 국내 및 수출시장 수요 충족 심사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b) 열연코일, 냉연코일 및 전기아연도금강판의 국내산 및 수입산 소재 사용비율(국내산 의무사용비율) 폐지
c) 봉형강 제품의 수입관세는 2009.8.1일 부터 10%, 2010.1.1일 이후 5%로 인하하고, 강판제품의 현행 아세안 국가 이외 최혜국 관세율(50%)은 2009. 8.1일 부터 25%로 인하, 2010.1.1일 이후 0~10% 수준으로 추가 인하
d) 열연코일, 냉연코일 및 전기아연도금강판을 포함한 강판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는 국내생산 가능여부와 무관하게, 수출목적의 최종재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 국내시장을 위한 제품으로, 품질이나 등급측면에 있어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제품, 무관세 최종재 사용에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 부여되며, 기존 7대 산업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는 폐지
e) 저급·불량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또는 국내 생산된 봉형강 및 강판제품에 대한 의무표준 이행 심사 제도를 2009.8.1일부터 시행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분야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으며,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이 아니고 부미푸트라라는 ethnic malay계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합작투자의 형태가 아니고는 시장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말레이시아 건설 산업 분야는 90년대 초반까지는 페낭대교, 페트로나스 빌딩 등 주요 랜드마크를 우리업체가 건설하면서 10억 달러 이상 수주고를 올리던 주력시장의 하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공항·항만·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완공되고 우리업체가 경쟁력이 있는 정유·가스시설, 발전소 등 플랜트 공사 발주가 급격히 감소함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건설경기 전반의 위축에 따라 우리업체 활동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제9차 말레이시아계획(2006~2010년)이 본격화됨에 따라 2007년부터 건설업 성장률이 4.7%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경기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제1차 및 제2차 경기부양책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 시 사업성이 지속적으로 개

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의 경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말레이시아도 경기둔화 추세가 본격화된 이후 금융완화 기조 유지를 통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08.11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2009.1월 중에는 다시 3.25%에서 2.50%로, 이후 2009.2월에는 다시 2.00%로 인하한 바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 추세와 함께 자산가격의 버블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10년 들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출구전략을 시행 중인 바, 2010.10월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였다.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금융소비자 심리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 시스템과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의 자금조달도 순조로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기금과 투자보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채무재조정 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운영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이슬람채권(Sukuk) 발행물량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바, 2001~2008년 기간 중 말레이시아 내 이슬람 은행 및 이슬람 보험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9.0%와 24.8%로서 이슬람 금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슬람금융대학원 운영을 통해 이슬람금융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등 이슬람금융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중이다.

에너지·자원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 동부해안 및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 북부) 해안을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바 원유는 2004년 말 기준 매장량이 48억4천만 배럴에 달하여 적극적 해외탐사활동을 통해 세계 25개국에서 62억9천만 배럴 상당의 석유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우 말레이반도 및 사라왁주를 중심으로 총 89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LNG 도입물량의 약 25% 수준을 공급하고 있다.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가 전담하고 있으며, 동사는 주요 메이저 석유회사와 공동개발계획(Production Sharing Contracts)을 체결하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나, 석유유통 시장의 경우 시장개방으로 페트로나스를 비롯해 Esso, Shell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이 시장 참여 중이다. LNG산업의 경우 페트로나스의 자회사인 MLNG사가 사라왁주 빈툴루에서 연간 23백만 톤을 생산 중이다(세계 최대의 단일생산단지).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자원 외에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바, Najib정부 출범 이후 기존 정부부처를 재편하여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를 신설하였으며, 2009.7.24일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정책(Malaysia's Green Technology policy)'을 발표함으로써 녹색산업을 경기침체 극복과 향후 경제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 공식 천명하였다.

동 정책의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1) 정부부처,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분야로 구성된 녹색기술위원회(Green Technology Council)를 구성·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을 구축, 2)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 메커니즘 마련 등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적 환경의 조성, 3)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 분야 연구자 및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 4) 관련기관 간 파트너십 체결, 관련 R&D분야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등을 통한 녹색기술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를 촉진함으로 녹색기술산업의 기술연구와 혁신을 촉진, 5) 적극적 홍보활동과 교육을 통해 녹색기술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강화 등이 있다.

개선 실적

말레이시아의 경우 통상·투자측면에 있어 2008년 대비 뚜렷하게 개선된 사항은 2009.4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부문 규제완화' 및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인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9.4.22일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 참여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종전 최소 30%) 규정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말레이계 이외의 내국인(주로 중국계 및 인도계)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9.4.27일에는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상업은행 분야를 제외(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30% 투자지분 상한규정을 유지)한 이슬람 은행과 투자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상한을 종전의 49%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2009~2012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람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주재국 내 외국계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개설을 허용하며 2009년부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9. 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절적인 Onshore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몽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채소 재배업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채소의 경우 계절적으로 차등을 두어 4.1~7.31일간은 5%, 8.1일~다음해 3.31일은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몽골 맥주 생산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0% 관세적용 수입물품
  - 번식을 위한 순종 말, 소, 돼지, 양, 염소
  - IT 분야의 일부 제품, 일부 의료 보건장비
- 5% 관세적용 수입물품: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이에 해당
- 5% 또는 15% 관세 수입물품: 계절성 야채, 식료품
  - 감자, 양파, (양)배추, 당근, 무의 경우 8.1~다음해 3.31일 15% 부과하고, 4.1~7.31일 5% 부과
  - 밀가루의 경우 7.1~다음해 3.31일 15% 부과하고, 4.1~6.30일 5% 부과
- 25% 관세적용 수입물품: 맥주
- 면세품
  - 특별 업종 및 수출품 생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생산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술 및 장비, 기중기 종류 등
  - 장애자용 특수장비 및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및 자재
  - 인도적 무상원조품
  -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

료, 근로자의 식료품 및 개인 생활용품
– 의료용으로 활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유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약품, 도구 등
– 가스 연료, 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자재 등

수입부과금

- 특별세법: 술, 담배, 휘발유, 디젤, 승용차, 유료 도박, 배팅 게임기 등에 부과

특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 ($)	
			몽골내 생산 물품	수입 물품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리터당	 1.00 10.00	 – –
2	모든 종류의 주류: – 도수가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지방 / 수도 1.6 / 2.00 4.50 / 4.50	 5.00 6.0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0.20	–
4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0.50 4.50	 1.50 6.00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0.20	0.20
6	궐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0.60	0.60
7	가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0.30	0.30
8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톤당	 11.00 12.00	 11–38 12–43
9	디젤	톤당	15.00	15–48

–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로 특별세를 부과(운송이 편리한 지역의 경우 특별세를 높게 책정)
– 맥주에 대한 특소세는 국내산, 수입산 모두 리터당 20센트를 부과하였으나 2009.3월 수입맥주에 대해 차등을 두어 35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09.4.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주몽골대사

관의 노력으로 헌법재판소는 수입맥주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은 위헌이라는 2006년 판결을 재차 표명함에 따라 2009.6월부터 수입맥주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을 철폐함(몽골 국회는 2005년에 맥주에 대한 특소세를 국내산 20센트, 수입산 50센트로 차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을 판결한바 있음).

– 와인, 소주 등 일반 주류에 대한 특소세도 차별적용을 하고 있는 바, 주몽골대사관은 한국산 소주의 몽골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9.10월 재무부에 일반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함.

수입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실린더 용량(cm³)	특별세율(미화 $)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9년	10년 이상
1	1,500이하	500	1,000	2,000
2	1,500–2,500	1,500	2,000	3,000
3	2,500초과	2,000	3,000	4,000

도박 게임기, 베팅 기계, 장비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당 특별세율(대당, 매월, 미화$)
1	게임대 즉, 전자 회전축 (룰렛)	80,000
2	자동 게임(777)	3,000
3	게임 결과를 보여주는 카운터대	80,000
4	베팅을 계산하는 북메이커 센터	80,000

특별세 면제 대상 : 몽골내에서 생산된 수출품, 가정에서 제조한 술, 코담배, 하이브리드 자동차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상 특별한 장벽은 없으며 수입업자가 수입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원에 제출하면 세관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책정하며 책정된 관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통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제약은 없다.

수입규제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

- 제한품목(사전허가필요): 화약, 화학약품, 일부 의약품 등
- 금지품목: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마약류, 음란성 비디오, 잡지, 사진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또는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이 수입되어 몽골 내 제조업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이외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주재국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무역장벽 기술

주재국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기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밀, 야채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업자들이 몽골 주류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맥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주류에 대해 특소세를 국내생산 주류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한편, 몽골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은 약 1,700여종으로서 주로 구소련시대 유럽에서 수입하던 약품들이며, 효능도 많이 떨어지는 약품들이다. 한국, 미국 등 의료분야 선진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가능 의약품 허가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신규 등재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주몽골대사관은 한국의 의약품 제조 기술이나 의료분야가 높이 발전한 점을 들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보조금 직접지급은 없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 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미화 약 84만 달러 이하의 경우 외국 업체 참여가 불가하나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자유경쟁 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몽골에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가 없다. 단,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건축업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몽골 최저임금인 108,000투그릭의 두배에 해당하는 210,000투르릭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특이한 제약이 없으며 은행에 100,000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이 25%이상 즉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2백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몽골 외국인 투자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청에 관련 서류 제출 시 3일내 허가를 해준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처음 60년 이하, 1회에 한하여 4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업체는 아파트,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관련(송금액 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 제한)
  - 과실출처에 대한 증명으로 송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금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세가 없으며 재투자의 제한도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 자금 차입과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자금이동이 가능하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이 일반적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나 증자는 어려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은 없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외환구좌 보유제한 등)
  -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일례로 대우인터내셔널사는 2005년부터 몽골 내 시중은행과 신용장 미수금 문제로 몽골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몽골은 이중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외환거래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환율이 비슷한 관계로 암달러상이 없다.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 한·몽골 간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인해 한국에 연금 등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증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치 않아도 되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연금 등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몽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세율상의 차별 여부
  - 특별한 차별이 없다.

-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이전가격 산정 방법 등)
  - 관료주의 잔재와 세금공무원의 개인적 성향으로 간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 주류생산업자들이 외국의 주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생산 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주류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장기 체류자는 매 1년마다 체류비자를 연장하며 한국 운전면허증을 주몽골대사관에서 몽골어로 번역하여 영사확인을 받은 후 도로경찰서에 제출하면 몽골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 은행
  - 14개 시중은행이 영업 중이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연 20.3%, 외국환 대출 금리는 연 15.4%이다. 예금 평균 금리는 연 12.6%이며 외국환의 경우 5.3%이다.

- 보험
  - 2010.6월 말 23개의 보험사가 영업 중이다. 총 자산은 28백만 달러이다.

- 신용조합
  - 총 209개의 신용조합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신용조합들의 대출잔액이 2008년 말 기준으로 21백만 달러이며 예금은 19백만 달러이다.

- 비은행 금융기관
  - 2010.6월 말 188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며 그중 11개사는 외국의 100% 투자 회사이다. 주로 대출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08년 말 기준 총 대출액은 33백만 달러이고 부실대출금의 증가로 부실화가 우려된다.

- 증권
  - 45개 증권회사가 있으며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화에 대해 아직 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실정이다. 2009.9월 말 상장회사는 363개사이며 시가총액은 5억 달러 정도이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 은행업
  - 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정부는 자본금 규모를 점차 늘리고자 하여 은행 간 합병과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은행업에 신규 투자한 외국 자본이 있으며 현재에도 외국 자본의 진출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 증권업
  -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증권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증권업 진출에 우호적이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우수 사례

2008년부터 몽골에 우리 금융기관(증권)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재 3개의 증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미얀마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및 수입부과금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추진에 합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기존 6개 회원국은 2010년까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추가 가입 4개국은 2015년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미얀마도 아세아 회원국의 일원으로 동 AFTA에 맞추어 관세율을 하향 조정해 가고 있다.

또한, 2007.6월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시작하여 오는 2010년까지 관세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며, 미얀마의 경우, 2018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현재 미얀마의 수입 관세율은 0~40%이며 수입 품목 중 68%가 관세 0~5% 범위 내에 있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관세율이 0~5%인 품목은 2015년부터 관세인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 장벽은 매우 낮으나 미얀마는 관세 이외에 평균 10~20% 상업세(Commercial Tax)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보다는 상업세로 인한 부담이 큰 편이다.

미얀마의 주요 양허 내역

구분	일반 품목군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	양허제외
품목수 (비율)	품목수: 92.4%	품목수 7.52% (393개)	품목수 200개	품목수 40개
주요 품목	기계, 의류, 전자, 플라스틱 등	고래, 사탕수수, 목탄, 팩시밀리, 낚시바늘 등	농어, 새우, 잎담배, 전동용 벨트 등	바다가재, 벼, 맥주, 보드카, 위스키류 등

자료원: 외교통상부

관세의 경우, 명목관세는 평균 5%정도로 매우 낮으며 관세율은 미얀마 관세청에서 발간한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 등재되어 있고 HS코드에 따라 MFN 관세율이 나와 있다. 미얀마는 NTR, GSP 등의 관세율은 없다. 아울러 미얀마 정부가 관세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1달러=450짜트로서 1$=920짜트(2010.10월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부담은 높지 않은 편이다(예, 100달러 물품 수입 시, 관세율이 5%이면, 2,250짜트가 관세이므로 실제 납부액은 약 2달러 정도에 불과).

한편, 2004.6월을 기점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적용 환율이 1달러=450짜트로 통일되었고 상업세가 일괄적으로 10배 인상되었다. 다만, 의약품, 컴퓨터, 비료, 살충제, 석유제품은 상업세 인상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나아가 미얀마도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된다. 이외에도 법인세는 30%로 동일하나, 현실적으로 노출 매출액의 약 10%정도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우 낮은 관세 대신 실질적인 관세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상업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 시에는 보통 10%가 부과되고, 수입 시에는 품목에 따라 최대 2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언더밸류 등 비공식적 수입관행이 야기되기도 한다.

일례로, 인보이스 가격이 1,250달러인 일상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는 약 6천 짜트, 상업세는 11만 4천 짜트가 부과되어 약 12만 짜트(약 100

달러)정도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얀마는 수입 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우리나라(Negative System)와는 달리 수입을 Positive System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모든 품목에 대해 건별로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시간, 인력 및 행정적 고충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는 수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미얀마는 통관서류 제출, 서류의 정확성 검토, 수입규정 위반여부 검토, 기존 수입가격을 고려한 상품가치 선정, 관세 및 세금 결제액 부과, 서류 기재내용과 실제 수입품목 간의 비교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반출이 허용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단계는 기존 수입가격을 고려한 상품가치 선정 단계로 세관에서는 과거 동종 품목의 수입가격, 카탈로그, 필요 시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하여 상품가치를 산정하게 되며 과거 수입기록이 없는 새로운 물품은 상품가치 산정에 특별한 기준 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가격을 산정하여 경우에 따라 과도한 관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통 이와 같은 통관 절차는 서류 제출 후 물품 반출까지 통상적으로 2~3일이 소요되나 이는 미얀마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에 해당되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특히 2005. 11월 미얀마가 행정수도를 양곤에서 네피도(약 390km 떨어져 있어, 차로 약 4시간 소요)로 이전하면서 수출입허가를 받는데 최소 2주 이상 소요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세관 단속을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뇌물이 없어지기도 하므로 수출입 절차 수속시 실시간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미얀마는 법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업체들에게도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수입규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구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L: Import License)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하다. 이때 선 예치된 자금은 오직 정부로부터 받은 I/L의 당해 품목 수입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얀마 외환취급은행(MFTB 및 MICB)에서 발행한 신용장은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아가 미얀마 정부는 2001년 말부터 외국계 무역법인의 신규허가 및 갱신을 중단하고 있으며 2002.2월부터는 외국계 무역법인의 I/L, E/L(Export License) 발급을 중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계 무역법인은 현지인 명의로 활동하고 있다. 현지인 명의의 법인은 각종 공과금도 현지화(짜트)로 납부가 가능한 반면 외국인 명의의 법인은 고정환율에 의한 달러화 납부만 가능하여,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현지인 명의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로서 Export Earning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보유액(2009년 말 기준 36억 달러)을 늘리기 위함이다.

미얀마의 최근 무역수지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4.6	6.1	6.7	6.9	7.8
수입	2.3	2.9	3.5	4.0	4.5
무역수지	2.3	3.2	3.2	2.9	3.3

출처: Country Report, EIU, October 2010, 2007~2009년은 추정치, 2010년은 예상치

수출 또한 건별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모든 수출입활동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시중에서는 수입금지품목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의 경우 입금지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수입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수입금지 상태이다.

결국 미얀마는 수출입 승인을 가지고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미얀마는 아직까지 국가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례로, 도로의 경우 한국과 같이 왼쪽 운전에 맞게 설계되었지만, 많은 중고차가 일본에서 수입되어 오른쪽 운전 차량이 상당수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관련 규제

미얀마는 1인당 GDP가 2008년 기준, 427달러(Global Insight 2009. 11월)로 세계 최빈국중 하나로서 환경관련 규제는 거의 없다.

품목별 장벽

미얀마는 수입필수품(Priority A), 비필수품목(Priority B), 수입금지품목으로 수입 품목을 분류하고, 필수품목은 Export Earning의 80%, 비필수품목은 Export Earning의 20% 한도에서 수입을 허용해 왔으나 2005.7월부터 동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수입금지품목은 여전히 유

효하며 세부 품목으로는 조미료, 음료수, 과자류, 통조림, 술, 라면류, 담배, 기타 현행법에 따라 수입이 통제되는 품목이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수입금지 품목이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승용차의 경우 중고차 및 신차 모두 1998년부터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고 오직 국영기업인 UMEHL만이 제한적으로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가능 품목도 품목별로는 정부관련 기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물은 미얀마 농축수산부, 무기는 미얀마 경찰청, 의약품은 미얀마 식약청, 식물·종자류는 미얀마 농촌진흥소(Myanmar Agricultural Service), 핸드폰을 포함한 통신장비는 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미얀마는 특정업체, 특정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 무역정책은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 결정되나 입찰의 경우에도 대개 발주처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게만 입찰정보를 먼저 주고 물품납품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지면을 통해 공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입찰에 참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인맥을 구축하거나,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현지의 입찰 브로커를 대리인으로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크고 작은 정책결정은 법규정보다는 대부분 최고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의하므로 최고 책임자와의 인맥형성이 중요하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조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기관이 없으며 행정부처별로 조달업무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입찰 건이 있을 경우 매체를 통해 입찰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사전 등록된 업체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부처별로 등록하여 입찰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얀마는 WTO/TRIPs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의 경우 당초보다 7년 6개월 연장된 2013.7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는 바, 미얀마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는 지식재산권이 거의 보호되고 있지 않으며 최신 영화,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복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단속활동 또한 거의 없다.

미얀마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Patent and Trademark Law)을 갖고 있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은 없으며 미얀마 농업관개부 산하의 정착 및 토지기록부서(Settlement and Land record department)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Patent and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에서 등록을 한다.

서비스 장벽

국영기업법에 의한 12개 사업분야는 민간참여가 제한되고 이외에도 해운분야는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외국인 무역법인의 설립 및 신규등록은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 장벽은 없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티크목 벌목 및 판매, 석유, 천연가스, 진주, 옥, 보석류 개발 및 판매, 물고기 및 새우양식, 상업용도의 산림개발 및 조성, 우편 및 통신서비스, 항공 및 철로교통, 은행 및 보험, 방송 및 TV, 전력생산 및 안보, 국방관

련 생산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다. 제한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정부의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농업, 축산 및 수산업,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 및 통신, 호텔 및 관광 등 8개 분야는 장려분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분야 지정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2002년부터 외국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현지기업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한 반면, 최근의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중국기업이 건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지분소유 제한이 없어 100% 단독 투자 또는 합작법인 설립도 가능하다.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50만 달러, 서비스업은 30만 달러 정도가 최저한도이다.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35%를 초과해야 하며, 절차상의 제한은 없다(미얀마 외국인투자 기본법).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지사 및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나 미얀마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미얀마 코트라에서 현지 지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미얀마는 자체 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국산화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외국인 투자유치의 목적 중 하나가 수출의 확대 및 촉진에 있으므로 수출의무 부과 및 이행이 투자 승인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생산품 100%를 수출하는 임가공(CMP)의 경우, 투자 승인이 매우 용

이하나, 내수용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미얀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출비중은 품목을 불문하고 약 40% 이상이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종은 투자진출 자체가 여의치 못하거나 과실송금에 제한을 받는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법으로 금지되어 부동산 임대만 가능한 상태이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부지 건설 목적의 부동산 임차의 경우 국가소유 부동산만 가능하며 민간 부동산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 임차의 경우, 민간주택에 대한 임차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불이 가능하다.

(1) 공장임대 절차

- 정부공장 임대
  - 정부 소유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대방법은 건물소유 관할청에 신청하여 계약으로서 임대가 가능하다.
  - 임대료는 관할청과 협의하여 조절가능한데, 협의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 민간 공장 임대
  - 현지인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보통 현지인 명의의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그러나, 미얀마는 각종공과금 납부 등에서 외국인에게는 불리한 이중환율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는 안 되지만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한국제조업체 중 상당수가 명의인을 현지인으로 택하고 있다.

(2) 임대 및 구입비용

외국인투자업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정부소유 공단에 입주하게 된다. 공장부지는 10~30년식으로 장기임차를

하며 부지 임차료 수준은 평방미터당 약 3달러이다. 미얀마 현지업체 이름으로 사업을 할 경우, 공장부지 선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최근 부동산 광고에 따르면 흘라잉따야 공단에 위치한 대지 3에이커, 건물면적 100피트×150피트 규모의 공장 월 임차료가 250만 짜트, 쉐삐다 공단에 위치한 대지 2에이커 건물면적 120피트×140피트 규모의 공장은 220만 짜트 정도이다.

금융상의 제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은행은 존재하지 않아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거의 불가능하고 현지에 진출한 업체들은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지진출 국내 은행의 경우 1998년 IMF 사태로 모두 철수하였고 외국인 단독 투자업체의 경우 현지은행을 이용한 자금조달은 불가하나 현지인과 합작투자업체의 경우, 기계 및 부동산을 담보로 현지파트너의 이름으로 현지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대출이자는 연 17% 정도로 높은 편이고 대출한도도 대개 2억짜트 이내여서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과실송금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구비서류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는 과실송금일지라도 송금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자금차입이 가능하며 차입한 자금은 원부자재 수입, 사무실 유지 및 기타 필요한 곳에 사용가능하다.

미얀마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외화 송금 금지조치로 인하여, 외화송수신, L/C 거래에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수출, 수입실적이 있으면 외국으로 송금이 가능한 반면 순수 내수 업종은 이론적으로는 외화 송금이 불가능하다.

정식 송금의 경우 수수료가 약 10%에 달하여, 통상 book transfer나 carry-on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2010.10월부터 한국과 미얀마간의 미달러화 송금이 중단되었다. 이전에는 한국의 외환은행과 미얀마의 MFTB, MICB은행간 대차계좌를 이용한 송금이 이뤄졌으나 외환은행에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유로화 송금과 L/C 거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다만, 유로화 송금시

달러화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약 2.5%에 이르는 환가료(수수료)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미얀마의 환율은 공식환율(정부통계 환율), 공공환율(공과금납부 환율) 및 시장환율 3가지가 운용되고 있는데, 공식환율은 1$=5.5Ks로서 정보통계 작성에만 사용되며, 실생활과는 무관하고, 공공환율은 1$=450Ks로서 외국인이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되며, 시장환율은 실생활 환율로서 2010.10월 약 1$=920Ks정도이다.

무역과 관련된 환율로는 Export Earning(L/C Money)이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자금만 있으면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출실적이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는 전문 수입상은 수출상 명의로 수입활동을 하게 되며, 이때 구입하는 Export Earning은 그린달러보다 약 15% 높게 거래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우리나라와 미얀마 간에는 2002.2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고, 2009.6월 한-아세안 투자보장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미얀마에는 아직까지 관세환급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서 수입한 물품이 간접수출된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제품과 함께 간접수출 된 상품(예: 카톤박스, 패딩 등)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부자재 수입 및 현지판매 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개인소득세, 관세 및 상업세가 있는데 법인세의 경우 초기 투자 후 3년간 면제되며, 3년 후 부터 소득액의 30%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노출매출액 대비 10%부과가 일반적이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액의 15%를 납부하며 관세의 경우 명목관세는 평균 5%로 매우 낮고 임가공업체로 허가받은 경우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부여되어 사실상 관세환급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봉제업체의 경우, 거의 100%가 동 제도를 활용, 무관세 통관하고 있다. 상업세의 경우 수출세와 수입세가 있는데 수출세는 수출대금의 10%(수출세 8%+소득세 2%)를 자동공제 후, 나머지 90%만 받을 수 있다. 수입세의 경우 품목에 따라 200%까지 부과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억제장치

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더벨류 등 비공식적 수입관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법인세 면제 연장이 가능하고 소득세 및 관세는 물론 상업세도 면제가 가능하나 실제 인센티브의 경우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개별심사와 결정에 따른다. 외국인의 경우, 이중가격제도, 공과금의 달러화 납부 제도 등으로 차별을 받아 대부분 현지인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체된 경우 페널티 성격으로 정부의 공식화폐인 짜트나 FEC 대신에 USD만 받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쟁정책

미얀마는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통제가 심하며 자동차 수입처럼 일부 업종은 정부산하기관(UMEHL)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행보험, 발전 등 12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해당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정부의 특별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타 장벽

외국인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가 이중가격제도이다. 즉,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통신, 수도 및 기타시설 사용료(골프장 그린피, 국내항공료 등)를 내국인과는 달리 달러화로 비싼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최소 5배에서 최고 70배까지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2005.11월 행정수도가 중부도시 네피도(양곤에서 북쪽 390km)로 이전함에 따라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대부분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하여 해당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직원 출장 경비 부담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역법인의 경우, 3개월짜리 사업용 비자만 발급하여 3개월에 한 번씩 태국과 같은 주변국에 가서 비자를 갱신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한국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의 무역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미얀마는 전기사정이 매우 열악하며, 현재 1,800MW인 전기생산용량을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4,000MW까지 늘릴 계획이나, 송배전 손실율이 35%에 달해 쉽게 전력난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가발전기를 갖추고 공장을 가동하여야 하는데, 유가 인상에 따른 경비부담이 커지고 있다.(EIU의 경우, '08년 16.0%, '09년 2.2%, '10년 13.5%의 인플레이션 예상)

한편, 미얀마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서와 함께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현지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발급에는 1~2주 정도 소요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미얀마에서 외환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MFTB, MICB 등 단 2곳에 불과하며 민간은행은 외환을 취급할 수 없다.

민간은행은 MEB(국영), Kan Bow Za, FMC Investment Bank 등 약 20여개의 은행이 있으나 신규고객 유치, 여수신 업무가 가능한 은행은 5개 미만이며 대부분의 은행은 기존고객에 대해서만 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는 2003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민간은행이 파산한 바 있어 미얀마 정부는 그 후로 민간은행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현지 법인을 개설할 수 없고 지점개설만 허용되며, 여수신 등 금융관련 업무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업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싱가포르나 방콕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0.7월 미얀마 정부는 Asia Green Development Bank, Ayeyarwaddy Bank, United Amara Bank, Leader Myanmar Bank 등 4개 민간은행의 설립허가를 발표한 바 있다.

미얀마의 주요 경제 지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실질 GDP 성장율	3.4%	3.4%	1.1%	1.0%	3.1%
소비자물가상승율	28.4%	28.6%	20.4%	6.6%	9.9%
상품수출(FOB)	45억 달러	61억 달러	67억 달러	70억 달러	73억 달러
상품수입(FOB)	23억 달러	29억 달러	34억 달러	35억 달러	41억 달러
경상수지	8억 달러	13억 달러	13억 달러	13억 달러	7억 달러
환율(Ks/USD)	1,280	1,290	1,185	1,090	1,250

출처: Country Report, EIU, November 2009, 2009년 및 2010년은 예상치

개선실적

미얀마는 제도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국가이고 규범에 의한 규제보다는 시간지연, 외국인차별, 부당한 인허가 거부 등과 같은 비규범적 규제가 많아 제도적 개선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 유망 분야 및 진출전략

석유가스, 광물, 전력 등 에너지·자원 분야

미얀마의 원유 매장량은 3,110백만 배럴이고, 일일 생산량은 약 8천 배럴로서 원유부분에서는 큰 유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한국기업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천연가스 분야는 투자가 유망하다. 현재 약 18tcf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일 1,187mcf가 생산된다. 천연가스 광구는 총 44개인데 이중 10~20개 광구가 새로 분양될 예정이며 대부분 심해저 광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초기투자가 필요하다. 47개 육상 광구의 경우, 미얀마 내국인(미얀마석유가스공사, MOGE)에 한하여 원유광구 개발권을 부여한다.

MOGE는 자본력 및 기술력이 취약하여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를 하며 통상 50%정도의 지분참여가 일반적이다. 육상광구는 해상광구와 달리 초기 위험이 크지 않고 성공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얀마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평가되는 분야는 광물 분야이다. 미얀마의 광물은 매우 풍부하며 대부분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광물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

(단위: 톤)

〈한국의 전략광물 매장량 및 생산량〉

광물명	석탄	철광석	구리	아연	니켈	우라늄
매장량	3.9억톤	7.2억톤	11억톤	532만톤	4천만톤	40만톤
생산량	25만톤	N/A	4만톤	199톤	N/A	N/A

자료 : 미얀마 광업부

미얀마의 풍부한 광물자원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광산개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광물이 질척한 오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나 광물개발은 유전가스전 개발과는 달리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위험이 각 단계로 분산되므로 초기 Risk가 비교적 작아 우리기업에게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니켈과 같은 한국의 전략광종이 풍부한데, 구리, 아연, 주석, 니켈 및 유리모래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 광물투자는 광종별로 광무부 산하의 3개 광업공사와 합작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통상 70%의 지분을 갖는 외국기업의 책임 하에 탐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KOICA 전문가와 공동탐사 경험이 있어 보다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투자 유망분야중 하나가 전력분야이다. 미얀마는 1년 중 6개월이 우기로 강수량이 풍부하여 수력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는 인접국인 중국, 인도 및 태국 등이 생산물 분배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수력발전소 건설계약을 가져가고 있다. 수력발전소 건설은 부대설비, 장비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미얀마 전력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며 인접국으로도 판매가 가능한 매우 유망한 분야로 한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분야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35%에 달하는 높은 송배전 손실율을 감안, 송배전망 정비를 위해 송배전 설비를 개보수, 신설하고 있고 미얀마 정부의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분야

현재 여러 가지 투자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중국 및 베트남을 대신할 가장 유력한 투자대상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57백만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한국과의 경제적 보완관계 및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들 수 있다. 즉, 미얀마만한 직접투자 유망지역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 최근 중국으로부터 철수하는 국내기업들의 발걸음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베트남의 경우 이미지가 및 임금이 크게 상승한 상태여서 투자시기가 늦었다는 의견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캄보디아가 투자유망지로 대두하고 있으나 인구가 불과 14백만에 불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영위할 경우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프랜차이즈 및 유통, 서비스업

미얀마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맥도날드 등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진출이 전무하다. 일부 현지 프랜차이즈가 있으나 수준이 낮으며 현지 한류붐을 활용 할 프랜차이즈 진출시 성공가능성이 높다.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Moon Bakery"의 경우 양곤시내에 지점망을 확대하고 있다. 파리지앵이라는 제과점 또한 한국식 최고급 제과점으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현지 고급소비층의 소비수준은 서구 고급소비자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내부장식은 물론, 품질, 맛 등 제반분야에서 최고급을 지향하지 않을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투자자의 의견이다. 현지 한류열풍으로 한국 및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으며 김치 등 한국식품이 주요 매장에서 현지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치킨 등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한국형 프랜차이즈 진출이 유망하다.

물류 등 관련산업 취약으로 현지 유통업이 낙후되어 있으며 양곤지역의 경우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공간을 겸한 대규모 복합 쇼핑몰, 전문 쇼핑몰, 식품체인 등 유통업 진출이 유망하다. 일부 현지인이 경영하는 소규모 복합쇼핑몰이 개장(Capital)

하고 있으나 규모나 내용면에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이 진출할 경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유통 및 서비스, 쇼핑몰의 경우 유리한 입지조건 확보가 관건이다. 미얀마에서는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만 가능하다. 일부 한국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점을 꺼리고 있으나 토지임차권도 매우 중요한 권리로 30년 이상 장기임차 시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City-mart 등과 같은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도 고려할 수 있다. 현지기업이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이 건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방글라데시

2009년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한 1,063백만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7.2% 감소한 122백만 달러로서 941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0.10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4.6% 증가한 1,190백만 달러이며 수입은 16.7% 증가한 109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방글라데시는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의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9~2010년 신회계년도의 경우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던 전 회계연도의 수입관세틀을 유지하되 기초원자재 수입관세를 7%에서 5%로 인하하였다.

구 분	관세율
자본재 기계 및 부품	3%
기초원자재	7% → 5%
중간재	12%
완제품	25%

주) 기초 원자재 관세율 인하는 2009/2010 회계연도에서 단행함

관세는 CIF 가격에 부과되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매년 7.1일부로 변경되기도 하지만 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도 한다.

수입부과금

높은 기본 관세율(Custom Duty : CD) 외에도 부가가치세(VAT), 규제관세(Regulatory Duty : RD) 특별관세(Supplementary Duty : SD),

사전소득세(Advance Income Tax), 사전부가가치세(Advance VAT) 등이 세수확대 및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부가금이 과세되고 있으며 2010~2011 신회계년도의 경우 사전소득세 및 사전부가가치세가 세수확대를 위해 각각 인상되었다.

구 분	세율
특별관세(SD)	20~500%
규제관세(RD)	5%
부가가치세(VAT)	15%
사전소득세(AIT)	3% → 5%
사전부가가치세(AVAT)	1.5% → 3%

특별관세는 담배, 자동차 등 사치성 소비재에 15%에서 500%까지 고율로 부과되는데 2010~2011 신회계년도상에도 전회계년도에 인상되었던 전자제품, 고급조명제품,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변경 없이 유지하였다.

구 분	세율
에어컨	20% → 60%
냉장고	20% → 30%
고급조명제품	20% → 60%
자동차 – 1500cc 이하 – 1500~2000cc – 2000~2500cc – 2500~3000cc	 20% → 45% 60% → 100% 100% → 250% 350%

통관절차상의 장벽

확립된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상의 장벽은 없으나 높은 관세 및 각종 수입 관련 세금, 그리고 수입송장 금액과는 관계없이 세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세평가 및 세금 분류 등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통관과정에서 뇌물수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통관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각종 통관 시설의 운영상의 난맥과 관련 인프라의 부족도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그간 주재국 정부는 일부 크레인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한 결과 고질적인 항만적체가 많이 해소되었으며, 항

만 이용료도 인하하여 최근 유가인상으로 인한 운임인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선박 진입이 불가하여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는 관계로 정확한 도착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 2009~2012년 수입정책상에는 L/C를 개설할 필요 없이 다음 품목의 경우 수입허가(IP) 및 통관허가로 수입할 수 있다.

- 허용 가능한 Spec하에 신규 또는 10년이 넘지 않은 플랜트 및 기계
- 신규 또는 5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 수입
- 신규 또는 15년이 넘지 않은 선박, 해양선의 경우 20년이 넘지 않은 선박(승객/화물)
- 전량 수출을 위한 제품 생산(export oriented Industrial Unit)을 위해 수입되는 기계 또는 플랜트
- 신규 또는 25년이 넘지 않은 어선(CCI&E의 Chief Control의 사전허가 필요)
- 여행자의 핸드캐리(Baggage Rule 범위 내) 및 샘플/선물용품/홍보물 등
- 강제판매규정에 의한 의약품
- 외국 업체와의 합작투자에 따른 자본금으로 수입되는 기계 및 부품

선적 전 검사

선적 전 검사제도(PSI)가 2000년부터 의무화되어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선적 전 검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거래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기계류 등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품목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파키스탄 등과 함께 Block "B"로 분류되어 스위스의 국제검사기관인 Cotecna Korea가 선적 전 검사를 담당하였으나 2008.3.20일부터 Bureau Veritas로 변경되었으므로 우리기업의 주의를 요한다. 선적 전 검사비용은 C&F 금액을 기준으로 30,000달러를 Floor Price로 하여 3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 금액의 1%를 수입상이 부담함. Floor Price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검사 기관의 컨테이너 Sealing을 요구할 시 275달러, 요구하지 않

을 시 250달러를 각각 부담해야한다.

기존 선적 전 검사기관인 Cotecna Korea는 업체에서 제출한 수출단가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여 수출단가를 인상하거나 지역본부인 상하이 Cotecna에 한국의 수출가격을 누출시켜 바이어들이 한국산 제품 수입 시 수입가격 노출 및 수출가격 평가인상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부담이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어 왔다.

주재국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사전심사제도가 빠르면 2010.12.31일 기준으로 폐지될 전망이며 주재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폐지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 5% 미만의 관세로 수입되는 1,000개 품목에 해당하는 산업용 자본재
- 700개의 산업용 원부자재
- 1천불 미만으로 수입되는 수출품목
- 설탕과 같이 종량세로 수입되는 수출품목
  (설탕의 경우 1kg당 58불상당의 700TK가 부과)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Ship Back 절차 복잡

계약이 파기되어 선적된 물품을 Ship Back하고자 할 경우 바이어(NOC, No Objection Comment), L/C 개설은행,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세관, 항만청 및 수출입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재수출로 간주, 해당 물품에 대해 L/C 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Ship Back을 성공한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물품대금보다는 Ship Back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행정 처리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됨은 물론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계약파기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의 주인은 당연히 선적서류 소지자가 주인으로서 소유주가 선박회사를 통해 Ship Back하고자 할 경우 세관의 협조가 필요하나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항만 화물 경매

항만에 도착한지 25일이 지나도 컨테이너를 찾지 않을 경우 항만 이용료가 2배로 인상되고 50일 경과 후에는 3배로 인상된다. 또한 50일 경과 후 바이어/셀러/운송업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경매 처분되고 있다. Ship Back이 자유롭지 못하고 방글라데시 세관의 복잡한 행정 및 일부 악덕 수입업체와의 결탁 등으로 헐값으로 매각된 제품이 시중에 흘러 들어오기도 한다.

수입규제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관련 국내 산업보호 목적의 반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관세율 조정을 통해 수입산에 높은 관세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약품의 경우 등록을 까다롭게 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종교상의 이유나 공익보호 명목으로 일부 상품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PO: 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2012년 수입관리 정책상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제품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60개 품목군(일부 또는 전부)에 이른다.

- 상세사항 수입규제품목에서 설명

이외에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이스라엘 국적선에 의해 운송되는 상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현 수입정책상에 나타난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책, 영화, 사진, 팸플릿, 비디오 및 오디오 형태의 것으로 음란하거나 종교적인 신념에 위배되는 것
– 중고의 사무기기, 복사기, 전화기
– 돼지 및 돼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 방글라데시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지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아직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으나 업계로부터 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방글라데시 표준검사연구소(BSTI: Bangladesh Standard & Testing Institute)가 각종 품질 표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BSTI에서 관리하는 약 3,0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및 규격 표준을 방글라데시에서 받아야 하며, 그 외 품목은 외국 표준기관이 인증하는 제품을 수용하고 있다. 의약품의 표준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관리국(Dept. of Drug Administration)에서 관장하며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식품류 수입 시 방사선 표준규정이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한편, 가스제품을 비롯, 화공약품 등을 수입할 경우 매번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애로를 겪기도 한다.

수입 상품과 포장 용기에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종교적인 감정이나 신앙을 저해할 수 있는 여하한 종교적 암시, 또는 문구나 형상의 표기가 금지되며 외설적인 사진, 그림, 문구, 시각적 표현 역시 금지된다.

유제품은 캔, 또는 벌크 상태로 수입이 가능하나 포장용기에는 반드시 방글라데시어로 성분을 표시하고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을 방글라데시어 또는 영어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식에는 필히 포장용기에 계량스푼이 동봉되어야 하며 건조된 저지방 유제품은 반드시 진공포장이 요구된다.

조제분유의 경우 수입산 제품의 브랜드 소유권을 방글라데시 내 판매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로열티를 내는 업체만이 이에 해당되어 일부 수입상들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도 방글라데시 정부에 납품코자 할 경우 전기 형식승인과 테스트를 받아야 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중소기업들의 참가가 쉽지 않다. 모든 식료품은 해당 수출국의 기관으로부터 인체유해 등에 대한 서류제출의무가 있어 통관 전 방글라데시 표준검사연구소(BSTI: Bangladesh Standard & Testing Institute) 또는 BCSIR의 실험으로 유해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 규제조치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카 대기정화 프로젝트'에 따라 2기통 엔진은 수입금지 상태이다.

투자에 있어서도 환경과 관련된 규제조치는 없으며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업종은 특정지역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 관련 규제라기보다는 지역 제한조치로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환경국에서는 다카주변 주요 강과 하천 오염이 심각해지자 2007년부터 염색폐수처리에 대해 그간 느슨하였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7.11월 말까지 모든 염색업체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물을 정화하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실제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1997년 제정된 환경보호법(Environment Conservation Rule 1997)에 따르면, 산업 생산 공장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들은 의무적으로 폐수처리장치를 설치해야하나 방글라데시 기업들은 통상 시설 투자비용의 30%에 해당하는 동 설비의 설치를 미뤄오고 있다.

이와 관련 주재국 총리는 2010.6월을 기한으로 폐수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 시 신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혀 섬유·봉제 산업에 투자했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아국기업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품목별 장벽

방글라데시 정부는 매년 3년마다 수입정책(Import Policy)을 발표하고 있으며 2009년에 현 수입정책(Import Policy 2009~2012)이 발표되었다.

현 수입정책(Import Policy 2006~2009)에 나타난 품목별 수입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유, 유제품, 식용유 및 기타 식료품, 채소, 종자 등 식품수입에는 선적서류에 방사성 검사(Test of Radioactivity Level)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 세관당국이 샘플을 채취하여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회(BAEC,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에 송부하면 24시간 내 결과를 세관에 통보하여 허용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통관불가
- 등록된 철강업체는 고철(HS 7204) 수입이 가능하지만 상업용으로는 수입 불가하며 알루미늄 스크랩(HS 9602)은 해당당국에 의해 확정된 수입물량에 한해 알루미늄용기/도구 제조업체에 한해 수입가능하며 폐지/재생지(HS 4707) 경우도 산업용으로 수입가능
- 중고컴퓨터는 수출자의 2년의 품질보증을 조건으로 펜티엄 3 이상 기종에 대해 Bangladesh Computer Council(BCC)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중고기계는 수출업체에서 10년 이상 사용 가능하다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자동차나 가전, 섬유, 직물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수입관세율은 관세수입 확보, 또는 국내 관련 산업 보호 목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각종 수입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수입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특정 제품만을 겨냥한 장벽이라고 볼 수는 없음.

의약품 등록절차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 완제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등록절차가 있음에도 불구, 외국산 제품의 등록을 미루거나 등록자체가 어려워 대부분의 수입 의약완제품은 밀수로 들어오거나 수입상들이 수입을 꺼려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등록규정은 자국에서 등록된 의약품일 경우 방글라데시에서도 등록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생산업체중 3개 업체에서 수입을 반대할 경우 등록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있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방해하고 있다.

그 외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을 조류독감국으로 분류하여 계란, 영계 등의 제품과 가축 등에 사용되는 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방글라데시는 주요 산업별로 수입대체 산업 육성 목적으로 국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면서 1989년까지 각종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1991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민영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지향형의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출 시 30%의 수출보조금, 그 외 냉동어류 10%, 가죽 15%, 담배 10%, 감자 10%, 자전거 15%, 황마 7.5%, 경공업 10%, 방적 및 방직 분야 5% 등의 현금보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수출기업의 경우 gas bill VAT의 80%, 수도 및 전기사용료의 60%가 감면되며 보세창고 내 물품의 통관 및 운송비용 전액이 면제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방글라데시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은 필요 물자를 입찰을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으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대부분 국제입찰을 통해 물자가 구매되고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비록 재무부 내에 정부의 입찰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고 감독과 통계를 관장하는 중앙조달기술국(CPTU, Central Procurement Technical Unit)이 있지만 개별 정부기관마다 상이한 조달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경우 대부분 외국 업체의 직접 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자본으로 인한 입찰일 경우에만 외국 업체의 직접 참가 또는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아직까지 tied-loan이 많고 ADB, WB 자금을 통한 입찰의 경우 국내업체의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인맥이나 정실이 입찰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해 공식 에이전트 외에도 발주기관 책임자와의 특수관계자 등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지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전력설비분야에서는 자국기업 보호 및 육성장려차원에서 우호적이고 차별적인 정부구매입찰제도가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 재원이 정부재원인 경우 입찰참여는 오직 현지기업만이 참가 가능
- 재원이 ADB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달되는 경우 국제입찰을 통해서 진행하지만 자국기업에게 외국기업보다 입찰가가 15% 높더라도 최저가 낙찰의 기회를 주며 관련 부품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Advance Income Tax를 환불해 줌.

지식재산권 보호

방글라데시는 WIPO 회원국으로 1991년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지식재산권법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국의 특허, 상표, 의장법을 WTO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무역관련 규정(TRIPS)에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

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WTO의 TRIPS협정도 발효 중이다. 다만, WTO TRIPS에서도 의약품 분야는 2015년까지 예외로 되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7년 방글라데시 지식재산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5개의 중대형 불법복제 제조업체들이 파키스탄의 감시를 피해 방글라데시에서 일일 4~5만장의 불법 CD/DVD를 복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중소 불법복제업체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사 설치 후 2년이 다 되어서 정품과 불법제품을 분리해서 판매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방글라데시는 1) 무기, 군수 및 기타장비 2) 원자력 생산 3) 보호지역 내 조림과 벌목 4) 증권발행(지폐) 및 통화주조 5) 항공 운송 및 철도운송 등 5개 업종은 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외 은행, 보험 등 금융업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있다.

보험에 대한 외국계 회사에 대한 차별분야는 1) 외국기업의 정부입찰 참여시 방글라데시 국영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가입 2)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에 대한 제한 3) 일정기한 후 상장에 대한 의무 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국영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가입 사항 관련 외국계 회사가 방글라데시 조달 참여시 총 조달금액의 1%정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개정보험회사법 이전에는 국영보험회사(Shadharan Bima Coporation)에 의무적으로 100% 가입해야 한다.

개정보험회사법 이후에는 우선 국영보험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납부하여 이중 50%는 국영보험회사가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국영보험회사가 나머지 43개 보험회사에 균등 분할하여 송부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 관련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 BDT 170,000,000(약 US$2.5mil),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BDT 70,000,000(약 US$1.03mil)이어야 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영업개시일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면 총 보유주식의 40%이상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기업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에 BDT 1,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외국인 투자법상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여기에는 100% 외국인투자, 또는 내국인 투자 모두 조건 없이 허용된다. 그러나 해상운송업의 경우 Shipping Agent License 발급기관인 국세청(NBR)은 자국 선사 및 에이전트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을 최대 49%까지만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투자기업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08.10월, 프랑스 최대기업인 CMA CGM 선주사가 100% 단독투자형태로 Shipping Agent 영업허가를 NBR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방글라데시 Shipping Agent Association(SAA)이 NBR에 압력을 넣어 NBR이 동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다.

투자절차와 관련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투자지역에 따라 일반지역 투자는 투자청(BOI), 수출가공지역은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에 신고 후 소정의 허가절차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기관 및 정부부처의 행정처리 지연이 일반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투자청(BOI)에 등록 신청, 중앙은행 허가, 노동부 허가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설치 후 1~2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갱신하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지출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사 및 연락사무소는 분기별로 본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내역을 정리하여 중앙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연장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 종업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에 따라 외국 종업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0명당 1명, 금융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대표자를 포함 2명만 가능하다.

국산화 의무

방글라데시 정부는 투자기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산 원자재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 봉제의류 업종의 경우 15%의 국산원단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나 수출용 의류에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의 원단공급이 극히 제한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이와 유사하게 국내 부가가치 30% 이상의 권장사항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1999년 산업정책상에는 식품, 설탕, 비료, 시멘트 등의 포장 재료로 자국산 황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급상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수출의무 사항은 없으나 수출가공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생산제품의 10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여야 하며 일반 지역의 경우에도 기계설비와 부품의 면세수입, 10년 이상의 면세혜택, 보세지역 지정 등의 혜택이 있는 수출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80% 이상의 제품을 수출해야 각종 산업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투자청 등 투자허가 기관의 행정처리 지연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연관행은 일선 창구 담당자로부터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어 허가과정에서 이면적인 불법 금품수수가 상례화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행정처리에 경험이 많

은 대리인을 통해 처리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수시로 관계기관의 책임자를 접촉하여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방글라데시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법인명의의 취득만이 가능하다. 국유지의 경우 법인에 의한 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며 1999년 장기임차 방식이 허용되고 있다.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그 성격상 토지 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며 30년간의 임차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글라데시는 토지 등기제도가 복잡한데다 영국 식민지, 동 파키스탄 시대, 독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 구입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계약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러 명의 소유권 주장자가 나서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거래관련 제세금이 2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사전에 세금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 "Bangladesh Real Estate Law 2008"이 마련되었다. 동 법에는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지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100% 단독투자나 합작투자가 가능하여 총량적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개발 시 외국회사는 RAJUK(The Capital City Development Authority)와 투자청 등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한다.

토지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8년 마련된 "Land Development Regulation for Private Housing Project 2008" 규제를 받으나 동 법상에는 토지개발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한다는 규정만 있고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 토지개발을 위한 투자 시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외국인투자법상 투자자본, 이익, 자본이익, 세후배당, 승인된 로열티와 기술이전료의 자유로운 송금은 보장되며 외환관리규정과 한-방글라데시 간 투자보장협정상에도 동 보장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법인세, 배당세, 송금수수료 등 제반 세율을 고려하면 과실송금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37.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제한 세후배당에 대한 과실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25%의 배당세(Dividend Tax)을 납부해야 하며 송금시에도 별도의 송금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세청(NBR)과 세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송금제한 조치가 종종 취해져 1년 이상 송금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과실송금과 세금 문제 중 어느 하나는 희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열티나 기술이전료의 송금은 투자청에서 패스북 발행을 통해 관리, 통제하고 있으며 판매액의 5%미만인 경우 아무런 사전허가 없이 송금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2) 자금차입 규제

외국의 차관이나 공급자 금융, 수익금 상환조건부 차입(PAYE: Pay-As-You-Earn), 不송금 조건부 외환 등은 모두 자기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1)차입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금리가 LIBOR+4%를 넘지 않는 경우 2)공급자 금융의 경우는 다운 페이먼트 금액이 전체금융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 3)차입금 상환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등은 계약 이전에 투자청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 외에는 투자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자금차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가위험도가 높아 정부차관 및 세계은행 등 원조은행을 제외한 순수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차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⑶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금융조달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은 없으나 현지 조달금리가 11~14%로 높은 편이다. 2005년 말 중앙은행에서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외국인투자기업 대출을 제한코자 하였으나 민간은행들의 주요 고객이 대부분 외국투자기업임에 따라 실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⑷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방글라데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외환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으나 방글라데시의 늑장 대금 지급은 매우 유명하며 이는 L/C 대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L/C상에 선적서류 인수후 10일 이내에 L/C 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도 13~15일만에 결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대부분의 한국은행들은 이러한 방글라데시 은행들의 관행에 이자를 물리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특히 국영은행)들은 수입업체와 함께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아 방글라데시 전체 은행들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금융거래가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지 로컬은행과의 거래 시에는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외화의 부족으로 수출용 의류 제조를 위한 봉재 원부자재 등 수입 시 Master L/C를 담보로 하여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거래에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부터 봉제의류 오더를 받은 업체는 동 오더(Master L/C) 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데 봉제원단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 개설 시 봉제완제품 수출대금이 결제되어야 그에 들어간 원부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이른바 이행조건(Realization Clause)이 붙은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L/C는 수입업체가 수입 원부자재로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제품 품질상의 하자 적기선적의 실패 등으로 MAIN BUYER의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Back to Back L/C를 받고 수출한 원부자재수출대금의 회수가 어렵다.

봉재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는 at Sight가 아닌 최

소 120Days Usance로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재국 은행, 특히 국영은행의 신용도가 매우 낮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회피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로의 수출시에는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⑸ 이중환율 적용: 해당 사항 없음

세제상의 제한

⑴ 사회 보장세 등 이중과세: 해당사항 없음(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⑵ 세율상의 차별 여부

내·외국인 기업 간 세율상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상장 여부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다.

전 회계연도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바 있으며 신회계년도에서도 기존틀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기존 30%에서 27.5%로, 비상장기업은 40%에서 37.5%로 인하하였으며, 금융권은 4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면세혜택을 누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면세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내에 면세금액의 40%를 재투자 또는 신규로 투자하거나 공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국공채 등에 투자해야 과실송금이 가능하다(면세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매년 재무제표상에 적립금을 명시하고 있다).

⑶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무조사

아직까지 외국인 기업들이 많지 않지만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세수 중 상당금액이 외국인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자국기업들의 경우 정치권과의 인맥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지만 외국기업에는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거나 식당의 경우에도 매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정책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시도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화교나 유태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집단이 상권을 장악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북부의 실렛 지방 사람들이 부지런함과 茶 농장을 통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공기업들이 활동하고 이들 공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으며 (비료, 유류 등) 일부 수입업자들이나 도매상들의 담합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 제한

1992년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정부는 해외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외환통제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자본의 유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해외투자는 케이스별로 여러 정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외지사 운영자금 한도 등도 설정·관리하고 있다.

법인과 사무소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외국의 에이전트들에 대한 세무사찰, 매년 비자연장 등과 같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수출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방글라데시 노동력의 진출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등 외화획득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호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실제 입국심사 시 비자가 없을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최초 방문자의 경우에도 입국비자(Landing Visa, $51)를 받도록 하고, 중복 방문자의 경우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장기 체류비자는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는 1~3년 단위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방글라데시 내 담당부서인 BOI에서는 노동허가서와 비자를 일괄적으로 1년 단위로 발급하고 있다. 특히 노동허가서의 경우 1개월에 1번씩만 발급하고 있어 때로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주재원의 운전면허 취득

주재국 운전 면허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되어 국내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사관 확인을 받아 방글라데시 교통국(BRTC)에 제출하면 주재국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손수 운전은 하지 않고 현지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현지인의 경우 교통경찰의 단속 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는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존재하고 있다.

카탈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부가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게 송부하는 각종 카탈로그에도 관세를 부과(1kg에 한화 4천원)하며, DHL, T&T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물론 소규모 현지 로컬업체들도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세관과 결탁하여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 및 카탈로그를 송부할 경우 반드시 Printed Document라고 명시하여 세금을 줄이도록 하고 우체국의 EMS를 이용할 경우 2~3일 시일이 더 소요되더라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허/상표 등

디자인 실용신안의 경우 건별로 인증하지 않고 어떤 기업에서 신청만 하면 마구잡이로 수백 건을 한꺼번에 인증하고 있는 등 특허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과 실효성이 거의 없는 편이다. 불법적인 복사를 한 디자인일지라도 방글라데시에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정이 느슨하고 실제 불법 복제한 것을 등록하여 추후 문제발생시 자국 업체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 상표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업체들의 상표나 브랜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정보 미공개

방글라데시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통계, 그리고 일반 정책자료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이러한 자료 요구 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심지어 공표된 법률도 한달이 넘어서야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베트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현재 베트남의 MFN 평균 관세율은 15% 선이다. 그러나 지역간의 FTA가 빈번해짐에 따라 베트남도 ASEAN, 중국, 한국, 일본 등 특정 경제블록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 중 한국, 아세안, 중국, 일본과는 이미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한·ASEAN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2007.6월 발효됨에 따라 한·베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 베트남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FTA의 규정에 따르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며 상품의 HS코드별 수입관세율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FTA포탈(http://fta.kita.net/)을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ASEAN과는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AFTA에 따라 베트남은 역내 상품 수입관세 인하 프로그램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를 실행하여 2006년 초 관세율을 0~5%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평균 AFTA/CEPF 관세율은 4.7%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관세율 인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과는 2009.10월부터 EPA가 발효하여 관세인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EU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비록 제한적인 수량에 한해서이기는 하나 특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WTO에 2007년에 가입하면서 가입 이전에 관세 협상을 요하는 26개국과 양자 협상을 마쳤으며, WTO 가입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관세율의 22%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섬유, 의류, 목재, 어업 등의 부문에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분야	베트남 평균수입 관세율	
	현행	WTO 가입 후
농산물	23.5	21.0
공산품	16.6	12.6

수입관세(Import Tariffs) 산정기준

(1) 관세코드

재무부령 85/2003/TT-BTC(2003.8.29)에 의거, 베트남의 수입 관세체계는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 코드로 잘 알려진 신 국제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2002년판을 따르고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8자리까지의 상품분류를 하였으나, 재무부가 발표한 포고령(Decision 39/2006/ QD-BTC)에 의거 2006.9.15일 부터는 분류코드가 10자리로 늘어나게 되었다.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현재 우대 관세율의 150%에 해당하며, 우대관세율의 170%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감 될 수 있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우리나라도 이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대표적인 것이 한국,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한국: AKFTA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아세안 회원국: AFTA/CEPT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2006년 말까지 베트남 관세율 표상에 명기된 품목 중 약 97%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베트남 특혜 관세 중 가장 요율이 낮고,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다.
- 중국: ACFTA 의 관세율을 적용 받으며 현재까지 9,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ACFTA의 관세율이 일반 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기타: 미국과 유럽산 섬유 및 의류, 라오스산 제품 일부에 적용

이상의 관세율 외에 베트남 정부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과 같은 특별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관세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다만 2009.11월에 Float 유리제품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여전히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면서 결국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수입금지품목
- 수입허가제도
- 수입쿼터제도
- 수입업자 수의 제한과 수입업자 임명제도
- 기술 규격 요건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보통 10~80%이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가격을 기초로 산정된다.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 담배류(Cigarettes & cigars)
- 알코올(Liquors)
- 주류(Spirits and beer)
- 24인승 이하 자동차(Automobiles with twenty-four seats or less), 화물차
- 가솔린,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Gasoline, naphtha, refor-made components and others), 에어컨(Air conditioners with capacity of 90,000 BTU), 게임용 카드(Playing cards), 부적 등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such as votive paper or joss-paper)
- 서비스분야(골프,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골프, 사행성 스포츠 및 복권 등)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매출세(Turnover tax)를 대신하여 적용되는 세금으로 0~10%까지 3종류가 있다. 부가세는 수입업체가 납부하지만 결국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0% 적용대상: 수출품에 적용, 일부 농산물, 베트남 내 생산불가 선박 및 항공기, 토지사용권 양도, 일부 교육서비스 등
- 5% 적용대상: 생수, 비료, 살충제,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교육훈련장비, 종이, 유아용 완구, 아동용 서적, 식료품, 가축 사료, 농산품, 서비스, 기본 화학품, 기계제어, 정제금속, 전산처리, 운송, 적재 및 적하 관련 활동등 생필품 및 관련 서비스
- 10% 적용대상: 연료, 광물, 전기, 섬유, 전기전자 제품, 가공식품, 관

광, 호텔, 요식업, 법률자문, 우편, 전화, 임차 등 5%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수입쿼터(Import Quota)

2003년부터 베트남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대상 품목은 무역부(MOT)와 기획 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선발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된다. 베트남 정부의 기본 무역정책방향은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석유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의 경우 수입쿼터를 통해 제한하거나 수입금지 등 조치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 대상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10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HS 코드	상품	쿼터
407009900	기타 가금류 알	34,000 Dozen
2401	미가공 담배, 담배 부산물(찌끼)	45,000 Tons
1701	설탕	61,000 Tons
2501	소금	250,000 Tons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용 재화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환급

원칙적으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출이 이루지는 제품의 양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환급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베트남 국내에서 구입한 원부자재에 수입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동 부분에 대한 관세환급이 쉽지 않다. 현지에서 연체된 세금이나 세금의 연체로 인한 벌금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최장 275일까지 수출용 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입원부자재에 대한 세금납부가 유예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수출용 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서면으로 등록하면 된다.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 이내에 수입된 모든 원부자재를 소진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275일 이내에 수입된 원부자재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된 수입관세와 더불어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을 넘겨서 원부자재의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과 수입관세를 내어야 하고,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물량에 소진된 원부자재의 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세

베트남은 일부 전략광물자원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세를 통하여 자국내 자원보존 및 국내수급 조절목적을 위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 목재, 고철, 석탄 등 1차 상품과 보석, 금 등의 수출시 최소 2%에서 최고 45%의 수출세를 부과한다. 과세기준은 FOB 수출가격기준이며 Steel Scrap의 경우 2%의 수출세를 적용하며, 원목의 경우 10%, Zinc 및 Lead 등의 자원의 경우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베트남 정부는 2007년 개인 소득세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최고세율은 40% 이며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5%의 단일 세율이다. 2009.1.1일부로 시행된 신규 소득세법에 따라 최고세율은 35%로 하향 조정되었다.

500만 동 이하: 5%
500만 동~1,000만 동 이하: 10%
1,000만 동 이상~1,800만 동 이하: 15%
1,800만 동 이상~3,200만 동 이하: 20%
3,200만 동 이상~5,200만 동 이하: 25%
5,200만 동 이상~8,000만 동 이하: 30%
8,000만 동 이상: 35%
(환율: 1달러=17,021vnd, 2009.11월 기준)

샘플, 광고 및 홍보물품에 대한 관세

베트남 관세법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타로그 포함)도 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면세가 되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판촉물과 팜플렛을 한국으로부터 공수 받아 사용 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달력이나 회사 다이어리 통관시에도 많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홍보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나 환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검역, 검사 및 통관절차

세관 검사제도

세관검사는 수입업자의 세관신고서와 수입물품 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적인 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 세관 서류 검사 면제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 면제(녹색선 구역)
- 세관 서류 검사 면제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황색선 구역)
- 세관 서류 검사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적색선 구역)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된 재화가 면세대상인 고정 자산 성격의 기계장치류이거나 또는 세관의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적색선 구역에서의 검사는 수입 재화에 대한 검사방식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뉘게 된다.

- 전수 검사 대상
- 무작위 10% 검사 대상
  -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계속

- 무작위 5% 검사 대상
  -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계속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또는 관련 자료나 세관원의 수색 또는 외국 기관 등으로부터 확보된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 후 5년 이내에 세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요건: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 표기언어: 베트남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재화의 라벨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해야 함.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내용에 추가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 옆 수입업체 라벨을 별도로 부착

- 베트남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 의 상호 및 주소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 제품의 원산지

안전요건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서가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

– STAMEQ(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수입규제품목

2006년 초 베트남 정부는 국제적인 재화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상법의 시행령을 발표하였고, 2006.5.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순수 베트남 자본의 회사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관련해서만 수출입이 허가 되었으나, 새로운 상법 시행령에서는 업종과 관계없는 자율적인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외국계 회사 또는 외국과의 합자형태인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어 투자허가와 연관된 부문에서만 기계장치 또는 원재료 등을 수입할 수 있다.

(1)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약, 산업용 폭약 군사장비
– 폭죽
–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
– 우측 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뷸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 번호가 조작된 차량
-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의 전구체 (Schedule I)

(2) 수입허가품목

베트남에서는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받음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표준

베트남은 약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000여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

제하고 있다. 수상령 50/2006/QD-TTg(2006.3.7)에서는 이러한 품목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의료장비
-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 바다양식 사료
- 수산물 및 해산물 즉석식품
- 수목을 위한 화학약품, 살충제
- 비료
- 동물진료 관련 용품
- 가축 사료
- 산업용 폭약, 고농축 질산암모늄
- 크레인, 기중기, 굴착기 등의 중장비(트랙터 및 오토바이의 완제품 또는 차체, 운반기 장착용 보일러, 고압 컨테이너를 포함)
- 시멘트, 석면 지붕판, PPB(압축 콘크리트), 바닥 및 지붕용 콘트리트 블록
-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장비 및 설비: 안전모, 분진마스크, 절연장갑/모자, 용접 고글, 고압컨테이너, 기중기, 권양기 보일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오토바이용 헬멧
- 철제 제품
- 전기선
- 가정용 전기제품
- 가솔린, 디젤 연료
- 유아용 완구(36개월 미만)

환경관련 규제

국회를 거쳐 2006.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입활동과 관련한 환경보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수입활동과 관련한 환경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장비, 폐기 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 폐품 수입에 대한 환경 보호 규정
–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재활용품은 오직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만 수입이 가능하고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되는 환경규정은 주로 유럽 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역사 유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 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철금속 공장(연간 10만 톤 이상)
– 가죽처리, 섬유 및 염색, 페인트(연간 1,000톤 이상), 고무가공(연간 1만 톤 이상), 설탕(연 10만 톤 이상), 식품가공(연 1천 톤 이상), 냉동공장, 화력발전소(200메가와트 이상), 펄프 및 제지(40만 톤), 시멘트, 공항, 부두, 철도, 고속도로, 수력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광물탐사, 벌채업, 양식업(200헥타 이상), 유독물질 생산, 저장 또는 사용업, 방사능 유출 공장, 쓰레기 재처리, 오염방지 및 공해 처리업 등

베트남 내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투자가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조달 및 입찰

국회를 거쳐 2006.4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 정부 출연자금이 총 프로젝트 예산의 30% 이상인 투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재화의 공급자, 자문 용역, 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의무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제 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기부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입찰의 경우

그러나 낙찰자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발주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물품 공급계약을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ODA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부국에서 관례적으로 현지에 진출한 자국 국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입찰을 요구하거나, 자국의 업체를 공식 납품업체로 지정하기 때문에 기부국의 국적을 가진 업체가 유리한 자격을 부여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은 ODA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도급 업체들 또한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2003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컨설턴트 선정 입찰의 경우 베트남 업체와 반드시 Partnership 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베트남 국내업체(베트남 업체 및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는 공사입찰의 경우 가격심사 시 7.5%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베트남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외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과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및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베른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6.7.1일 부로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발효시키는 등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트남의 법적 제도가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집행하는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다. 도심지 재래 시장내에는 각종 위조제품과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모조제품이 범람을 하고 있고, 유통되는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혹은 베트남산이다. 복제품 중에는 한국산 제품(자동차 부품, 의류, 직물, 인삼)을 모방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베트남에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이 마련되어 있고, 이들 기관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단, 문화정보부 산하 감찰단, 무역부 산하 시장관리 사무소, 공공관리부 산한 경제경찰, 재무부 산하 세관 및 인민법원 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간의 업무상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단체도 책임 있는 단속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에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투자장벽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 회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미만)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투자방식

- 직접투자 형식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적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및 인수합병

– 투자자는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 간접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有價證書)의 매입을 통해
  – 증권 투자 기금을 통해
  – 금융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 개인 혹은 단체의 지분, 주식,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간접투자 활동 진행 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한다.
  – 베트남 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Trade Bureau)이다.

-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어 본사와 달리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하며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45/2000/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 (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새로운 투자법 및 기업법에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1차 소집시 납입자본의 최소 75% 이상 보유 구성원
  * 2차 소집시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3차 소집시 수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 주식회사의 경우
  * 1차 소집시 의결주식의 65% 이상 보유 주주
  * 2차 소집시 의결주식의 51% 보유 주주
  * 3차 소집시 수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및 청산 의결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주주총회 시 주주의 75% 참석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의결

* 주주총회 시 주주의 65% 참석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구성원 협의회(MC: 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환급의 지연

베트남 수출입 세법(제11조 2항)에 의하면, 현지 투자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275일 동안 관세징수가 유예된다. 수입업자는 가공·수출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원자재 수입 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가공·수출한 경우에는 275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관은 환급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환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급지연에 따르는 이자 보상 등의 규정도 없다.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또는 관세유 예시 주의할 점은 면세 원자재를 수입하여 1차 가공한 후 현지 업체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로 판매한 경우이다. 해외의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받고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 현지 업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Local 수출로 간주하여 면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었다 해도 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

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져야 하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윤, 기술이전 및 서비스 공급 대가, 관리비,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사업의 종료 또는 해체 시 모든 부채를 청산한 후의 투자자본 회수,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 및 재산 등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2003년까지 존재하던 이익송금세는 2004.1.1일부터 폐지되었다. 분배수익을 재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는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4년부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동 재투자 시 환급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요건충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규정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국가가 외환관리를 독점하여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외국환을 집중 매각 예치할 의무가 있다.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단, 7,000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반출 반입 가능함).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Special Foreign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vings A/C: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3.10.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084/2003/QD-NHNN). 여신담

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처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화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 되고 있다.

(4) 관리환율제 채택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공정환율(official rate)에 은행 간 매매율 허용범위를 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동 공정환율을 기준으로 대고객 매도율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어 동 공정환율 +0.25%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달러의 만성 초과수요에 따라 과도한 환율인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매도 및 매입율 체계를 보면 한국에서처럼 전신환 매도매입율, 현찰 매도매입율, TC 매도매입율 등으로 다양화 되어있지 않고, 매도율의 경우 위에서 말한 상한선내에서 매도율만 있으며, 매입율의 경우 현찰매입율과 계좌인출에 의한 매입율로 단순화 되어 있다.

(5) 은행의 중앙은행앞 외화매입 요청시 제한(Sold position 요구 등)

수입대체상품 결제에 따른 경화 부족 시 중앙은행에 경화매입 요청이 가능하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6) 수입결제용 외환환전상의 애로

대외부채 상환, 과실송금 및 수입결제 시 필요한 외화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했으나, 동 규제를 완화하여 승인 없이 매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인가 시 경화 자체조달을 위해 수출의무 비율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7) 외환거래 규제 강화

국민 대다수가 미 달러화를 선호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집중관리 하에서도 시중에서 달러거래가 통용되고 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화대출에 대한 거래 제한에 나서 대외수입대금 결재, 수출목적의 신규투자 용도, 기존 달러화대출의 만기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한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8)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4월 폐지되었다.

경쟁정책

베트남 국내업자가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어 외국 무역업자는 베트남업자를 통해서만 제품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생산품의 경우에는 직접판매가 가능하다. 2004.11월 베트남 국회에서 경쟁법이 통과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자세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으나 세부시행세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상의 애로

베트남 상사 주재원 투자기업 직원 등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경우와 같이 6개월(책임자는 1년) 기간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 잦은 비자 연장에 따른 애로가 많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다한 국영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 시에는 가급

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건이나 의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브루나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브루나이는 식료품, 의류, 비알콜음료 등 생필품이 무관세이고 사치품을 제외한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화장품, 가구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도 5% 이하의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기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2008.1.1일부터는 그간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에 관계없이 20%가 부과되던 수입관세(import tax)가 폐지되는 대신 동률의 국내세(excise tax)가 신설되었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 수입과 관련된 추징금은 없다. 수출 수량 제한 및 수입 쿼터제도는 없으며, 수출이행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알콜류, 담배, 석유, 등유 등에 대해서는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아편, 헤로인, 모핀 등의 마약류와 LSD, DET, DMT, DOM 등과 같은 향정신성 물질, 멸종동식물 보호조약상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이 금지된다. 독극물이 함유된 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보건부의 수입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별수입 허가 대상 품목

품 목	인가 발급부처
동·식물	산업자원부 농업국
비할랄 육류, 가금류	산업자원부 농업국
무기류, 폭발물	경찰청
주류	세관
출판물	경찰청, 종교부, 보안국(ISD)

품 목	인가 발급부처
목재 및 목재 제품	산림국
쌀, 설탕, 소금	재경부 정보기술 및 국가비축국
5년이상된 중고차량(오토바이, 미니버스, 트랙터 등 포함)	교통통신부 도로운송국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신장비	통신부 전기통신부
브루나이에서 제작 및 발견된 고미술품, 문화재	문화청소년체육부 박물관 관리국

자료출처: 브루나이 세관

통관절차상 장벽 및 원산지 규정

통신장비 및 군사용품의 경우, 특별 수출입 인가증이 필요하고 음식물의 경우, 보건증명서 및 할랄음식(특별한 이슬람 의식을 하고 도살한 축산음식) 증명서가 요구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검역, 검사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다.

원산지 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국 및 무역개발국(IRTD)에서 주관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청하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을 검사, 확인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 결과가 따른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브루나이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원유 및 액화천연 가스(LNG)의 수출비중은 2008년도 전체수출의 98%를 차지한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별도로 없으며, '산업개발에 의한 공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환경규제에 관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건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브루나이 저작권령 1999(Copyright Order 1999)'에 따라 음악 및 영화,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문학·예술 작품, 출판물 등에 관한 저작권이 보호되며, 동 권리 침해 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당국에 의한 단속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DVD와 CD 등의 해적판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다.

상표는 상표등록법(Trade Marks Act)과 상표등록규칙(Trade Marks Rules)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 신청시점(filing date)부터 보호가 개시되며 등록이 되면 최초 10년간 유효하고 갱신료를 지불하면 매 10년마다 연장될 수 있다.

특허권의 경우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은 브루나이 발명법(Invention Act)에 의거, 동 특허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브루나이 국내에서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브루나이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에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산자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별 조달소위

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규모가 150,000브불 이상인 조달사업을, 부처별 조달소위원회는 150,000브불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조달절차는 주1회 발간되는 관보 Pelita Brunei 및 일간 영자지 Borneo Bulletin에 입찰 조건, 규격, 참가자격 등이 공고되며,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입찰관련 서류는 문서 또는 CD 형태로 입찰자에게 배포되며,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참가한다.

조달위원회는 입찰서 평가 시 입찰자의 상품 및 서비스가 규격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가장 중시하며, 입찰자의 신용 및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한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자는 입찰서류 또는 CD 구입 시 일정액의 신청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케이스별로 상이하나, 낙찰자는 계약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조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투자 장벽

브루나이 정부는 경제개발 증진을 위한 외국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왕 직속으로 2001년 설립된 「브루나이경제개발청」(BEDB: Brunei Economic Development Board)이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브루나이 투자장려법(Law of Brunei Chapter 97/Investment Incentives)에서는 국내외 투자가의 투자 장려를 표방하고 있으며, 동법 35조는 투자이익 및 배당금의 송금에 대한 제한 비설정, 자본이득세의 비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기업, 특히 건자재, 의약품, 산업화학, 철강, 조선 등 소위 'pioneer 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투자금액에 따라 5년에서 8년간

법인세 면제(최대 11년까지 연장 가능), 공장설립을 위한 물품 반입시 관세면제, 공장부지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혜택을 준다.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local resource) 및 국가 식품안전에 관계되는 분야(national food security)는 49%까지의 자본 투자만 허용한다. 사무소 설치 및 영업활동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주재국 국민 고용 의무 등 회사법규상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나 산업용 목적이나 농업, 임업, 양식 등의 목적으로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은 용이(이자율은 8~9%)한 편이며, 브루나이 비거주자 또한 브루나이 은행의 구좌 개설 및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브루나이에는 외국계 은행 6개가 진출해 있다.

환율은 싱가포르 달러와 1:1 고정환율로 상호 유통되고, 미국 달러 등 기타 환율은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브루나이의 독자적 환율정책은 없다.

세제상의 제한

브루나이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판매세 등이 없으며, 아세안 지역내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법인세, 인지세, 석유세, 이자세(20%), 수입관세 등이 존재하며,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은 없다. 법인세는 현재 23.5%이나 브루나이 정부는 2011년 이를 22%로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브루나이·영국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영연방국가와의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회사의 법인세를 일부 공제해 주고 있다.

기타 장벽

우리나라와 브루나이 간에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양국 간에는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30일 동안은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브루나이의 고용·노동정책은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일반기업취업인구 대비 70%에 달한다. 다만 회계사를 포함한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브루나이 국적자의 고용을 우선하고 있다. 현재 브루나이에는 Brunei Shell 1개사에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존재할 뿐 노동조합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브루나이 국적을 가지지 않은 모든 노동자는 고용인가(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한다. 고용인가를 신청하는 노동자들은 우선 노동허가증(labor licence)을 노동국에 신청해야 하고, 노동국의 권고에 따라 이민국에서 고용인가를 발급한다. 노동국은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편도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탁(cash deposits) 또는 은행 보증(bank guarantees)할 것을 요구한다. 승인된 노동허가는 발급시부터 최소 6개월간은 변경될 수 없다. 노동허가는 해당 현지회사 또는 외국회사 지사가 설립·등록되기 전까지는 발급되지 않는다.

상용 비자발급, 체류조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브루나이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된다.

스리랑카

수입정책상의 장벽

1978년 경제자유화 조치에 따라 스리랑카는 무역관리를 수입규제방식에서 관세율에 의한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이후 관세단순화, 비관세장벽 제거 및 Negative System의 수입관리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2009.11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경제자유도는 111위를 기록하였으며, 부탄(100위), 파키스탄(102위), 인도(123위), 네팔(133위), 몰디브(143위) 등 남아시아 국가들중 중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세 장벽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었으나 2003.1.1일부터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세율과 FTA 협정국(인도, 파키스탄)과 SAARC 회원국, 아태무역협정(APTA)에 대한 특별세율로 분류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상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장벽은 없다.

기본관세율은 2002.11월 다수 밴드 체계로 전환한 이후 2010.9월 현재 0%, 2.5%, 6%, 15%, 28%의 관세율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기초원자재 2.5%, 반가공 원자재 6%, 중간재 15%,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품, 소비재, 화학, 국내제조가능 중간재에는 2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2개 상품부류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되고 있고 일정조건 하의 수출용 수입품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스리랑카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의류산업 육성을 위해 직물에 대해서는 1997.11월 이후 무관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스리랑카는 2001.2월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주요 수입 품목의 관세에 부가된 Surcharge는 15%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진흥세(CESS) 및 Exercise Duty, SCL(Special Commodity Levy)을 부과하고 있다. 그밖에 부가가치세(VAT 12%), 항만 및 공항 항만 개발세(PAL, 5%), SRL(Social Responsibility Levy, 1.5%), NBT(Nation Building Tax, 3%–2009.5.1일부)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Excise Duty)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 오븐, 쿡커, 헤어드라이어 및 헤어드레싱 품목, 휴대폰, TV 등에 대해 15%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VAT)는 2009.1.1일부로 품목에 상관없이 12% 세율을 적용한다.

항만 및 공항개발세(Ports and Airports Development Levy: PAL)는 2002년 금융법(Finance Act No. 11 of 2002)에 의거하여 징수되고 있는데 가공 및 재수출용 수입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5%를 부과하고 있다. 단, 스리랑카 국적의 배로 입항할 때는 2008.1.1일부로 PAL은 면제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다만, 과거에는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이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One Stop Service의 일환으로 통관업무도 담당하여 BOI 외국인 투자업체의 경우 통관에 많은 편의를 제공 받았으나, 1999.7월 밀수방지 등을 이유로 통관업무가 세관으로 환원됨에 따라 통관과 관세 적용 관련 불편 및 애로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2010.10월 현재 BOI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관편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4.4월 국회의원 총선거 및 2005.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통일인민자유연합(UPFA) 정부는 시장경제중심 보다는 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과 국내산업 육성에 대한 배려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자로 재정수입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주류, 고가 소형 사치품의

밀수방지와 불성실 신고에 따른 세수 누수방지를 위해 통관 화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산지 규정

스리랑카는 對EU 수출품에 GSP+수혜국으로 對EU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은 원자재가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원산지 (Country of Origin)의 범위를 SAARC 동맹국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요청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대 EU 무역특혜관세는 2010. 8.15일부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이의 재개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EU와 협상 중에 있다)

스리랑카·인도 자유무역협정 (ISFTA)에 의한 수출품의 경우 인도 세관은 스리랑카의 상무부(Dept.of Commerce)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출자는 제품의 스리랑카내 부가가치율이 FOB의 35%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 단, 원자재를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할 경우 25% 이상의 부가가치율만 입증하면 된다.

ISFTA를 통하지 않은 對인도 수출의 경우(Non-Preferential Trade) 통상적으로 The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NCCS) 또는 Ceylon Chamber of Commerce of Sri Lanka (CCCS)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최근 (2007.9월 말) 일부 품목에 관하여 인도정부의 일부 품목(절전형 형광등)에 대한 'Anti-dumping' 조치 발효 소문 이후 NCCS는 해당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지하고 있으나 CCCS는 계속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스리랑카·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PSFTA)에 의한 수출품의 경우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출자는 제품의 스리랑카 내 부가가치율이 FOB의 35%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하며, 원자재를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할 경우 25% 이상의 부가가치율만 입증하면 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할 경우에 필요한 스리랑카 원산지증명 사증(visa)의 기간제한이 애로가

되고 있다. 실례로 한국 투자진출 기업이 스리랑카에서 제조한 직물을 한국에서 가공한 후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최초 스리랑카 선적일로부터 최종수출을 위한 재 선적일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사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對미국 수출에 시간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에 대한 규제는 보건, 국가안보, 환경 및 위생 등에 관한 이유에 한정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입규제제도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① 보건, 안전, 국가안보, 환경 및 공중도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상품수입의 금지, ② 국가안보, 건강, 환경 및 공중도덕상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입허가제, ③ 상품 및 체제의 건강 및 안전성을 인정하기 위한 표준 및 기술상의 규제, ④ 질병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 및 동물검역 등이다. 국가안보,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입허가제는 '특별허가제(Special Licensing Scheme; SIL)'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곡물, 화학제품, 석유 및 자동차 등과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중고제품 수입의 사용 년 수 제한을 중고 건설기계류는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고 자동차는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스리랑카는 일부 물품(생피 등)에 관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 실시되는 선적 전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품에 있어 이런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시 이로 인한 애로는 없다.

아울러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해당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품목이 수입관리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입라이센스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구 분	주요 대상품목
Drugs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Ayurvedic drugs, Homoeopathic drugs, Chinese Herbal, Surgical Equipment etc.
Vehicles & Parts	Heavy vehicles, Ambulance, Hearses, Garbage Truck, Fire brigade Truck, For Donation, For Embassy office, 일부 자동차부품 등
Chemicals, Animal Products, Agro Products	Petroleum, Gas, Cereals etc
Telecommunication	Telecom products, Used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etc
기타	폭발물, 무기, 게임기, 전자장난감, 담배종이, 코인/메달, 중고가구, Sludge Oil 등

출처 :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보다 세부품목은 www.imexport.gov.lk → Services 참조)

수입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해당품목 관할부서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들면, 약품/의료기기 수입의 경우 보건부(Ministry of Health)내 약품 및 화장 장치위원회(CDDA– Cosmetic and Drugs Devices Authority)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유사하게 무기류 및 탄약은 국방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리랑카는 WTO에 수입쿼터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2009년 기준 수입쿼터품목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없으나, 최근 인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덤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업계에서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 정부는 그동안 HS 8단위기준 총 150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시행하여 오다가 2006.6월부터 18개 품목군을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추가하였다.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추가된 품목군은 포틀랜드 석회석 시멘트, 혼합 수성시멘트, 건물 내 토양 및 폐기물 방출용 PVC–U 파이프,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타이어, 위생용 타월, 우산, 루핑 타일, 세라믹 타일, 시멘트 타일, 도자기, 아연 도금 강파이프 및 피팅, 체인링크펜스직물, 안정기부착 램프, 자동차 서스펜션용 리프 스피

링, 라디에이터 코어, 자동차용 케이블, 절연물로 제조된 케이블 트렁킹 등 이다. 수입검사는 대상품목 수입품에 대해 품질 및 스리랑카 표준과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해당 수입품 수출국의 품질인증서, 수입품 제조업체의 신뢰성 및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스리랑카 표준원(SLSI–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은 1984. ACT NO6에 의거하여 스리랑카 표준마크의 심사접수, 심사, 승인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SLSI는 ISO회원이기 때문에 ISO기준에 부응하도록 스리랑카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표준의 종류는 총 1,250여개가 있으며 심사 및 승인비용은 거의 무료이나 SLS마크를 받으면 매년 판매규모에 비례하여 SLS MARK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규제당국이 법률로 표준을 정했을 경우 이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제적이며 이들 강제 표준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보호국, 식품국, 수입/수출 통제기관, 자동차 등록부, 살충체 등록소 등이 정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증제도는 스리랑카 부합성 평가를 위한 스리랑카 인증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증 위원회(Sri Lanka Accreditation Board)는 스리랑카 국가인증 기관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는데 근거법은 Act 32 0f 2005이며 주요 수행업무는 부합성 평가에 관계된 검사시험소, 의료실험실의 인증, 검사, 공인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 검사 제도에 관한 기술규정은 관보(Gazette Extraordinary 1203/29, September 28, 2001)을 참고하면 된다. 동식물, 씨앗, 생피 등의 수입은 특별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출국의 검역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입 전 수입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데, 수입허가서에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 방법 (인증서)를 명시해 준다.

SLS MARK 이외에 SLSI에서는 ISO 9001, ISO 14001, HACCP (SLS 1266/ISO22000), GMP, OHSAS 18001, SA8000를 심사 및 인증한다.

- ISO 9001
  – 국제 ISO 9001기준에 따라 심사 및 인증을 부여

– 사전인증 수수료 약 200달러, 연간 등록 수수료 약 800달러

- ISO14001
  – 12개 품목군이 대상이며 국제 ISO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인증을 부여
  – 사전인증 수수료 약 500달러, 연간 등록 수수료 약 900달러

-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Certification
  – HACCP 국제기준에 따라 심사 및 인증을 부여
  – 사전인증 수수료는 감사 일자에 따라 다르며 1,000달러 이상 소요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식품산업에서 사용하는 스리랑카 자체 인증제로 식품의 생산과 관련된 위생, 교육, 폐기물 처리 등 총 10여개 이상 분야를 모니터링 하여 인증

- OHSAS 180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 피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심사 및 인증

- SA8000– Social Accountability
  –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국제인권선언 및 UN아동권리 협약에 의거하여 심사 및 인증

- EEL– Energy Efficiency Labelling
  – 에너지 절약 용품(전구 등)에 대한 인증

- Sri Lanka National Quality Award Symbol
  – 이 상을 수상한 회사는 로고를 수상 일시를 기준으로 5년간 부착 사용가능

환경관련 규제

스리랑카는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중의 하나여서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다. 또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보호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2008년에 제정된 환경보호 규정에 의거 중앙환경국(CEA)에서 발행하는 환경보호 라이선스(EPL)을 영업활동 1개월 전에 득하여야 하고, 라이선스는 업종에 따라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또한 라이선스를 득한 후에도 폐기물처리 관리현황에 관한 라이선스를 중앙환경국으로 부터 득해야한다.

2008.8.1일부로 발효된 '환경보호세'(Environment Conservation Levy)는 40W이상의 램프를 수입 또는 제조할 때 개당 3루피의 환경보호세를 부과하나 '절전형 형광등'에 대하여는 면제를 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스리랑카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다.

수출의 경우에는 산호제품, 흑단 등의 목제품, 상아 및 상아제품, 1945년 이전 생산된 자동차 등 6개 분야 품목이 환경보호 및 골동품 보호를 목적으로 수출금지 또는 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입의 경우에는 종교,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해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으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품목에 대한 특별한 수입 장벽은 없다. 다만, 스리랑카 법령에 의해 좌측핸들 자동차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스리랑카 수출지원 기관인 수출진흥청(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은 수입품에 부과한 수입부과금(CESS) 재원으로 차, 코코넛 등 주종 수출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

정부조달 부문에 있어서 외국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의 특별한 제약은 없다.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및 국영기업도 입찰을 통해 소요물품 및 기자재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조달 품목이 전체 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선진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부조달부문에의 참여가 제약요인이라기 보다는 효과적인 스리랑카 진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입찰에 참여한 외국기업간의 경쟁과 관련한 입찰절차의 투명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스리랑카는 현지 에이전트나 고위관리의 영향력에 의해 낙찰이 좌우되거나 특정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등의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정부조달 상 자국기업에 대해 가격우대를 하고 있는데, 국내제조물품의 경우 수입물품에 비해 20% 가격우대(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최소 30% 국내 부가가치 조건), 공사계약은 스리랑카 기업(스리랑카인 지분이 50% 이상)에 7.5% 가격우대를 하고 있다.

2003.4.23일 스리랑카는 WTO 정부조달협정 옵저버로 가입하였으나, 동 협정의 당사국은 아니며, 2004.3월 WTO 무역정책 검토회의 시 한국, 홍콩 및 EU등은 스리랑카 정부조달부문에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2009.10.12일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7차 미국·스리랑카 무역투자기본협정 하의 양국위원회(bilateral Council meeting under the US-Sri Lank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에서도 미국 측은 스리랑카 정부조달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등 기타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의 체약국으로 2003.11.12일부 시행령 제 36호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련의 상세규정을 구현화하였다. 아울러 WIPO 및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회원국임에 따라 동 국제협약의 보호를 받는다.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 상표권, 발명특허, 공업의장,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권리(예: IC설계, 미공개 무역정보 등)의 관리 및 시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리랑카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스리랑카는 2008년 소프트웨어 해적판 비율이 방글라데시의 92%에 이어 90%를 기록하여 세계 제2위를 기록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을 정도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서구 바이어들의 고발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수출용 브랜드 상품의 불법 국내 유통에 대한 단속이 종종 실시되고 있으며, 2009.10.12일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7차 미국·스리랑카 무역투자기본협정 하의 양국위원회에서도 미국 측은 스리랑카 정부에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 장벽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장벽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헌법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여, 외국과 체결한 쌍무투자협정은 투자보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157조에 명시하고 있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법규,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수입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및 외환송금 자유 보장 등 상당한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04.4월 출범한 UPFA 정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선별 유치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100% 단독투자 보다는 내국인과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업종은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투자 제한 업종

-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다음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 금융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백만 달러 미만의 소매업, 연안어업
- 자동승인 또는 조건부승인 업종: 다음 업종은 외국인 투자지분이 40% 미만인 경우 자동승인, 외국인 투자 지분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투자청(BOI)의 건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 쿼터 대상 품목의 생산, 차, 고무, 코코넛, 쌀, 설탕 및 향료의 재배 및 1차 가공업, 광산 및 재생불능의 스리랑카 천연자원의 초기 가공산업, 현지 목재를 사용하는 목재산업, 심해어업, 대중매체/언론, 교육운송대리업, 여행업, 해운업
- 규제업종: 다음 업종은 정부 관계 부처의 승인을 요한다.
  - 항공운송업, 연안 해운업, 무기, 탄약, 폭발물, 군용자동차, 항공기 및 기타 군수물자 제조업, 독극물, 알코올, 극약 및 유해물질 제조업, 화폐, 동전, 증권 제조업, 대규모 보석 채굴업, 복권업

지사 및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 및 사무소 설치등과 관련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수입·국내판매 업무를 위한 무역회사 설립 시 최소 투자금액은 미화 100만 불이어야 한다.

국산화 의무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자청(BOI)과의 투자계약서상에 주요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므로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자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세관의 통관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여 계약서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의 수입 시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벌과금을 부과하여 해당업체의 애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대상국으로부터의 원산지 규정상 부가가치율 적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기도 하다.

수출의무

투자청과의 투자계약 시 규제방법이 아닌 인센티브(신속한 투자 인허가 및 조세감면 등) 제공 방법을 통해 수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다.

투자청에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수출해야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섬유업체가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는 매출액 중 수출 비율이 80%이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외국인 혹은 외국 지분이 30% 이상인 외국기업의 토지 취득을 권장치 않으며 토지를 취득할 경우 원금 이외에 100%의 양도세를 추가 징수 한다. 단, 1) 100채 이상의 주택 혹은 콘도미니엄 건축 2) 최소 투자액이 미화 1천만 불인 호텔 혹은 병원 건축 3) 최소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불이며 스리랑카 재무무가 인정하기에 스리랑카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인프라 건설 4) 최소 투자액이 미화 1백만 불인 제조업 5) 콘도미니엄 5층 이상의 부동산 매입 경우는 제외이다.

토지 장기 임대(보통 30년)의 경우, 은행은 임대 증서를 모기지로 인정한다.

경쟁정책

스리랑카 국내 사업자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나 유통망 독점 등에 따른 폐단은 없다. 다만, 사업 부문별로 일정기간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별 목적이기보다는 투자유치 차원의 조치이다.

기타 장벽

노동부문 관련사항

노동부문은 스리랑카 투자진출 상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저렴한 노동이 스리랑카 진출의 가장 큰 매력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력이 되어 온 스리랑카의 노동부문이 기 투자 진출한 업체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 경쟁여건의 변화에 따라 진출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 관점에서의 스리랑카 노동부문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노동자 해고 기준의

완화 및 정리해고 시 보상수준의 합리적 조정, 노동쟁의 과정의 합리화, 노조구성요건의 강화 및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율화의 법제화 필요성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심판소(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최종 판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인력의 잉여 상태에서도 정리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 시 동료들 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 및 소송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로 신축적인 노무관리는 쉽지 않다. 한국인의 온정주의적 노무관리를 벗어나 징계 사유(예로 비행, 사기, 준법질서 준수 거부)가 있을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를 하고, 시말서나 경고서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향후 노무관계 발생 대비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고절차도 비교적 복잡하다.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 1차경고 (Warning) → 2차경고 (Show Cause) → 내부조사 (Domestic Inquiry) → 최종징계 (Final Action)의 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부는 2006년 아래와 같은 Termination Formula을 고시 하였으며, 이 Formula는 실재적으로 실행 중에 있다.

해고시점까지의 근무 년수 (12개월을 채운 년수)	매 근무연수에 적용되는 월급 개월수	최고 보상선
1~5년	2.5	12.5개월급
6~14년	2.0	30.5개월급
15~19년	1.5	38.0개월급
20~24년	1.0	43.0개월급
25~34년	0.5	48.0개월급

최고 보상 금액: Rs.1,250,000.–
월급 = living allowance, 기타 allowance가 포함된 기본급
년 = 12개월을 만료한 기간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 관련 사항

과거 몇몇 대규모 한국 업체들의 무책임한 금융 행위로 은행가에서의 전반적인 한국 업체들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저조하다. 이로 인하여 한국 업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은행들의 대우는 냉담하며 담보가 없는 금융대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스리랑카 루피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2004년 101.5, 2005년 100.5, 2006년 103.96, 2007년 110.62, 2008년 108.33으로 전반적으로 루피화의 약세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2009년 들어 외환부족에 대한 우려로 한때 120을 넘기도 하였으나, 26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 승인으로 2009.11월 달러당 약 114루피를 기록하였고, 2010.9월 IMF의 5번째 분할차관의 지급으로 달러당 환율이 112루피로 2008년 이후로 루피화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출시 루피 대출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적도의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동,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전략을 통해 동남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6.3.2 한·싱 FTA 발효이후 매년 20%이상 확대되어 왔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대비 12.8% 감소한 US$215억(對싱 수출 US$136억, 수입 US$84억)을 기록하였다. 2010년의 경우 글로벌 수요회복과 더불어 對싱 수출이 1~8월 누계기준으로 15.7% 증가하였으며, 총교역액도 7.4%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5대 교역상대국(수출 5위, 수입 12위)으로 2008년 7위에서 두단계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의 7대 교역상대국(수출 6위, 수입 6위)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등 상호간에 교역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과 20개의 FTA를 체결(ASEAN 일원으로 체결한 6개 포함)하였으며, 최근 캐나다, 멕시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EU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목중 아래와 같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0	Stout or porter	S$16.00 / litre of alcohol	S$48.00 / litre of alcohol
22030090	Other beer including ale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 litre of alcohol	S$70.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2개 품목), 담배(28개), 유류(6개), 자동차(100개) 등 4개 품목군, 186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이 되는 세부 리스트 및 각 품목별 세율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부과금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세율은 1994.4.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07.7.1일부터 7%가 적용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서류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

한·싱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한·싱 FTA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싱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기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싱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안전·보건 목적의 수입금지 품목〉

- 껌(단, 의료용 껌은 치료용도에 한하여 수입 가능)
- 권총모양의 라이터
- 폭죽(firecrackers)
- 40mm이하의 화산암 골재(volcanic rock aggregates)
- 금지약물(amidopyrine, noramidopyrine, amygdalin, danthron, pangamic acid, suprofen 등)
- 금지물질이 포함된 화장품
- 중남미산/아프리카산 고무, 코코아, 코코넛
- 890~915Mhz 주파수를 쓰는 무선전화기, 감시카메라 (일반휴대폰 대역과 겹치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음)

〈환경보호 목적의 수입금지 품목〉

- 3년 이상 된 중고차
- 석면
-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Aldrin, Chlordane, Dieldrin, DDT, Hexachlorobenzene, Endrin, Heptachlor, Mirex, PCB, Toxaphene 등
- 할론(halon) 등 오존층 파괴물질
-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등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등 일부 품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허가 대상 제품과 관계당국은 아래와 같다.(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정보포탈인 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함)

수입허가 대상품목	관계당국
Animals, birds and their by-products Endangered species of wildlife and their by-products Meat and meat products Fish and seafood products Fruits and vegetables	농축산검역청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Website: http://www.ava.gov.sg
Arms and explosives Bullet-proof clothing Toy guns, pistols and revolvers Weapons, kris, spears and swords	경찰청 (Singapore Police Force) Website: http://www.spf.gov.sg
Films, video and video games Publications and audio records	미디어개발청 (Media Development Authority) Website: http://www.mda.gov.sg
Pharmaceuticals Medicines Poisons	보건과학청 (Health Sciences Authority) Website: http://www.hsa.gov.sg
Telecommunication and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Toy walkie-talkies	정보통신개발청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Website: http://www.ida.gov.sg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에 해당되는 SPRING Singapore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47개 품목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육류 및 조류는 수출국에서 나고 자라야 하며, 수출국의 검사를 필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미국 내 광우병(BSE) 발병을 계기로 2003.12.24일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2006.2.20일부터는 뼈와 SRM이 제거된,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공기, 수질, 소음, 오염 및 위험물질 규제 관련 법률을 1999.1월 폐기하고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1) 계

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품목별 장벽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을 관리,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무역정보포탈 사이트인 www.tradexchange. 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않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

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의 경우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견적서 입찰(3천~7만 싱달러)이나 입찰(7만 싱달러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건은 정부조달 포탈(Gebiz)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도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구분	기준	구매방식
소액구매	≤S$3,000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
Quotations	S$3,000〈 ≤S$70,000	구매건을 Gebiz에 공지 Gebiz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Tenders	S$70,000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2월 회원국 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집약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patent)의 경우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을 할 경우 20년간 보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심사가 불합리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상표법에 의해 IPOS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나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 등과 그 출판물, 음반, 영화, TV 및 라디오 영상물, 케이블 방송물,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출판연도로부터 25년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물은 방송연도로부터 50년간,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은 저자사후 70년간, 음반, 영화는 발매 또는 상영연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2000.11.13일 발효된 등록의장법(Registered Designs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최대 15년간 보호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999.2.15일 IC디자인법(The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IC디자인 개발 후 5년 내에 상업화될 경우 10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15년간 보호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한·싱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장벽

한·싱 FTA 제9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을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가능)를 하고 있다.

투자 장벽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된 투자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싱 FTA 제10장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의무부과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1) 제조업

6개 제조업종(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진출에 대해서는 제조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2) 방송 서비스

싱가포르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신문 등은 외국기업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싱가포르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개인 소유지분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제도적으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지분소유도 가능), 사실상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유일의 방송사인 MediaCorp사의 지분 중 80%는 테마섹이 소유하고 있다.

⑶ 법률 서비스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하거나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만 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합작의 경우 단순합작이냐, 공식제휴냐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합작(Joint ventures)의 경우, 은행, 금융, 기업업무 등과 관련된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찰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며, 소송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제휴(Formal alliance)의 경우, 일국 또는 하나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싱가포르 법률과 관련된 법적의견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싱가포르 변호인만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변호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중재(arbitration)인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⑷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회장 및 이사회 3분의 2는 싱가포르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 전문가(Land surveyor)이어야 한다. 외국회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현지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건축사여야 하고 유효한 개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개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회 또는 건축사 협회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에 유효한 개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회계 서비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은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회계사무소와 회계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2/3이상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회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투표권의 2/3이상을 싱가포르 공인회계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S$25만 이하의 비은행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달러 업무에 제한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7)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GLCs: government-linked companies)에 대해 지분제한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PSA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구분없이 개인소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PSA와 Singapore Airlines는 5%,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은 15%, 에너지 회사인 Singapore Power, SP Power Grid, SP Services, 그리고 Power Gas는 10%의 개인소유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공히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은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cra.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층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공터 및 토지부 주택(landed property) 매입시에는 법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가기준은 영주권 유무,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개별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6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미개발상태 또는 부분개발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 지가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세제상의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세정책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회사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단일 세율로 20%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18%로 인하되었고 2010년부터는 17%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은 없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환율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없다.

경쟁정책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 별도의 독과점제한법을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해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2004년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1월에는 정부조직으로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를 설립하여 경쟁정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담합, 입찰공모, 시장분리 등 경쟁을 제한, 금지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둘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재국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주행시험 없이 싱가포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1년 미만 체류자의 경우 외국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제면허증 또는 공식 영어 번역본을 사용해야 하며, 1년 이상 체류코자 하는 자는 싱가포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수 및 자산규모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2010.9월 말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

인 은행은 국내은행 7개, 외국은행 113개로 총 120개에 이르며, 이밖에도 머천트뱅크 46개, 보험회사 155개, 보험브로커 64개, 증권회사 97개, 선물거래사 48개, 펀드메니지먼트사 115개 등이 영업 중에 있다.

2009년 말 싱가포르 내 전체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2조1,314억 싱달러 내외에 달한다. Asian Currency Units의 자산이 57.2%를 차지하고, 국내은행(머천트뱅크 포함)의 자산이 36.7%, 보험회사 5.5%, 금융회사(Finance Company)가 0.5%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말 은행부문의 총자산은 7,068억 싱달러로 전년 말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대출금 총액(은행 간 대출 제외)은 2,813억 싱달러로 기업대출이 1,534억 싱달러(전체 대출의 54.5%)에 이르는데, 제조업 대출은 3.7%에 불과한 반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4%로 높은 편이다. 소비자대출의 경우 1,279억 싱달러로 전체 대출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 및 연계대출이 32.5%를 차지하고 자동차대출 등 기타개인대출이 13.0%를 차지하고 있다.

Asian Currency Units

ACU의 총자산은 2009년 말 8,694억 달러로 전년말의 9,129억 달러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비은행 대출은 2,196억 달러로 전 년말대비 3.9% 증가하였으나, 은행 간 대출은 4,607억 달러로 전 년말대비 7.6% 감소하였다.

자산 관리업(Asset & Wealth Management)

싱가포르에 영업근거를 둔 금융기관들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총 규모는 2009년 말 12,080억 싱달러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던 2008년 말 8,640억 싱달러에 비해 39.8%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던 2007년의 11,730억 싱달러를 초과한 것으로서 지난 5년간 연평균 19% 성장한 것이다.

운용자산의 80% 이상은 해외로부터 투자되었는데, 이는 역내투자 및 국제투자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9년 중 주식시장의 강한 회복세에 힘입어 2008년 중 43% 수준이었던 싱가포르 자산운용사들의 주식투자 비중이 2009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자산관리업체들이 헤지펀드, 사모사채, 부동산 투자 등으로 꾸준히 다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07.7.1일부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5%에서 7%로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하였다.

인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수입장벽을 낮춰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 2009/10 회계연도 세수(revenue)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는 2004년 20%에서 2005년 15%, 2006년 12.5%로 다시 2007년에는 10%로 지속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한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MFN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5년 19.2%(농산품 37.6%, 비농산품 16.4%)에서 2007년 14.5%(농산품 34.4%, 비농산품 11.5%), 2009년 12.9%(농산품 31.8%, 비농산품 10.1%)로 낮아졌다.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제조세(Excise Duty, 최종제품 제조시 사용 원자재·부품에 대한 납부분은 환급 가능하며 통상 14%)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교육세(Educational Tax)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총관세율은 상당이 높아진다.

전형적인 공산품의 경우 기본관세는 10%이지만 교육세 3%, 부가관세 14%, 특별부가관세 4%가 합해지면 총관세율은 31.703%에 달한다. 다만, 인도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요 제품의 제조세율(Excise Duty)를 2008.12월 10%로, 2009.2월 추가로 8%로 인하하였다가 2010년 10%로 재 인상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7.6월 인도의 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부과가 총관세율을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어 WTO 의무위반이라며 인도를 WTO 분쟁해결팬널(DSP: Dispute Settlement Panel)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부가관세는 알코올 음료(alcoholic beverage)에 대해서만, 특별부가관세는 공산품/농산품의 예를 인용하였다. 2008.2월 DSP는 부가관세가 동종 국내생산 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보정하는 WTO 합치제도라는 인도측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8.8월 DSP 결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WTO Appellate Body)에 항소한 바, WTO 상소기구는 2008.10월 DSP 결정을 뒤집고 미국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WTO 상소기구는 판결에서 내국세를 보상하기 위한 수입부담금이라도 그 부담정도가 동종제품의 내국세 부담을 넘어선다면 WTO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10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5~6일이 소요되며,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처리일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일례로 인도정부의 우리 광섬유(optical fiber)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되었다가 2004.12월 종료된 바 있는데 2005.10월에도 한 인도 지방세관은 연방 재무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

당 우리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공부 반덤핑위원회 및 인도 재무부와 협의,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재무부의 서한을 발급받았으나 우리 업체는 동 서한 발급 시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될 것이다.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이고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2000.12월에 714개 품목, 2002.2월에 715개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

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총 596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419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는 1995~2008년간 총 45건의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34건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2009.10월 SBR, 나일론필라멘트사,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스터사, PS Plates, PVC, 페놀, 아세톤, 과산화수소, 합성고무(PX3, 6PPD), CD-R, CRT, NBR, 아크릴단섬유, 시안화나트륨, 가성소다, 수황화나트륨, 탄산칼륨, 고분자판재폴리올 등 19개 품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인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2개 품목은 조사 중이다. 인도정부는 2008. 5월 녹말류(Starch)에 대한 긴급수입관세를 해제함으로써 2008년 중반까지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이 없었으나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로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자 세이프가드 조사를 적극 활용하였다.

2010.4월 말 세이프가드 조사 우리나라 관련 품목은 4개 품목이며, 이중 옥소알코올, 파티클보드, 아크릴 섬유 등 3개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철회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인도 정부는 분유, 용기식수, 일부 전기설비, 일부 철강제 등 85개 품목에 대해서 인도품질규격(Indian Quality Standard)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제조설비를 사전에 인도표준청의 검사/승인을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련 규정이 국내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도에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2006"에 따르면, 환경오염 관련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부(MOEF)나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 획득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환경부, B범주의 산업은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의 획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예: 광산업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인도 정부는 수출목적 자본재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수출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리 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EPCG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 시 수입관세를 5%만 납부하면 되나 일정기준의 수출의무를 지게 되며, DFIA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 Output Norms)에 따른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수출간주제도는 수출전용기업(Export Orient Units),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관세상 해택을 주는 제도이며, DEPS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인도 정부는 2009.8.27일 발표한 「대외무역정책 2009~2014」(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9~2014)에서 2011.3.31일까지 한시적으로 EPCG 하에서 영세율(zero duty)을 도입하였다. 상기혜택은 엔지니어링·전자제품, 기초화학·의약품, 의류·섬유, 플라스틱, 수제품, 가죽제품 등에 대해 적용된다. 또 WTO에 불합치하는 제도로 평가받아 2009년 말 폐지를 검토했던 DEPB 제도를 2010.12.3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동안 정부조달에 있어 중앙정부 공기업(CPSE: Central Public Sector Undertaking)에 대한 우대 조치로 여겨졌던 구매우선제도(Purchasing Preference Policy)는 2008.4월부터 폐지되었다. 과거 동 제도 하에서는 중앙정부 공기업들은 5천만 루피에서 10억 루피에 상당하는 정부입찰에서, 민간기업의 최소 입찰가격과 10% 미만의 차이가 날 경우입찰가격을 낮추어 다시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는 저작권,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권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매우 강력하지만 실제로는 지식재산권 침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커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Patent Act, 1970이 특허 부여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2005년 개정 특허법은 식품, 의약품 또는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제품 특허(Product Patents)를 배제하는 구 특허법 Section 5를 삭제함으로써 TRIPS 협정에 의해 인도 등 개도국에 부여된 10년의 이행기를 마쳤

다. 동 개정 특허법은 2005.1월 이전에 신청된 의약품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되 보호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권이 부여된 시점에서 이미 동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적정한 수준의 로얄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우 현재 소매업은 외국인 지분이 최대 51%까지 허용되며 또한 단일브랜드만 판매할 수 있어 백화점·쇼핑센터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지분은 최대 26%까지만 허용되며, 합작사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지점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며, 이중과세협정 관련 현재 인도는 32개국과 100% 면세협정을 체결한 상황임을 감안시, 현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상 50% 면세율이 완전 면세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가에 개방되어 있으나, 소매업,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자동승인 대상이다. 정부승인을 요하는 외국인투자로는 우선, 산업허

가(Industrial Licensing)를 사전 취득해야 하는 투자가 있다. ① 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방위산업설비, 산업용 화약, 유해화학물질 등 강제허가업종, ② 소기업 고유업종, ③ 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지역에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기술·금융·상표 분야 협력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주식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와 산업정책상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제조업 외에는 각 산업별로 투자지분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인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정이 그간 외환관리법(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및 시행규칙, 인도중앙은행(RBI) 회람(Circular), 상공부 산업진흥본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등 복잡한 형식으로 규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전체적인 정부 정책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2010.4.1일자로 통합FDI정책(Consolidated FDI Policy)를 상공부 DIPP에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실재 투자에 앞서 최신 동향은 상공부 홈페이지(http://dipp.nic.in)를 통해 확인할 경우 인도의 FDI정책 전반에 대해 확인할 수가 있다.

외국인 투자정책 (상공부 Consolidated FDI Policy, 2010)

제한 종류	해당 업종 및 제한내용
투자금지 업종	– 소매업(Retail Trading) * 단일 브랜드로 지분 51% 이하는 가능 – 원자력(Atomic Energy) – 복권(Lottery Business) – 도박(gambling & Betting) – Business of Chit Fund * 우리나라 契와 유사한 금융 – Nidhi Company(* 신용조합의 일종) – 양도가능개발권(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의 거래 – 민간투자가 금지된 업종
정부승인 필요 업종 (주요 예시)	– 茶 – 타이타늄(titanium) 광산 및 관련산업 – 담배(cigars & cigarettes) – 방산(지분제한 26%까지) – 공항(기존공항에 대한 투자로서 외국인지분 74% 이상 경우) – 자산구조조정 회사(지분제한 49%)

제한 종류	해당 업종 및 제한내용
정부승인 필요 업종 (주요 예시)	–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 택배서비스 – 신용정보제공(지분제한 49%까지) –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투자회사 – 정유(공기업과 합작시 지분제한 49%까지)
정부승인 필요 업종 (주요 예시)	– 출판매체(뉴스·시사분야는 지분제한 26%, 과학, 전문잡지는 100%까지 가능) – 유무선통신사업(49% 이상 경우, 지분제한 74%) – 소기업 생산품 거래 – 단일브랜드 소매업(지분제한 51%) – 위성설치 및 운영(지분제한 74%)
자동승인 대상이나 지분 제한이 있는 경우 (주요 예시)	– 보험(26%) – 국내 정기선항공(49%) – 전세기, 화물기, 비정기노선항공(74%) – 유무선통신사업(49% 이내)
기타 (주요 예시)	– 茶, 전자메일 등: 일정기간 내 인도국민에 26% 주식 매각 – 비은행 금융, 소도시 등 프로젝트: 최소 투자금액 요건 충족 – 각 업종: 산업허가 시 부여되거나 산업별 정책에서 규정된 요건 충족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도 1999년 임차가 일반적이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종전에는 자동차 분야 등에 있어서 투자 후 일정기간 내에 국산화 달성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제는 특별한 현지부품구입의무는 법령상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 시 해당기업과 주정부 등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송금액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제한)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득(소득-소득세)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2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세(15%)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유효법인세율 약 42%로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한 배당세에 대해 한·인도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능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며,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는 별 제한이 없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외국계은행 인도지점에 대한 여신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 시 본점 자본금 기준이 아닌 인도 내 지점 자기자본의 15%를 적용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본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함). 결국 인도에 진출하려는 은행은 거액의 자기자본을 가져와야만 원활한 여신영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내 자본금이 2천만 달러인 경우 동일 기업당 최고 여신한도는 3백만 달러에 불과하며, 만약 본점 자기자본 기준을 적용한다면 수 억 달러의 여신도 가능하다.

(3) 해외차입 한도 제한

해외자금 차입은 자기자본의 25%로 제한되어 자본금 규모가 거액이지 않고서는 인도 지점에서 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영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4) 본점 차입금 손비 불인정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에 대해 손비 인정을 하지 않아 본점으로부터 차입이 곤란하다.

(5)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은행입장)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콜금리기준 하루 변동폭 1~2%, 연간 최고 20~30%까지 오르는 경우 자주 발생) 은행 간 장기 차

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은행간 차입을 통해 장기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입장) 기업의 해외차입(ECB)은 목적, 차입기관, 기간, 금리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목적이나 시설자금이라도 인도 루피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6)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대금 결제 자체는 별 어려움 없다. 다만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므로 달러나 유로화를 통해 국제 자금을 결제한다. 선물환 시장 미발달로 스프레드(Spread) 변동폭이 큰 편이다. 수출이나 해외송금 입금 되는 경우에는 외화구좌(EEFC)를 가질 수 있다.

(7)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중환율은 없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달러대비 변동폭은 원화/달러 환율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상관계수 거의 0.9). 최근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하여 환율변동폭 매우 큰 편이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과 같이 정부의 시장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 이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왔으며, 2007.3월부터는 내국기업에게는 33.99%(30% corporate tax+10% surcharge+3% 교육세)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비해 외국기업에게는 42.23%(40% corporate tax+2.5% surcharge+3% 교육세)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해외투자자로부터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서 내국기업에는 순수한 의미의 인도기업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이지만 인도 회사법에 의해 설치된 기업도 포함된다.

외국기업에는 지사 또는 지점(Branch Office: 제조활동 이외의 영업활동 가능),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우리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진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보수집 및 업무연락

이외에는 영업활동이 불가능) 등 세 종류가 있다.

인도정부는 내국법인은 배당금(dividend)에 대해 11.21%의 배당세(Dividend distribution tax on corporate profits)를 추가 부담하므로 실질 법인세부담이 45.20%이므로 오히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실질법인세 부담 42.23%)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인세 원천징수율(Tax Deduction at Source)이 인도기업에게는 2%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업체에게는 법령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새로이 적용받고 있으며, 10% 또는 2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원천징수세율 조정을 위해 과도한 인력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며, 과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추후 정산되기는 하나 정산까지 상당기간(통상 3년 이상)이 소요되어 현금 흐름과 수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 주재 외국기업 사무소의 개인소득세, 복리후생 분야에서 인도 파견직원에 대한 실질지원액과 신고액 간 차액에 대해 실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거 수년분에 대해 소급적용하기도 한다. 인도의 경우 일반상거래, 주택임차 시 세금회피 또는 절세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한 빈번한 세무조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인도정부는 근로자 연금 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을 개정(2008.11.1 시행)하여,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작업장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월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월 500달러 전후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근로자 연금의 납부 면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2010.10.19일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협정 서명을 완료하였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국내 절차를 완료한 2011.1.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연간 100억 여원(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 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우리나라와 인도에서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 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엄격한 법적 노동조합 보호장치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업체가 사업장 폐쇄시에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감축시에는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시 허가 지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 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인도 중앙은행이 지사 등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재무부에 의견을 문의하고 재무부는 다시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는데 특히 통신 업종처럼 인도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경쟁정책

독점 및 제한적 거래 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86: MRTP Act)에 따라 1970년 설립된 준사법기관인

MRTP 위원회가 등록된 소비자 및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제한적 거래관행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Exchange Board of India)가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MRTP Act 시행과정에서 동 법이 제한적 거래관행의 정의가 분명치 않고 공기업, 은행, 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적용범위가 너무 좁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도정부는 새로이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을 마련하고,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비사법기관인 경쟁위원회에 판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 동 법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동 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킴에 따라 현재는 홍보 등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최근 인도 정부는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하고 프로젝트 또는 계약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2009.10.31일까지 자국으로 귀국하여 취업비자 취득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기업인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가 인도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인도대사관은 계약사업 및 프로젝트 이행 등의 사유로 입국하는 단기(1년 미만) 출장자에게 비즈니스 비자 대신 고용비자를 발급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기 인도 정부의 상용비자발급 심사강화 관련 주한인도대사관은 주재국 내무부 및 외교부 등을 통해 비자 발급심사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주관기관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주정부 Transport Department(주정부산하의 운송국)이며, 지역별로 사무소

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종류로는 ① Motor Cycle ② Invalid Carriage(지체장애자용 차량) ③ Light Motor Vehicle(8인승 미만) ④ Trasport Vehicle(8인승 이상 및 화물운송 차량) 등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객관식, 60점이상)을 거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운전연습학원에서 수강하고(증명서 지참) 기능 및 주행을 시험을 합격하여야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한국 면허를 인도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도정부는 별도 시험없이 한국운전면허증을 인도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발급해주고 있으며, 주한인도대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인도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영문 번역 운전면허증, 거주지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 행

2010.4월 말 34개의 외국계은행이 311개 지점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 중이며, 또한 45개 은행이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를 통해 영업 중이다. HSBC, CITI Bank, ABN AMRO, Standard Chartered 등이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고, Deutche Bank, Wachovia Bank, Bank of Tokyo Mitsubishi 등이 도매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점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신한은행이 델리, 뭄바이, 벨로르(2010.11월)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이 지점 개소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하나 은행, 수출입은행이 뉴델리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2009.3월 이후 인도 금융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 은행분야 외국인투자 정책을 조정하고, 외국계 은행 자회사의 영업제한 완화 및 철폐, 외국계 은행 자회사와 인도 민영은행과의 M&A 허용 등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외국계은행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영업상 규제가 존재한다.

우선 최초 투자 시에 25백만 달러의 최소투자자본 제약이 있으며, 민영은행에 대해서는 74%, 국영은행에 대해서는 20%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가 존재한다. 또 합작투자 시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10%까지만 인정된다. 투자 후에도 많은 영업상 규제가 있다. ① 순여신의 32%를 인도 정부가 정한 우선지원부문인 농업, 중소기업, 교육, 주택 등 15개 분야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한다. 대출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인도 중소기업은행(SIDBI, 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에 해당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이들 부문 대출은 리스크가 높아 많은 외국계은행들은 3%의 낮은 이자율로 SIDBI에 예치하고 있다. ② 자기자본 20% 이내의 동일인 여신 한도를 지켜야 하는데, 지점의 경우 본점의 자본금을 적용하지 않고 지점의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③ 예수금과 차입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인도 국채에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예수금의 증감에 따라 유가증권 투자금액이 변동하게 되며, 일시적인 유동자금 입금 시에도 유가증권 투자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 루피화 대출만 허용되며 외화대출을 할 수 없어 본사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자금 마진 확보가 불가능하다. ⑤ 모든 은행은 유동 부채의 5%를 중앙은행 지불준비금 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보 험

인도 보험 업계는 크게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이들 보험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07.5월 16개의 생명보험 회사(국영 1, 민영 15), 15개의 비생명보험회사(국영 6, 민영 9), 1개의 재보험회사(국영)가 있다. 국영보험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아 생명보험에서는 73.5%, 비생명보험에서는 73.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보험업계의 경쟁은 제한된다. 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10억 루피(약 2천5백만 달러)이다.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는 26%이다. 인도 정부는 이를 49%로 상향 조정할 방침을 세웠지만 좌파정당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등 3개사가 인도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기관의 인도진출 우수 사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996년 구 조흥은행이 뭄바이에 최초 진출하였고 이후 신한은행과 합병하여 행명이 변경되었다. 2005년 뉴델리지점 설치 허가(당시에는 해외은행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를 받아 2006.12월 뉴델리지점 개점하였으며, 구 조흥은행이 인도 진출 당시 한일은행, 상업은행도 인도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나 1998년 IMF 이후 모두 철수하고 구 조흥은행만 영업을 지속하였다. 현재 신한은행은 인도 내에서 유일하게 진출한 한국계 은행으로서 현지 진출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이 신한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직 진출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인도 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한국계 기업의 진출이 점차 가시화 되면 선점의 효과가 분명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IMF 위기 때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인도진출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든 주 요인이 되었으며, 현재 인도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외국계 은행은 인도 진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Standard Chartered Bank의 경우 90개 지점 운영을 통해 외국 은행 중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HSBC(47개 지점), CITI Bank(41개 지점), ABN-AMRO Bank(30개 지점) 등이 활발히 영업하고 있으며, 기타 외국계 은행은 대부분은 5개 미만으로 투자은행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 실적

2008.9월 미국 리만브라더스사 파산신청 이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2008.9월 이후 현재 한국과 관련된 반덤핑 신규조사는 가성소다(Caustic Soda),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old Rolled Stainless Steel), 열연강판(Hot Rolled Steel Products), 나일론 인조견사(Nylon Filament Yarn),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S.알루미늄판(Presensitised Positive Offset Aluminium plates), 고무화학물(Rubber Chemicals) 등 7건이고, 2010.4월 말 이후 신규 세이프가드조사는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1건이다.

인도정부는 일부 보호주의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2009.8월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함으로써 개혁과 개방을 향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세계에 과시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소기업 고유업종은 2006년 말 326개가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해제되어 2009.10월 21개만 남아 있다.(2007.1월 87개, 2007.3월 125개, 2008.2월 79개, 2008.10월 14개 추가해제)

한편 전력, 도로, 항만 등 취약한 인프라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정을 상공부 Press Note 형식으로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바, 실재 투자에 앞서 최신 동향은 상공부 홈페이지(http://dipp.nic.in)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수많은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정 개정에 의하여,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졌다.

2004.10월에 첫 민선대통령으로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가 경제 발전, 특히 IMF 금융 위기 이후 거의 손을 못댄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중이다.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1월 국내외 투자가들을 초청, 제1차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고 91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고, 2006.11.1~3일간 제2차 인프라 서밋을 개최, 10개의 모델 프로젝트와 101개의 잠재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9.3월 말에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87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2005년부터 진행된 투자관련 법령 정비는 의회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마침내 2007.4.26일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신투자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신투자법은 1967년의 외국인투자법, 19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비되었고, 내용상으로도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07.7월과 12월에 발표된 투자제한규정도 일부산업에 대한 제

한은 강화되었지만, 규정 자체의 내용은 종전보다 명료화되어 투자제도의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조세관련, 2007년에 조세법총칙이 개정된데 이어, 2008.9월에 소득세법도 개정되어 2009년부터는 법인세도 종전 30%에서 28% 인하되었으며, 2010년에는 다시 25% 인하되는 등 좀 더 기업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관련,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섬유, 기계 등 15개 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규정은 2008.9월에 8개 분야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외에 퇴직금 관련 노동규정을 사회보장보험(잠소스텍)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 기타 투자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며, 비록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여 임가공 수출을 위한 투자대상지로 아직 매력이 있다. 특히, 2005년 말부터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환영하지 않고 있고, 인건비도 크게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대체지역으로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인도네시아는 2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요소

(1) 정치 경제적 안정화

- 2004.10월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선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음.
-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2004년부터는 5%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7년부터는 6.32%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6.2%의 경제성장을 달성함.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

기에도 불구하고 4.5%의 경제성장을 달성함.

(2) 풍부한 천연자원

- 인도네시아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의 보고
- 세계 최대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 풍부
-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

(3)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 세계 제4위의 인구(2억3,000만 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
- 수도인 자카르타 인근의 최저임금은 2010년 약 1,200,000루피아(약 130달러) 수준으로 베트남(약 50달러)에 비하여 다소 비싸지만 지방의 경우 80달러 정도도 가능
- 평균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 증가

부정적 요소

(1) 노동의 유연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 높은 해고 비용: 1년 근무당 1개월치씩 해고 수당+3년 근무당 1개월치씩 근속수당 지급(단, 기한부 고용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 큰 폭 증가(자카르타 최저 임금 상승률: 2006년 15.1%, 2007년 9.95%, 2008년 8.0%, 2009년 10%, 2010년 8.2%)
- 초과 근무 수당의 누진제 적용: 1시간 초과 150%, 2시간 이상 200% 지급 등

(2) 인프라 부족

-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설비 부족 및 낙후로 컨테이너 운송비용, 하역비용 등 물류비용이 높은 편

- 전력 부족으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 차질

(3)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 투자 인가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
-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의 부조리
- 밀수 만연으로 정상적인 수출입에 장애
-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및 보호 의식 부족

(4) 안전에 대한 불안

- 2002년 발리 호텔, 2003년 자카르타 메리어트 호텔, 2004년 주 인도네시아 호주대사관, 2005년 발리 식당가의 자살 폭탄테러, 2009년 자카르타 리츠칼튼 및 메리어트 호텔 테러 발생 등 잦은 테러로 인하여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 존재
- 지진의 빈발, 화산폭발, 조류독감, 기타 풍토병 등으로 선진국가들에게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

투자법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법제정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이 있음.

–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특정분야 및 지역에 대한 세금우대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 1/2007)이 2007년부터 시행됨.
  – 동 규정은 그동안 유명무실하였던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통령령 7호, 1999.1.14일) 규정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게 됨.

(1) 대상

2007.1월 이후 BKPM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신규 투자기업 및 기 투자 업체의 확장투자도 포함) 중 식품, 섬유, 제지 등 정부지정 15개 업종을 대상

(2) 내용

- 소득공제
  – 고정자산 투자의 30% 상당액을 6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매년 5%)
  – 상업생산개시일 기준으로 하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세무당국이 결정

-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근거한 배당 원천세 경감

- 결손금 손실보상기간 5년, 특정 조건하에서 최대 10년

신투자법 주요 내용(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6조)

-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7조)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 부여

-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 보장(8조)
  -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 자본,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 로얄티, 투자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 소득 등을 외국화폐로서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투자 제한·금지 분야 및 업종(12조)
  -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외국인 투자자도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

-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14~17조)
  - 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받으며, 투명한 기업경영의 원칙 이행,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자본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조정청(BKPM) 보고, 법과 규정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

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 입국사증 부여, 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28조)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투자 금지 분야 리스트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4월에 발효한 개정 투자법 '2007년 제25호'의 시행 세칙 및 대통령령 '2007년 제76호'와 '제77호'에 의하여 새로운 투자 제한 분야를 2007.7.3일 부터 발효시켰으며, 다시 2007.12.27일에 중복되었던 규정들을 정리·수정한 대통령령을 발표함.

- 동 규정에는 25개 업종을 투자금지 업종으로 규정하였으며, 15개 분야 1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외국자본 출자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함.

- 신 규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승인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승인시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 통신, 환경, 식량안보 및 천연자원 다양성보존 등과 관련된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 강도를 높임.

- 대중매체의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며, 전력생산 배분 95%, 25헥타르 이상의 야자유 농장 95%, 의약품 회사는 75%

로 외국인 지분이 제한됨.

- 전문병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5%까지 허용되고,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이나 의료장비 대여업 같은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됨.
- 호텔이나 여관, 가라오케, 마사지업소 등을 포함한 14종류의 관광산업군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50%까지 허용되나 위치제한이 있게 됨. 농업은 위치제한이 있으며, 지방정부규정에 따라야 함.
- 교통분야의 항공 운송업은 49%, 정보통신분야의 유선전화 49%, 이동통신 및 위성 전화는 65%까지 외국자본출자가 가능함.
- 통신분야는 종전 규정은 최대 95%까지 외국자본의 출자를 허용하였으나 유무선 통신회사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 이미 상한선을 넘어선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 소유지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

최대 외국자본 소유 비율(대통령령 NO111/2007)

99%: 샤리아은행, Foreign Exchange Banking
95%: 석유가스개발,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발전분야, 고속도로, 식수, 벼농업 (25h 이상)고구마 옥수수 농업
85%: Leasing, Venture Capital
80%: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75%: 제약
65%: 전문병원, 클리닉, 비즈니스컨설팅
55%: 건설, 건설 컨설팅
50%: 공연장, 1~2성급 호텔, 케터링, 스파, 바/카페
49%: 인력회사, 의료장비 임대, 침술, 통신네트워크, 인력회사, 해상항공운송
25%: 자연관광, 생태관광

- 또한, 정부가 지방정부규정에 근거해 특정지역의 경우 19개 사업군에 대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함.
  - 메단과 수라바야에서는 민간병원과 유치원이 위치제한을 받고 자카르타에서는 보건 지원서비스(의료장비임대업)도 위치제한을 받게 됨.

2010년 Negative List 개정안 발표(투자법 시행령 2010-360)

- 2010.5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아세안 경제협력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일명 Negative Investment List)을 개정,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확대함

- 새로운 규정에 의해 허용된 외국인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2년 이내에 지분을 팔아야 하지만, 2007년 투자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회사를 세운 경우에는 Grandfater Law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투자청이 밝힘

- 한편,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아세안 경제협력 수준에 맞추기 위해 아세안 지역 국가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우 다른 일반 지역은 투자지분 제한이 49%이지만, 아세안 국가는 60%까지 허용됨

〈네거티브 리스트 주요 내용〉

-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새로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비즈니스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음

- 증권시장의 포트포리오 투자자(간접 투자자)는 동 시행령에 적용 받지 않음

- 기업인수 합병 시 인수된 회사의 지분구조는 설립시 투자청 허가서에 있는 외국인 지분구조를 지켜야 함

- 자본금 증자를 하고자 할 때 현지 회사의 참여가 없어 외국인 지분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초과된 지분을 현지 내국인 회사에 매각하여야 함

- Great father Law에 따라, 동 시행령 이전에 사업이 허가된 동 시행령 적용에서 제외됨

- 동 시행령과 관련 있는 다른 규정 중 동 시행령의 하위 법령은 효력이 없음

- 과거에 금지되었던 인조 감미료(Saccarine, Siclamat) 업종은 별도 허가를 받을 경우 투자가 가능함
- 건설업종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과거 55% 지분에서 67%까지 지분 보유 가능
- 영화관련 서비스 산업(스튜디오, 필름 가공처리, 더빙, 프린팅, 복사 등)은 49%까지 지분 보유 가능
- 병원 및 병원 서비스 산업은 65%에서 67%까지 지분 보유 가능,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설립 가능
- 1MW-10MW의 발전소관련 비즈니스는 현지 기업과 파트너쉽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10MW 이상의 발존서는 95%까지 지분 보유 가능
- 옥수수, 콩, 땅콩, 쌀, 카사바, 고구마 등의 주요 식용 농산물의 경작을 위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내 식량산업 보호를 위해 25헥타 이상 부지에 대해서만 49%까지 지분 보유 가능(팜은 제외되어 과거처럼 95%까지 가능)
- 우편 서비스 업종은 별도 허가를 받아 49%까지 지분참여 가능
- 이동 통신용 통신탑 건설, 운영관련 업종은 외국인 투자 불허
- 교육서비스는 별도 허가 필요

자유 무역 협정

한-ASEAN FTA

2007.6월에 발효된 ASEAN과 FTA에 따라, 2010년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64.9% (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2010년에 4.2% (475품목) 등 순차적으로 관세철폐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관세철폐 방식은 13%→10%→8%→5%→3%→0%식으로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해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전체 품목수의 4.3%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2011년까지 관세를 20%감축하고, 전체 품목수의 3.3%에 해당하는 상품은 양허 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한다. 또한, 개성공단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 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에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FTA 포탈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AK) 발급 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아울러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FTA 전담직원제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지난 2007.6.1일부로 발효된 이후 세관에서 처음부터 협정관세율 적용을 못하고 12.3일부터 적용하면서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차액을 환급해 주도록 소급적용을 천명해 왔다.

또한, 2008년에도 조정관세율표 발표가 지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AK-FTA양식)를 제출해 관세율 소급적용에 따른 관세차액 환급을 받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다.

2009년에 들어와서는 4년치 FTA관세율을 온라인 상에서 사전에 발표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관세율도 일반품목(Normal Track)에 대한 관세면제를 대폭 단행해 한국 수출업계에 큰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FTA(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무역 보호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로 만들어진 역내 자유무역협정이다.

1992.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AFTA 설립에 공식 합의하였고, 1992.12월 자카르타에서 AFTA 평의회가 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해설서 등에 대한 3개 실무협정이 체결된 후 1993.1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중·ASEAN FTA

2000.11월 싱가포르 중-ASEAN 정상회담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중·ASEAN FTA를 포함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중·ASEAN FTA는 2002.12월 캄보디아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본협정이 체결되었다.

2004.11월 라오스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하여 2005.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였다.

일·ASEAN EPA 및 일·아세안 FT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2007.8.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 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2008.7월부터 발효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강 등 한국과 경쟁분야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아세안 FTA의 효과를 상당부문 잠식해 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일본과 아세안 간의 EPA도 2008.12월에 정식발효 됨으로써 일본과 중국, 한국 간의 FTA를 통한 재경쟁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

수입규제 제도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비롯하여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자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CEPT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인하 대상은 농업, 서비스를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 농산품, 기타 비농산물 등이며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 국산자재 및 부품 사용비율이 40%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상품협정이 2006.8.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식으로 서명되었으며(태국 제외), 2007.4월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2007.6.1일부로 정식 발효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 발효 후에도 재무부의 실행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세철폐 및 인하를 2007.7.1일부로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아세안 FTA 협정내용에 따라 지난 2008.12.23일부로 '2009년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를 재무부장관령 No.236/ MK.011/ 2008)으로 발표하고 2009.1.1일부터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면제시켰다.

'2009년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는 KOTRA 자카르타 KBC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인도네시아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KOTRA 자카르타 KBC(www.kotra.or.kr/jakarta)
- 인도네시아 재무부 웹사이트 (http://www.tarif.depkeu.go.id/Decree/2008PMK236PMK011.pdf)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다음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 허가(NPIK)를 취득해야 한다.

-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 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아래의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화학제품 수입 시는 MSDS 반드시 첨부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의 경우 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 (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달,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허용(2009.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2월부터 시행)

2009.1.1일부터 상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Belawan 항구(메단),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강화하면서 2007.7.1일 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08.8.13일부터는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에 다시 2개 철강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5개 품목에 대해 SNI인증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ASEAN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 관련 조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對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진행상황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1998.7.1	2004.9.16	관세율 7~10% 2009년까지 적용
비코팅 인쇄용지	4802.52	반덤핑	2003.2.10	2004.11.11	관세율: 59.64% 2009년 까지 적용
Ceramic Tableware	6911 6912	세이프가드	2005.5.13	2006.1.4	1차년도 1,200Rp/kg (2009.01~2010.01) 2차년도 1,150Rp/kg (2010.01~2011.01) 3차년도 1,100Rp/kg (2011.01~2012.01)

2009년도 수입규제 현황 및 동향

아직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되지 못해 수입규제가 주로 일부단체나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된 세계경기침체로 중국 등 후발도상국들의 제품이 선진국시장에서 선회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덤핑판매를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규제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가 국제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게 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2009.4.7일 부로 한국산과 말레이시아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정식으로 개시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조세 제도

(1) 거주자/비거주자의 지위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관행상 세무서는 국외재산으로부터의 비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외국국적 소유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내부적인 급여 가이드라인이 세무사들의 외국 국적자가 신고한 근로 소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과세소득 및 비용/세율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유동비용은 소득이나 현물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현금이 이동하는 수당은 과세된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소득세율은 종전 과세표준별 분리적용(0~5천만 루피아: 10%, 5천만~1억 루피아: 15%, 1억 초과: 30%)에서 2009년부터 단일세율(2009년: 28%, 2010년 25%)로 변경되었다.

법인세율

2008년		2009년 개정
과세표준금액(루피아)	세율(%)	
최초금액부터– 50,000,000	10	단일세율 2009년 28% 2010년 25%
50,000,001–100,000,000	15	
100,000,001 이상	30	

종전에 규정이 없던 기부금 공제제도가 신설되어 자연재해 복구 기부금, 교육기부금, 국가인정 체육 및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영리 기업에 대한 면제조항이 신설되어 비영리기업의 경우 설립 후 4년간 면제적용을 받게 되었다.

또한 매출 500억 루피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주식의 40% 이상을 상장한 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소득세율은 종전 5단계(0~2천5백만: 5%, 2천5백만~5천만: 10%, 5천만~1억: 15%, 1~2억: 25%, 2억 초과: 35%)에서 4단계(0~5천만: 5%, 5천만~2억5천만: 15%, 2억5천만–5억: 25%, 5억 초과 30%)로 변경되면서 소득별 적용세율이 낮아졌다.

개인소득세율

2008년		2009년	
과세표준금액(루피아)	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부터– 25,000,000	5	최초금액 – 50,000,000	5
25,000,001 – 50,000,000	10	50,000,001 – 250,000,000	15
50,000,001 – 100,000,000	15	250,000,001 – 500,000,000	25
100,000,001 – 200,000,000	25		
2,000,000,000 이상	35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종전 13,200,000루피아에서 20% 높아진 15,840,000루피아로 변경되었다.

(3) 영역 및 거주

거주(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거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여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 시민은 국내 납세자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비거주자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과세협정의 조항을 적용 받는다.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 납세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근로에 대한 현금보상에 대해 과세한다(보통 20%의 원천징수세).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방문 목적의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관련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은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4) 이중 과세 방지

외국인 세액공제 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활용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조세원칙에 의거, 납부세액에 한정된다. 기타 수동적 소득에 대한 외국인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다. 외국인 자원 세액 공제에 대한 처리는 규정상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5) 출국세

출국 시 거주자는 100만 루피아를 지불하였으나, 2009년부터 개인납세

번호를 가진자에게는 면제되며, 비소지자는 200만 루피아로 인상되었다. 출국세는 2010.12.31일까지만 시행된다.

(6)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로서,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다.

(7) 외국인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2010년 4월부터 외국인 여행자가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점("VAT REFUND for TOURIST")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출국전 준비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항 부가가치세 환급 카운터에 제출하면 제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 현재 자카르타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Ngurah Rai 공항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 카운터 설치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예정이다. 식음료, 담배, 총기류 제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인도네시아 국적자, 인도네시아 영주 거주자, 항공기 승무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불가능 함. 다만, 한 점포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총액이 최소 500,000 루피아 이상(구입금액이 최소 5,000,000 루피아 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통관 운송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보세업체 통관은 매 수입 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수입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화물 수입을 할 수 있는 통관방식으로 보세업체가 되면 수입절차가 간단해지기는 하지만 내수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내수 혹은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자 하는 업체 및 완제품 수입을 하는 업체는 보세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업무를 진행한다.

수입 통관 절차

(1) 선적서류 및 수입 신고서 준비

선적 서류(B/L, Invoice, Packing, Insurance Policy 등)를 준비하되 세관 내규에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한다. 적하 보험증권의 경우, FOB인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부보 가능하다.

한-아세안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선적서류 속에 원산지증명서(CO)도 AK-FTA용으로 받아서 포함시키고 적용관세율 항목에 AK-FTA 관세임을 밝혀야 한다.

(2) 수입 신고서에 준하여 수입세 납부

(3) 수입세를 은행에 납부한 이후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전송(EDI SYSTEM)

(4) 세관에서는 전송 받은 서류를 근거로 수입 세금이 납부된 은행과 교신하여 수입 세금 납부 여부 확인

(5) 수입 세금 납부가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수입 신고서 접수

(6) 수입 신고서 접수 확인이 되면 원본 서류를 세관에 제출

(7) 세관에서 원본 서류 접수 이후 검사 혹은 무검사 통관 결정

(8) 검사 통관으로 결정난 경우, 검사관과 함께 화물 검사 실시, 검서 보고서 작성 후 담당관에게 보고서 제출

(9) 통관 승인을 받고 화물 출고 동의서 수령

(10) 창고비 지불하고 출고증 받아 화물 출고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특징

인도네시아는 각종 법률 및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식민통치시대 하의 법률 또한 아직까지 계승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는 2003.3월에 공포된 신노동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여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12개월 근무 시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 8년째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기본근로시간 외, 첫시간 1.5배, 두번째 시간 2배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노무관리상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큰 소리 보다는 가르쳐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분규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작성 시 현지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추후 분쟁 시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근로조건에 명시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만일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이 아닌 일반적인 종신 고용으로 취급된다.

- Job Training: 작업소질의 증진, 개발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별도 장관령으로 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관련 규정에 의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 작업장/근무장소: 작업장의 변경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작업장의 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작업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
- 해고: 해고에 대한 명확한 협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교대근무, 특정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회사의 규정 및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한다.
- 연가, 휴가: 연가에 대한 규정, 생리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임금이 지불되는 휴가, 병가 사용조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다.

이외 퇴직연금보험, 작업장 안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해고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 순차적 발급 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고용해지는 형사법상 범죄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 회사 소유의 물건 또는 돈을 사기, 절도, 횡령했을 경우
- 허위 또는 거짓말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사업장에서 음주, 주정, 마약 등의 약품을 사용, 배포한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도박의 경우
- 직장동료를 폭행, 고문, 공갈, 협박한 경우
-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 사업주 소유의 물품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두는 행위

– 회사기밀을 밝히거나 누설했을 경우
– 사업장 내에서 다른 행위로 5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퇴직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 수당의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사안 별로 퇴직금의 산출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 노동법 156조 2항
    · 1년 미만: 1개월 임금
    · 1~2년: 2개월 임금
    · 2~3년: 3개월 임금
    · 3~4년: 4개월 임금
    · 4~5년: 5개월 임금
    · 5~6년: 6개월 임금
    · 6~7년: 7개월 임금
    · 7~8년: 8개월 임금
    · 8년 이상: 9개월 임금
  – 근속수당: 노동법 156조 3항
    · 3~6년: 2개월 임금
    · 6~9년: 3개월 임금
    · 9~12년: 4개월 임금
    · 12~15년: 5개월 임금
    · 15~18년: 6개월 임금
    · 18~21년: 7개월 임금
    · 21~24년: 8개월 임금
    · 24년 이상: 10개월 임금
  – 손해보상금: 노동법 156조 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데 따른 이전비
    · 근로자의 해고금 및 근속수당의 15% 상당의 보상비
    · 기타 고용계약 또는 사규, 단체 근로협약에 규정에 따른 사항

노동 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 조정위원회(P4D)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 노동위원회(P4P)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만일 해고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 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 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고용 노동자를 사회보장에 가입시킬 의무를 가진다.

인도네시아는 사회보장으로서 Jamsostek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장내용은 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이며, 산재·노후·사망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며 건강보험은 조건이 좋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인증제도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통관 시 SNI인증 강제적용 품목군〉

동 제도의 적용품목군은 아래의 총 45개 제품군이다. 동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대략 3명을 3일간 파견) 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1) 밀가루
2) 백열 전구
3~17) 비료 관련 제품군
18) 승용차 타이어
19) 트럭 및 버스 타이어
20) 소형 트럭용 타이어
21) 오토바이용 타이어
22) 자동차용 튜브
23) 전기 스위치
24) 소켓, 플러그
25) MCB
26) 선풍기(STAND형 및 환풍기 등의 모든 가정용 선풍기 포함)
27~28) 승용차용 강화 유리
29~34) 시멘트 관련 제품군
35~39) LPG가스용기 관련제품
40~43) 철근 및 코일 등 철강제품 일부

44~45) 열연재 강판 및 갈바륨 철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표준규격인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를 열연재 강판(HR, PO, 후판) 및 갈바륨 철판(Aluminum Zinc Layer) 제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시행령을 산업부장관령으로 발표하였다.

금번 산업부장관령(No. 01/M-IND/PER/2009 및 No. 02/M-IND/PER/2009)은 2009.1.7일에 서명되어 열연재 강판 규정은 4개월 후부터 갈바륨 강판규정은 6개월 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2개의 국가표준규격(SNI) 강제인증품목 확대는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비즈니스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강조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최근의 저가 수입 철강재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열연재, 갈바륨에 확대 적용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가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신규 외국투자가 승인되면 환율은 승인된 투자액을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된다. BKPM이 승인한 환율은 투자계획이 승인된 후 후속 증가분을 포함한 총 외국투자가 결정될 때 외환시장에서의 현행 환율에 근거하고 있다. 환율변화에 따른 루피아 차액은 합작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프리미엄으로 계산된다. 이익배당금은 프리미엄에서 지급되지 않으나 청산 시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외국투자 및 기술의 등록

투자계획에는 주식자산, 부채자산, 기술지원협정 및 합작투자협정 초안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계획을 충족시킬 만큼의 인도네시아로의 자금 이동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금계정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Rp.)이며 영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루피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계약이 외화 즉 달러나 엔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부 관리의 외환체제는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어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확정하고 있다. 모든 주요 교역 통화에서 현금계정은 외국통화를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오랜 경제정책으로 외환통제는 없으며,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열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식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얄티 및 기타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판권(무기한), 산업디자인 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 한국 영화들 까지도 미화 1달러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제품은 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의 간이 매장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 통상법 제301조(지식재산권침해)상의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2005년 하반기부터 격상시키는 등 표면적인 감시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왔으나 실질적인 억제효과는 별로 없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사이에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을 2% 줄이는데 그쳤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 자료에 따르면 2007.3.1일 이후 2008년 초까지 경찰에 적발된 불법소프트웨어 제작이나 사용 건은 90건이었으나, 이중 재판을 받은 경우는 3~4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어쨌든 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와 경찰청이 협력해서 지속

적인 단속을 벌여감으로써 2005년에 87%에 달했던 사업장의 불법 SW 비율이 2007년까지 84%로 떨어진 것(세계 불법복제순위 12위)은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인지도 있는 쇼핑몰 구석구석에 불법 CD나 DVD를 파는 잡상인들이 넘쳐나고 있고, PS3나 Wii등 오락기용 게임CD의 불법복제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상표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상표의 중요성을 크게 자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자기상표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별도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1) 상표출원 등록 절차

- 소정 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특허국에 신청
- 외국 소재 신청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 신청 시 1주일 이내 상표출원. 등록 접수증 발급
- 상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9개월 이내에 심사 종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출원자에게 통보하며, 출원자는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심사에 통과하면 3개월 간 공고 실시하며, 등록에 이의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이의 신청 가능. 이의서 접수 시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 제출 가능. 이의서와 반박서가 접수되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실시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 등록증 교부

(2) 상표권의 등록유지

- 상표권은 10년 간 유효하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

(3) 우선 등록주의 채택

- PARIS 협약 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자가 최초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
- 최초 상표등록을 출원한 국가에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도네시아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진 것으로 인정

특허

특정기간 동안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권리이다. 발명자는 발명 자체에 대한 권리 이행자이면서 타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한가지 발명에 대해 한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해야 함.
- 발명가 또는 일반인은 특허신청을 함으로써 동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Patent Consultant를 대리인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취소사유

- 특허권 승인일로부터 4년 간 권리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수수료(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 특허사항이 다른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 건으로 다른 사람

에게 이미 특허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함으로써 특허가 취소됨.

(3) 의장

상표권에 준하여 취급되며 등록절차 등 제반 사항이 상표권 담당기관인 특허국에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적용대상

- 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의 모든 창작물
- 비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창작한 것

효력

책, 팸플릿, 논설, 강의, 연설, 통역, BATIK을 포함한 그래픽예술, 작곡, 건축술 등 최초로 등록된 창작물은 저자 생애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음악쇼, 전통음악 및 노래, 드라마, WAYANG 연극, 판토마임, 영화촬영기술, 비디오 녹화, 음향녹음 등은 최초 발표 후 50년 간 보호를 받는다.

사진 촬영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각색 등은 최초 발표 후 25년 간 보호를 받는다.

일본

비관세 장벽

수산물 수입쿼터(김IQ 포함)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 IQ 설정 품목 현황(총 17개)

- 對한국 쿼터(1개) : 김
- 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9개) :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 글로벌 쿼터(7개) :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IQ제도의 근거(일본의 통상산업성 고시)를 고려할 때, IQ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 (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과 다시마의 경우 현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 수요자 할당, ② 상사 할당, ③ 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미소진 분량이 발생하며,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IQ 할당량(06.1.20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 및 실제 수출량

	'07	'08	'09	'10	'11	'12	'13	'14
IQ물량(만속)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 수요자	261	318	376	(434)	(492)	(550)	(607)	(664)
– 상사	175	213	251	(288)	(326)	(363)	(402)	(440)
수출량(만속) 소진율(%)	217 (49.8%)	239 (45.0%)	349 (55.7%)					

※ 소진율
– 마른김(43%): 수요자할당 소진율(1%), 상사할당 소진율(100%)
– 무당조미김(76%): 수요자할당 소진율(6%), 상사할당 소진율(100%)

2010년도 일본의 김 IQ 할당량

일본 경제산업성 2월5일 발표

(단위 : 만속)

구 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 고
합 계		1,207 (1,052)	722 (627)	396 (350)	89 (75)	• 제품별, 국가별 할당 〈한국〉 – 마른김 : 36% – 조미김 : 54% – 조제김 : 10% 〈중국〉 – 마른김 : 95% – 조제김 : 5% ※ 한국 : 중국 = 6 : 4
수요자		573 (593)	433 (376)	140 (217)	–	
상 사		619 (444)	289 (251)	256 (133)	74 (60)	
선착순		15 (15)	–	–	15 (15)	
마른김	소 계	641 (560)	260 (225)	376 (330)	5 (5)	• 할당별, 국가별 할당 〈한국〉 – 수요자 : 60% – 상사 : 40% 〈중국〉 – 수요자 : 35% – 상사 : 65%
	수요자	276 (332)	156 (135)	120 (197)	–	
	상 사	360 (223)	104 (90)	256 (133)	–	
	선착순	5 (5)	–	–	5 (5)	
조미김	소 계	397 (344)	390 (339)	–	7 (5)	• 제품별 한국 할당 〈마른김〉 – 수요자 : 60% – 상사 : 40%

구 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 고
조미김	수요자	234 (203)	234 (203)	–	–	〈조미김〉 – 수요자 : 60% – 상사 : 40% 〈조제김〉 – 수요자 : 60% – 상사 : 40%
	상 사	156 (136)	156 (136)	–	–	
	선착순	7 (5)	–	–	7 (5)	
조제김	**소 계**	**169 (148)**	72 (63)	20 (20)	77 (65)	• 조제김의 종류 – 구운김, 자반김 등 ※ 紙狀이 아닌 것은 3g을 1매로 환산
	수요자	63 (58)	43 (38)	20 (20)	–	
	상 사	103 (85)	29 (25)	0 (0)	74 (60)	
	선착순	3 (5)	–	–	3 (5)	

※ ( )내는 09년도 할당량임

활어차 일본내 운행 문제

양국간 활어 수출입 교역이 활발하나, 일본 활어운반 특수차량과 달리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의 도로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즉, 우리 항구에 입항하는 일본 특수차량의 약 33%가 한국 내 도로에서 운행 가능하나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의 도로운행이 불가하여, 활어를 일본 항만 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 對일 활어 수출입 현황('09)
– (수입) 3,165톤(21,904천불), (수출) 5,861톤(58,710천불)

※ 일본에 반출하는 한국 활어차량은 896대('09년)('09년 기준)

일본 활어운반 특수차량 운행대수('09)

보세 구역 내 운행	1,604대 (66.8%)
도로 운행	796대 (33.2%)
합계	2,400대

한일간 활어차 및 특수차 반출입 현황

차종	활어차				특수차			
국적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구분	재반입	반출	반입	재반출	재반입	반출	반입	재반출
2007	724	727	498	480	1,517	1,598	1,149	1,092
2008	853	918	342	291	1,481	1,646	1,675	1,423
2009	889	896	796	797	1,028	1,043	1,233	1,218

※ 별도 항만구역내 작업 일본차량 : 1,604대('09)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 내 등록절차 면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측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2010.8월) 하면서 우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측 차량등록절차 간소화 추진결과(2010.8월 한일 협의결과)

구분		양국 기준 비교		일측 최종제안 내용
		일본차 한국운행시	한국차 일본운행시	
차량 등록여부		필요없음 (일시수출입 운행)	등록필요	**신규등록 필요** (국내법 개정 불가)
등록세금	국세	없음	부과 (¥16,000/년)	**부과 필요**
	지방세	없음	부과 (¥150,000/년)	면제
차량 배출가스 검사		없음	일본 검사기관 검사 (¥300,000/년)	**한국측 검사결과 제출**갈음 (사하검사소, 일 검사항목 포함조건)
안전기준	차량 전조등	각도조정 불요	각도조정 필요(HBD 부착금지)	HBD로 해결가능 (Headlight Beam Deflectors)
	속도 제한 장치	총중 16T, 최대적중 8T 이상 장착필요	전 화물차 부착의무	**속도제한장치 부착**필요
	기타	없음	SIDE BAR 설치,최대적재량 차체기재	일본규정 충족
활어수조 (산소공급장치)		비활성산소탱크	활성산소 (폭발위험)	
차고지 증명		없음	차고지 증명 필요	면제
운전자 비자		면제	단기상용비자 발급	면제(일본내 상업운송 등 제외조건)

대일수출 활어운반 차량 물류비용 비교

활어차량 11.5톤 기준, 활넙치 3톤 선적 기준

항 목		출발지	목적지	선임 및 육상 운송임	활넙치 kg당 물류비	비 고
국제선임		부산	오사카	2,900,000원	967원/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엔 (6,500,000원)	2,167원/kg	일본차량 임대료
	한국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엔 (3,250,000원)	1,083원/kg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비기사일당 등

일본항운협의회 사전협의 제도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항만 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 노동자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미한 안건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전월 20일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건(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다.

협의방식 및 절차

2자 협의 (선사–일본항운협회)				2자 협의 (일본항운협회–노조)				
선사	→	선주항만협의회	→	일본 항운 협회	→	(중요안건) 중앙노사의 "사전협의에 관한 협의회"	→	중앙 · 지구 노사 사전협의
	←	외국선주협회	←		←	(경미안건) 각 지구 노사와 사전협의	←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 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과도하게 긴 사전협의 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에게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선사들은 운항선박 변경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통상 '터미널 입항 7일 전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등에 대해 '입항 전월 20일까지 항운협회(민간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기간이 너무 길어 이에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다.

가공식품 통관 관련 문제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미불)

연 도	2008	2009
수출	845	940
수입	255	255

* 주요수출품목 : 츄잉껌, 베이커리류, 아이스크림, 당류, 기타 조제품, 과실음료 등
* 주요수입품목 : 소스 및 조제식품, 베이커리류, 커피조제품, 식용유지류, 초콜릿 가공품, 수산물가공품 등

※ 자료: 한국무역협회(2008, 20009)

일본의 경우, 가공식품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에 관한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통관항별, 담당자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통관에 따른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입허가 유효기간(1년) 완료 후 검사시 기존의 서류와 다른 구비서류를 요구한다거나, 음료의 경우, 통관시 기본 통관서류는 성분분석과 제조공정 등에 관한 것인 바, 동일제품임에도 통관항별로 상이한 통관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수출업자가 일본거래처의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선적하더라도 일본내 검사지연으로 거래처의 납품이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수입실적과 상관없는 과도한 신규샘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공식품 수입시 수입실적에 관계없이 통상 600g의 검수용 샘플을 요구하는데 비해 일본은 수입실적이 있는 제품은 1박스, 신규제

품은 최소 5박스의 검수용 샘플을 요구하고 있어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관련 PLS 적용대상 문제

일본은 농약잔류 허용한도를 정한 PLS(Positive List System)을 고시로 설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 중인 바, PLS 적용대상은 2005년 283개 → 2006년 799개 → 2010년 822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PLS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과 농약성분 등에서 잔류농약 초과검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08~2010.7월까지 총 27건의 잔류농약 초과검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PLS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일률적으로 0.01ppm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리스트를 마련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 플루퀸코나졸 성분은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1ppm인 반면, 일본의 허용기준은 0.01ppm

현재 우리나라에는 PLS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PLS 목록에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한 22건은 반영되어 허용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는 2005~2010.8월 현재, 6차에 걸쳐 고추 Acequinocyl 등 43개의 농약에 관한 의견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2010.8월 20농약 확정고시, 2농약 반영, 6농약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의견안에 대해 일본정부에서 반영을 검토중인 품목

(2009.9.10일)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한국 제안 MRL(ppm)	비 고
Difenoconazole	인삼	0.01	0.2	2007.10월 요청
Pyrimethanil	인삼	0.05	1.0	〃
Dithianon	고추	0.01	0.3	2008.5월 요청
Fluazinam	고추	0.01	0.3	〃
Flusilazole	고추	0.01	0.3	〃
Acetamiprid	고추	2.0 → 1.0	2.0 유지	2009.3월 요청
6건	2작물			

일본 잔류기준 설정을 위한 한국의견안 반영품목

(2010.7.31)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0.01)	1	2005년 반영고시
Tebufenpyrad	피망	(0.01)	0.5	〃
Fluazinam	피망	(0.01)	0.3	〃
Zoxamide	피망	(0.01)	0.3	〃
Dithianon	피망	(0.01)	0.3	〃
Prochloraz	피망	(0.01)	1	〃
Iprovalicarb	토마토	(0.01)	2	〃
Flusilazole	딸기	(0.01)	0.5	〃
Flutolanil	딸기	(0.01)	5	〃
Indoxacarb	오이	(0.01)	0.5	〃
Difenoconazole	오이	(0.01)	1	〃
Fluquinconazole	오이	(0.01)	0.1	〃
Bitertanol	가지	(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0.01)	0.3	〃
Cyazofamid	인삼	(0.01)	10	2007.10.30일 고시
Tebuconazole	고추	(0.01)	5	2008.6.30일 고시
Flutolanil	인삼	(0.01)	1	2009.6.4일 고시
Fenamidone	고추	(0.01)	3	2009.6.4일 고시
Novaluron	고추	(0.01)	0.7	2009.6.26일 반영
Acequinocyl	고추	(1→0.01)	1.0	2009.6.26일 반영
Tolylfluanid	인삼	(0.01)	0.05	2010.2.3일 반영
Tolylfluanid	고추	(0.01)	1	2010.2.3일 반영
22건	8작물			

※ 고려인삼과 깻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로 분류

돈육 차액관세 제도

일본은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UR 협상 후에도 차액관세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차액관세제도는 기준액을 정하고, ① 수입 가격이 낮아 기준액 이하로 수입될 경우 기준액과 수입가와의 차액 전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②가격이 높아 기준액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는 종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일본은 동 제도를 돈육(부분육, 가공육) 뿐만 아니라, 유제품, 완두콩, 팥, 쌀·보리가루

등 곡류, 커피 조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차액관세 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한국산 돈육(부분육, 가공육)의 대일 수출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 2009년 국내 부분육(안심, 등심, 후지 등)의 수출부위 평균가격은 315엔/kg이나, 차액관세 기준은 524엔/kg이므로 209엔/kg을 관세로 징수

對일본 돈육 수출현황

(단위 : 톤/천미불)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對일본	수출량(톤)	789	0	0	0	0	96
	수출액(천$)	3,338	0	0	0	0	563
對기타국	수출량(톤)	1,148	83	1,423	187	270	452
	수출액(천$)	1,995	353	5,248	477	1,181	1,170
합계	수출량(톤)	1,937	83	1,423	187	270	548
	수출액(천$)	5,333	353	5,248	477	1,181	1,733

* 2000년 구제역으로 대일본 돈육 수출 중단, 2004년 제주도산 돈육은 수출 재개되었으나, 2004.11월 돼지열병 때문에 다시 수출 중단, 작년부터 제주도산 돈육 수출재개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명령 검사제도

일본은 2008.3.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명령검사를 받게 되었다. 2009.8.6일 맵쌀(흑미) 20kg, 2009.10.28일 무잎 30kg, 비름나물 10kg 등 휴대물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동 품목 전체에 명령검사 적용기준을 강화(기존 5%만 모니터링 검사에서 → 30% 모니터링 검사로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14개 품목 중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깻잎, 풋고추 등 6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전수검사)을 실시 중이며, 오이의 경우 1996년 전수조사 실시 후 2003년에만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아직도 미해제 상태이다. 이와 관련, ID 등록업체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시켜주고 있으나, 일본의 검출치 기준이 너무 높은 수준이다.

※ 2010.4.1일 미나리, 상추, 부추, 쪽파 등 4개 품목 전수검사에서 30%모니터링 검사로 완화

※ 對일 수출 채소류 ID 등록제 :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 품목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면제하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對일 수출품의 통관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일본정부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운용 현황

(2010.7.31일)

품 목	검사태세	발동일	검출성분	기준치 (ppm)	비 고
오이	검사 명령 (전수 검사)	1996.6	디클로르보스	0.2	ID등록업체 면제
청(풋)고추		2000.3	에토프로포스	0.02	ID등록업체 면제 (2008.11월)
홍고추		2001.1	에토프로포스	0.02	
미니토마토 (방울토마토)		2000.11 2008.3.28	EPN 플루퀸코나졸	0.1 0.01	ID등록업체 면제
파프리카		2003.4 2006.1 2009.4.20	에토프로포스 클로르피리포스 플로니카미드	0.02 0.5 0.4	ID등록업체 면제
깻잎		2004.12.10	비펜트린	0.1	ID등록업체 면제 (2008.11월)
풋(청)고추	모니터링 검사강화 30%	2009.6.2 2010.4.6	플로니카미드 디페노코나졸	0.4 0.01	ID등록업체
고추가루		2009.8.3	헥사코나졸	0.02	홍고추 포함
멥쌀(흑미)		2009.8.6	헥사코나졸	0.02	
신선대추		2009.10.28	테부코나졸 피라클로스트로빈	0.01	
무잎(무청)		2009.10.28	디메토모르프	0.01	
비름나물		2009.10.28	헥사코나졸	0.01	
미나리		2010.4.1	클로르피리포스	0.01	(2003.1월 명령검사)
부추		2010.4.1	클로르피리포스	0.01	(2004.8월 명령검사)
쪽파		2010.4.1 2010.4.1	프로사이미돈 클로르피리포스	5.0 0.01	(2004.11월 명령검사)
상추		2010.4.1	프로사이미돈	5.0	(2007.2월 명령검사)

※ 기타가지과(고추)에 대한 Tebuconazole의 일본기준 상향조정(2008.6.30일) : 0.01 → 5.0 ppm
※ 파프리카 ID등록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강화(2009.4.20일)조치는 2009.8.25일로 해제

한·일 공통분포 해충 검역 문제

국제기준(국제식품보호협약 제2조)에 의하면 검역병해충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되는 병해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178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 당국에 요청한 바, 일본은 2008.9.9일 9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마지막으로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이 없는 상황이다.

※ 우리측에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53종 중 32종은 인정한 반면, 21종은 아직도 미지정 상태

정부 조달 분야

입찰·계약 제도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에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이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에 회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 성·각 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달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1조 3,648억엔으로 전년대비 약 2.8% 감소(조달 건수도 12,741건으로 전년대비 약 1.3% 감소)하였다.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엔)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10,585 (+5.6)	9,130 (–13.7)	12,825 (+40.5)	14,037 (+9.5)	13,648 (–2.8)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3,418 (–14.0)	11,548 (–13.9)	12,196 (+5.6)	12,902 (+5.8)	12,741 (–1.3)

한편, 일본의 건설사업의 규모는 2008년도 약 47조 2,300억엔으로서 그 중 정부부문의 공공사업분야가 약17조 3,900억 엔이고 민간분야가 약 29조 8,400억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년도별 건설분야 투자실적

(단위: 억엔)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계	528,246	515,676	513,281	479,000	472,300
공공분야	208,282	189,738	177,965	171,500	173,900
민간분야	319,964	325,938	335,316	307,500	298,400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조달청을 통한 집중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

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사용언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상호에 대한 명예와 단골손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전통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나와바리)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08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3.0%, 건수대비 2.0%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2009년 일본 세관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건수는 21,893건으로,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모방품 백 종류의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전년 대비 17.1% 감소하였다. 수입금지 점수는 1,044,022점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연초, 신변 잡화, CD 등의 증가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입금지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로부터의 건수는 200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중국	9,440	48.2%	16,116	71.1%	21,529	81.5%	18,893	86.3%
한국	8,720	44.5%	4,527	20.0%	3,287	12.4%	1,480	6.8%
기타	1,431	7.3%	2,018	8.9%	1,599	6.1%	1,520	6.9%

지식재산 권리별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 실적(2009)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기타
건수(%)	0.1	0.4	97.5	1.9	0.1
점수(%)	2.5	7.8	73.6	16.0	0.0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절차(규정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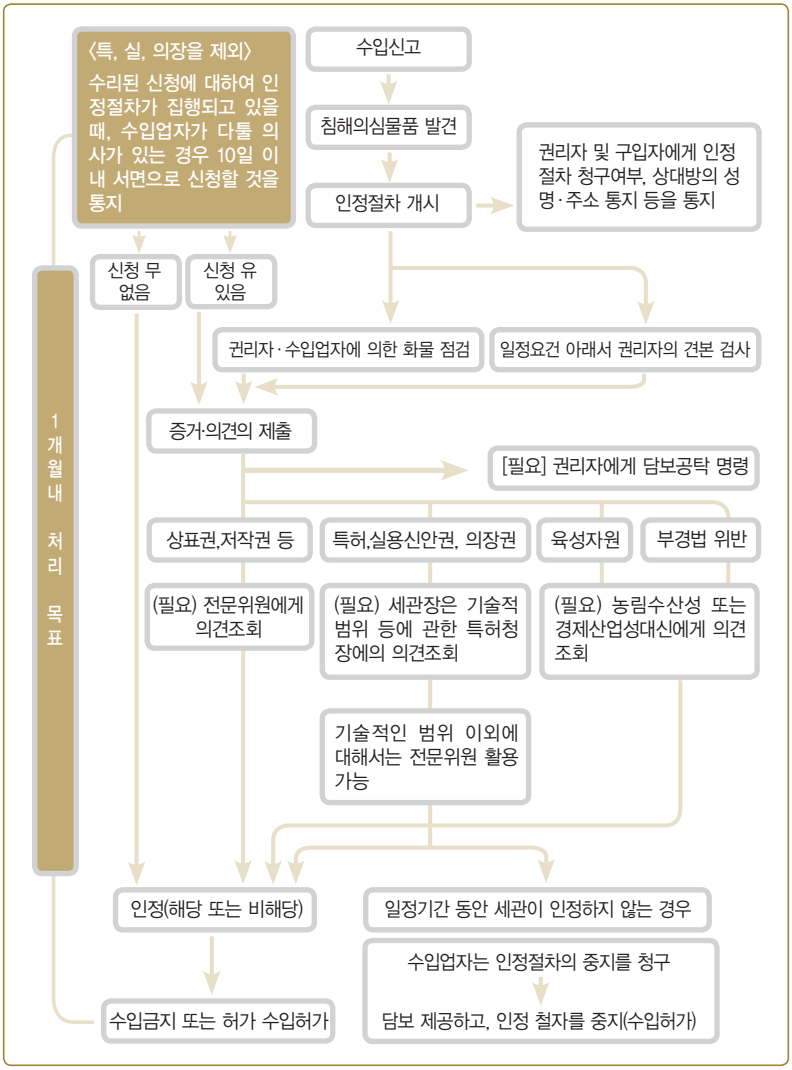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특허권자 등은 신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등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합산한 공탁금을 기간 내(통상 10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i)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일실이익(과세 가격의 20% 정도를 기준으로 함)
  ii)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의심화물의 창고보관료 상당액
  iii) 기타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손해(예를 들어, 화물의 손상, 변질, 국내 매수 예정인으로부터 청구될 위약금 등)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는 10일 이내에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에게 권리를 침해했다는(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한다.

* 수입업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침해 여부를 인정하고, 침해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몰수 폐기한다.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상기 증거, 의견에 의해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등 관계성청) 및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화물이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인정결과 및 이유를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정절차를 완료한다.

* 권리자에 의한 수입금지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수입금지에 따른 수입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담보(신청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특허권자 등은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수입화물이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청구할 수 있다(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특허청장에게 의견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조회 기간을 30일로 하고 있으므로, 인정절차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되지만,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심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수입자의 대응

i) 통지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ii)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을 소정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
iii)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의 수입에 대한 동의서를 권리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이 허가된다.
iv)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ii)의 자발적 처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몰수한다.

중국

한·중 경제관계 현황

1992.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9년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의 매우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09년까지 22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한·중 교역 1천억 달러 시대에 진입하였다.

2009년 한국과 중국간 총 교역규모는 1409억 달러(한국측 통계)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5.1% 감소한 867억 달러, 수입은 −29.5% 감소한 54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한국은 중국에 대해 32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09년도의 경우 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교역액이 전년대비 −16.3%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는 상반기에 893억불을 기록하여 경제위기 이전의 교역수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한중 양국 교역량은 1562억 불(對중국 수출 1,025억 달러, 수입 537억 달러)이었다. 양국간 교역량 통계 수치의 이러한 차이는, 제3국(특히 홍콩) 경유 대중국 재수출 물품에 대한 계상 여부 및 부대비용·운송료·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계상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중국측 통계)는 지난 2009년 실제투자기준으로 27억 달러였고, 2009년까지 누계기준으로는 444.2억 달러였으며 2010.9월까지의 총 투자금액(누계)은 46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5.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합의한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2,000억불 교역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08.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계기로 통신, 금융, 에너지 등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 경제현황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이래 지난 30년간 년평균 약 10%라는 경이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의 제조 공장 및 거대한 소비시장, 국제 원자재와 자원의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1987년 중국의 GATT 가입 신청이 15년간의 협상을 통해 2001년 12월 WTO가입으로 실현된 이후, 중국은 대외무역법, 회사법, 파산법, 물권법, 반독점법, 노동계약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개정하여 시장경제제도를 정비하였다. 후진타오 집권 이후 중국은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기본 경제정책으로 표방하고 산업, 금융, 기업, 서비스업, 농업, 과학기술 등 중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외개방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WTO를 최우선 정책에 두고 있으며, DD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나, 세계화와 함께 시대적인 조류인 지역경제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FTA 협정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SACU, GCC와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인도, 한중일, 스위스와 정부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중이다. 2010.5월 공동연구를 종료한 한국과는 정부간 사전협의가 진행중이다.

중국 경제는 지난 5년(2005~2009년)간 년평균 10.6%의 경제성장과 16.7%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8년 하반기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받아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성장률은 다시 회복될 전망이다. (2010년 3/4분기까지의 성장률 10.6%) 중국 정부는 2010년도에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융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제반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경제 주요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국내총생산 (GDP, 조불)	2.7 (세계 4위)	3.3 (세계 4위)	4.4 (세계 3위)	4.9 (세계 3위)
경제성장율	11.1%	11.9%	9.0%	9.1%
1인당 GDP (불)	2,000	2,461	3,130	3,678
무역액 (억불)	17,607 (23.8%) 세계 3위	21,738 (23.5%) 세계 3위	25,615(17.8%) 세계 3위	22,073(-13.9%) 세계 2위
무역수지흑자 (억불)	1,775	2,622	2,955	1,961
FDI (억불)	630	748	924	900
외환보유고 (억불)	10,663 (세계 1위)	15,282 (세계 1위)	19,460 (세계 1위)	23,992 (세계 1위)

한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2006년 제11차 5개년(2006~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과거 '성장일변도 정책(先富論)'으로 빚어진 소득격차와 내수부진 등 불균형 문제를 감안하여 '균형발전(均富論)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 성장을 추구하고, 또한 가공수출 위주에서 벗어나 R&D·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0.10.27일 발표된 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건의에 따르면 12.5 규획의 경제사회발전목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주민소득의 증가, ▲사회건설강화, ▲개혁개방이다. 또한, 경제발전방식전환의 기본 방향으로는 ①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②과학기술진보 및 창신, ③민생보장 및 개선, ④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사회건설 ⑤개혁개방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12.5 규획은 내수확대 특히 소비수요확대를 위해, 국내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여 소비, 투자, 수출이 조화롭게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하였다. 또한, 대외개방이 수출 및 외자도입 위주에서 수입 및 수출, 외자도입 및 대외투자 병행중시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12.5규획 건의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세계경제질서 형성 및 지역협력에 참여하여, 국제경제체제 개혁 및 호혜적인 다자무역체제 건립을 추진하고,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자유무역협정 실시 전략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증가시키로 하였다. 국유기업, 독점분야, 행정체계, 재정 및 세수 체제, 금융체제, 요소시장, 사회사업체제 등 각 분야 개혁을 추진하며, 농업현대화, 산업 핵심경쟁력 제고, 서부대개발 등 지역발전 및 도시화, 자원절약형/환경친화적 사회건설,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기초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연성파워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외국투자유치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국제수지흑자 누적, 투자과잉, 환경오염, 외국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외자 평등과 선별적 외자유치 전략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과거 우대정책이 축소되고, 세무, 노무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외자기업의 투자 시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R&D센터 설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08.1월부터 내·외자기업 법인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한 '내·외자기업 기업소득세 통합법안'(2007.3월 제정)이 시행되었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 등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2006.9.8 시행)을 제정하였으며, 2008.8월에는 외자기업의 시장독점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반독점법(2007.8월 제정)이 시행되었다. 중국은 2007.6월 노동계약법을 공포(2008.1월 시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연성감소와 인건비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남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 견제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중국 중앙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이러한 경제정책 변화를 숙지하면서, 부상하는 중국 내수시장

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우리정부로서는 중국측의 변화 속에서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구함으로써 한-중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되도록 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과 동북아 안정 및 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2006.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인하를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 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에서 2005년 10%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품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0%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1.1.1일부터 관세의 전체 수준을 재인하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관세인하 조정을 통해 중국의 평균 관세수준은 종전의 16.4%에서 15.31%로 인하되었으며 평균 인하율은 6.6%에 달했다. WTO 양허내용에 따라 2002.1.1일부터 총 4,315개 품목(전체의 59%)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평균 관세율이 12%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HS 코드)은 7,316개로 확대되었다. 2003.1.1일부터 3,000여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 관세율이 11%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HS 코드)은 7,445개로 확대되었으며, 2004.1.1일부터 2,414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이 10.4%로 인하되었다. 2005.1.1일부터 1,000개 품목의 세율

을 인하·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이 9.9%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 분류 항목은 7,550개로 확대되었다. 2006.1.1일부터 143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유지하였고, 수출입세칙 품목 분류 항목은 7,605개로 확대 되었다. 2007.1.1일부터 47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유지하였고, 수출입세칙 품목 분류 항목은 7,646개로 확대되었다. 2008.1.1일부터 45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유지하였고, 수출입세칙 품목 분류 항목은 7,758개로 확대되었다. 2009.1.1일부터 16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유지하였고, 수출입세칙 품목 분류 항목은 7,868개로 확대되었다. 2010.1.1일부터 6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유지하였고, 수출입세칙 품목 분류 항목은 7,923개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중국–아세안 FTA' 조기정착을 위한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조기자유화(Early Harvest)' 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2005.7.20일부터 7,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09.1.1일부터 6,750개 품목에 대하여 최혜국세율 대비 평균 80%의 특혜폭을 유지하였으며, 2010.1.1일부터는 6,800여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관세율 0.1%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99%의 특혜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경제 무역 관계 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해 2004.1.1일부터 홍콩산 제품 374개 품목과 마카오산 제품 311개 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약품, 플라스틱고무제품, 방직원료 및 방직품, 귀금속, 식품, 제지, 음반등과 마카오의 의류, 반도체, 규산염시멘트, 동박, 플라스틱포장용지 등이 영세율 적용이라는 혜택을 입었다. 계속해서 2008.1.1일부터는 2,168개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고, 2009.1.1일부터는 2,220개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10.1.1일부터 2,796개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2005.1.1일부로 모든 정보통신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수입관세율도 3.0L 이하의 소형승용차가 2003년 38.2%에서 2004년 34.2%로, 3.0L 이상 자동차는 43.0%에서 37.6%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30%로 하락한 이후, 2006.1.1일 28%로 하락하고 2006.7.1일부로는 25%대

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8.9%에 달하고 농산품은 15.2%까지 하락했다.

중국의 관세인하는 수입증대 및 그에 따른 관세수입증가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는 수입우대정책의 점진적 폐지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조치와 밀수방지강화 등 관세보호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체 관세수입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관세인하 조정 후 각종 제품의 평균 관세율 (2010년 현재 기준)

품 목	관세율(%)	품 목	관세율(%)
화공재료	5.9	자동차	25.0
농산품	15.2	자동차 부품	10.0
공산품	8.9	화장품	12.8
IT제품	0	콩기름, 팜유, 유채씨기름	9.0
전자제품	9.0		

표 2.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12	43.2	–	2,898
1993.12	35.9	16.8	3,371
1996. 4	23.0	35.9	4,900
1997.10	17.1	26.0	4,874
1999. 1	16.7	2.4	–
2000. 1	16.4	1.7	–
2001. 1	15.3	6.6	3,462
2002. 1	12.0	21.5	5,332
2003. 1	11.0	8.3	3,000
2004. 1	10.4	5.4	2,414
2005. 1	9.9	4.8	900
2006. 1	9.8	0	143
2007. 1	9.8	0	47
2008. 1	9.8	0	45
2009. 1	9.8	0	16
2010. 1	9.8	0	6

한편 한국과 중국은 2000.3.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

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이후 ▷757개 품목(2003년) ▷902개 품목(2004년)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2005.11월부로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9.1일부로 3차 관세 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하율은 27%에 달하였다. 2008.1.1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4%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1.1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10.1.1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은 전체적으로 평균 8.9%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이들 회원국 간 역내교역규모는 2005년 1,343억 달러로 중국 전체 교역총액의 9.4%를 차지하였고, 2009년에는 2,065억 달러에 달하여 역시 중국 전체 교역총액의 9.4%를 차지하였다. 향후, 관세인하로 역내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2002.1.1일 시행)을 발표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경우 2006년에는 83개 세목(HS 8단위)에서 2007년에는 10개 세목으로 축소하였으며 2008년에도 10개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무역 관련조례에 따라 화학무기 생산용 원료, 방사성 화학물 등 113개 세목에 대해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입허가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감시대상 화학품 64개,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

품 41개, 방사성 화학물 8개 등이다.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 경제 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5.1.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으며 2006.1.1일부로 중국은 콩유, 팜유, 유채씨유에 대한 수입관세쿼터관리제를 폐지하였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2001.12월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機電產品進口管理辦法(기계전자수입관리방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계전자상품수입쿼터관리실시세칙(機電產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하였다.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 관리 제도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 제도를 〈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 2002.1.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4.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2008. 1월 품목이 재조정되어 현재 751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 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상품의 分級관리제도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 2, 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 分級관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進口國營貿易管理貨物(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國營貿易專業公司(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進口指定經營管理貨物(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수입관리제도는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특

히 자동수입허가증 품목 중 덤프차(2개 품목), 30인승 이상인 디젤엔진 대형 승합차(1개 품목), 30인승 이상인 非디젤엔진 대형승합차(1개 품목), 자동차형 타이어 등 4개 품목과 공개입찰 대상 품목 중 에스컬레이터, 라디오 및 TV 수상기 부품, 광섬유 케이블, 非고속도로용 덤프차, 콘크리트 혼합기 등 5개 품목 등을 포함한 복잡한 수입관리제도의 조속한 철폐가 요구된다. 일시에 철폐를 하지 못하더라도 품목별로 철폐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입계량기구의 감독강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1996년 〈수입계량기구 강제검증 품목리스트〉와 〈수입계량기구관리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국가기술감독국이 발급하는 "型式認證書(형식인증서)" 또는 "臨時型式認證書(임시형식인증서)"를 반드시 취득토록 요구하고 있다. 2006.1월 중국정부는 新 〈수입계량기구 型式검증 품목리스트〉를 발표함으로써 1996년의 〈품목리스트〉를 폐지했다.

수입카메라 판매관리

1998.12.3일 〈進口照相機市場管理辦法(수입카메라시장관리규정)〉를 발표하여, "판매허가 표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카메라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 시 반드시 시장판매허가 심사·인가와 본체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특히 1996.8월에는 밀수 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新규정을 발표하였다.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1997.4월부터 新규정을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 주류의 면세조치는 폐지되었다.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商務部 機電産品進出口司(전자상품수출입공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機電産品

管理司(전자상품관리사)를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1998.11.1일부터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商務部 機電産品管理司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川皇崗)항, 阿拉山口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1999.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 환경보호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 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의 미개정에 따른 애로사항

미국은 1996.7.1일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섬유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여 노임이 낮은 중국 등에서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

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은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섬유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섬유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직물(fabrics)의 경우 종전에는 직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되, 다만 염색 및 프린팅 과정에서 2개 이상의 공정이 수반되면 그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원산지규정에서는 단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무조건 직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의류의 경우 종전에는 재단국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개정된 규정에서는 봉제·조립국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미국의 섬유 원산지규정이 이상과 같이 개정되었음에도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중국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한국의 섬유류 제조업체들이나 중국 등에서 봉제·조립(임가공 형태)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직조한 후 우리나라에서 염색·프린팅을 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직물이나, 우리나라에서 재단하여 중국에 수출, 봉제·조립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하여야 미국에서 통관이 가능하나, 중국의 원산지규정에는 〈한국〉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 원산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아 관련업체의 불편이 크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금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S/G조례〉(2002.1.1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

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2010.10월말 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건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들어 신규로 조사가 개시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의 협력 강화로 한중간 교역규모의 급성장에 비해 최근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제소건은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중국의 對韓 반덤핑규제 발동 건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0월
1	1	2	1	0

그러나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2010.8월 아국산 TPA(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원심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2~3%의 낮은 마진율을 도출하였다. 동 케이스는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 중 가장 큰 규모(2008년 수출액 28억불)였으나,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황산 및 PE/PP 등 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반덤핑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 정부 및 업계는 중국 업계와 협의를 통해 무역구제 절차를 밟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1) 내·외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법인세)제 통일

중국은 그간 내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조례를 적용하는데 반하여, 외자기업에는 외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규정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는 외자유치에 긍정적 작용을 하였으나, 반면에 외자기업의 탈세행위, 조세우대 적용을 받기 위한 자국기업의 가짜 외자기업변신 등 경제왜곡현상, 전체 내자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단일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다가 2007.3.16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내외자기업기업소득세통합법안」을 표결 통과시켰으며, 2007.11.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관련 「실시조례」를 통과시켜 2008.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신기업소득세법의 핵심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업소득세법의 핵심내용(2007.3.16 공포)**

가. 세율 통일

- 25% 기본세율(33% 적용기업 & 공포 후 신설기업 2008년부터 적용)
- 비거주자기업 경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 : 20%적용(조약우선)
- 경감세율 적용
  - 하이테크기업 : 15%
  - 중소 영세기업 : 20%
- 구체적 세부사항은 실시세칙에서 정함
  - 하이테크 기업도 과학기술발전과 부합되도록 점차 조정
  - 영세기업은 자본금, 종업원 수, 이윤규모 등 세부조건 명시

나. 기존 세제우대 폐지

(1) 15%, 24% 경감세율 적용 폐지(5년 과도기)

(2) 정기 감면세(2면3감) 폐지(5년 내 잔존기간)

(3) 수출비중 70%이상 생산형기업의 2면3감 종료 후 계속 적용하던 50%감면세는 과도기 없이 2008년부터 폐지

다. 우대세제 유지분야

(1) 산업우대 중심

- 첨단, 친환경, 에너지절약산업, 창업투자기업
- 1차산업(농/임/목/어업) 기초시설투자
- 인프라 산업(항만, 부두, 철로, 도로, 발전소, 댐 등)

(2) 지역우대 보완

- 경제낙후지역, 소수민족지역, 자연재해지역

라. 과도이행기간(2007.3.16 신법공포전 설립된 구기업)

(1) 15%, 24%세율 적용되던 기업은 5년 과도기(매년 2%씩 인상)

(2) 정기 감면세(2면 3감)우대 수혜중인 기업은 잔존기간만 적용

예) 기 3년 혜택을 받은 기업은 남은 2년간 적용후 감면기간 만료

(3)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기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2008년부터 감면세 수혜기간을 기산함

예) 2008년부터 4년간 적자후 5년차 첫 이익 발생된 경우라면, 마지막 당해연도만 감면 적용받으면 감면기간 만료됨.

※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 국무원이 규정하는 정책적 특정지역에 신설되는 국가중점지원 하이테크산업은 15%세율 및 2면3감 적용

마. 과세소득의 稅前 공제항목 통일

- 인건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가속상각 등 각종 손비 처리항목에 대해 내·외자기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바. 특별납세조정(탈세방지 규정) 제6장에 명시

■ 신 기업 소득세법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시 사 점
제41조	– 독립거래가격원칙의 명확화	– 기존의 독립거래가격원칙(정상가격원칙)의 강화 –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시 독립가격 원칙 의거 배분
제42조	– APA 권리의기술	– APA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세무관리 방안 제공
제43조	– 이전가격정보의 정기 제공	– 이전가격 문서화규정의 근거조항이 될 것으로 예상
제44조	– 세무당국에 이전 가격관련조사결정 권한부여	– 동 조항을 근거로 향후 이전가격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제45조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정의	–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내용
제46조	– 과소 자본세제 규정	– 자본투자 활성화도모(초과지급이자 손금 불가)

조 항	내 용	시 사 점
제47조	– 임의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에 조정권한 부여	– 모든 거래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을 갖고 이루어져야 함.
제48조	– 조정분 가산이자 징수	– 패널티 성격, 10년분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영향 예상

- 특히 독립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적 영업목적이 결여된 거래로 과세수입 또는 과세대상소득이 감소할 경우 세무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

- 기존의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기관의 조사관리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이전 가격 조사 시 10년간 소급적용 가능(국세발[2003]47호)

사. 기타

1) 납세의무자를 현행「독립채산 경영단위」에서「법인」으로 명기

- 법인세 체제로 전환한 바,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은 신기업소득세법 적용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법 적용

2) 법인을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으로 구분

- 거주자기업은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짐

- 비거주자기업은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짐

(2) 영업세 원천징수(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중국경내에 있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제공(가공, 수리, 보수서비스 제외),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가 영업세 과세대상이다. 서비스 제공 중 가공, 수리, 보수서비스는 증치세 과세 대상이다. 영업세와 증치세는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 영업세, 증치세 중 어느 하나가 과세되고 양자가 동시에 과세되지는 않는다.

비거주자라도 중국경내에 있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대가를 지불한 자(중국거주자)가 원천징수해 대리 납부한다. 비거주자 영업세 납부문제는 중국으로 소프

트웨어를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이 자주 당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은 1998년 '외국기업의 중국내 무형자산 양도에 따라 취득한 수입에 영업세를 과세하는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무형자산 양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 : 5%
- 교통운수업, 건설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 3%
- 유흥 오락업 : 5~20%

만약 하나의 영업행위가 재화의 판매(증치세 해당) 및 서비스 제공(영업세 해당)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혼합판매행위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각각 구분 경리해야 하며, 구분 경리하지 않으면 모두에 대해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3) 외자기업 세원관리

중국은 일선세무기관까지 외자기업의 세원관리를 담당하는 섭외세무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동 조직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 및 징수관리를 담당한다.

(4)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증치세 일반납세자용 증치세전용 영수증(한국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기타 증치세 영수증, 영업세영수증의 3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003.7.1일부터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증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하고, 손으로 기재하는 전용영수증은 폐지되며, 2003.10.1일부터는 수기 증치세전용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5) 투자기업의 세무 상 유의사항

◇ 개인소득세 과세강화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진출기업 본사 주재원등이 중국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중국의 세법규정에 의거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 과세당국은 동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문

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본사 파견 현지기업의 직원일 경우 183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현지기업 즉 중국경내에서 지급한 임금은 개인소득세를 과세
※ 중국 경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그 급여·임금에 대해 중국경외나 경내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 본사 파견 사무소 수석대표나 대표일 경우 183일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임금에 대해서는 중국경외나 경내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

특히 2005.10.1일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관리방법」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 납세자 인별로 소득 및 납세정보를 축적한 인별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며
- 개인소득세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쌍방신고 하여 세무기관이 이를 교차대조하며
- 고소득업종 및 고소득개인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고소득업종군에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 수출환급세 조정 및 가공무역 제한조치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무역흑자 과잉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수출지향 경제성장에서 질적성장 방식으로의 중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율 인하 또는 취소 조치가 있었으며, 노동집약형 산업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제한조치를 발표하여, 가공무역 제한류에 포함되면 원자재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이 정한 은행구좌에 납부해야하며 수출확인절차가 완료된 후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게 되므로 관련기업들의 자금압박이 이전보다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산업 부양을 위해 2008.8월 이래 7번이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로 중국의 평균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12.4%에서 13.5%로 상승하게 되었다.

시행일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내용
08.08.01	방직품, 의류 품목 등 11%→13%로 인상
08.11.01	방직품, 완구, 가구 등 3,486개 품목 9~13%→11~14%로 인상
08.12.01	노동집약형 제품 3,770개 품목 5~13%→9~14%로 인상
09.01.01	기계전자제품 553개 품목 11~14%→13~17%로 인상
09.02.01	방직품 및 의류 품목 14%→15%로 인상
09.04.01	경공업, 강철 및 IT제품 등 3,802개 품목 5%~17%로 인상
09.06.01	노동집약형, 기계전자 등 2,600개 품목 5%~17%로 인상

한편, 2009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안정화 되면서 중국 과세당국은 2010.7.15일자로 일부 고에너지 사용 및 고오염물질 배출 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 환급세를 취소하였다. 이번 조치는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7차례 수출 환급률을 상향조정한 이래 역으로 수출환급세를 취소하는 첫 조치로 향후 중국의 세수정책개혁이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환경보호 작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거시경제를 조정하고, 환경오염, 자원문제, 고부가가치형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 중국의 경제·산업동향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전가격조사 가능성 증가

중국 세무총국은 외자기업 상당수가 수입단가 등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의 방지를 위해 2004.7월 〈세금회피방지(反避稅)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세무 총국의 통지〉를 관하 세무기관에 발령하였다. 동 통지에 따르면 세금도피방지사업의 주요 대상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발생시키는 외국투자기업이며 특히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 낮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계속 확장하는 기업, 그리고 큰 폭의 이익변동이 있는 기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관리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와 관련 자료를 database화하여 각 지역 세무당국뿐 아니라 공상국, 세관 등 연관 행정기관과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여 2004.9월 〈관련기업간 업무왕래예약정가실시규칙〉을 공포하고 내부 고발자에게 보상하는 등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동 규칙에 따르면 특수 관계 기업 간 거래에 있어 독립기업 간 거래조건과 부합여부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8년 신기업소득세법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본 법에 명시한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9.1.8일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을 국세발2호 문건으로 발표하였으며, 동 지침에서는 OECD 이전가격지침을 모델로 하여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 기업 소득세법 실시로 인한 외자기업의 실질세율 상승이 관련 기업 간 이익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거나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기업은 동 통지의 내용을 파악하고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사전평가, 특수 관계 기업 간 가격리스트 합의서 사전작성, 세무전문가 및 이전가격 전문가의 자문활용 및 APA(사전가격승인제도)신청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으로 이전가격의 위험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국세발[2009]2호)의 주요내용

1. 이전가격검토보고서 관리

1) 동기자료(同期資料) : 기업은 연도에 따라 이전가격검토보고서를 준비·보존하고 세무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계할 수 있음

2) 이전가격검토보고서 준비의무 면제요건
- 과세연도에 발생한 특수 관계자 구입과 판매금액 2억 위안 이하, 기타 특수 관계자 거래금액 4천만 위안 이하
- 특수 관계자 거래가 사전가격합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 외국인 지분이 50%이하이고 경내에서만 특수 관계 거래가 발생한 기업

2. 이전가격조사와 조정

1) 비공개 정보자료 사용의 가능

2) 4분위법을 채용하여 기업의 이익수준을 분석·평가할 때 조사대상기업의 이익수준이 비교대상기업 이익수준의 중위값 보다 낮을 때 과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중위값 이상으로 조정

3) 이전가격 과세조정 후 관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3. 원가분담약정

1) 원가분담약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원가분담약정은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구매 및 마케팅활동에 적용

2)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는 개발되거나 양수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특허권사용료가 아니라 원가분담비용임을 강조

3)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스스로 분담한 원가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

4) 원가분담약정을 맺는 경우에는 약정 후 30일 이내에 각급 국가세무국을 경유하여 국가세무총국에 등록

4. 사전가격합의

1) 사전가격합의 신청 요건
- 기업의 연간 특수 관계자 거래금액이 4000만 위안 이상
- 법에 따라 특수 관계자 거래 신고의무를 이행
-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검토보고서를 준비, 보관 및 제출

2) 사전가격합의를 정식으로 신청한 당해 또는 이전 연도의 특수 관계자 거래의 이전가격조사와 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전가격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예비회의(Pre-filing meeting)의 익명성 보장

4) 사전가격합의 결과의 소급적용 가능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및 제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①상품검사기구 시행 '種類表' 또는 '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검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種類表' 및 '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④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 품목을 제외한 것을 수출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種類表' 및 '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자를 대신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품 검사제도 및 관련 품목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입상품 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CCC 단일강제인증제도 실시

중국정부는 2001.12.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2001.4월 국가질량기술감독국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 11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2003.8.1일부터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제품검사 → ④공장심사 → ⑤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평가를 거쳐 심사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90일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2003.8.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4년 4월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2차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고, 2005.8.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6.12.1일부터는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CCC 인증대상 품목은 22개 분야 159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1차 강제인증 품목

연 번	분 류	품목수
1	전선 및 케이블	5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
3	저압형 전기장비	9
4	저공률 전동기	1
5	전동공구	16
6	전기용접기	15
7	생활용 전기제품	18
8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
9	정보기술장비	12
10	조명장비	2
11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9
12	자동차 및 안전부품	4
13	자동차 타이어	3
14	안전용 유리	3
15	농기계 제품	1
16	라텍스 제품	1
17	의료기기	7
18	소방기기	3
19	기술안전보호제품	1
20	용제형 목기도료	27
21	자기타일	
22	시멘트 동결방지제	
	합 계	159

2007년 들어 중국정부는 6.1일부터 유모차, 보행기 등 아동용 이동보조기구, 전기완구, 플라스틱완구, 장난감 총 등 탄환발사완구, 금속완구 및 인형 등 6종의 완구제품에 대해 CCC인증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2006.3.1일부터 중국질량인증센터(中國質量認證中心) 등 지정인증기구에 완구제품 CCC인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중국내 연간 완구생산규모가 500억 위안에 달하고 완구생산기업도 광동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8,000개사가 포진해 있는 등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중국산 완구제품 품질하자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중국내에서도 완구관련 사고가 늘면서 중국산

완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CCC 인증취득 대상 완구류

HS 코드	세부 품목
8712.0081	아동용 자전거
8715.0000	유모차
	보행기
9501.0000	완구 자전거, 기타 완구차
9502.1000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9502.9100	정적 플라스틱제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9502.9900	기타 정적 플라스틱제 인형용 완구부품
	기타 인형용의 완구부품
9503.1000	완구전동기차 및 부품
9503.3000	정적 플라스틱 조립식 완구
	정적 금속 조립식 완구
9503.4900	전동 동물완구
	정적플라스틱 동물완구
	비전자칩부팅식 플라스틱 동물완구
	정적금속 동물완구
	비전자칩부팅식 금속동물완구
9503.5000	완구용 악기류
	정적 플라스틱 완구용 악기류
9503.6000	정적 플라스틱 퍼즐
	정적 금속퍼즐
9503.7000	기타 정적 플라스틱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
	기타 정적 금속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
9503.8000	아동용 전동차
	아동용 전자부팅식 완구
	비전자칩 부팅식 플라스틱 완구
	비전자칩부팅식 금속완구
9503.9000	영상신호 주파수를 보유한 완구
	전자칩부팅식 완구
	기타 정적 금속완구
	탄환발사완구(완구용 화살,완구용 표창 등)

환경관련 규제 및 투자여건

환경관리 여건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경제개방 이후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투자증대로 오염증가 추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2009년도 중국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2009년에 오염물질의 대표적 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아산화황 배출량은 각각 전년대비 3.27%와 4.60%가 감소하였다.

하천 중에는 黃河와 海河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호소는 대부분 부영양화 상태를 보이고 있고, 해양의 수질은 양호한 상태이나 양식해역 위주로 적조가 연 68회 발생하였다.

전국 도시의 대기오염상황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양호하나 일부 도시는 오염정도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전국 488개 측정 대상 도시 중 산성비가 발생한 도시는 258개로 전체의 56.9%를 차지하는 등 산성비 오염은 여전히 심각하다.

2009년 공업 고체폐기물 발생량은 204,094.2만 톤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고, 배출량은 710.7만 톤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다. 농촌의 환경은 생활오염, 비점오염 및 공업·광업오염 등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으며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관리정책 및 법제 현황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7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국가 중장기환경보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2005년에 "제11차 국가환경보호 5개년계획"('06~'10)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 2010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이산화황, COD기준)의 10% 삭감을 목표로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 확충, 산업체 오염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환경관리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에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

환경오염 매체별 5개 법률과 '水법', '야생동물법' 등 생태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7개 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33개 환경보호 법규,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제정한 80여건(2006년 10건 제정)의 전문 규정이 있다.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09년에 추진된 주요 환경관리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담수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수 오염조사 평가사업, 엄격한 수자원관리제도 실시, 중점 유역 물 오염 방지 전문계획 실시상황 조사, 중금속 오염방지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방지법을 수정하여 총량통제, 자동차환경관리 및 처벌분야를 강화하고,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고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대중도시 고체폐기물 오염방지정보 공포, 위험폐기물 운영허가증 발급, 수입폐기물 및 위험폐기물 심사 강화, 전자폐기물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자연생태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해양보호구 건설 관리, 수산물 자원보호구의 건설 및 증식 방류, 농업야생물종 자원보호사업, 농촌 환경문제 처리방안 제정, 중앙농촌 환경보호 전문자금 조성, 농촌 음용수 수질관리강화, 농촌 메탄가스 이용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력발전과 원자핵 발전을 적극 확대하고, 농촌, 벽지지역 및 조건이 합당한 지역에 바이오매스, 태양광에너지, 지열, 풍력에너지 등 신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고, 3년간(2007~2010년) 조사를 통해 각종 오염원 및 환경과 관련된 11억개의 데이터를 축적하였으며, 녹색대출, 녹색보험, 녹색무역과 녹색세금 등 일련의 녹색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환경영향평가제도: 1979년 확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최초 규정한 이후, 지속 보완하여 2003.9월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으며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평가·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청정생산제도: 2003.1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생산심사방법〉을 2004.9월에 제정하였고, 세부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절차규정〉을 2005.12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한 기업에는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 배출총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생산자에게 제품의 회수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정보산업부는 전자제품의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을 제정(2006.2.28 발표, 2007.3월 시행)하였으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뿐 아니라 표시의무, 사전인증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에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를 발표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을 확정(2006.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

비율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2010년부터 생산자에게 자동차 및 포장재 회수·처리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이외에 중국정부는 오염물질 총량배출제, 환경친화기업 제도, 기업환경관리 평가제도, 배출권거래제 등을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에는 화력발전소 질산화물 방지기술정책(2010.1.27 실시), 위험폐기물 집중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기술 규범(2010.3.1 실시), 생활쓰레기 처리기술 지침(2010.4.22 발표),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 조제 환경안전관리방법(2010.5.1 실시),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 조례(2010.6.1 실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2010.10.15 실시)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시행하였다.

환경기초시설 투자여건

중국의 환경투자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1~2005년 중국의 환경보호분야 총 투자액(계획 기준)은 총 7,000억 위안에 달했으며 2006~2010년의 11.5경제계획 기간 중에는 투자규모가 총 13,750억 위안으로 10.5기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투자분야별 투자액규모는 환경기초시설 6,600억 위안, 산업체 오염원 개선 2,100억 위안, 신규건설사업 환경시설 3,500억 위안, 생태환경보호 1,150억 위안, 환경보호 관리 300억 위안 등이다. 11.5기간 중 중점투자 대상으로 8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위해폐기물처리(150억 위안), 주요 유역 도시오수처리(616억 위안), 도시폐기물처리(300억 위안), 발전소 탈황시설 설치(300억 위안), 생태구역 건설(40억 위안) 등이다. 중국정부는 재정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BOT 방식 등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능력이 구비된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익창출이 불투명하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외국기업들의 참여실적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집진시설, 배기가스 정화사업, 공장폐수처리시설 등과 같이 민간부문의 환경투자사업과 도시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재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 환경 관련 산업 투자여건

중국환경기술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수처리, 집진기술 등 기초 분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기초기술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종합 관리 능력과 핵심 설비의 설계·제조기술은 미흡한 실정으로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들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환경시장은 당분간 연 10%이상의 성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탈황시설의 경우 중국정부가 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분야로 2020년까지 연간 평균 80억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며 핵심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이다. 수질오염방지 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오수 처리율이 약 3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무한한 시장이 있으며 특히 산업체의 난분해성물질 처리기술, 중금속 처리기술, 탈질·탈인 분야 등은 낙후한 분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보인다. 폐기물은 주로 매립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사스 영향으로 소각처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해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의 소각시설 설치는 비교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분야도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서서히 확대될 전망이다. 매립지 침출수 처리기술, 소각시설의 설계부터 시공·운영에 이르는 종합엔지니어링 분야 등도 미흡한 분야이다. 이외에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계측장치 등 설비분야와 환경서비스산업(공정설계, 영향평가, 자문서비스 등), 토양복원 및 생태보호분야 등도 성장속도가 빠르므로 국내기업들이 주목해 볼 분야이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 폐지 및 고율의 관세 적용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1.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 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최근 많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52.5%에서 2004년에는 3.0L 이상 차량이 37.6%로, 3.0L 이하는 34.2%로 30%대까지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완성차 30%, 부품 14%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006.1.1일부로 자동차 수입관세율이 28%로 하락했고 2006.7.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하락했다.

(2)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 관리방법 시행

중국정부는 2005.4.1일부터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 관리방법〉을 시행하여 자동차 생산기업이 내수를 목적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해당부품의 완성차 특징여부를 자체 심사하여 완성차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품 관세율이 아닌 완성차 관세율을 적용키로 하였다.

이는 종전 중국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부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완성차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품과 완성차간 관세율 차이로 인해 자동차 생산기업이 조립생산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자동차 부품의 현지화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현지 조립형 반제품 수출을 해 온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부품의 현지화를 꾀한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4)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의견 실시

2006.12.2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실시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에 의하면 주요 구조조정 조치의 하나로 완성차 생산기업이 他地에 분공장을 건설시 전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비준 받은 생산능력의 80%에 도달해야 하며, 기존 생산능력이 국가비준을 받지 못했거나 정부관련 부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아래 기준을 초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단 승용차 10만대, SUV 5만대, MPV(다용도 승용차) 5만대, 기타 승용차 8만대, 대형트럭 1만대, 중형트럭 5만대, 경트럭 10만대, 소형트럭 10만대, 중대형 버스 5,000대, 경버스 5만대 등이다.

한편, 중외합자 자동차 생산기업은 합자경영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조속히 개선하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공장 건설 및 신제품 공고 신청 등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기업이 신제품 생산 시 가행성 연구보고서 또는 등록보고서에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생산능력 건설 및 생산준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상응한 생산조건구비 후 신제품 인증 및 생산이 가능하다.

(5) 자동차산업 진흥계획 발표

2009.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자동차 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상기 2006년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자동차 산업발전 목표와 내수 및 수출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소형배기량 자동차(1.6리터 이하)에 대한 취득세 감면(10%→5%), 농촌지역 자동차 보급, 노후자동차 교체 보조금 등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은 중국 자동차 기업이나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 조치들은 2011년에는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자동차제품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은 2007.3.1일부터 승용차, 상용차, 차제 및 부속품 등 자동차 제품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철강

(1)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 및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정부는 2005년 들어 철강산업의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철강수출 급증을 억제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5.4.1일부터 철강 반제품인 빌레트, 잉고트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2005.5.1일부터 일부 철강관련 원료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내지 폐지, 철광석 수입에 대한 자동허가관리제도 실시, 2005.5.19일부터 철광석, 선철, 철스크랩, 빌레트, 잉코트 등의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시 수출세 부과 등을 시행중에 있다. 2006.9.15일부터 중국은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스테인리스 열연 강판,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강재 등을 포함한 142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의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과거 11%에서 8%로 인하했다.

2007.4.15일부터는 일부 특수강재, 스테인레스 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종전 8~11%에서 5%로 인하하였으며, 일반탄소강, 열판, 형재, 와이어로드 등 83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었다. 동 수출증치세 환급 인하 또는 최소 품목 159개는 주로 2006.9.15일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11%에서 8%로 인하된 철강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번에 다시 환급율이 재인하 또는 최소되었다.

한편, 2007.5.20일부터 상기 2007.4.15일부터 수출증치세가 취소된 83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6월부터 선철, 철스크랩 등 반제품에 대하여는 15% 수출관세 세율, 완제품(탄소강와이어로드, 형재 및 기타 제품)은 5~10% 수출관세 세율을 적용하였다. 2008.1월 반제품의 수출관세 세율은 15%에서 25%로, long product는 10%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열판의 수출관세 세율은 5%이다.

철강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말미암아 2008.12.1일부터 67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가 취소되었고 2009.4.1일부터 냉연제품, precision pipe welding 등 제품의 수출 환급율은 13%로 인상되었으며 2009.6월 일

부 강재품목 및 철강제품의 수출 환급율은 9~13%로 인상되었다.

반면, 경제금융위기의 극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자 2010.7.15일부터 일부 철강재 제품에 대해 수출환급을 취소하였다.

중국산 원료 및 반제품의 수출증치세 등 관련 세제의 변동, 가공무역 억제 등에 따라 원료 구매가격 인상으로 전반적인 국내 철강사의 다소간의 원가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중국정부는 2005.7.20일 중국 철강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외자기업의 중국 철강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에 의하면 철강투자는 모두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외국 철강기업이 중국 철강산업에 투자하려면 자체 지적재산권 기술을 보유하고 전년도 조강량이 1,000만톤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국내 기존 철강사의 개조 및 이전과 결합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서의 건설은 불허하며, 원칙적으로 지배주주 참여도 불허한다.

(3) 조업중단 및 철거 철강기업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7.9.3일 2007년 상반기 '조업중단, 철거대상 낙후 생산능력기업명단'을 발표하였다. 최근 낙후설비를 가동하거나 낙후설비를 이용, 일부제품을 전환생산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과 환경오염이 심화되자 중국정부는 낙후설비 철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이외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7.8.18일 '낙후 제철용광로 등 도태설비를 다른 용도로 전환을 금지하는데 관한 긴급통지'를 각 지방정부에 하달해 향후 낙후 제철용광로를 기한내 철거하고 낙후설비를 철합금 생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철강 수출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나, 공급초과분이 결국 저가로 해외시장에 재수출되기 때문에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능력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7년 하반기부터 종전의 수출제

한 정책 위주에서 부적합 생산설비 철거와 조업중단 기업명단 발표 등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2007.4.27일 중국 국무원은 철강산업 낙후 생산능력 철거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하북성, 산서성 등 10개 주요 철강 생산지역 지방 정부간 제1차 '낙후 철강생산능력 철거에 관한 책임서'를 체결한 바 있다. 동 책임서에 따르면 중국은 11.5규획 기간중 책임서를 체결한 10개 지역의 3,986만톤 규모의 낙후 제철설비와 4,167만톤 규모의 낙후 제강설비를 철거할 계획이며, 철거대상 기업은 총 344개에 달한다.

(4) 철강산업 진흥계획 발표

2009.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철강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크게 2011년까지 철강산업 발전 및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중국 대형 철강회사를 중심으로 M&A를 장려함에 따라 국제적인 대형 철강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 외에 노후 설비 퇴출, 수출세 감면, 국제 통상압력 적극 대응 등으로 향후 철강 분야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유로 선진 철강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바, 이는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 중국 철강산업에 M&A 등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직물

(1) 고율의 관세 적용

對중국 수출 섬유제품 등은 대부분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수출용 원자재로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내수용 수출은 높은 관세부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의류의 경우 우리나라産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14~25%의 높은 관세부과로 인해 정상수출이 어렵다.

⑵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수출세 부과 및 취소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선진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유입확대 우려를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2005.1.1일부터 HS 8단위 기준 148개 품목에 대해 단위당 0.2~0.3위안의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당초 중국정부는 2005.5.20일 공고를 통해 2005.6.1일부터 동 품목중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내 섬유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여 2005.5.30일 전격적으로 148개 품목중 80개 품목과 기타 1개 품목 등 81개 품목에 대해 2005.6.1일부터 수출관세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미국 및 EU와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2005.5월 중국산 7개 섬유류 카테고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EU도 2005.5월 중국산 2개 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하였다. 중국은 EU와는 중국산 10개 섬유품목의 對EU 수출증가율을 2007년까지 8~12.5%선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 EU와 방직품 무역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율적 수출량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2006.1.1일부터는 52개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개당 0.2~0.3위안 종량세)를 취소했다.

상기 2005.6월 체결한 '중국-EU 방직품 무역협정'의 효력이 2007년 말로 만료돼 2008.1.1일부터는 EU의 중국산 방직품 쿼터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쿼터물량을 확보하기 쉬운 대형 국유기업들은 그 동안의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저가경쟁으로 시장점유를 노리던 중소형 외자·민영기업들은 동 협정의 해제를 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방직품 쿼터가 폐지되면 중국내 모든 방직기업들이 유럽 수출의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쿼터제 폐지가 EU의 보호무역정책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EU는 WTO상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 협정(SPS) 등에 근거해 환경보호, 수출입 상품품질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반덤핑 등 다른 보호무역 수단들도 대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3) 경직적인 원산지규정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통상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기·기계

(1) 엄격한 수입관리

중국은 전기·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등록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2002.1.1일부터 실행해오고 있는 수입쿼터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하여 매년 7.31일 전에 다음 해 쿼터량을 발표하여 분배·관리하고 있다.

특정제품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수입신고서 및 관련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상무부 판공실을 경유하여 상무부에 신고하면 심사 허가 후 기계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외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한다.

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기계·전자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관련국가법률·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기계전자제품 수입등록표가 발급된다. 외환관리부서와 은행에서는 등록표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입등록표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2)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적 장벽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7.1일부터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 총 62종(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화학품

수입통제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유독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03〉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2003.10.15)〉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최초 수입화학품'에는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하여 국가환경보호국에 수입등록된 것일지라도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1994.4월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 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 목록에는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에 신규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며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 2차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2006.1.1일부터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후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3.15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GB 12268) : 유독화학목록 : 기타〈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 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수입상이 모두 등록신청을 할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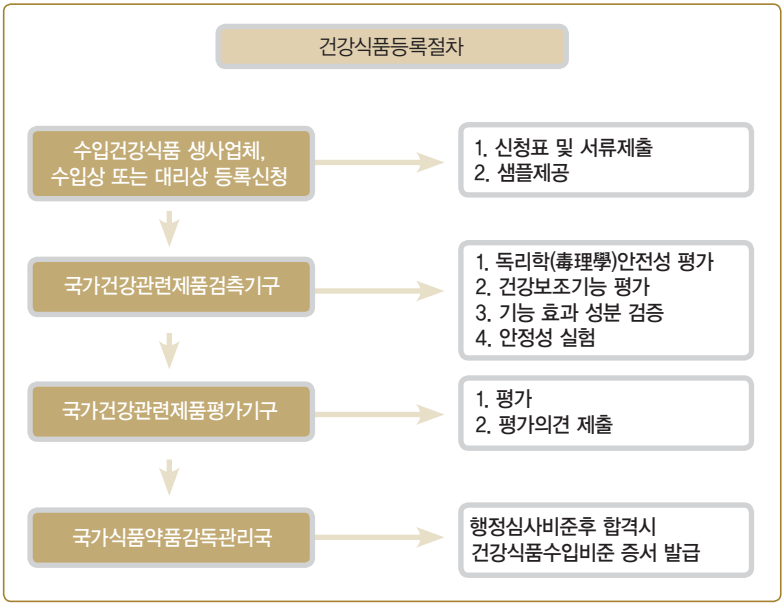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용은 심사비용만 건당 8,000위안이며 검사비용은 별도로 연구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배의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 제출해야 한다.

건강식품 등록 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검증기구가 출시한 검증보고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업무위탁서(대리기구 수속진행시)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2) 한·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중국에 수출하려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되는 사례가 있으며,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금의 경우 아질산염에 대한 검

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식품안전기준전문가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 항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요청된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스탈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출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9.1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2007년 특별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문식품수출증명서(수출국정부발행)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년들어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정비하고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시험항목도 확대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⑶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4.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 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울 수 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2004.7월에는 2005.10월부터 새로운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수입자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한편 중국은 2005.4.1일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簽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簽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4.1일부터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進(出)口食品,化粧品標簽審核證書)'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는 4.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5.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簽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品標簽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12월 질검총국이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于對進口食品標簽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질검총국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판공실이 관장하

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해관의 수출입 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또한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중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현지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는 인쇄를 한 후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반송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

중국은 전세계 원료의약품의 80%를 공급하는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매년 5,000만 달러가 증가하고 있다. 2001.11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업이 조정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SFD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GMP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S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S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우리나라의 세관에 해당)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의약품의 등급 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 의약품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의약품도 이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품과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사요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의약품기준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이다.

S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공정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증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WTO 내국민대우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도가 기업에 대한 SFDA의 요구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고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 불합리한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허가비용

도 품목당 1천 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증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

◇ 복잡하고 긴 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부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批准文号)를 득하여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매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품당 검사 및 심사비용이 일반화장품은 최소 11,000위안이 부과되고, 특수화장품의 경우에는 17,000~35,000위안으로 수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4.6월부터 일반화장품의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업계의 기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 10~15%, 소비세 8~30%, 증치세 17%의 고율의 관세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004.8.1일부터 수입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실행하여 수입일반화장품의 허가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기업의 제출서류와 샘플수량도 크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허가기간이 장기간이며 기업마다 소요되는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아직 화장품수입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시 부적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산 SK-2에서 크롬과 네오디뮴이 검출된 사례와 같이 화장품 위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평소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라하여 수입검사 단계에서 검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및 안전부문에서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장품의 위생표준 및 기준을 제정하는 위생부는 2007년도판 화장품 위생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발표하였는 바, 관련 기준의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을 통하여 수출시 부적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부적합되는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원료(황토 등) 등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중금속 허용기준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화장품 표시심사제도의 번잡성에 대하여는 2006년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6.4.1일부터는 기존의 수출입 화장품표시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위생검사시 표시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수출입 화장품표시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고 기준의 변경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기업은 2006.5.1일까지 발급신청이 종료되었다.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에는 표시심사, 검사, 확인이 포함되며 검사검역비용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고 표시심사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2010년도는 중국의 화장품의 인허가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우리뿐아니라 다른 국가의 화장품기업도 새로이 수입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2010.4.1일자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접수규정〉 및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자료요구에 관한 규정〉중 특히, 신원료 문제, 원료허가 및 품목허가의 분리진행, 원료의 안전성 평가자료, 잔류농약자료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새로이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적용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로 기업의 서류준비 및 예측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 하반기 들어 중국 SFDA에서 일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관련 업계

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실행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당분간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고 일정한 집행관행이 확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이 화장품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와 관련 기업들의 경험을 공유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기 타

◇ 규사, 석영사 등 수출금지 조치 시행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07.3.1일부터 자국 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해 규사, 석영사 및 기타 모래(HS코드 2505100000, 2505900000)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당초 중국정부가 2006.5.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한 바 있으나, 내외자기업들의 건의로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서 10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규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유리업계 등은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

중국 재정부는 국내 자원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8.8.15일 〈알루미늄 합금, 코크스와 석탄의 수출관세 조정관련 통지(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關于調整鋁合金焦炭和煤炭出口關稅的通知)〉(稅委會 2008년 25호)를 발표해 코크스 등 자원류 제품의 수출관세율을 인상하고 2008.8.20일부로 시행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자원제품 수출에 대한 억제를 통해 최근 중국내 코코스를 비롯한 자원제품의 수급긴장국면과 기타 관련산업 제품의 가격상승 상황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수출관세 조정대상 품목은 총 10개(HS코드 8단위기준)로 그중 코크스는 25%에서 40%로 인상됐으며 코크스용탄은 2008년 초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다. 그 외 기타 유연탄의 경우 과거 수출관세징수대상이 아니었으나 2008.8.20일부로 10% 수출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일반 무역방식에서의 알루미늄 합금 역시 과거 수출관세가 0%에서 2008.8.20일부로 15% 적용받게 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규조토, 진주암, 인광석, 옥 등 자원의 자원세 세액표준 조정에 대한 통지(關于調整硅藻土,珍珠岩,磷礦石和玉石等資源稅稅額標準的通知 : 財稅[2008] 91號)〉를 통해, 2008.10.1일부로 규조토, 옥 등 자원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톤당 가격이 규조토와 옥은 20위안, 인광석은 15위안, 팽윤토, 비석, 진주암은 10위안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중국의 자원 원가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자원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규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상무부는 2009년부터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현재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산 희토류에 대해 향후 쿼터를 지속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는 2009~2015년 희토류 산업발전정책 입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따르면, 희토류 수출을 연간 3.5만 톤으로 통제하고 특정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희토류 수출을 둘러싸고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 통상마찰을 빚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중국 상무부는 특정국가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겪어야 하는 외국기업의 한계로 최근의 자국산 구매 풍조, 현지 민영기업도 마찬가지로 겪는 국영기업의 독점, 지방보호주의, 법규위에 군림하는 행정, 지방과 중앙의 소통부재로 일어나는 행정 무질서, 법에는 없으나 정서적인 국산품 우대 관행, 언어 소통곤란

등 무수한 장벽들이 존재한다.

중국경내에 소재한 진출법인은 법적으로는 중국기업이므로 법규상의 차별이 없다고는 하나 관습적으로 차별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지화 전략과 함께 외자기업의 차별화된 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입찰시장의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 법률과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외국 업체의 단독입찰 참여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중국 업체와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물론 〈수입제품 정부조달 관리방법〉에 의거 기술양도 업체 제품 위주로 수입품을 구매하되 재정부문의 사전심사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정부조달 관리방법(잠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것을 규정하는 등 국산품보호정책이 강력하고, 입찰에 있어 낙찰물품 선정평가위원회의 국내업체 우대 경향 등 보이지 않는 차별정책 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달정책은 중앙의 지도와 지방의 특색이 혼재되어 있으며, 중앙의 지도정책으로는 재정부에서 정부조달 감독 관리와 국무원(국무원 기관관리사무국의 중앙국가기관정부조달중심)에서 국가차원의 조달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조달청(나라장터)과 같은 국가기관의 조달을 담당하는 집중조달기관이 없어 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군데서 파악할 수는 없다.

중국은 통상 중앙의 기본법에 따라 각 중앙기관별, 지방정부별로 자체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절차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이하 입찰법〉은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가 주관부서가 되어 2000.1.1일 시행되었고,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정부조달법: 이하 정부조달법〉은 정부차원의 조달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정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2003.1.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규에서는 정부의 조달대상 물품 및 프로젝트, 서비스가 중국내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중국제품,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 〈정부조달법〉은 총9장 제8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정부조달 당사자
제3장 정부조달 방식
제4장 정부조달 절차
제5장 정부조달 계약서
제6장 질의 및 고소(告訴)
제7장 감독검사
제8장 법률책임
제9장 부칙

중앙국가기관인 공업신식화부의 경우 2009.5월 직속 기관 정부조달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조달시스템 구축 및 규범화를 위하여 〈정부조달법〉과 〈중앙기관 정부조달 관리 실시방법〉 등 법규에 근거하여 〈공업신식화부 정부조달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각 지방정부 역시 정부조달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제정하고 있음은 물론 정부사업에 산하 공기업이 참여하는 등 정부조달개념이 불분명하여 각 부문별 조달관행 이해가 선결조건이며, 일부 지방의 경우 정부조달예산 사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반발심리가 존재하여 정부조달제도 자체를 회피 또는 방해하는 현상도 있어 중국조달시장 참여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광동성은 2009.11월 〈광동성 실시〈정부조달법〉방법〉을 제정하면서 제1조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실시를 위하여 광동성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일선 조달기관의 관리방법 등 제정 후 다시 중앙정부의 "실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잠행법과 통지문 규정도 많아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법체계이다.

조달방식은 중국역시 각국 공통현상인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병행하고 있는데 중앙국가기관인 경우 '중앙국가기관정부조달중심'이 한국 조달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나 주로 국무원 소관 물품이나 서비스구매에 치중하고 있어 기관성격, 인원, 조달 규모나 기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고, 기타 국가기관 조달기구로 人大기관·세무총국·인민은행·해관총서 등이 자체 조달중심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북경, 천진, 하문, 대련, 상해 등 자치시 단위 정부조달중심(10개)과 성·자치구 단위 정부구매중심(21개) 및 지방시정부구매중심 등에서 물품 및 서비스 위주로 자체적인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각 지방정부의 물자를 위탁 조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각 조달중심의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경험 또한 부족하여 복잡한 시설 공사의 경우 대부분 각 시도에서 직접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또 하나 특색은 한국과 달리 '정부조달 대행기구'가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정부조달업무 대행과 자문·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특유의 조달 법제화 미비 및 관행에 따른 중개상 성격 기구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대행기구는 과거 지방별로 관리하여 왔으나 2006.3월부터 재정부에서 통합 관리하여 타 지역의 물자구매도 담당가능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시설공사 집행에 있어서도 각 지방의 공사교역중심과 정부조달중심 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불편한 관계가 있으나 아직은 공사교역중심이 규모와 능력 면에서 우세하여 대부분의 공사를 공사교역중심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정부조달중심의 실적을 정부조달 통계에 포함하는 현행 통계방식에서는 대부분 시설공사 통계가 정부조달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제도가 늦게 출범한 관계로 분산조달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찰법〉의 위력이 크고 집중조달기관인 각 정부조달중심의 경우 〈정부조달법〉의 위상이 높다. 또한 법규 간 충돌현상도 있어 같은 정부조달의 시설공사에 있어서도 어느 기관은 〈정부조달법〉을 적용하고 어느 기관은 〈입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두 법을 다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입찰법〉만 지켜야 가는 등 여전히 갑론을박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정부조달법〉을 기본법규로 하나 동법 제4조에 건설공사 조달을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입찰평가 위원회 평가방법잠행규정〉, 〈건설공사 시공 입찰공고 및 입찰방법〉, 〈건설공사 현장검사설계 입찰방법〉 〈건설공사공사입찰범위 및 규모 표준규정〉, 〈도로건설공사시공입찰응찰관리방법〉등이 적용되고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 분야의 기타 적용 규정으로는 〈정부조달 물품과 서비

스 입찰응찰관리방법〉, 〈재정부의 정부조달 물품과 서비스항목가격평가 심사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등이 있고 그 외 각 지방정부마다 정부조달 범위 등에 관한 기준 별도 제정하고 있음은 물론 정부사업에 산하 공기업이 참여하는 등 정부조달개념이 불분명하여 각 부문별 조달관행 이해가 선결조건이며, 일부 지방의 경우 정부조달 예산 사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반발심리가 존재하여 정부조달을 회피 또는 방해하는 현상도 있어 중국조달시장 참여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정부조달법〉, 〈정부조달본국제품관리방법〉, 〈수입제품 정부조달 관리방법〉이외 한 걸음 나아간 조치로서 "자주창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본 제도는 그간의 법률 명시사항과 과거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온 관련정책이 국산품을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외산품을 터무니없이 남용하는 일부 지방기관의 집행태도를 지적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의 건의를 받아 들여 다시 한 번 강조한 통지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측 입장이나 국제금융위기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국내외에서 핫이슈로 부각되었다.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중국의 자주창신제도가 가진 국내 개발기술우대 및 모호한 인정조건 등이 외국기업의 중국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간주하는 등 동 제도 시행중단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그간의 외형 성장 위주의 "중국 제조"에서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중국 創造'로 전환하는 정책에 따라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제품부가가치 향상 및 자체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국가창신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면서 정부조달을 주요 집행수단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자주창신제품 목록은 일부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행하였고, 중앙정부는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제품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주창신제품 제도는 중국 법인자격의 제품생산업체로서 외국투자기업 및 해외 중국기업 포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자주창신제품의 인정대상 품목의 범위는 컴퓨터 및 응용설비, 통신제품, 현대화사무실 설비, 소프트웨어, 신에너지 및 설비, 고효율에너지절약 제품 등 6개 분야이며 신청은 국가과기계획항목신청센타(http://program.most.gov.cn)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고 이와 별도로 신청표 및 관련증명자료 등 유인물을 소재 지방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 과학기술부가 종합경제부서와 함께 신청 받아 종합심사 실시한 후 전문가 심사 실시 및 중앙정부 과학기술부에 제품 1차 추천을 하고 중앙의 과학기술부가 총괄하여 국가과학기술평가센터에서 분야별 전문가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정제품 목록에 대한 초보 의견을 대외에 공포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및 재정부와 공동으로 심사통과제품을 발표하고 증서발급 및 대외 공고를 거쳐 과정이 마무리 된다.

인정서 발급이 우리나라의 경우 조달청이 주관으로 전 과정을 처리하나 중국의 유관부서가 공동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심사 시 상품의 명칭 및 상표, 기술수준, 자주창신능력, 해당영역에의 중요도 및 영향력 등에 대하여 진실성 심사 위주로 실시되며 ①신청업체 현황표 ②제품기본현황 ③제품의 자주지식재산권 및 기술현황 ④제품의 자주상표현황 ⑤제품 창신성 및 기술수준 ⑥제품의 경제·사회 효익 및 시장전망 ⑦정부조달 참여현황 ⑧기타 정보 ⑨첨부물 및 증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인정기간이 3년을 기본으로 1~2년 연장으로 해당제품에 대한 우대혜택이 없어지나 중국은 인정기간이 제품에 따라 2~4년이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이 가능한 점이 다르다. 한국의 우수제품이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달리 지방정부의 경우 주로 가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우대정책은 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간 나타난 지방정부의 입찰시 가점 조치로는 호북성의 경우 모든 자주창신제품에 5점 가점, 상해시는 가격 및 기술점수에 각각 8% 가산점 부여, 강소성, 남경시는 가격 및 기술점수에 6~10% 가점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달의 문제점은 왕왕 보이지 않는 장벽과 연결되는데 입찰시 불공정하거나 불명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장벽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강력한 항의를 통하여 시정하였지만 우리업체 민원 사례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우리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인지 몰라도 갑자기 기존 공고 내용과 달리 유럽 수출인증 자격을 요구하고 입찰참가 업체의 자본금 수준을 우리업체 수준 이상으로 높인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고, 분명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금액을 20% 인하 하라는 요구를 하여 결국 낙찰을 포기한 사례, 탈락한 중국기업의 무상제공 의사를 흘리며

30% 단가 인하를 수용한 사례 등 불공정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신문보도로는 특정기업의 저가 낙찰 후 갖은 방법을 통하여 납품대금 지급 시는 수배의 자금을 지출하는 사례 등 음성적 관행 등이 존재하고 자칫 항의라도 할 시는 향후 해당기관과의 관계형성에 불리하고 다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부득이 단념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은 정부조달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법제 개편, 전자조달 전면보급, 입찰사 자격제도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WTO정부조달협정(GPA)가입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진전 될 경우 표면적인 정부조달 관련 장벽은 어느 정도 완화 되겠지만 대부분 입찰을 전문가 평가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무엇보다도 조달종사자의 소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 초 국민경제발전 전략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상표법을 1982.3.2일, 전리법(특허법)을 1984.3.12일 제정한바 있으며, 2001년 WTO 가입을 앞두고 위 2개의 법을 다시 개정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업무는 권리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상이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그 역할이 다르다. 먼저 상표에 관한 출원/등록 및 상표취소에 관한 업무는 공상행정관리총국내의 상표국에서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무효심판에 관한 업무는 공상행정관리국총국내의 상표평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전리에 관한 출원/등록은 국가지식산권국내의 전리국에서, 전리국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무효심판 등에 관해서는 국가지식산권국내의 전리복심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상표나 전리에 관한 보호실태를 관리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방인민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관으로는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과 지방전리관리기관이 있는데, 이 두 양 기관에서 상표 및 전리와 관련된 모조품 단속등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해 실질적인 업무를 행하고 있다.

이들 양기관 이외에도 상품의 품질이 열악하다던지 한 경우에 단속하는 품질기술감독국, 수출입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세관, 지식재산권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인민법원이 있다.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문제가 미국, EU 등 선진국의 최대 교역, 투자 장애로 지적되면서 주요한 통상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를 수정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시장경제질서영도판공실' 주관으로 상무부, 공안부, 해관총국, 식품의약감독청, 지식산권국 등 각 부처가 참가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정례적인 협의채널이 구축되었다.

2004.8월에는 吳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정부부처 및 법원의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작업반'을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기획·조정·감독·교육,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사례 단속 및 인식전환 캠패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작업반의 판공실은 상무부내에 설치되었으나, 2008년도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상무부내에 설치된 보호작업반이 해체되어 국가지식산권국 보호협조사로 이관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2005.4월 지식재산권 관련법령 제·개정, 조직 정비, 침해 단속 및 국제협력 성과 등을 정리한 지식재산권 보호백서를 발간하였으며, 2006.1월과 5월에는 각각 〈전시회지식재산권보호방법(展會知識產權保護辦法)〉과 〈특허심사지침서(專利審查指南)〉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제3차 특허법을 2008.12.27일 개정 공포하여 2009.10.1일부터 시행중이며, 전리법실시세칙은 2010.1.9일 개정되어 2010.2.1일부터 시행중이다.

2006.3월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작업반' 주도하에 상무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상표, 특허, 저작권, 수출입 등 4개 분야에 대한 9대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7월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제보전화와 인터넷 고발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2007.4월에는 10개 분야에 대한 274개 구제조치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2008.6월에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을 수립, 공포하였다. 동 전략요강의 전략목표는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의 창조, 활용,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며, 지식재산권 집행환경의 개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지식재산권이 경제 및 문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향후 5년간 목표는 중국인의 발명특허 권리획득 건수를 세계 1위 수준으로 높이며, 국제적인 브랜드 상품개발, 저작권산업이 중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기업들의 지재권 관리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단속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주간 및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3천여 건을 적발하여 천여명을 사법처리하였으며, 모조품 유통시장 폐쇄, '지식재산권보호전람회' 및 '국제포럼' 개최(2006.4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시범기업 20개 지정 및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지구(상해 푸동, 장강 지역) 선정 등도 추진하였다. 한편, 2009년도말 각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단속한 상표권 침해행위 단속 총건수는 43,596건이며, 외국상표 침해행위 단속건수가 10,461건이었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국정부의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신설,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기소 요건의 추가완화, 영업비밀의 보호강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상표출원과 심판건에 대한 처리지연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중 양국 간 교역증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 말까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기업은 101개사로 전체(223개사)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품류는 대체로 의류, 운동화, 화장품, 시계 등 소비재이나 점차 전자, 자동차 등 기술집약 제품 및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침해도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침해사례를 살펴보면, 상표를 도용하여 중국 내에 먼저 등록하거나, 저급한 중국 상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하는 예가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문제와 기술유출은 우리 기업의 중요한 투자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아직 중국은 지역적 특수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단속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중국 진출 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구비와 관련법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문제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체제도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정부는 북경, 상해, 청도 등의 KOTRA 투자기업지원센터에 지식재산권보호 전담 IP CHINA DESK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예방 및 침해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AmCham, EuroCham, JETRO 등은 기업 실태조사 및 對정부 정책건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양자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요 해결과제로 요구하고,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문제해결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기업인 삼성물산은 지난 2003년부터 중국 심양에서 자사 아파트 '래미안'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 왔는바, 우리 정부와 IP China Desk의 지원으로 2007.1월 심양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기업을 처벌(침해행위 중지 명령 및 벌금 약 1,067만 RMB 부과)하고, 삼성물산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금번 상표권 침해 중국기업에 부과된 배상 규모는 지금까지 중국 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 중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침해 재발 방지와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 장벽

해 운

해운의 경우 2001.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부出料(dispatch money)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

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조정에 관한 통지(2001.9.20)〉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해운조례(2001.12.21 제정, 2002.1.1 시행)〉를 제정, 시행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국내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한 것은 해운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의 운임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방법'(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6.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2005.12.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고, 기 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대리업 5백만 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 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 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접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항 공

국무원 직속 中國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을 기존 35%에서 49%까지 높인 바 있다.

中國民航總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8.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中國民航總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지상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홍콩·독일·미국·싱가폴 등의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항공시장에 진출해 있다.

한편 中國民航總局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 9개 국영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MU), 광주의 남방항공(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기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10.11)하였으며, 지방항공사도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유 통

중국정부는 1999.7월 〈外資 商業企業 시범운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 내에서 상업기업(유통업)은 반드시 中外合資 또는 合作의 형태이어야 하며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외합자 또는 합작의 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각 성 및 자치구의 성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경제특구로 제한되어 있다. 소매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상품소매액이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자산액이 2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2004.4월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을 발표해 상업분야에 있어 지역 및 수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독자기업 설립도 허용하였다.

동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은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試点辦法)〉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중국의 WTO가입 시장개방 스케줄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신규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은 2004.12.11일부터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투자자의 자격요건으로 연간 매출액, 자산규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금 규모도 도매업 50만 위안, 소매업 30만 위안으로 크게 낮추었다. 또한, 도매업은 2004.6.1일부터, 소매업은 2004.12.11일부터 지역제한이 철폐되었다. 2006.12.12일부터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 판매 등 일부 품목에 도소매업 제한도 폐지하여 내수유통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내 누계기준 30개 이상의 매장을 개설할 경우 취급 품목이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2006.12.11일부터 제한 취소),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정제유, 식량, 식물유, 식용설탕, 면화 등이며, 또한 이 품목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이고 공급상이 다를 때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심사비준의 지방부문에 대한 권한위임에 관한 통지(2005.12.9)〉에 따라, 2006.3월부터 특정업태 및 품목을 제외하고 중앙 상무부로부터 지방정부 및 국가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로 상업기업의 비준권한이 위임되어 종전보다 인허가 절차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3~5년내 도·소매업 모두 지역제한, 수량제한(설립기업수, 점포수), 출자제한 철폐를 포함한 유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2005.9.2일 〈직판 관리조례〉와 〈다단계판매 금지조례〉를 발표하고 각각 2005.12.1일과 1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판기업의 구비조건은 최근 5년간 중대한 경영관련 위법사항이 없을

것, 외국 투자자는 3년 이상 중국 이외에서 직판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 납입자본금 8,000만 위안 이상, 보증금 예치 등이며, 시장 진입 문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국의 기업들이 화장품 업종을 중심으로 직판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4~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아직 받은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외자기업의 직판과 관련하여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사회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방정부로의 외자상업(도소매)기업 설립심사 위탁에 관한 통지(商資函[2005]94)〉에 근거, 2006.3.1일부터 외자상업(도소매) 기업의 설립에 관한 인가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 상무부문(省 및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6월 〈외자상업기업영역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이 공포된 이후 외자상업기업의 설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최종 인가를 받기위해 2~3개월 정도 중앙 상무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 바, 상기 조치로 방송, 통신, 광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자상업기업 설립시 직접 소재지 지방정부 상무부문을 접촉하게 됨으로써 인가단계가 간소되고 심사기간이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유통부문에 있어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 상무부의 인가가 필요한 업종 및 품목

기준	품목 및 업종
민감한 경영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
국가관리가 필요한 중요 품목으로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17, 18조에 규정된 제한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강재,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화학비료, 제품유, 원료, 소금, 담배,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식량, 식물유, 사탕, 면화 등

외자소매기업이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지방 상무부문(성급 및 국가급 경제기술구)의 인가로 외자상업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1) 1개의 점포면적이 5000㎡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개 이내이며, 당해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개설한 외자 상업기업의 전체 점포수가 30개 이내인 경우 (2) 1개의 점포면적이 3000㎡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

수가 5개 이내로, 외국투자가 중국에 개설한 외자상업기업의 전체점포 수가 50개 이내인 경우 (3) 단일 1개의 점포면적이 300㎡ 이내인 경우가 포함된다.

한편, 외자비상업기업이 상업영역으로 경영범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번 통지에 근거해 심사를 시행한다. 또한 이미 설립된 외자상업기업(또는 이미 상업영역을 추가한 비상업기업)이 경영범위의 변경 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이번 통지에 근거해 심사를 하게 된다.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을 발표한 2004년에는 구체적인 법 적용 불투명, 외국인독자투자 불가 등의 원인으로 외국인투자가 미미했으나, 2005년에는 외국기업들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992년 개방초기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허가받은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은 314개에 그쳤으나, 2005년도 한 해에만 1,027개가 허가되었고, 그 가운데 도매기업은 2004년도에는 11개가 허가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571개가 허가되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중외합자 투자보다는 외국인독자 투자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며, 그 외에도 유통분야의 M&A가 활발한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2005년도 한 해에 허가받은 1,027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중 외국인독자 투자기업은 625개에 달하며, 기존 합자상업기업도 투자자간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빠르게 외국인투자 독자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바, 2005년도 중국 상무부에서만 소매업 M&A를 24건 허가하였다. 2006년도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2006.3.1일부터 소규모 상업기업의 허가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그 수가 빠르게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은 외국기업의 중국내 프랜차이즈 독자기업 설립도 허용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전문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7년에 발표된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시행)〉을 대체하여 2004.12.30일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을 발표하여 2005.2.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방법은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외자 독자기업의 중국내 프랜차이즈 경영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프랜차이즈 시장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7.5.1일부터 법률적 구속력을 구비한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당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벌칙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규 업체의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부실업체의 도태가 가속화되며, 가맹자와의 법적 분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조례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에 개인이나 기관은 불허되고 공상등기된 기업만 가능하며, 개업 1년 이상된 직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비적용) 아울러, 전국의 모든 프랜차이즈 기업은 소재지 상무 주관부서에 등록이 의무화되며, 프랜차이즈 가맹신청자에 대한 정보공시 제도도 의무화되고, 가맹자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미등록, 정보 미공시, 과대광고 등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신 조례에 근거한 당국의 행정규제가 적용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프랜차이즈 기업의 1/3 정도만 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부실사업자의 도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비가 저렴한 대신 가맹점 관리가 부실한 일부 중소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가맹비 대신 브랜드 사용, 기술지원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한편,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상무주관 부문 등록 및 개업 1년 이상된 직영점 2개 이상 보유 요건이 부과됨에 따라 진입 문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높아져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

◇ 외국 로펌의 주재 형태

대표처 형식으로만 가능

* 근거: WTO 가입시(2001.11) 양허안,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 외국 로펌 대표처의 업무 범위

A. 허용범위: 외국로펌 중국대표처는 중국법률사무를 포함하지 않는 하기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가.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을 제공

나. 의뢰인 혹은 중국로펌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업무를 처리

다. 외국의뢰인을 대표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중국법률에 관한 사무를 위임

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장기간의 위임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

마. 중국법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다음 행위중 하나가 있으면, "중국법률사무"로 인정됨.

- 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륙에서 소송에 참여
- 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증명을 제공
- 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 중재과정에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
-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에서 수권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 등록, 변경, 신청, 비안수속 및 기타 절차를 수행

B. 금지 사항

가. 외국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은 자문회사 혹은 기타명의로 중국경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나. 외국로펌 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가 고용한 보조인원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다. 중국 법률사무소에 투자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변호사와 손익을 분담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연합사무실을 만들거나 인원을 중국법률사무소에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지분적 권익을 향유하여서는 안됨.

C.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한 특칙

가.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은 직접 중국사법고시에 참가할 수 있음.

나. 중국의 사법고시에 합격되어 중국국내의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국내의 비소송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중국국내 변호사의 업무수행 권리를 향유하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중국의 사법고시에 합격되어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대만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국내의 비소송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방식으로 대만 관련 혼인, 상속 소송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외국 로펌의 중국대표처 설립 및 유지

A. 설립 요건

가. 외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함.

나.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여야 하며,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하며, 변호

사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함. 수석 대표는 중국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함.

B. 설립 절차

가.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

나.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

다.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함.

라. 직업허가증, 대표직업증서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함.

마.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차를 완료함.

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C. 외국로펌 중국대표처의 유지에 필요한 업무

가. 매해 연도감사

나. 대표처 설립후 소속 파견인원, 현지인원에 대한 등록, 처리

다. 인원 변동에 따른 사항 등록/취소

라. 연도감사와 별도로 사법국에 통계자료 제출

마. 사법국 지정 시스템상의 자료 등록(별도 ID/PWD 보유)

건설 및 부동산

2010년 중국 건설시장 규모는 7,850억 불의 세계 1위로 전망(Global Insight)되며, 중국의 건설시장은 2020년까지 년 8.6%의 빠른 성장으로 향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규모에 비하여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은 미약하여 1991년 최초 진출 이래 2010.6월

까지 총 164개사가 572건 공사 약 105.7억 불을 수주하였다. 주로 아파트, 빌딩 등 투자개발형 공사와 아국 제조업체 발주공사이며,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82개사 160건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국 진출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가 2008년 22.5억 불의 수주를 피크로, 2009년 99건 8.2억 불, 2010.1~6월 37건 3.4억 불을 수주하였으며, 최근 설계·감리용역 분야의 수주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외자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허용하는등 건설시장 진출조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국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외국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3억 위안 이상, 1급은 5천만 위안 이상, 2급은 2천만 위안 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외국기업도급자질 증명서)을 취득하여 중국내 공사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외국 건설기업은 2005.7.1일부터는 반드시 중국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POSCO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서도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롯데, 엠코 등이 현지 면허를 취득하였다.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다음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① 외국에서 51%이상 투자하거나 자금을 기증하여 건설하는 공사
②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공여받아 시행하는 국제공개입찰공사
③ 중국내 기업이 기술상 단독으로 도급맡기 곤란한 中外 합자건설공사
④ 중국내에서 투자하는 건설공사 중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도급을 맡기가 확실히 곤란한 특수 프로젝트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구분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등을 기

준으로 주어지며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 각 성·시·자치구(대외무역경제 주관부문)에 설립신청→국무원 보고 → 국무원(상무부)는 건설부의 의견을 들어 가부결정하고 비준증서 발급(총 70일소요)→신청인은 비준증서를 받아 성·시·자치구에 등록하고 영업허가 취득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비준에 따라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을 구매할 수 없다.

최근 중국 부동산산업이 외국인투자의 주요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금후 우리기업의 주된 대중진출 분야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감면 및 융자지원, 과실송금 관련 우대정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의 주요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1998~2004년간 주택투자가 전체 부동산 개발투자의 80% 이상을 차지). 대부분 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진출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고급아파트, 빌라 등을 대상으로 한 인테리어 부문 시장도 유망하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50% 이상이 불법적인 공급)이 거의 통제불능 상태의 투자증가의 주요인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며, 지방정부의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공급이 상당폭 위축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한국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많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기업이 자칫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 분양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철저한 사전 시장 및 입지 조사와 파트너의 물색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6.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기관이 중국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산 기업 제외)와 중국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제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금 미납, 국유토지 사용증 미취득,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결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정부가 주택구입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중국내 실거주자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 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인민폐 업무 제한 등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을 살펴보면, 지점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 자산이 2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BIS비율이 8% 이하이어서는 안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지사 설치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왔으나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금융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본격적인시장진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중국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체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재중 한국계 은행은 총 10개로 북경, 상해, 천진등에서 재중국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인민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달러 중심 지원에 따른 기업들의 외환위험을 최소화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자금경색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통신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중국내 통신업에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을 2002.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기초통신서비스는 최대 49%까지, 부가가치통신서비스(기초통신서비스의 무선호출서비스 포함)는 최대 50%까지 외국인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또는 이동부가가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2003.12월부터 외국인투자지분이 50%까지 확대되었으나 현재 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정부는 WTO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동 통신 분야는 중국이동과 중국연통이 경쟁토록 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중국전신에서 중국망통을 분리 경쟁시킴으로써 이른바 4강 체제를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는 폭발적인 확장을 하는 반면 기존 유선전화 사업자는 가입자 증가 추세의 정체, 요금 하락 등으로 유무선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무선 분야에 있어서도 제1사업자인 차이나 모바일의 지배적 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불공정 경쟁환경, 자원배분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신시장 구조개편 요구가 대두되었다.

개편논의는 중국의 3G 이동통신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통신업계의 큰 화두가 되었다. 마침내 중국정부는 유무선 사업자를 아우르는 종합사업자를 육성하고, 제3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

여 2008.5.23일 기존의 4대사업자와 중국티에통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는(5合3)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고, (결과적으로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 사업자) 2009.1.7일, 3장의 3G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즉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 티에통이 합해진 신 차이나모바일은 TD-SCDMA를, 차이나 유니콤으로부터 CDMA부문을 인수한 차이나 텔레콤은 신차이나텔레콤이 되어 CDMA2000을, 차이나 유니콤(GSM부문)과 차이나 넷콤이 합병한 신 차이나유니콤은 WCDMA를 각각 기반으로 제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4G기술의 경우 중국국무원이 2006년에 발표한 '2006-2020년 국가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강요'에 16대 중대 전문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세대의 TD-SCDMA에서 진화한 TD-LTE를 4세대 기술표준으로 추진중인 중국은 상하이 엑스포에서 세계최초의 TD-LTE시범망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시연하였다. 이동통신사업자 중에는 차이나 모바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TD-LTE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중국통신망 상호접속 분쟁처리규칙〉을 제정하여 2002.1.1일부터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경쟁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인 통신망상호접속분쟁처리규칙은 모호한 부분이 많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전신조례(2000.9.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신법」심사초안 개요 〉

● 《전신법》 제정 관련 일지

–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업 개시
– 1993년 《전신법》 초안 작업 제8차 전인대 입법계획에 삽입
–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종 입법항목으로 삽입
– 2000.9월 신식산업부 "소전신법"이라 지칭된 《중화인민공화국전신 조례》 발표, 동 조례는 행정법규로 기타 법률과 상충시 기타 법률이 우선되어 시장을 규범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2001.4월《전신법》초안영도소조, 공작소조, 전문가지문위원회를 구성, 신식산업부 왕쉬뚱 장관이 초안소조 조장 담당
– 2003년《전신법》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삽입
– 2004.6월 신식산업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전신법》(심사초안) 통과, 국무원에 제출
– 2005.12.28일 전인대상무위원장《전인대상무위원회2006년입법 계획》발표
– 2007.3.9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전신법》이 예비 입법항목으로 삽입
– 이후 시장에서는 《전신법》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통신관련 법체계의 대표적인 미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전신법》심사초안은 총 16장 294조로 되어있으며 내용이 방대하며 WTO규칙과 전신업 발전추세에 부합토록 하였음. 반면, 현행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이하 《전신조례》)는 6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과 벌칙 외에 4개 장만이 전신시장, 전신건설 등 방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신법(심사초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짐
  – 요금을 시장에서 조절
  – 처벌조항을 확대하여 상호접속 보장
  – 독립된 전신관리감독기관 설립
  – 부가서비스업무 진입장벽을 낮춤

● 《전신법(심사초안)》은 전신시장의 경쟁체제를 보장토록 하고 있음.
  – 전신시장부분에서 사전관리(시장진입) 이외에 많은 조문들을 사후관리로 규정하여 사전, 사후관리를 병용
  – 구체적인 경쟁규칙 관련 일반적인 금지조항을 삽입하는 것 외에도 전신요금, 망간 상호접속, 전신서비스,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등 현재 경쟁이 규범화되어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 불공정경쟁 및 위해성 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삽입
  – 현행 《전신조례》는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합리성, 공평공정 등의 원칙에 따라 망간 상호접속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망

간 상호접속문제는 줄곧 현안이 되어왔음.

한편, 중국정부도 방송통신융합에 적극적인데 2010.1월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을 하나로 융합하는 3망융합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비대칭적인 방송통신 간 상호진입'과 '선시범 후확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통신망보다 낙후된 방송망을 발전시키기 위해 방송분야가 통신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WTO 가입 이후 중국은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업종이 많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2.26 공표)에 근거,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신목록)을 공표하고 2002.4.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및 금지 등 4개로 분류하고 국민통계분류방법에 따라 모두 371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구 목록'은 제한 영역을 갑(甲), 을(乙)류로 구분하였으나, '신 목록'에서는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내용상의 특징은 개방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장려영역은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한 반면, 제한 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하였고, 공용부두에 대한 중국측 지배지분 제한을 철회하는 등 외국인 투자 지분율의 제한도 대폭 완화하였다.

금지분야였던 통신, 가스, 열에너지, 급배수 등 도시 배관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였고, 투자 지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다. 특히, 은행, 보험, 유통, 무역업, 관광, 통신, 운수, 회계, 법률 등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 개방되었다.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장려를 위하여 외국인의 지분율 및 산업별 제한을 한층 더 완화하였고, 시장경쟁메커니즘 도입, 경공 업품을 허가류로 분류하여 산업경쟁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투자금지분야를 살펴보면, ①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업종, ②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천연자원을 파괴하거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며 그 정도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는 업종, ③ 국가가 금지를 예정하고 있는 기타 업종, ④ 중국 고유의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포함되는 주요 업종으로는 송전망 건설과 경영, 우편·전기통신업무의 경영관리, 선물무역,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영화, 비디오 상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투자제한분야로는 ① 국내에서 이미 생산, 개발하였거나 선진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능력이 국내시장을 충족하고 있는 업종, ② 경쟁력이 없고 수출할 수 없는 업종, ③ 선진적 기술의 제공없이 이익만 추구하고 스스로 외환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업종, ④ 조립생산라인을 도입하고 부품을 수입하여 완성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단순히 국내외 가격차로 이익을 거두는 업종, ⑤ 중국의 전통공예, 미술품, 특산품, 전통적 수출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업종, ⑥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기타 업종 등이다.

한편, 설비 수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각종 우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려영역'은 다음과 같다.

- 전통농업 개조, 현대식 농업 발전 및 농업 산업화를 촉진하는 투자
- 에너지, 교통 및 원자재 등 기초산업 및 설비 구축에 대한 투자
- 전자정보, 생명공학, 신소재 및 항공분야 등 하이테크기술 투자
- 기계, 경공업, 방직 등 전통산업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선진 실용기술 투자
-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투자
- 서부대개발정책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우위 산업에 대한 투자
- 100% 수출용 '허가' 분야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제한 영역인 경우에도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에 속하는 경우에는 장려영역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 2004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일부 수정하여 2005.1.1일부터 개정된 목록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목록에 의하면 장려분야가 257개로 5개가 줄어들고 제한분야와 금지분야는 각각 3개 및 1개가 추가되었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자의 양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외자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장려분야에서는 컬러디스플레이 관련 기기, 대형 순환유동층 보일러 등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추가된 반면, 지난해 긴축 정책의 주된 대상 산업이었던 철강, 알루미늄 등의 분야와 오토바이 관련 분야(오토바이 완성차 제조, 주요 부품 등)가 제외되었다.

제한분야에서는 '대형 테마마크 건설·운영' 등이 추가되었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 영화제작'과 '시장조사'가 합자(작)의 조건으로 제한산업에 포함되었다, 금지 산업에는 '시회조사'가 추가되었다.

또한, 장려분야에서 '저급 광산개발 및 선광산업'의 경우 기존에는 서부지역에서 외국인 독자투자가 가능했으나 수정 후에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자동차 주요부품 제조'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와 시스템화 추세를 반영하여 세부항목들이 대폭 수정되었다.

한편, 2007년 말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이 약 100여 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해 대폭 수정되어 2007.1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된 목록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중국의 중점 육성산업 발전,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을 더욱 명확히 구현하고 자국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방침 하에 이에 부합하는 장려업종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특히 장려업종에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물류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이 대거 포함되었다. 한편 중국 자원보호, 금융 및 미디어 등 기간산업 등은 여전히 제한 및 금지 목록에 포함되었다.

외국기업투자 비준제도 대폭 개선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투자유치가 감소함에 따라 2009. 3월 외자유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상 투자 기업 수입설비 감독관리 사전해제 시 심사 비준을 받도록 한 것을 철폐하였고, 장려업종 등에 대해서는 외자 기업의 설립, 증자, 계약변경 심사비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발전정책에 의해 기존 외상투자기업이 동일한 품목 내에서 생산규모를 확대하거나 관련 부품기업을 신설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외자기업의 중국 국내기업 M&A의 경우 장려류는 1억 달러 이하 제한류는 5천만 달러 이하 심사비준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였다.

아울러 외상 지주회사 투자설립 심사비준 권한도 성급 지방정부로 이양한바, 등록자본금 1억불 이하 지주회사 설립 시 지압정부가 심사 비준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WTO 가입 이후 업종별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전망

(1) 은행업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실시되면서 모든 외국계 은행은 중국 일반 가계대상 인민폐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각종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인민폐 영업을 위해서는 자본규모 10억 위안 이상의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각 지방정부의 승인 필요

또한 외국계은행에 대해 적용되던 유예조치의 기한*도 점차 만료가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도전이 예상되고 있다.

* 예대비율 75%미만(2011.12월말), 동일인 대출비율 자본금의 10% 미만(2009.12월말)

(2) 보험업

WTO가입 양허 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가능하고, 지분취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3) 증권업

QFII제도 도입(2002.11월), 비유통주 개혁(2005.4월) 등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단, '외자 지분 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에 따라 증권사의 경우 외국계 지분 1/3제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49% 제한은 존재한다.

(4) 유통업

2004.4월 발표된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에 따라 상업분야에 있어 지역 및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100% 단독투자가 허용됐다. 중국은 WTO 가입 후 3~5년내 도·소매업 모두 지역제한, 수량제한(설립기업 수, 점포수), 출자제한을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5) 다국적 기업

다국적기업이 중국내에 설치한 투자기업(자회사)의 경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 국내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자회사가 母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수출하도록 허용하고, 투자기업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투자기업에 기술지원 제공 허용 등이다.

(6) 무역업

합자무역회사의 숫자와 영업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합자무역회사의 투자기능 및 자회사 설립 등을 확대할 수 있으며, 2005년 내(3년 내) 모든 외자기업에 무역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 무역법인은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류'로 분류해 두고 있으며 외국인 단독기업 설립이 불가해 중-외 합자형태로만 설

립이 가능하다.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중외합자의 형태로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외국 투자자의 설립신청 전 3년간 대중국 연평균 무역액이 3,000만 불 이상(합자 대외무역회사의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인 경우에는 2,000만 불 이상) 이어야 함.

2) 중국 측 투자자가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국 투자자의 설립 신청 전 3년간 연평균 수출입액이 3,000만 불 이상(합자 대외무역회사의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인 경우에는 2000만 불 이상)이어야 함.

3) 합자 대외무역회사의 등록자본금은 5000만 위안 이상(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인 경우에는 3000만 위안 이상) 이어야 함.

(7) 서비스업

중국은 서비스산업 법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진출 장벽이 상당부분 남아있다. 서비스업종별 개방현황을 보면, 광고업의 경우 중국은 2005.12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을 발표해 외국인 독자 광고법인 설립을 허용한 반면, 인재중개 서비스, 교육서비스의 경우 중국 측과의 합자형태로만 외국인투자자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8) 항공운수업

WTO 가입 5년 후에는 외국기업 단독의 항공기 수리, 유지 관리 서비스를 허용키로 하는 등 외국기업의 항공분야 진출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9) 건설업

중국 건설회사와 외국 유명 건설회사와의 합자기업 설립을 지지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시장잠식을 우려한 국내기업 보호막도 일정부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0) 통신업

통신시장의 단계적 개방 기조 하에서 우선 독점경영을 폐지하고 부가통신분야 부터 개방하면서 점차 이동통신 및 기초 통신 분야로 개방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는 WTO가입 2년후인 2003.12월부터 50%까지의 외자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6.12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49%까지의 외자참여가 허용되었다. 국내 및 국제 업무 등의 기초통신서비스는 WTO가입 3년 후부터 북경, 상해, 광주 등 3개 도시에 중외합자(외국측 25%) 설립이 허용되었고, 6년 후인 2007.12월 이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49%까지의 외자참여가 허용되었다.

(11) 관광업

1999년 재정·실시한 〈중외합작여행사 잠정방법〉을 적극 시행해 중외합자여행사와 영업허용지역 점차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2010.9.6일 국가여유국과 상무부연합에서 〈중외합자여행사 대상 아웃바운드업무시행관리안〉을 발표하고, 국가여유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외합자여행사를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업무 시행관련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여유국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이번 실행으로 중외합자여행사 중 관리체계가 규범화되고 실적이 우수한 중외합자여행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외자독자여행사의 경우에는 이번 개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국가여유국과 상무부는 합동으로 국가관광업의 개혁개방과 고객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외자관광여행사에게도 아웃바운드 업무를 전면 개방시키자는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여유국과 상무부는 2005.2.17일자로 2003년에 발표한 〈외국투자자 지분우위 및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设立外商控股˙外商独资旅行社暂行规定)〉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여행사의 설립지역 개방과 최저납입자본금 규정의 완화 등 두 가지이며 다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2003년에 발표한 〈외상지주 및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设立外商控股˙外商独资旅行社暂行规定)〉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투자자의 다수 지분 또는 독자 여행사는 국무원이 승인한 국가급 관광지역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등 5개 지역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며 최저납입자본

금은 400만 위안 이상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에서는 설립지역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납입자본금도 250만 위안으로 하향 조정됐다.

외국투자자 지분우위 및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관련 신구법령

	기존	변경
발표일	2003. 6. 12일	2005. 2. 17일
시행일	2003. 7. 12일	2005. 2. 17일
최소 납입자본금	400만 위안 이상	250만 위안 이상
설립지역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급 관광지역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등 5개 지역에서만 설립이 가능	폐지

외국인 투자자의 설립자격과 관련, △여행업 종사 △연매출액 4,000만 달러이상 △투자자 소속국가의 여행업 협회회원 △세계적인 신용과 선진 여행사업 관리경험 보유 △중국법률 및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등을 요구하는 것과 독자자여행사 설립 시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하는 조항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2003년 〈잠정규정〉이 발표된 이래 중국에는 이미 5개 외상독자 여행사와 5개 외국투자자 지분우위 여행사가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국가급 관광지역에 설립되었다. 국가여유국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중국의 WTO 가입 시 지역제한에 대한 폐지는 가입 후 6년 내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치는 중국정부의 WTO 양허안의 조기이행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2) 의약산업

중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기업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유통 분야의 외자투자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의약유통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여려 제약 요소로 인하여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은 편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중국은 기본적으로 외국에 시장을 개방한 상태이나, 최소투자금액(2천만 위안), 지분구조(중국 최소 30%, 외자 최대 70%) 등 합자/합작 조건이 있고,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의료문제는 90년대 의료개혁 시작이후 이미 20여년간 공익성

과 시장주도 논쟁이 있어 왔으며, 200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방식이 성장위주에서 균형성장(조화로운 사회)으로 전환되면서, 의료개혁은 중국의 중요한 민생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신의료개혁안을 발표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 확충, 도시와 농촌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재정투입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분야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중국내 크고 작은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중국의 보건의료산업은 시장진출시 안전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고, 규제 및 각종 제도도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중국의 각종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2000.10.31 수정판)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2001.04.23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001.03.15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2001.08.01 수정판)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2000.10.31 수정판)
-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 (2006.01.1 수정판)

(1)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 지, 외국에서 구입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법규상 삭제되었다.

(2)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 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工商행정관리국의 잠정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 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 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공상행정관리국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 만 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 이하	7/10	
300~1,000	1/2	210
1,000~3,000	2/5	500
3,000 이상	1/5	1,200

(3)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4)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다른 지역 거주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현지 직원 채용 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 내 다른 기업의 재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지법인형태가 아닌 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 시 외국 기업복무총공사(FESCO) 등 인력공급기관에 의뢰하여 채용해야 하며, 현지 직원의 급여를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40~50% 수준)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립이 강요되고 있다. 한편 공회가 있는 경우 공회가입자수에 관계없이 최고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 임금총액의 2%를 기업이 부담하는 공회비로 납부케 하고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공포·시행

한편 중국은 2008.1.1일부터 노동계약법을 시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연성감소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 체결시 벌칙을 강화(임금 2배 지급 등)하였으며 수습근로자 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토록하여 근로자 보호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시 등에만 지급하던 경제보상금을 (일정한 요건 하에)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 에게도 지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도 일정부분 제약받게 되었다. 우리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 현재 양로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을 도입,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들 사회보험의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30% 이상에 달하여 기업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운영 실태를 보면, 각 지방 정부에서 자체규정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보험요율, 산정기준 및 시행보험의 종류가 상이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노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별로 조례(시행령에 해당)형태로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격상하는 〈사회보험법〉을 제정추진중이며 동법률이 제정·공포되면 관련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주택공적금(주택기금)도 기업과 근로자가 임금의 5%이상(북경 각12%)을 납부해야 한다.

(2)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15% 내외의 임금인상율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제1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근로자 임금을 현재보다 100% 인상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년에는 1년에 1회 또는 그 이상으로 기준을 인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북경의 경우 2010.7월부터 기존의 월 800위안을 월 960위안으로 20% 인상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의 년간 근로자 임금인상율 및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안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최저임금기준

구분	시행시기	최저임금기준(단위: 위안/월)								
북경	2010.7.1	960								
천진	2010.4.1	920								
하북	2010.7.1	900	840	760	690					
산서	2010.4.1	850	780	710	640					
내몽고	2008.1.1	680	620	560	500					
요녕	2010.7.1	900	750	650						
길림	2010.5.1	820	780	730	680					
흑룡강	2008.1.1	680	650	525	500	460	440	420		
상해	2010.4.1	1120								
강소	2010.2.1	960	790	670						
절강	2010.4.1	1100	980	900	800					
안휘	2010.7.1	720	680	630	580	530	500			
복건	2010.3.1	900	800	700	600					
강서	2010.7.1	660	600	550						
산동	2010.5.1	920	760	600						
하남	2010.7.1	800	700	600						
호북	2010.5.1	900	750	670	600					
호남	2010.7.1	850	800	725	650	600				
광동	2010.5.1	860	770	810	580	530				
광서	2008.8.4	670	580	520						
해남	2010.7.1	830	730	680						
중경	2008.1.1	680	560	520						
사천	2008.1.1	650	550	450						
귀주	2008.1.1	650	600	550						
운남	2010.7.1	830	740	630						
서장	2008.1.1	730	680	630						
섬서	2010.7.1	760	680	630	580					
감숙	2008.4.3	620	580	540	500					
청해	2008.5.1	600	590	580						
녕하	2010.5.1	710	660	605						
신강	2008.1.1	보험불포함		670	550	490	460	430	400	
		보험포함		800	670	610	580	550	520	
대련	2010.7.10	900	800							
하문	2010.3.1	900	800	700	600					
심천	2010.7.1	1100								

(2010.7 현재)

투자기업의 가공무역 관련 규제

(1) 가공수출용 수입원자재 통관절차의 복잡성

가공수출용 원자재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세신청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면세신청과 실제통관 세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 밖에 가공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가공계약 건별로 원자재의 수입사용 및 제품수출을 기록·관리하는 대장(세관등기수첩)을 세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3~7일(성실업체의 경우 3일)이 소요되어 원자재 수입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있다.

(2) 가공무역 물품제한 및 가공무역업체 분류관리

2003.3 정부조직 개편 이전,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경제합작부 및 세관 등 3개 부서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제1차 가공무역 금지 및 수입 제한물품 리스트 관련통지"(國經貿貿易 1999. 490호), "제2차 가공무역금지 및 수입제한물품 리스트 관련 보충 통지 "(國經貿貿易 1999. 930호) 및 "제3차 가공무역 수입제한물품 리스트 관련통지"(9.27일)를 제정·발표하여 가공무역용 원자재의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리스트를 확정하고 1999.10.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가공무역물품은 금지물품, 제한물품 및 비제한물품의 3종으로 구분 차등 관리하고 있다.

- 금지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 및 세관이 감독·관리할 수 없는 품목이다.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헌옷, 음란서적, 유해물질 및 방사선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② 분해, 수선용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주요 부품
  ③ 재배, 양식 등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종자, 종묘,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및 항생제 등
  * '수입금지화물목록'(4.5차) 2002.8.15일부터 시행(2002.25호 공고, 外經貿部) : 공업용 폐기물, 폐의류, 기계 전자 폐품 등
- 제한물품은 수입 물품의 가격변화가 크고 세관이 감독·관리하기

쉽지 않은 민감한 품목

* 주요 물품으로는 플라스틱 원료, 폴리에스테르절편, 화섬원료, 면사, 면화, 당류, 식물성 유지, 천연고무, 양모 등이다.
* A류 기업을 제외하고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가공제품의 수출 후 환급한다.

– 비제한물품은 금지물품과 제한물품을 제외한 기타 품목으로 C류 기업을 제외한 기타업체가 가공무역을 위해 현행과 같이 수입시 보증금 예치 불필요 및 관세 등을 면제한다.

또한 가공무역업체를 업체의 성실도, 과거 위반사례 등을 감안해 AA, A, B, C, D 5종류로 구분해 차등관리하고 있다.

– A(AA포함)류기업은 세관총서가 허가한 세관이 주재원을 파견해 상주하거나 세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 위반사실이 없는 보세공장이나 비행기, 선박 등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가공무역기업이다.
  * 가공무역을 수입원자재에 대해 세관은 보세감독관리를 실시하나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세구내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보세구 세관 감독방법〉(세관 1997년 594호)을 적용,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실행하지 않는다.
– B류기업은 과거 위반사실이 없고 경영실적이 건실한 가공무역업체로 현재와 같이 비제한 품목의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보증금 예치 불필요 및 관세 등 징수유예
– C류기업은 과거 상무부 및 세관총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불성실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시 관세 등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가공제품을 수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한다.
– D류기업은 밀수행위 또는 3차 이상 세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가공무역 경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업무 1년간 잠시 중단시킨다.

〈 유의 사항 〉

- 최근 세관 내에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집사국이 신설되어 밀수 등 부정 수출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우리기업도 가공무역제품 국내불법판매, 수입물품가격 저가신고 등 혐의로 중국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우리기업들의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가공무역용 수입원자재 및 가공제품의 국내판매 금지, 수입원자재 사용 후 규정된 기한 내에 말소수속을 이행하고 물품 수입 시 정확한 가격신고 등으로 세관규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무역흑자 축소 및 통상압력 완화 등을 위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률 및 수출입관세 조정 등과 함께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가공무역 규모는 8,318.6 억불로 전체 교역의 47.3%(2005년의 경우 48.6%)를 차지하였으며, 가공무역으로 인한 흑자는 1,888.8억불(2005년 1,424.5억불)에 달해 전체 무역흑자를 초과하였다. 2007년 중국의 가공무역 규모는 9,860.5억불로 전체 교역의 45.4%를 차지하였으며, 가공무역으로 인한 흑자는 2,492.7억불을 기록하였다. 2008년 가공무역 규모는 10,535.9억불로 전체 교역의 41.1%를 차지하였으며, 가공무역으로 인한 흑자는 2,967.7억불을 나타내었다. 2009년 가공무역 규모는 9,093.2억불로 전체 교역의 41.2%를 차지하였으며, 가공무역으로 인한 흑자는 2,646.4억불을 기록하였음.

2007.4.26일부터 종전 수차례에 걸쳐 발표된 가공무역금지상품 목록을 일괄 통합하여 총 1,140개에 달하는 가공무역금지상품 목록을 시행하였으며, 2007.8.23일부터 1,853개의 신규 가공무역제한 품목을 시행하였는바, 종전 394개 품목을 포함하여 가공무역제한 품목은 총 2,247개에 달하였다. 2009.2.1일부터 1,789개 품목에 대하여 가공무역금지품목을 유지하다가, 2009.6.3일부터 1,759개 품목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0.11.1일부터 44개 품목을 추가하여 1,803개 품목에 대하여 가공무역금지품목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09.2.1일부터 500개 품목에 대하여 가공무역제한품목을 시행하고 있다.

제한류 품목의 가공무역에 대해 보증금 장부 "實轉"관리를 실시한다. 즉, 기업이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을 위해 원자재 수입 시 세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가공무역 및 수출절차가 완료된 후 보증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다.

해관의 가공무역기업 관리유형 및 수출입제한품목에 따라 A, B류의 기업은 보증금의 공전관리 또는 50%의 실전관리를 실시하며, C류 기업은 보세 수입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의 합에 따라 100% 계산 징수한 보증금을 납부한다. 구체적인 A, B류 기업의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에 대한 보증금 납부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수입제한류상품보증금납부액 = (수입제한류상품 수입관세납부액+수입증치세액) × 50%
- 수출제한류상품보증금납부액 = 보세원부자재수입등록금액 × (수출제한류상품수출등록금액/가공무역수출상품등록총금액) × 종합세율 × 50%
- 수입원자재가 수입제한류 상품인 동시에 가공완성품이 수출제한류 상품일 경우, 수입제한류 상품에 따른 보증금으로 계산·징수되며, 그 방법은 상기와 동일
- 경영기업 및 그 가공기업이 동시에 중서부지역에 속하고,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을 실시할 경우 A, B류 이상의 기업은 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며, C류 기업은 보증금 납부
- 본 공고상 중서부지역은 동부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으로 동부지역에는 북경, 천진, 상해,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이 포함

상기 제한류 품목 확대 조치의 특징은 중국 동부지역에 편중된 가공무역기업의 중서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동부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동부와 중서부지역에 대해 보증금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 있다. 종전까지는 A류 기업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의 수출입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우대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금번 공고에 의하면 중서부지역에 소재한 A, B류 가공무역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류 품목 수입 시 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동부지역

기업의 경우 A, B류 모두 50%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단, C류 기업의 경우 중서부지역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100% 납부)

한편, 상기 가공무역제한 품목 확대 발표 후 홍콩기업들의 시행유예 및 현금 대신 은행보증서 대체허용 요청에 따라 상무부는 2007.9.5일 동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에 의하면 시행시기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8.23일부터 시행하되, 보증금 납부에 있어 현금 외에 은행보증서 등 다양한 형식을 허용하는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중국정부가 정책시행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절충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있는 가공무역 기업의 경우 부동산 담보와 은행예금의 질권 설정 등을 통해 은행보증서로 보증금 예치를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난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규정 변경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투자기업들이 중국의 복잡한 청산절차로 인해 겪는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8.2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외상투자기업청산관리규정"이 폐지되고, 내·외자기업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중국 "회사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한편 "회사법"에 따른 청산세부규정이 한동안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으나, 2008.5월 "청산 및 파산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발표되어, 대략의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장부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무한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바 우리 진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사·사무소 설치

중국내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

이 돼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재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대략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시장조사
- 중국 무역파트너와의 연락
-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 허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 및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민항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2006.1월부로 시행된 新「公司法(회사법)」과 개정「공사관리조례」에 따라, 外商投資企業(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중국내 지점(分公司) 개설과 재투자시 자회사 설립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이하 '外商投資企業의 연락사무소'를 의미)의 경우는 新 공사법에 관련 등기 근거조항이 사라지면서, 금년 들어 중국 각지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사무소 개설·갱신 관련 등기신청을 불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외자기업들 사이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연락 사무소 자체가 불허되는 것인지', '중국 內資기업과 마찬가지로 등기하지 않고도 사무소개설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상행정당국은 금년 4월과 5월에「집행의견」을 잇달아 공표하여, 연락사무소의 등기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했다. 1)외상투자기업의 연락사무소는 工商등기 불필요 2)연락사무소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무소는 지속유지 가능(단, 등기없이) 3)연락사무소의 영업행위 금지 4)연락사무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상투자기업은 본점 소재지 이외 지역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1) 연락사무소 (辦事處) (2) 지점(分公司)의 2가지 형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2005년 말까지 연락사무소는 工商행정국 등기가 필수적이었고, 등기증을 근거로 은행구좌개설, 사무실 계약, 직원채용 등 사무소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1월부터 등기가 불허될 뿐더러 영업활동에 대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큰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세구소재 외자기업들은 연락사무소 등기문제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보세구기업은 보세구 외부에 분공사 개설이 금지되고 있지만, 당국의 묵인하에 區外연락사무소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문제와 관련한 집행의견 공표로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져, 현재 대부분의 보세구기업이 행하고 있는 영업형태(회사등기는 보세구內, 영업활동은 區外연락사무소)는 앞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단, 현시점에서 보세구 구외사무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일 경우 보세구의 존속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계적인 시행이 예상되나, 향후 당국의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區外 영업거점의 합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연락사무소의 형태 및 등기 여부〉

연락사무소의 형태	등기 가능여부
• 판사처(中文명칭: 辦事機構) – 외상 투자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연락사무소 • 대표처(中文명칭:常駐代表機構) – 해외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연락사무소	(2006.1월부터)

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06.1월부터 연락사무소의 설립 및 연장, 변경 관련 등기업무를 정지하고 기존 등기된 연락사무소는 유효기간 종료시 등기 말소수속이 권장되고 있다. 등기제도는 철폐되지만, 법적으로 사무소의 존재 자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內資기업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락사무소(판사처) 설립 시 등기 불요(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國內·外資기업간 公司法의 통일적 적용)했으며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소는 설치 운영 가능하나, 이 경우 원래 취지대로 '현지법인 본점과의 연락업무, 정보수집'에만 종사할 것을 요구했다.

명의만 현지법인 본점(보세구 등기기업 등)에 두고, 다른 지역에 설치된 연락 사무소를 통해 행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보세구의 區外 사무소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등기말소 후 분공사를 설립하여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해야 한다. 보세구기업의 경우는 분공사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영업범위의 확대 (국내판매권 추가)가 필요하다.

신규설립은 물론이고, 기존 연락사무소도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소가 되며, 이 경우 등기증이 없는 관계로 공상행정국 관할 이외의 업무 즉, 세무국, 노동국, 공안국 등 을 상대로 한 각종 사무실 운영관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즉 외국인취업허가증(노동국), 복수비자(공안국), 개인소득세 납부(세무국) 및 은행 구좌 개설, 사회보험 납부, 사무실 계약 등이 포함된다. 보세구의 경우, 일반지역에 위치한 區外 분공사를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보세구에 부여되는 세제혜택(15% 기업소득세)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일반지역의 기업소득세는 33%의 고율이 적용된다. 분공사를 통한 영업활동 시 증치세, 영업세 등 납부 의무 등 세무부담이 가중해지게 된다.

〈연락사무소(판사처)와 분공사의 비교〉

구 분	分公司	연락사무소 (판사처)
정의	현지법인의 생산경영 및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경영권을 보유한 分工場' 분점' 판매거점, 경영거점	경영권이 없는 연락사무소
업무 범위	현지법인의 경영범위내 영업활동 가능	연락업무, 정보수집
거래계약 체결	가능	불가
증치세영수증(發票) 발행	가능(현지에서 납세)	불가
은행구좌 개설	가능	불가
공상국 등기	필요	등기제도 폐지(2006년9월)
납부 세금	매출 증치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등	개인소득세 등
영업허가증	外商投資企業分支機構(非法人)영업허가증	–
회계보고서 제출	세무국에 매월, 또는 분기별 제출	불요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 소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사용 연한이 다른 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 경우 2007.3 제정된 물권법(2007.10.1일 시행)에 의해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된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 유상출양방식 :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최초로 양도받는 것으로 협의취득 또는 입찰·경매·공시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 이미 출양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금융상의 제한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미비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의 틀에 의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WTO 양허내용에 따른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즉 기한 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구비 시 외환관리국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 예금구좌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은 정당한 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50% 초과시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제반서류를 청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는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2)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자금차입 규제

중국은 본국(한국)이나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등의 규제는 없었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부터 불법외자도입 등에 의한 채무부담가중 등에 따라 외환 및 외채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차입의 경우 인민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환관리국에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다.

또한, 외자은행에 대한 장·단기 차입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외자은행이 외채한도를 소진할 경우 중국내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어 자금코스트의 증가로(해외 차입 시 영업세 계산 시 차입금 이자만큼 차감으로 세금 절감)이어지고 있으며 4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도 자본금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기업 및 외자은행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경쟁정책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07.8.30일 '반독점법'을 통과시킨 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8.8.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그동안 '反不正當競爭法' 및 '가격법' 등의 경쟁법 형태를 운용해 왔으나, 금번에 '반독점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경쟁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중국 '반독점법'은 독점협의(Monopoly Agreement),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기업결합) 등 세계 각국의 독점규제법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중국의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권한의 남용금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독점협의를 통한 담합행위를 보면,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가격의 고정·변경, 생산·판매 수량 제한, 시장분할, 신기술·신설비 구입·개발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의 독점협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도 수직적 형태의 독점협의로 간주하여 금지된다.

다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관련, 시장에서 가격과 수량 등 거래조건을 통제할 만한 힘을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바, 가격독점, 약탈적 가격설정, 차별적 대우, 배타적 거래 강요, 끼워팔기 등이 금지된다.

기업결합과 관련,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인수합병, 주식·자산 취득을 통한 통제권한 보유 등의 경영자 집중이 국무원이 규정한 신고기준에 속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반독점 집행기구에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2008.8.1 시행)에 따르면,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전 세계 매출이 연간 100억 위안을 넘고, 동시에 각각 중국내 매출이 4억 위안 이상인 경우 및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중국 내 연간 총매출이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각 사의 중국내 매출이 4억 위안 이상인 경우 등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국가안전에 관련된 경우,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 이외에,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안보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당국 관련, 여러 기관이 반독점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바, 국무원 산하에 설치된 반독점위원회에서 반독점 규정 제정, 경쟁정책 연구·입안 등의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고, 반독점집행업무는 상무부, 국가공상행정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즉 상무부 산하 '반독점국'에서 경영자집중행위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담당하며, 국가공상행정총국 산하 '반독점과 반부정당경쟁 법률집행국'에서 독점협의(가격독점 제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권한남용행위에 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한 '가격감독검사사'에서 가격독점행위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아직 시행초기로 현재 하위법규 등의 세부규정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반독점 집행기구도 분산되어 있어, 향후 실시세칙 등의 입법동향 및 경쟁 당국간 역할분담 및 집행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중국의 WTO 가입과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비관세 장벽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 •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 실시(6종 116개품목) •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	• WTO가입 5년 후 수입허가증制 취소 • 가입 4년 후 非정부 구매 기계 전자전기제품 입찰制 취소 • 가입 5년 내 모든 쿼터制 점진 취소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1.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함.

관세 장벽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산품 평균 관세율 17% • 농산품 평균 관세율 19%	• 공산품 관세율 2005년까지 9.4%로 인하 • 농산품 관세율 2004년까지 17%로 인하 • 중국은 WTO 가입 후 정보통신기술 협정 (ITA)에 서명하고 ITA 적용 품목 중 2/3에 대해 2003.1.1일 까지 관세폐지, 잔여분은 2005.1.1일까지 관세폐지 • 자동차 관세는 현행 80~100%에서 2006년 7월까지 25%로 인하, 같은 기간 중 부품은 23.4%에서 10%로 인하 •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tariff-rate quota system' 및 'state trading' 적용

투자 조건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	• TRIMs 시행 •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 •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 • 수출의무비율 폐지

대외무역권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 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 • 상하이(浦東), 선전(深圳)의 합자 무역회사에 한해 각종제품 수출입권 인정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이내 점진적으로 대외 무역권 부여

유통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도매 • 상하이, 선전(深圳) 소재 합자 무역회사 및 개방 시범도시 소재 합자소매업체에 한해 외국 생산제품의 중국 내 유통 허용 • 외국인기업의 타사제품 도매 금지 • 4개 직할시에 한해 외국인 소수지분 합자도매업체 각 1개사 설립허용 • 외국기업의 유통망, 도매점, 창고시설 소유 및 경영 금지	■ 도매 • 외국기업의 식염, 연초 도매업은 불용 • 2005.1월 이전 합자기업의 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 유통 허용. 2003.1월 이전 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除草) 필름 유통 허용 • 2002.1월 이전 합자기업의 외국 다수 지분 허용: 유통업체 진출 지역 및 수량 제한 폐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제조 상품 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 외국서비스업자의 유통 상품 관련 서비스 전면 허용(A/S 포함)
■ 소매 • 각 성 성도(省都),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에 한해 합자소매업체 '제한적' 허용 • 3개 이하 분점보유 합자소매 업체의 외국측 지분 65% 허용. 분점 3개 초과 시에는 중국측 다수 지분 요구 • 합자소매업체의 도매업 가능 (별도승인건)	■ 소매 • 연초(煙草)는 개방대상에서 제외 • WTO 가입 후 5개 경제특구,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靑島, 鄭州, 武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 北京, 上海는 합자소매업체 4개 이하 허용. 기타 도시는 2개 이하로 제한 • 北京소재 합자기업 2개사의 北京내 분점설치 허용 • 2002.1월 이전 외국 측 다수 지분 허용 및 각 성 성도(省都), 重慶, 寧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 2003.1월 이전 소매유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 보유비율 제한규정 폐지 • 외국 유통업체 점포면적 20,000s/m 미만 제한규정 폐지(中-EU 타결안)
■ 프랜차이즈 • 1998.4월부터 내외국(內外資)기업의 직판(direct sales) 금지	■ 프랜차이즈 • 2003.1월 이전 모든 제한규정 폐지 • 향후 직판활동 관련 조례·규정 제정시 WTO 회원국들과 논의

운송 및 관련 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 철도·도로 운송 •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 측 소수 지분 합자기업 허용 • 2003.1월 이전 외국인독자 도로 운송 업체 설립 허용. 2006.1월 이전 외국인 독자 철도 운송업체 설립 허용
–	■ 창고업 • 가입과 동시에 외국 측 소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허용 • 2003.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 화물운송대리 • 외국측 지분율 50% 미만으로 제한 • 극히 제한적·예외적 범위내 에서 외국인 단독투자업체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허용지역 제한 • 절대다수 합자기업은 국제 화물운송 영업만 허용되고 극소수만이 국내화물 운송 영업 가능	■ 화물운송대리 • 외국 측 다수 지분 점진 허용 • 2004.1월 이전 외국유통기업의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 1년 후 지사 설립 허용(등록자본금 US$ 12만 추가 요구) • 합자기업 최초 설립 5년 후 합자기업 추가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업무범위를 국제운송 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외국측 소수 지분만 허용	■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 내 중국 측의 지배 지분 요구 • 영업허가증은 경제상황에 따라 발급 • 국내기업과 달리 합자기업은 국제시장 업무 수행 의무
–	■ 특사운송 • 외국 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2004.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통신, 인터넷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업체도 보유(또는 경영)불가	• WTO 경쟁원칙 도입 기초통신 및 부가가치통신서비스(인터넷 포함)의 단계적 개방
–	■ 부가가치통신서비스(무선호출 포함) • WTO 가입직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 지분율 30% 초과 합자기업 설립 허용 • 2002.12월부터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靑島, 瀋陽, 深圳, 廈門, 西安, 太原, 武漢 등지(14개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 지분율 49%까지 허용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 2003.12월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 지분율 50%까지 허용
–	■ 이동전화(음성 및 데이타) 서비스 • WTO 가입직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2002.12월부터 허용대상지역을 상기 14개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 2004.12월부터 외국지분율만 49%까지로 인상 • 2006.12월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
–	■ 기초통신서비스(국내 및 국제 서비스) • 2004.12월부터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2006.12월부터 허용대상지역을 상기 14개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 2007.12월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보험업

	현행 개방 내용
보험업	• 외국 생명보험사에 대한 지분제한 유지(자국사 지분참여 25% 이하, 합자기업 50% 이하) • 非생명보험사(손보, 재보)의 단독법인 설립가능 • 영업 지역제한 폐지 • 상품제한 폐지: 생명보험사의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 단체, 양로, 연금보험 영업 허용, 손보사의 경우 강제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전 상품판매 가능

은행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대부분 외국계은행은 외국 기업과 외국 인대상 외환 업무에 종사 • 일부 외국계은행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외국인 대상 위안화업무 실시 •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 중국인대상 영업 금지 • 외국계 독자/합자은행 설립 허용 •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 설치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 •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 허용(자산 US$ 100억 이상)	• 엄격한 심사 관리 기준 적용 •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 은행에 대해 위안화업무 허용 • 2003년까지 23개 도시 개방 • WTO 가입 5년 이내 모든 지역 및 고객 제한규정 폐지 • 2005.1월까지 외국계은행의 소유권, 경영 및 법정형태 등에 관한 제한 규정 폐지 • 중국계은행과 동시에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업무 허용 •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업무 허용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 외환업무 ● WTO 가입 후 외환업무의 지역제한 규정폐지 ● WTO 가입 후 외국계은행의 중국 기업/ 중국인 대상 외환업무 허용
■ 위안화업무 ● (상하이 및 선전 소재) 32개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영업 허가증 보유 ● 상하이(上海), 선전(深圳)지역 외국 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안화 영업 ● 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지역 고객 상대 영업 가능 ● 중국 내 3년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 년도 흑자경영일 경우에 한해 위안화 영업 허가증 신청 가능	■ 위안화업무 ● WTO 가입 5년 이내 위안화업무 지역 제한규정 단계적 폐지 [上海·深圳·大連·天津], [廣州·青島·南京·武漢], [濟南·福州·成島·重慶], [昆明·珠海·北京·廈門], [汕頭·寧波·瀋陽·西安] 순으로 폐지 ● WTO 가입 2년 내 중국기업, 5년 내 일반 가계대상 위안화영업 허용 ● 한 지역에서 위안화영업이 허용된 외국계은행은 다른 개방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

증권업 및 자산관리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증권업	● 합자증권사 설립 허용(외국 측 지분 33%만 참여가능) ● A株 중개 업무를 제외한 증권업무 허용
자산관리	● 합자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설립허용 (외국 측 지분 49%까지 참여가능)

전문 서비스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법률 ● 외국계 로펌은 중국법률 관련 업무 종사 금지 ● 아래 지역에 영리성 사무소 설치 가능: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青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 외국계 로펌의 중국 내 사무소 는 기업별 1개로 제한	■ 법률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 설치 지역/ 수량 제한 폐지 ● 외국계 변호사사무소는 중국이외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영업경험 필요 ● 외국계 변호사는 매년 중국 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구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 고용 불가
■ 회계 ● 기존 합자 회계사사무소는 존재하지만 최근 추가 인가 사례는 없음. ● 외국계 회계사사무소는 외국 기업 및 해외증시/중국 B증시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가능 ●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CPA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인증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회계 ● 중국 CPA 자격 획득 후 회계사무소 설립 가능 ● 중국 CPA 자격획득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실시 ● 외국 회계사무소는 중국 회계사무소와 제휴 가능 ● 본지화(本地化) 요구 강제규정 폐지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 도시계획 ● 합작기업 내 외국 측 다수 지분 허용 ● 외국을 대상으로 한 관련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단체와 협력 요구
–	■ 의료서비스(치과 포함) ●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 허용 ●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 숫자 제한 가능 ●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국적 자로 구성 ● 외국인 의사는 위생부 허가증 취득 후 중국에서 단기적(6~12개월)으로 의료 활동 가능

상업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 세무서비스 ● 외국인 다수 지분 합자기업 설립 허가, 2005년 이전까지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	■ 컴퓨터서비스 ● 자격요건 부합 엔지니어 또는 학사 학위 소유자로써 3년 이상 유경험자 에 대해 중국 내 서비스업무 허용 ●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조치 없음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독자기업을 제외한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허용
–	■ 부동산서비스 ● 외국인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업무 허용(단, 호화 부동산은 제외) ● 합자기업에 대해 수수료 또는 계약 체결방식의 서비스 허용
■ 광고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 49%로 제한	■ 광고 ● 2002.1월 이전 외국 측 다수 지분 인정, 2004.1월 이전 외국인 독자 기업 인정
–	■ 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화물검사 ● 화물검사 서비스에 법정(法定) 화물 검사업무는 미포함 ● 2002.1월 이전 합자기업 내 외국 측 다수 지분 허용, 2004.1월 이전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외국 측 파트너에 대해 3년 이상의 영업경험 보유 요구,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US$ 50만 이상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 • 중국건축기업과 합자건축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요구조건은 별도 관리 • 합자건축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건축 프로젝트 수주 의무화

시청각 부문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10편의 외국영화 수입	■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20편의 외국영화 수입
	■ 시청각제품 • 합자기업 설립후 영화를 제외한 시청 각 제품 유통 허용
■ 영화상영관 • 외국인 소수지분 조건하에 영화상영관 설립 허용	–

관광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호텔업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율 25% 이상	■ 호텔업 • WTO 가입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 2003년까지 외국인 독자호텔 설립 허용
■ 여행사 • 합자여행사내 외국측 소수지분 요구 • 합자기업의 외국측 연간 매출액 5,000만 달러 이상 요구 • 합자기업 등록자본금 500만 위안 이상 요구 • 합자여행사의 영업범위는 중국 국내로 제한하며 해외(출국)여행은 불허	■ 여행사 • 국가지정 휴양지내 영업 허용(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 • 2003.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 2005.1월 이전 외국인독자기업 허용 • 2005년 연말이전 지사설립 제한규정 폐지

기타 서비스

– 교육서비스 :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특수교육을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합자학교 설립허용
– 환경서비스 : 합자기업만 허용
– 기타 금융서비스 : WTO 가입 후 금융정보·데이터·자문 서비스 허용

캄보디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0년도 전세계 179개 국가중 10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114위), 베트남(144위), 라오스(138위), 미얀마(175위) 등 인근국가와 비교시 시장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로서 특별한 관세 장벽은 없다. 2004년 WTO 가입을 계기로 대폭적인 관세인하 양허계획을 WTO에 제출하는 등 추가 관세인하에도 적극적이다.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HS 번호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종가세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에 따라 미화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은 리엘화로 부과된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등의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들, 비료, 스포츠 용품, 교육용품 및 교과서는 0%의 관세율이 필수소비재와 기초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은 15%, 기타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는 35%이다.

수입품목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성 및 투자성 수입, 살충제 등 농약,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 및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11월부터 발

효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캄보디아 세관 통관 시 특혜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바, 이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세관행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자유무역협정이 완벽히 이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부과금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4.35% : 디젤
- 10% : 모터사이클 및 부품, 담배, 경유, 등유, 윤활 그리스,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광천수, 기타 과일음료
- 20% : 맥주 일부, 포도주 일부
- 25% : 자동차부품, 시가, 윤활유
- 30% : 맥주 일부
- 33.33% : 휘발유, 양주, 포도주 일부, 샴페인
- 45% : 승용차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출입검사부(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 CAMCONTROL)은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하여, 통관 시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9월 제4기 정부 출범 아래로 범정부적인 개혁을 추진중이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세관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서류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관 컨테이너당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고 있다. 통관비용을 중복적으로 징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공식적인 수수료도 요구한다.

현재 캄보디아의 최대산업으로 300여 개의 공장에서 32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봉제산업의 경우, 캄보디아 국내에는 섬유 원부자재 생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부자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비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상품의 통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여타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적으로 통관시 총 11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732달러 정도의 통관 비용, 통관에 2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출용 의류의 경우 통관 시 총 45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통관기간도 평균 19일 소요됨으로써 중국과 비교하여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수입통관상시 미화 4,500달러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 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BIVAC사를 통해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2009.4.30일부로 BIVAC 선적전감사가 폐지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섬유분야 통관소요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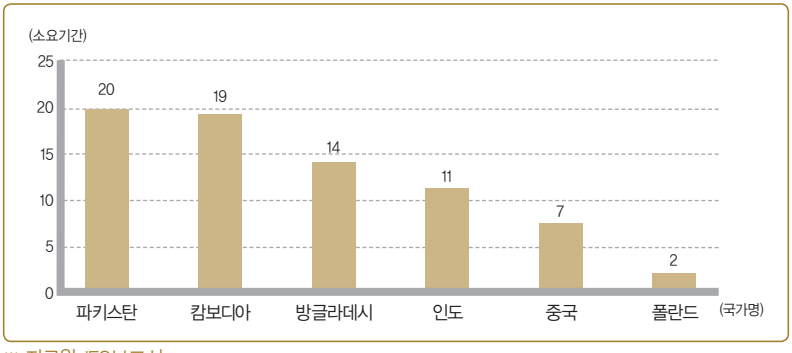

※ 자료원: IFC보고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쌀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과도한 수입통관비용으로 인해 쌀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료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의 2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태국의 7%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류를 수출하는데 무려 45종류의 서류절차가 필요하고, 담배원자재를 수입하는데 22종류의 서류절차를 마쳐야만 통관이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모든 서류처리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현행 세관행정은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출입 업자들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류처리 과정 마다 담당 공무원에 급행료를 지불해야만 그나마 정상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봉제를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관련법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에서 품질과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검사부(CAMCONTROL)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서베이와 함께 보험 서베이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인해 무역업계에서는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 등으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 상에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수입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세계은행이 주축이 되어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등 환경 파괴 혹은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취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단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규정이 매우 취약했다. 그러나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 특허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 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지리표기 보호법, 식물연구와 관련된 권리 및 보호 등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3년 도입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 대부분이 불법복제된 것이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금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분야는 2005.9.27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관련분야	비고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금지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금지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금지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금지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금지

※ 자료원 : 캄보디아 개발원회(CDC)자료,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111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인해 투자진출과 관련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2003년 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는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450불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신청 후 7~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국산화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One-Stop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투자 인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기업의 경우 28종류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 플랫하우스 등)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고, 집합건물 전체 가구 중 외국인 소유 가구 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7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 송금 관련

캄보디아에는 아직 외환규제가 없는데, 이는 외환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 제11조는 금융시스템을 통한 외국통화의 획득과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통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금융조달

캄보디아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은행의 대출에 금액 제한이 없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로 제한된다. 현재 캄보디아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시 이자율은 무려 15%에 달하고 있어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차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국외로부터의 자금차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대형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진출해있어 우리 투자기업들의 자금조달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국, 제3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아래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캄보디아의 은행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 2년 이상의 융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며, 70%가 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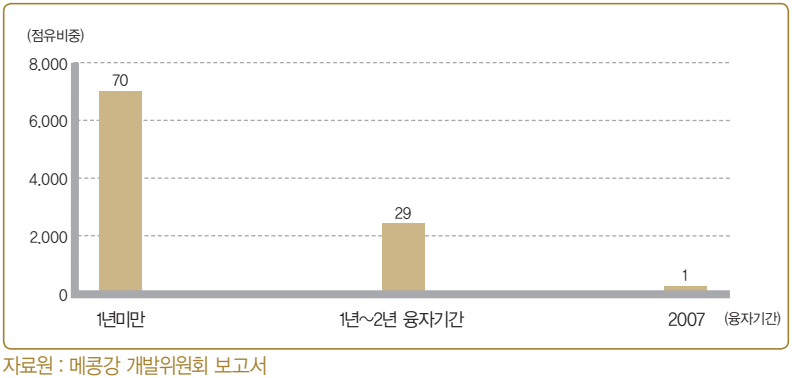

자료원 : 메콩강 개발위원회 보고서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융자를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대부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융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융자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융자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융자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융자는 기업의 재정상태 보다는 인간관계에 기준을 두고 융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3) 외환구좌 보유제한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규모 거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화 구좌를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는 세금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캄보디아 금융법 및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1994.8월 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법인 소득세율은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는 30%, 보험 및 재보험은 총 프레미엄의 5%로 설정되어 있다. 투자자의 경우 관계기관(CDC)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 비즈니스 우월성(Doing Business 2009) 분석

관련 분야	주요 지표 (단위, 기준)	캄보디아	베트남	동아·태평양 지역 평균	OECD평균
창업/169	필요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1인당 GNI) 소요 최소자본(%, 1인당 GNI)	9 85 151.7 43.9	11 50 16.8 0.0	8.6 44.2 32.3 37.3	5.8 13.4 4.9 19.7
인허가/147	필요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1인당 소득)	23 709 64.3	13 194 313.3	19.1 174.3 171.0	15.4 161.5 56.7
고용/134	고용난이도 지수(단위: 0~100) 근무시간 유연성 지수(") 해고난이도 지수(") 고용경직성 지수(") 해고비용(주급)	44 60 30 45 39	11 20 40 24 87	19.2 19.2 20.0 19.5 38.6	25.7 42.2 26.3 31.4 25.8
소유권 등기/108	필요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자산가치)	7 45 4.4	4 57 1.2	5.0 99.0 4.1	4.7 30.3 4.5

관련 분야	주요 지표 (단위, 기준)	캄보디아	베트남	동아·태평양 지역 평균	OECD평균
대출/68	법적 권리 지수(단위: 0~10)	9	7	5.8	6.8
	신용정보지수(")	0	4	2.0	4.8
	Public Registry Coverage(%, adult)	0.0	13.4	7.2	8.4
	Private Bureau Coverage(%, adult)	0.0	0.0	11.3	58.4
투자자 보호/70	거래투명성 지수(단위: 0~10)	5	6	5.1	5.9
	고용주책임지수(")	9	0	4.6	5.0
	주주소송지수(")	2	2	6.3	6.6
	투자자보호지수(")	5.3	2.7	5.3	5.8

자료원 : World Bank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캄보디아를 운행하는 항공사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며, 심지어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송배전 사업은 전력공사(EDC)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전무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타장벽

상용비자(E)는 주한대사관 또는 입국시 공항에서 1개월 유효기간의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수, 복수 선택도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비자 수수료가 상이하다. 다만 입국시 관광비자(T)를 취득한 경우 비즈

니스 비자로의 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고, 연장도 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 시에는 상용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한 한국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여권 및 비자 사본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확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 교통부 산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1년의 캄보디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 다만 관광비자(T) 소지자는 캄보디아 면허증으로의 교제가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용비자 및 면허증과 관련한 제도상의 특별한 장벽은 없다.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투자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관은 2010.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 및 당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태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율 정책상의 장벽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주·뉴질랜드·일본·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은 1999.1.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5%, 중간제품은 10%, 미완성 제품 등은 2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3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대 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12.28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10월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이 1,047개,

농산품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치들은 기존 무역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주재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10.6%에 달하고 있는 등 여전히 높은 관세율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권역내 무역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축소(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여 나가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SEAN의 무역자유지대 실현이 구체화되면, 향후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차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WTO에 의한 최혜국 특혜관세 등이 오히려 아세안 역내공동특혜관세(CEPT)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보다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관세 장벽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내각의 결의에 의거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3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주로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0.10.21일 현재)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Exempted	125
4	Onion	27	142
5	Galic	27	57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0.10.21일 현재)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6	Coconut	20	54
7	Dried Longan	30	53
8	Coffee bean	30	90
9	Tea	30	90
10	Pepper	27	51
11	Maize (Corn)	20	73
12	Rice	30	52
13	Soybean	Exempted	80
14	Copra	20	36
15	Onion seeds	Exempted	218
16	Soybean Oil	20	146
17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8	Coconut Oil	20	52
19	Sugar	65	94
20	Instant Coffee	40	49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2010.1.1~12.31일	2	119
	2011.1.1일부터~	10	119
22	Raw Silk	20	226
23	Tobacco leaf	30	72

출처: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WTO 협정에 따른 관세율(재정부 관세국)

한편, 태국의 높은 소비세(Excise Taxes)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60%, 승용차 30~50%이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80%에 고율의 소비세 40%, 부가가치세 7% 등이 부과되어(통합세율 : 200~300%) 수입차량 가격상승의 주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전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 적용하였던 국산사용 및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2000.8.1일 폐기되었다. 반면, 2001.2월 Thaksin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업체 중시 및 무역 역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영기업의 국산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토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관세청은 2000.1.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을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는 등 국제화·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시된 최고가격 이하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한 많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투명성과 일관성이 낮아 통관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전 또는 세관도착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9.7일)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별도로 투자청 승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등에 기증하는 물품, 외교관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의 사전승인서를 징구토록 하는 등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규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여 종종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량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Gold Card 업체(우수업체) 및 우량관세사를 기준·여건에 따라 사전에 선별한 후, 여기에 선정된 업체 및 관세사들을 환급 신청 시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부

여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장벽

태국은,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혜(협정)관세를 부여를 위해 CEPT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 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로서, 수입물품의 FOB 가격 기준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회원국 내에서 창출된 것에 한해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CEPT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원국 상호간에 합의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의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발급받아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역내 무역규모의 확대, 여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특혜관세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특혜관세의 적용과정에서 잦은 통관지연, 민원마찰 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반덤핑 조치 사례(2010.10.20)

Product	Country/ 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 (c.i.f.)
H-shape Steel	China	10/10/10	27.81%
Paving blocks, Glass blocks	China	16/08/07	5.10~82.78%
	Czech Republic	15/01/09	54.33 %
Cold-rolled carbon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and cut-to length	Kazakhstan	25/01/03	26.36%
	Russian Federation	25/01/03	35.80~64.70%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단, 조선/철골조공사용으로서 투자청(BOI) 스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01/07/10	33.26%
	Argentina	01/07/10	37.94~53.09%
	Chinese Taipei	01/07/10	3.45~25.15%
	India	01/07/10	26.81~31.92%
	Indonesia	01/07/10	24.48%
	Japan	01/07/10	3.22~36.25%
	Kazakhstan	01/07/10	68.11~109.25%
	Republic of Korea	01/07/10	0~13.96%
	Romania	01/07/10	27.95%
	Russian Federation	01/07/10	24.20~35.17%
	Slovak Republic	01/07/10	51.95%
	South Africa	01/07/10	128.11%
	Ukraine	01/07/10	30.45~67.69%
	Venezuela	01/07/10	78.44%
Citric acid	China	23/01/10	28.70~38.10%
Woven Fabrics of Cotton and polyester	China	15/01/09	7.76~10.01%
Sodium Tripolyphosphate	China	18/01/10	6.95~31.42%

출처: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품목별 장벽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10월에 승용차와 다목적차에 수입관세를 각각 42%와 68%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승용차 35~48%, 다목적차 29%의 높은 소비세(승수식 계산, multiplier)와 10%의 지방세, 7%의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됨으로써 승용차에 대한 전체

세금부담은 배기량에 따라 213.2~308.1%, 다목적차에 대한 세금부담은 182.8%에 달하게 되었다.

반면, 이로 인하여 수입 승용차 및 수입 다목적차와 태국 내 현지조립 자동차간 세금부담 차이가 100%이상에 차이가 있어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세제시책을 추진해 왔다. 태국 정부는 2000.1.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 생산업체에 부과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하였다가 30%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74개 자동차부품과 21개 자동차부품은 각각 10%와 5%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자동차 현지조립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소형 승용차 생산의 지역중심국가가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이용 승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소세 조정한 데 이어 2007.6월 태국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승용차 생산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소세도 다시 인하하였다. 2008년 말 기준 자동차관련 세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관세
  - 승용차 : 완성차 80%, 부품 30%
  - 상용차(버스, 트럭, 특수차량) : 완성차 40%, 부품 20~30%

- 소비세
  〈multiplier : (CIF+관세+부과금)×(소비세율/(1-1.1×소비세율))〉
  - 승용차와 밴 : 3000cc이상 50%, 2500cc이상 40%, 2000cc이상 35%, 2000cc이하 30%
  - 에너지 저소비자동차(Hybrid/전기/연료전지 자동차) : 10%
  - 대체에너지 자동차(NGV, 에탄올) : 20%
  - 픽업트럭 : 3%, 승용픽업(PPV) : 20%, Double Cab 픽업 : 12%
    * 단 3000cc이상 승용차 및 픽업트럭은 50% 세율 적용
    ** 대형트럭, 10인승 초과 버스, 특수차량은 소비세 면제

- 지방세 : 소비세의 10%(소비세 부과차량에 적용)

- 부가세 : 7%(모든 자동차에 적용)

한편, 태국은 일본과 일종의 FTA인 태국/일본경제협력협정(Thailand/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05년 말 협상 완료하고 2007.11.1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의 3,000cc급 자동차의 관세가 현행 80%에서 60%로 인하되며 3,000cc이하 급에서는 현행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대형차에 대하여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중소형 이하에서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태국 내 현지생산을 보호함으로써 일본 자동차의 독점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의약품 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청은 식품, 담배, 화장품, 의약품, 마약, 사료, 비료, 유해물질, 동·식물, 종자,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휘발성 물질 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02.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농산물·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및 품질표시

태국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은 소비자 보호, 안전, 품질제고 등을 목적으로 품목별, 용도별로 공업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008.9월 말 2,765개 규격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규격 중 사전인증을 획득하여야만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강제규격은 2008년 말 기준 95개가 지정되어 있어 동 규격을 적용 받는 제품의 수입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들 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다음과 같으며,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태국산업표준원 웹사이트(www.tisi.go.t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건축자재(20) : 철봉, 철선, 강판 등 철강제품(17), 유리제품(2), 시멘트(1)
- 전기제품(33) : 형광램프 및 관련 부품, 세탁기, 케이블, 퓨즈, 전기다리미, 전기스토브, 전기휀, 전기포트, 전기밥통 등
- 소비재(12) : 모기향, 세탁용 세제, 휴대용 소화기, 성냥, 유아용완구, 가스라이터 등
- 기계류 및 수송기계(16):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내연엔진용LPG 실린더, 헬멧, 모터사이클용 엔진윤활유, 모터사이클 머플러, 자동차 안전유리, 안전벨트, 자동차 구조물용 열연강 등
- 기타(14) : 타피오카 펠렛, 상수도배관용 PVC 파이프, 샤워 및 수도꼭지, 파인애플 통조림, 고체 알코올연료, LPG통, 의료용 산소, 의료용 이산화탄소, 의료용 질산, 플라스틱 의약품 용기, 락카칠신나, 왁스, 암모니아질산염 등

태국 산업표준원은 무역상대국과의 규격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가능한 한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공업규격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규격인증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외공장이라 하더라도 ISO 9000 인증을 받았거나 태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기관이 인정한 실험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태국 내로 수입 시 품질관리시스템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강제규격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벽으로서 최근 들어 강제규격의 도입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철강,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등 태국의 국내 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신규산업 분야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강제규격 대상제품에 대하여 세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신규 규격 도입 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두지 않거나 시험검사 설비가 부족한 채 강제규격을 도입함으로써 적기 통관에 차질을 초래하여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다.

공업규격 이외에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일부 품목은 품질표시(labelling)가 요구되고 있다. 품질표시는 소비자에게 제조업자, 성분,

용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어표기 또는 영어·태국어 병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품질표시와 실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규제

환경자원부는 1992년에 제정된 "국가 환경의 질 향상 및 보전에 관한 법(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에 의하여 폐수, 배기가스, 기타 쓰레기 및 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 이러한 공해물질의 발생방지 및 저감,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공해시설기준을 고시한다.

이러한 공해시설의 소유자는 환경관리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의 운용기록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관련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징역 및 1만 바트(3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 환경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는 사업 착수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국내조달이 가능한 공사는 태국업체(태국인 지분 51% 이상)에게만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외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있다.

-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조달기관이 없고 중앙정부의 '국' 단위, 76개 지방 '도' 단위, 각 군의 '부대' 단위, 각 국영기업체가 개별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최소한 400여 구매기관이 있음.
- 동일기관의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따른 시기별, 품목별

규격별로 입찰 건을 분리하여 발주
- 구매하는 품목별 규격과 설명서, 수량, 금액, 절차, 자격요건, 태국 내 시공경험 요구, 사후평가 등 상세한 입찰정보는 유료 판매
- 국제입찰이 아닌 경우, 입찰공고, 서류작성이 태국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접근이 어려움.
- 태국정부는 2002년부터 모든 정부기관이 정부입찰을 공고하고 안내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입찰은 전자입찰(e-auction) 방식을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태국어로만 웹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입찰 공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이 입찰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실정
- 입찰공고 후 마감기일이 짧고 구매물품의 납기가 짧으며, 입찰보증이나 이행보증을 위한 증명서를 태국 내 은행이나 구매기관이 인정하는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데 제약
- 입찰서 마감 후 사후평가 절차가 있는 경우 입찰자가 납품할 견본의 성능시험 시 이해관계자 입회가 배제되며, 시공경험과 기술에 대한 평가결과만 발표될 뿐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공개 또는 보장하지 않음.

따라서 태국 내 재원에 의한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태국 구매기관의 고려에 의해 외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태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요구한다. 이는 태국 건설업체의 육성, 시공경험 축적,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다. 태국정부도 정부조달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달행정의 투명성은 수년 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외국인에게 정부조달시장을 허용하는 시장개방협정 가입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등 외국 차관을 재원으로 하여 발주하는 공사가 많으며, 국내자금(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도 태국 건설기술로 설계, 시공, 감리가 어려운 공사는 국제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조달상의 제약요소

조달규정

태국의 정부기관, 지방관서의 구매 시 적용하고, 국영기업의 발주시 자체조달규정에서 준용되는 수상실의 조달규정(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upplies Section) 제16조에 의하면 자국산 구매를 우선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는 3인 이상의 공급자 중 국내산이 최저가보다 3% 미만 비싼 경우 그 국내업체를 선정하고, 국내산이 최저가보다 5% 미만 비싼 경우 새로이 가격협상을 통해 국내산의 가격이 3% 미만으로 낮아지면 그 국내 업체를 선정한다.

상무부의 연계구매제도(Counter-trade policy)

태국정부, 국영기업이 3억 바트 이상의 물품 및 공사입찰을 발주할 때에는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50%에 달하는 연계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2000.5월 연계구매정책을 강화하여 연계구매대상 입찰규모를 5억 바트 이상에서 3억 바트 이상으로 인하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국제 금융기관이나 외국정부의 차관자금에 의한 프로젝트는 연계구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 참여자는 응찰 시 연계구매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상무부의 국제무역국과 연계구매계획을 확정한 후에 낙찰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무부는 연계구매의 대상물품으로서 31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이 있는 주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됨으로써 입찰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사후자격심사(Post Qualification)

태국은 주요공사 등 입찰 마감 후에 시행기관, 국영기업에서 입찰서류, 응찰자의 시공경험, 기술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자격심사(Post Qualification)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 응찰자라

할지라도 발주기관이 기술적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하게 된다. 태국정부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자격심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비공개리에 진행되는 점, 심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 등 투명성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발명, 의장, 의약품을 특허대상으로 하는 특허법은 WTO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1999년에 개정 발효되었으나, 특허관련 행정자원의 부족으로 신청에서 심사, 등록까지 5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태국 지식재산권청은 등록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일부 부문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구한 바 있으며, 2005년에 파리협약 가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2008.8월 가입국이 되었다. 상표법은 상표, 서비스마크, 단체표장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WTO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2000년 개정하였다. 저작권법은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품, 극작물, 예술품, 음악, AV영상물, 영화, 방송작품 등 모든 문학, 과학, 예술적 영역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7.12월에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법원'이 개설되었다. 2003년에 상무부는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단속기관들(경찰과 세관 등)과 재산권 소유자들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였으나, 실효성이 지속되지 못하였고, 2005년 부터 매년 단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소매업자간의 다른 MOU를 체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제도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많다. 현재 태국의 불법복제 사용 비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반의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가짜상표와 음반, CD등의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경찰과 세관에서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으나 미흡하며 처벌도 가볍다.

서비스 장벽

태국정부는 그간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은 조기 개방, 외국인투자유치를 장려해 왔으나,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진출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개방에 있어서도 외국자본의 유입을 환영하면서도 내국인의 고용 증대를 위해 외국인의 고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그룹Ⅲ에 포함되어 외국인 지분 50% 미만은 승인 없이 가능하나 50% 이상의 소유는 외국인 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에 따른 경영참여가 가능하나,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다.

49% 이하의 지분소유 제한에 따라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고도 51%의 지분을 태국인의 명의를 빌어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태국인 명의 지분에 대해 사전 포기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아 두어야 혹시 있을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약 2,000명의 우리국민이 활동하고 있는 관광 안내원 직종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아 통역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큰 보험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25%로 제한되고 있고 신규회사의 진출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업체의 진출이 유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 음반제작 등 시청각, 외항화물수송, 화물운송 대리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49%가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은행지점(Full Branch) 인가기준으로 최소 30억 바트의 자본금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태국정부는 외국은행지점인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여 왔다.

비록 2004.1월 태국정부가 금융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금융시장 선진화 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 외국은행지점의 신규개설은 허용하지는 않고 있어 태국 금융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실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통 신

태국의 통신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태국의 통신서비스는 2002년까지 국영회사였던 TOT(Telephone Organization of Thailand) 및 CAT(CAT Telecom Public Company)가 주로 제공해 오고 있다. 1980년 이후 민간회사는 상기 회사와 합작을 하거나 또는 이들 회사로부터 양허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에 참여해 오고 있다. 태국은 2002~2006년 통신 마스터플랜(Master Pla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2002~2006) 등을 수립하여 통신서비스 시장의 자유화하고 WTO 서비스 무역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해 왔으나 아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통신서비스법'에 따라 통신 분야 외국인의 지분허용이 49%로 제한되어 있다.

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08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2백만 명으로 가입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 태국의 통신프로토콜은 GSM방식이나, CDMA 방식이 홍콩의 Hutchinson Wireless Multimedia의 주도로 구성된 Huawei Thailand Consortium이 태국 국영통신업체인 CAT(Communication Authority of Thailand)와 합작으로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건 설

외국의 건설회사는 등록을 해야 하고 태국 내에서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태국정부는 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회사가 입찰 참가 시 등급분류(billing rate)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태국 내에서 건축가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국적요건이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분야 제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태국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려는 수출산업 우선 정책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하는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2백만 바트의 최소자본금이 있으면 모든 업종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분제한, 업종·품목별 투자 제한, 입지제한이 남아있다. 1999.10월 개정하여 2000.3.3일 시행된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는 3개 그룹의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참여가 제한된 업종은 46개이다. 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 매년 1회 개방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룹I(9개 업종)은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대상 업종은 ① 신문, 라디오, TV방송, ② 쌀농사, 다른 곡물경작, 목초재배, ③ 축산, ④ 삼림 및 목재 가공, ⑤ 어업, ⑥ 태국약초 채취, ⑦ 태국 고대풍습이나 문화재에 대한 거래나 경매, ⑧ 불상 및 절에서 사용하는 접시의 제조, ⑨ 부동산 거래 등이다.

그룹II(16개 업종)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나 상무장관의 허가와 내각의 동의가 있을 경우 75%까지 외국인의 지분소유를 허용하되 이사진의 2/3가 태국인이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대상 업종은 ① 국가의 안전과 안보 관련 산업, ② 육상, 해상, 공중수송(국내항공 포함), ③ 예술, 문화, 관습, 수공예에 영향을 주는 사업, ④ 천연자원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이다.

그룹III(21개 업종)은 상무부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대상 업종은 ① 정미, 도정공장, 제분, ② 어업, 수산, ③ 산림조성, 임업, ④ 합판, 베니어, Chip board, Hard board 제조, ⑤ 석회(Lime)제조, ⑥ 회계업, ⑦ 법률서비스, ⑧ 건축, ⑨ 엔지니어링, ⑩ 특수건축, 중개인, 경매, 국내농산물 또는 국내 상거래, 소매, 도매, 광고, 호텔, 여행사, 식당, 식물번식, 기타 서비스이다.

태국내각은 2000.5.31일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진흥책을 승인하였다. 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원자재

및 시설재 수입관세의 감면과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외국인에 대한 법인의 소유제한 상향인정, 부동산 소유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대신 태국정부는 투자자에게 생산제품의 품질수준, 최저투자자본 규모, 개발낙후 지방에 대한 투자 장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3:1), 매출 대비 태국 내 부가 가치 비율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인센티브제도는 2000.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태국정부는 2002.8월 이래 최소 3개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1천만 바트 이상의 자금을 유입시켜 태국에 아태지역본부를 설치하는 다국적 회사에 대해 법인세 경감(30%에서 10%로), 태국인 피고용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상의 문제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 어업,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외국인에게 제한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다만, 투자청(BOI)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영주권자,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거용 1주택(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에 상관없는 외국인의 주식거래는 허용되고 있으나 업종별,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가 있다. 대주주인 경우에도 외국인은 총 주식 지분의 49% 이내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다. 투자청이 국가 경제정책 목적상 허용한 경우에만 50% 이상의 소유가 가능하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이나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50% 이상 소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는 10년 경과 후 외국인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여 점진적으로 50% 초과지분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외국기업이 태국주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개설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또한, 각국 상사 주재원이 태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태국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기업이 지사/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4년내 실행자본 5백만 바트

이상이 태국 내에 반입되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으나 예외적으로 투자청의 투자 장려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토지 취득이 인정된다. 또한, 투자 장려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태국은 1999.5.1일 공정거래법(Trade Competition Act, B.E.2542)을 제정·발효시켰다. 동법의 발효로 인해 독점, 불공정경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합병 및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재화·서비스 가격의 부당한 책정, 수량제한 행위, 타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체벌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독과점에 따른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통신시장 등 아직도 정부의 인·허가에 의존해서 독과점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분야도 남아있다. 태국 상무부는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하에 동 법 규정의 강화와 함께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지배(market dominance)에 대한 정의의 상세화, 판정기관의 중립화에 관한 법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태국의 유통업은 WTO에 양허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지분이 49%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승인절차 없이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지분 50% 이상 소유는 소매업은 20백만 바트, 도매업은 1억 바트의 최소자본금을 갖추고 Alien Business Board의 승인과 상무부 상업등기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다. 또한, Makro, Carrefour 등 외국대형할인업체가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태국정부는 소형소매업체의 보호를 위해 Retailing Act를 새로 제정, 외국대형할인업체의 진출지역 억제와 영업시간 규제, 공급업체에 대한 가입비 철폐 등을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장벽

常用비자 취득 및 연장

상사주재, 투자진출 주재, 현지취업 등 목적의 태국 입국 시에는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비이민(Non-Immigrant)사증(Type B : 90일 체류, B-A : 1년 체류, BOI-IB : 2년 체류)을 취득하여 입국한 후 태국 이민국으로부터 연장을 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태국 출입국제도에 따르면 비이민사증의 연장기간은 통상 1년, 최장 2년(투자진출의 경우)이며, 외국인에게 공히 적용된다.

노동 허가 (Work Permit) 제도

외국인의 태국 내 고용관련 사항은 외국인고용법(Alien Employment Act)이 관할한다. 태국에 주재하는 외국 지상사 주재원, 태국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태국정부는 태국으로 송금된 자본금 2백만 바트(약 6만 달러 상당)를 기준으로 외국인 2명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 2백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이 송금된 경우는 매 2백만 바트당 1명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노동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1인당 태국인 4명을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이처럼 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사증 및 고용허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체재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고용허가 취득 및 갱신을 위해 보통 2~3회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한-태 양국 간에 투자협정은 2009.10.31일, 상품협정은 2010.1.1일부터 발효되어, 관세철폐(또는 삭감),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상투자 증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상품 관세철폐 계획

태국은 ① 총 5,079개 품목(수입액 기준 83.1%)을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② 128개 품목(수입액 기준 7.9%)을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제2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175개 품목(수입액 기준 5.2%)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④ 민감품목 중 123개(수입액 기준 3.7%)는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기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2012년까지 83.1%,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공산품 분야별 태국의 주요 양허 현황

-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철폐
-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
-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의 경우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철강분야도 일-태 EPA와 거의 동등 내지 상응한 수준을 확보

하지만, 상당수 상품들이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스케쥴에도 포함되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의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상호대응세율 범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한 FTA 협정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수입부과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등 수입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가 앙등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의 권고에 따라 2008.8월 주요 사치성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50% 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으며 2009.2.28일 18개 품목에 대한 규제관세를 추가하여 현재 총 397개 품목에 대하여 규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기 조치에 따라 관세율이 인상된 제품에는 우리의 對파키스탄 주력 상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파키스탄 수입규제관세 대상 품목

대상품목	세율	대상품목	세율
요구르트, 버터, 치즈 등 낙농제품과 천연꿀 등	15%	견과류와 각종 과실류	15%
육과 어류의 조제식품	25~30%	과자류	15%
코코아, 초콜렛 류	20%	곡물, 곡분의 주제품 (빵류, 파스타류 등)	15~20%
채소와 과실류의 조제품	15~30%	소스류 등 기타 조제식품	15%
광천수, 탄산수	15%	애완동물용 사료	20%
담배, 시가 등	15%	향수, 화장품, 신변세정용품 등	15%
대리석 등 고급 석제품	15%	도자제의 타일, 테이블용품, 욕실용품 등	15%

대상품목	세율	대상품목	세율
가스레인지, 스토브 등 철제의 조리기구와 부품	15%	선풍기류	15%
에어컨 등 공기조절기, 냉장고	15%	세탁기와 부품	15%
가정용 전기기기 (Microwave oven은 15%)	20%	무선전화기	30%
휴대폰	대당 250루피	위성 수신기	20%
LCD Display	15%	흑백 모니터	15%
자동차	50%	총포류, 폭발물 등 무기류	15~20%
가구류 및 조명기기	15%	종이류	15%
테이블용, 주방용, 사무실용, 인테리어용 유리제품 등	25%	색소농축제	10%

자료: Federal Board of Ravenue

- 최근 기존 규제관세 대상 품목 중 팬, 에어컨, 냉동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도매 또는 소매 연쇄점이 비판매용 또는 자체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규제관세 면제키로 결정

- 아울러,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08년 외한보유고 감소와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대응 조치로 수입축소를 위해 L/C개설시 유보금액을 100% 예치토록 조치하였으나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기로 결정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방침을 밝히고 있는바, 주요 관세 인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 콘덴서(5%→10%), 철강 파이프(5%→15%), 이소부틸(Isobutyl), 아세테이트(5%→20%), 플라스틱 위생용기(20%→25%) 등

파키스탄 정부는 2000.1월부터 거래가격제를 시행, 수입관세 부과 시 인보이스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품의 약 90~95%는 거래가격제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식료품 및 소비재 등의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으로 인해 동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는 당초부

터 인보이스와 관계없이 국제표준가를 적용한다.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출·수입에 대해 모두 부과한다. 일반 세율은 수입 관세(0~25%), 규제 관세(REGULATORY DUTY 15~50%를 추가 부과/관리 대상 품목에 건별 부과), 판매세(5~12.6%: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 등이 있다.

파키스탄 재정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pk)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으나 HS코드별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전체 HS-Code에 대한 관세율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고기, Non-Halal Food(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육류)가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 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통계상으로는 90~95%의 수입에 대해 신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밝히고 있으나, 실제 신고가격이 세관당국의 표준가격과 상이할 경우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년 컨테이너 안에 인보이스와 팩킹 리스트를 넣어두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선적지와 서류작성지가 다를 경우나, 선적후 인보이스가 작성되는 등의 경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금지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광물자원, 공업용 원자재, 일반 산업기계 등 1,934개 품목(HS 8단위 기준)을 제외한 모든 인도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은 없다.

수입규제(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11.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특히 2008.8월에는 주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00)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0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지 수입구조상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고, 국내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해 자국산업 보호 압력을 가하고 있어 반덤핑관세 부과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파키스탄 관세위원회(NTC)는 2004년 PVC 합성수지, 2005년 폴리에

스터 섬유사(PFY), 2006년 폴리에스터 원면(PSF), 2009년 무수프탈산(PA)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우리업체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우리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안전벨트에 대한 반덤핑관세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2009년 증거 불충분에 따라 기각된 바 있다. 2009년 들어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이 급증 추세에 있는 바, 2009년 한 해에만 총 3건(과산화수소, 무수프탈산, 편면코팅판지)의 신규 반덤핑 조사 신청이 제기되어 현재 관세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07년 이후 외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된 파키스탄 기업이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외국경쟁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시 주의가 요망된다.

파키스탄 덤핑제소 현황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 관세(%)	비고
2004.6월	PVC resin	대한민국, 이란	40.18	관련업체 미대응, 2015년까지 관세연장
2005.3월	Filament Yarn	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6.92 29.07	
2006.6월	Polyester Staple Fiber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2.14 4.34~10.26 5.04	
2008.9월	Seat Belt	대한민국	종료	
2009.5월	Phthalic Anhydride	대한민국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7.36 6.17 11.84 5.84 27.28	
2009.6월	One Side Coated Duplex Gray Paper Board	대한민국(한솔) 대한민국(HM)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3.12 6.27 18.01 10.15~11.17 10.51	예비판정 (2009.12.21일)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 관세(%)	비고
2009.8월	Hydrogen Peroxide	대한민국 벨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터키	14.77 9.2~84.48 3.82~25.04 25.2 71.93 35.61 25.61	예비판정 (2010.9.27일)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표준(standard)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PSQCA(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로서, 2010.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농산물에 대한 검사시설이 낙후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4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표시하는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선진기술과 표준화된 제조공정에 따라 품질, 인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내 기관 또는 파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품목별 장벽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 환경, 안전, 보건 상의 이유로 술, 음란물, 마약, 무기류 등 6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역 및 표본조사 등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2009.8월 발표된 파키스탄 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조류독감 발생 전력이 있는 다수국가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SROs/0766-04092009.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또한, 중고 기계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인도산 물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산 물품은 2010.10월 1,934개의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종종 공개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2.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공공분야 조달 관련 규정과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지식재산권 보호

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며, 2005.8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권기구(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장벽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적립, 과실송금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2004년 관련 제약이 모두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투자금(15만 달러) 조건 등을 충족하면 100% 지분소유 및 100% 과실송금이 허용되며, 로열티 및 기술비 이전도 가능하다.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과거 유선전화 서비스를 독점하던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유무선 통신 서비스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요건

구분	서비스 분야 투자 (정보통신 및 IT포함)
정부 승인	투자대상 분야 관련기관 허가 외 불요
과실송금	허용
허용 투자지분	100%
최소투자금액	15만불
PME 수입관세	0~5%
Tax Relief(IDA, PME 비용 %)	50%
Royalty/기술이전료	초기투자 시 건당 10만불 허용 – 순 매출의 5% 범위내 최초 5년간 허용

※ 출처: 파키스탄 투자청 : www.pakboi.gov.pk
※ PME= Plant, Machinery and Equipment,
IDA= Initial Depreciation Allowance

한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진출 기업으로는 삼미대우고속버스와 대우휴게소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현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화된 경영기법과 서비스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arms & ammunitions), 고도 폭발물(high explosives), 화폐/조폐(security printing currency/mint), 방사능물

질(radioactive substances),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non-industrial alcohol plants)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파키스탄은 상기 5개 분야외에는 투자 시 관련기관의 허가외의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고, 금융업종(은행 49%, 보험 51%)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있어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제조업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투자가 가능하나, 여타 분야는 최소 투자금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금융 서비스 분야의 최소 투자금은 15만 달러이며, 농업, 인프라, 교육, 보건 등 분야의 최소 투자금은 30만 달러이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키스탄에는 특별히 제한된 투자 진출형태는 없으며 라이센스 계약, 지사 설치, 연락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로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청(BOI)의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경우 BOI 인증절차 없이 바로 SECP(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에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파키스탄 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동명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SECP로부터 기업명 사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 정관 4부 및 등기 이사 전원의 여권 사본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CP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법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된 법인계좌를 국세청(FBR)에 신고하고 National Tax Number 와 General Sales Tax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파키스탄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제조업 중 수출 부가가치산업으로 인정되어 면세 및 기타 특혜 등을 향유하는 투자의 경우,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하고 총 생산의 8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가죽, 섬유, 신발, 수술용구, 스포츠용품, 카페트, 수산물, 광업 등이 있다.

수출자유구역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0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연방/지방 소비세 면제 또는 감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계류의 관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인 투자청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질적인 행정의 지연과 융통성 부족, 곳곳에 부패가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얻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개인의 사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약이 가해지며, 지역에 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도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파키스탄측이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투자하고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이 생겨 법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1976년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 시 투자에 따른 과실, 재투자 이익 및 기타 각종 이익의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투자 업체가 투자 추진 시 중앙은행에 과실송금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다만, 실제 송금 시 테러자금, 돈세탁 여부 확인 등을 거치는 절차가 타국에 비해 까다로우며 이에 따라 송금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금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2008년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외환부족으로 인해 제도금융권에서 조차 외환송금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며, 과거 불법 송금의 온상이 되어왔던 소규모 외환거래소(Money Exchange)를 통한 외환송금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3)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현지 금융조달상 제도적인 제한은 없다. 단기 금융은 주로 상업은행에서 대출되며, 장기 금융 및 중장기 금융은 투자 금융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 대출 규모의 완화, 자금 도입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여(1998.5월 핵실험 직후 외환구좌 전면 동결 사례 등)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의 대테러전쟁 참여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의 채무 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대외결제의 어려움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추세에 따라 2008.9월 외환보유고가 80억 달러까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IMF 구제금융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지불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분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과거 현지화로 공사대금을 받는 일부 우리업체의 경우 공식 환율보다 약 4~5% 높게 적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전, 외화를 송금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큰 액수의 경우 은행 등 정상금융기관을 통한 주재국 통화의 외국환(달러) 환전이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암시장을 통해 불리한 환율을 감수하고 환전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기업)간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내·외국인 사업자가 공히 부담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35%, 소기업 20%), 소득세(10%), 일반판매세(17%), 연방소비세(업종에 따라 5~19%로 다양) 등이 있다. 이 외에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복지기금에 수익의 2%, 근로자이익배당기금에 수익의 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 시도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를 신설하였다.

주재국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1.10월 이전까지는 한·파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2002.1월부터 우리정부의 비자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로 인해 상호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파키스탄 현지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은 비교적 용이하며,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을 통해 파키스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안불안, 사회간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관료사회의 늑장행정과 정책 집행상의 투명성 결여 및 관료주의 만연 등 정부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회교 문화에 따른 부수적 제약요인(금주, 위락시설 부재, 여성 노동력 이용 장애 등) 등이 대표적인 교역/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여타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1989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10월 은행 총 예금 4조1천억 루피, 총 대출 3조3천억 루피로 성장하였고, 81% 이상의 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금융기관 납입자본의 총 47%는 외국인 소유가 되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강화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50억 루피의 납입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납입자본 조건은 향후 매년 10억 루피 규모의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외국계 은행도 마찬가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금융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자본적정성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50억 달러 이상의 기본자본을 보유하고 있거나 파키스탄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구(SAARC, ECO 등)의 가맹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은 파키스탄에서 100% 지분을 소유한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은행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개혁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업종에서 최대 51%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종의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200만 달러의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파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점유율 70%)에 있어 외국업체의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에 제한은 없으며, 투자자본도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하여, 지분 상한선과 최소자본 요건을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금융기관의 진출 우수 사례

영국계 Standard Chartered 은행은 2006년 5억 달러를 투자하여 파키스탄 내 53개 지점을 보유한 Union 은행을 인수하였으며, ABN Amro은행은 2007년 2억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파키스탄 Prime 은행의 지분 93.4%를 인수하였다.

2008.8월 외국계 은행으로는 일곱 번째로 영국의 Barclays 은행이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영업을 개시하는 등 주로 구미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외국은행의 주재국 은행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수입정책상의 장벽

수입제도 개관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다.

관세장벽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 네가지로 분류된다.

① 영세율(Zero Rate) : 필수품, 기본품목, 자본설비, 원자재 등에 적용되며, 때로 중간세율이 적용되기도 함

②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 30~40% 세율이었으나 2006년에 15~25%로 낮춰짐.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되며, 생산 가능성은 높지만 인기 상품으로 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③ 보호세율(Protective Rate) : 30~55% 세율이었으나 2006년에 15~25%로 낮춰짐.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으로서 상당 기간 관세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④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 55% 이상의 세율이었으나 2006년에 40%로 낮춰짐.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적용됨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CIF 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에 소비세가 부과된다. 소비세 이외의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는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된다.

수출 면허 또는 인가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악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된다.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임산물 – 원목, 목재, 백단향(sandal wood), 등(rattan), 합판, 박판(veneer) * 모든 원목 수출에는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하며, 최소 수출 가이드라인 가격을 준수해야 함	산림청, 외교부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 종류는 원목으로는 수출 금지이며 목재로만 수출될 수 있음 * 등(rattan) 수출에도 수출면허 필요	
수산물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롭스터 등	수산청
PNG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 (PNG Spice Industry Board)
고무	고무산업협회 (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 Indastri Koporesen)
금	국립은행(Bank of PNG)

자료출처: 상공부

수출세

특정 수출품에는 국세청에서 수출세를 부과한다.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수산물, 악어가죽, 백단향(sandal wood)이다.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파푸아뉴기니는 상표법, 저작 및 저작인접권법(2000) 및 특허 및 산업디자인법(2000)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내의 지식재산사무소가 상표, 특허 및 산업디자인을 시행하

며, 국가문화위원회(The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of PNG)가 저작 및 저작인접권을 시행한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파푸아뉴기니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투자 장벽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청(IPO: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기업등록 및 규정과에서 시행),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기업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한다.

소규모 사업활동목록에 있는 사업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 및 촉진과에서 담당하며 때때로 변경검토를 한다. 해당되는 주요 사업활동으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이며, 사냥 관련활동은 전부 해당),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각류, 연체동물 등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⑥케이터링(음식조달서비스), ⑦야생산림물질 도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⑧기타 소규모 사업활동 등이다.

투자진흥청은 외국인투자가들이 합작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공장에 대한 가중상각, 자본지출에 대한 초년도 가중상각, 수출시 장개발비용 이중상각, 수출세 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

민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면제, 자국민직원 교육비 이중공제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며, 은행의 구좌개설 및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가능하다. 미국 달러 등 외국화폐에 대해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세제상의 제한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1998.4.21 발효)하였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존재하며, 자본이득세는 없다. 천연자원 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우리나라와 파푸아뉴기니 간에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파푸아뉴기니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일부 특정 비자가 있는 단기 목적의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PNG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주권 소유자 등은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최근 일정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연매출액 1천만키나 이상, 5년 이상 PNG에서 기업 운영)을 충족하는 주요 대기업 CEO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노동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PNG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이 PNG 국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이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허가 승인을 해 준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파푸아뉴기니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필리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01년의 14단계에서 점차로 간소화되어 2003년에 0%, 1%, 3%, 5%, 7%, 10%, 15%, 30%, 35%, 40%, 45%의 11단계로 축소되었다. 이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필리핀 정부는 2004년까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4단계로 축소할 방침이었으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9단계로 조정되었다. 필리핀의 평균 실행관세는 2003년 평균 5.8%에서 2009년 말 7.07%로 인상되었으며 농산품 관세는 2004년 14.1%에서 2009년 말 11.94%로 인하되었으나 여전히 공산품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8.1.1일부로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10년까지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고 2016년까지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다.

2009년 상반기에는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우리측에 대한 2009년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2009.7.9일자로 특혜관세 적용법(안)이 발효되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 중이다.

수입부과금 등

2006.2.1일부터 선박, 비행기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종전 10%보다 2% 포인트 증가한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고,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자원, 보석류, 향수, 자동차, 영화 필름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통관

필리핀은 수입업체 등에 따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지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2010.7월 신정부 출범 후 관세청은 밀수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YL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종자용 이외의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 중고 의류, 장난감총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도 하다.

반덤핑·상계관세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8월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실사착수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으로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kg당 2페소의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8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철재 L형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7.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10.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0.10월 말 산업피해여부 조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기업과 함께 필리핀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보조금 등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7월 15%로 인상한 바 있고, 2004년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09년에는 동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율이라 할 수 있는 30%를 적용하고 있다(승용차: 30%, 화물차: 20~30%, 승합차: 15~20%).

한편, 최종소비자는 수입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12%와 종가세 2~6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60만 페소 이하 2%, 110만 페소 이하 12,000페소+6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20%, 210만 페소 이하 112,000페소+1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40%, 210만 페소 이상 512,000페소+2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60%).

필리핀 정부는 200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56)을 발동, 버스·트럭 등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2004.11월에는 수입억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특별관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 페소를 부과하려다 취소한 바도 있다.

그러나 수빅(Subic) 등 경제특구에서의 중고차 수입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2007.11월 대법원은 수빅경제특구에서의 수입차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2008.7월 필리핀 정부는 수빅 경제특구와 카가얀(Cagayan)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입을 동 지역 내에서의 이용 등 제한적인 여건 하에 허용하는 것으로 동 대통령 명령을 개정하였다.

2008.11월부터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하였다.

2008.1.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현행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년에는 5%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며, 앰뷸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량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0.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동 대통령 명령의 신차 수입관세 및 소비세 등 조정에 대한 상세조치 내용은 현재 미정이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동 명령의 후속이행규정 제정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관찰 중에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가전제품 등의 수입 시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국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환경관련 규제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 외국투자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 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매월 10여 건의 컨설팅 서비스 입찰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컨설팅업체는 참여가 저조하며 앞으로 참여 시 기회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 투자비율이 75%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으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AAA, AA, A, B, C, D, Trade 등 7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유치산업(BOT, BOO 등)

외국기업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출자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민자 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설계·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필리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업체와 필리핀업체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필리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가입국으로 2002년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공연 및 음반협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준수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은 2006년 이래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로는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등이 제정되어 있다.

대부분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지식재산권 위반자에 대한 필리핀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 2008년 발효된 의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국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된 상태이나 필리핀 법정에서 지식재산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가 드물며 심지어 20년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2001년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형 무단복제 업체나 배급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 엔지니어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최대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고 있다. 광고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대형(5천만 달러 이상)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도 40%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소유 내수기업(Domestic Market Firms)이나 소모성 자원(Depleting Resources)에 해당하는 필리핀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단, 최신 기술 보유 및 직접고용인 50인 이상 기업 및 최소 10만 달러 수출기업은 자본금 불요). 기타의 경우 필리핀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필리핀측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요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위: 달러)

품 목	최소투자규모
승용차 조립	1천만
트럭 조립	8백만
모터사이클 조립	2백만

※ 자료원: Executive order No. 156 of the Philippines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간단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등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이나 이자

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1997년 조세개혁법(RA No.8424)에 근거하며, 2005. 11월에 시행된 RA No.9337에 의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는 소득세(Income Tax), 원천과세(Wit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 인지세(Stamp Tax) 등이고,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한국과 필리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소득세는 크게 법인과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Corporation Tax) 부과율은 통상 35%로 2006.7월부터 적용되다가 2009.1월부터는 30%로 조정되었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내국인(Resident Citizen), 비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5~32%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 Tax)는 Foreign loan에 대한 이자분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로열티의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세율은 해당국가와 필리핀이 체결한 세제 협정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2006.1월부터 기존의 10% 세율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으며,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AEP(Alien EAEloymen) 등 10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한인회가 투자청의 협조를 확보하여 9G 비자업무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고 있으며, AEP 취득 후 약 2~3개월 내 비자를 받아주고 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2009)

- GDP : 1,610억 달러
- 1인당 GNP :1,746달러
- 실질GDP 성장률 : 0.9%
- 물가상승률 : 3.3%
- 실업률 : 7.5%
- 교역규모 : 총 856억 달러
  - 수출 : 384억 달러(반도체, 석유제품 등)
  - 수입 : 472억 달러(반도체, 동제품 등)
- 외채 : 546억 달러
- 외환보유고 : 442억 달러
- 화폐단위 : 1달러=46.42 페소 (2009.12월 말 기준)

* 자료원: IMF, 필리핀 통계청/중앙은행

호주

수입정책상의 장벽

기본적으로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개방경제체제로서, 자동차, 직물, 의류 및 신발류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외하고는 수입 장벽이나 규제는 별로 없는 시장이다. 수입규제정책보다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주요 경쟁국의 관세 폐지 등이 한국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수입정책상의 장벽보다 호주시장의 특성, 즉 원거리의 시장으로 수출 파급효과가 적으며, 다품종 소량 수출시장으로 경쟁은 치열하고 유통비용도 높아 수출상품의 이윤창출이 어려운 점 등이 시장 개척의 애로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장벽

호주는 2009년도 기준 전체관세율 3.5%, 농산품 관세율 평균 1.3%, 비농산품 관세율 평균 3.8%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승용차와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3.2%), 일반 기계(3.1%), 기타 제조업(1.4%)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및 TCF 관세율 현황

(단위: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5년	2010년
승용차	20	17.5	15	10	5
의 류	31	28	25	17.5	10
직 물	19	17	15	10	5
신 발	21	18	15	10	5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는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호주와의 FTA가 발효된 2005년 이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품목의 97%가 무관세이고, 자동차 및 부품은 매년 2% 포인트씩 낮춰 2010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나라는 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직물, 의류, 신발산업도 매년 1% 포인트씩 인하하여 10년 이후에는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미국은 다른 나라의 5%(승용차, 직물, 신발) 및 10%(의류)에 비해 유리한 수출조건이 된다. 따라서 한-호간 FTA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관세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한 무역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호주 관세제도는 관세법(Customs Tariff Act 1995)에 의거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에 의해 정해지는 일반관세,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특정물품에 대한 면허관세 및 FTA 협정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관세법 1장은 특혜관세에 대한 주요 내용과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개도국 및 최빈국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호주 정부에 의해 정해지는 일반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받는 품목은 관세법 3장에 명시되어 있다. 특정물품에 대한 면허관세는 국제기구,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물품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기관에서의 특정물품 사용과 교육상 목적에 따른 물품에도 면허관세가 적용되며, 관세법 4장은 동 면허관세 적용에 대한 구제적인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 관세법 5~7장은 호주의 FTA 협정관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FTA 협정관세에 적용받지 않는 물품에 대한 세율이 나열되어 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관세율을 점차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음에 따라,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율 평균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호주 정부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된다.

호주 관세청은 탄력세 제도(Elastic Tariff)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연간 일정량의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Quota Tariff)제도만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11,500톤의 치즈에 대하여 할당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11,500톤까지 인하된 세율($0.096/kg)이 적용되며, 그 이상에 대하여는 기본세율($1.220/kg)의 적용을 받는다.

호주 관세청은 연간 사용량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회계연도(2010.7.1일~2011.6.30일)에 적용받을 치즈 할당량을 결정, 매년 7.1일에 발표하고 있다.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최근 변동이 없으며, 관세청은 관세조정에 있어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향후 세율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호주는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 고의적인 통관지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1999.6월부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입 장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에 따라 캐나다산 연어 수입금지 조치는 2000.5월 해제되었으나 당시 관련업계와 타스마니아 주정부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2010.9월 말 기준 호주정부는 한국, 중국 등 12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17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규제조치를 시행 중이며, 규제 종류별로는 반덤핑 관세규제가 16개 품목, 상계 관세 규제는 1개 품목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6개 품목, 태국 3개 품목, 필리핀 2개 품목, 미국 2개 품목이고, 한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그리스, 캐나다,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은 각각 1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PVC의 경우 호주 관세청의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 검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0.3.23일부터 반덤핑 관세부과가 종료됨에 따라 2010.10월 말 백판지(Greyback Cartonboard) 1개 품목이 반덤핑 관세 부과중이다. 백판지의 경우, 당초 2010.7.27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호주 관세청은 호주 내 관련 산업체의 신청에 의거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의 연장 필요성 조사 결과 부과기간을 2015.7.27일까지 연장하였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2010.7.30일에 한국산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시작하였으며, 2011.1.1일까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산 LLDPE 제품은 지난 2003.12.3일부터 5년간 반덤핑 제재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8.12.3일 제재조치가 종료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함께 반덤핑 관련 최다 규제국 중 하나였으나, 규제대상품목이 지속 감소해 왔으며, 최근에는 초저밀도폴리에틸렌(LDPE)이 2008.12.4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이 2008.12.18일, 철/합금강평판압연제품(Hot Rolled Plate Steel)이 2009.4.2일, PVC제품이 2010.3.23일 각각 반덩핌 규제가 종료된 바 있다.

※ 반덤핑 대상품목: 10개(2006.6월) → 9개(2006.12월) → 8개(2007.5월) → 6개(2008.4월) → 5개(2008.8월) → 4개(2008.12.5일) → 3개(2008.12.18일) → 2개(2009.4.2일)→1개(2010.3.23일)

우리 기업들은 호주 정부에서 덤핑 제소 시 호주시장 수출량이 적은데 비해 덤핑대응 비용과다, 원가 정보 누출 등으로 수출 또는 덤핑조사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호주 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우리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호주 정부는 중국과의 FTA협상 개시와 함께 중국을 반덤핑 조사 상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지위를 인정(2005.5월)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출제품들이 보다 공정한 반덤핑 조사기회를 부여받게 되어 과거보다 반덤핑 규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전기용품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기 안전과 관련한 규제 전략 및 정책 등에 관련한 전체적인 조율은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 – www. erac.gov.au)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정 유형의 지정된(prescribed or declared) 전기용품은 판매 전에 승인(approval)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승인 대상 제품의 목록은 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 4417.2:1996 Marking of electrical products to indicat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Part 2: Specific requirements for electrical safety regulatory applications에 나와 있다. 승인을 받은 제품은 승인 마크를 표시해야 하며, 지정 품목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전기용품은 승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호주의 각 주 정부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최소한 안전 규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제품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ACMA – www.acma.gov.au)는 아래의 사항에 관련한 기술 규정을 담당하고 있다.

- 통신 터미널 장비 및 케이블
- 무선통신 장비
- 전기 및 전자 장치의 전자파 적합성 성능(EMC)
- 비전리 전자파 노출 수준(non-ionising electromagnetic radiation exposure)

각 기술규제는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중개상, 장비 운영자들

에게 명시된 강제 표준에의 부합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각 라벨링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

호주에서는 road vehicle이 등록되기 전에 Motor Vehicle Standards Act 1989(The Act)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모든 신규 차량에 적용되며, Act는 차량이 ADR(Australia Design Rules)로 알려진 차량 안전 및 배기 요건과 관련한 국가 표준을 따라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제품

Trade Practices Act 1974(TPA)가 호주 정부 차원의 소비자 제품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이다. 재무부 내의 Consumer Affairs Division에서 주관하며,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이 Trade Practices Act의 시행 및 강제 소비자 제품 안전 표준, 정보 표준, 위험 제품의 금지 등과 관련한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1998년부터 Contracts Review Act 1998를 시행하는 등 주정부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호주의 환경 관련 정책 및 규제는 지속가능 환경 인구부(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 DSEWPC)에서 주관하며, 관련 법안은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이다. 자동차 배출 가스에 관한 사항은 인프라 수송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에서 담당하고 유해 화학제품 등 특정 영역에의 환경 규제는 국가 산업 화학 물질 신고 평가기관(NICNAS : National Industrial Chemical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초듣) 등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와 관련한 규제는 Australian Greenhouse Office(AGO)에서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8.1.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연비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연비표시(liter/100km)에 「CO_2 배출비율(grams per km)」도 자동차 판매 시 전면 유리에 병행 표시해야 한다. 적용대상 차량은 2004.1.1일부터 호주 내 판매되는 신차(New Vehicle) 중 모든 신규승용차(passenger) 및 4륜 구동차(four wheel drive)와 3.5톤 이하의 신규 경상용차에 적용된다. 2008.2.22일부터는 동 제도에 사용되는 라벨은 시가지 주행 시 소요되는 연비를 포함하도록 새로운 라벨로 개정되었다. 또한, 호주는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2006.8.14일부터 LPG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LPG차량에 1,000호주달러, 기존 차량의 전환에 2,000호주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8년간이다.

한편,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07.11월 출범한 Kevin Rudd 노동당 정부는 틴소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오염감축정책(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재생에너지 사용 그리고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탄소오염감축정책은 2009.8월 및 2009.12월에 2차에 걸쳐 호주 의회 상원에서 야당인 자유당과 녹색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후 노동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Kevin Rudd 前 총리를 누르고 총리로 선출된 現 Julia Gillard 총리는 2010.8.21일에 시행된 호주 총선 이전에는 탄소세(Carbon tax)는 자신의 임기 중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과반수의 의석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후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해 현 노동당 연립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환경문제와 관련된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정부 내 영향력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산업 및 정계 등 각 분야로부터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탄소세 도입도 이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2010.9.27일 노동당 연립정부는 정계, 산업계 및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의회(Climate Change Committee)를 발족했다. 동 협의회는 매월 열리는 정례모임과 정부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방안(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들에 관해 논의하고, 2011.12월까지 최종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노동당 정부의 공식입장은 2011년 말에 기후변화협의회의 활동 결

과를 평가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현재 호주 정부는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법안(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제정 검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강화의 3대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2000.12.31일까지 호주행정규칙(Administrative Arrangements)에 근거한 수출촉진제도(EFS: Export Facilitation Scheme)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WTO 등을 고려하여 철폐하고, 2001.1.1일부터는 ACIS Administration Act 1999에 의해 「자동차산업지원제도(Automotive Competitiveness & Investment Scheme)」로 대체되었다. ACIS 제도는 호주 국내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자동차업계에 생산 투자액의 일부에 상응하는 수입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1~2005년간 약 28억 호주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호주정부는 2002.12월 동 ACIS 제도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하여 24억 호주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2008.11.10일 호주 정부가 '친환경 미래를 위한 신규 자동차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 ACIS 제도는 2011년부터는 자동차산업 전환정책(Automotive Transformation Scheme)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8.10.10일 호주정부는 2020년까지 호주 자동차산업을 더욱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ACIS 제도를 대체할 62억 호주달러 규모의 '친환경 미래를 위한 신규 자동차산업 정책 : A New Car Plan for a Greener Future)'을 수립 발표하면서 향후 2020년까지 호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계획에 따른 주요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다.

– 34억 호주달러의 자동차산업 전환 정책(Automotive Trans–

formation Scheme)을 2011.1.1일부터 2020.12.30일까지 시행하며, 호주 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플랜트 및 시설 투자자금의 15% 이내, 공급망 업체(supply chain participants)의 R&D 투자금액의 50% 이내를 심사하여 지원

- 13억 호주달러의 친환경 자동차 혁신 펀드(Green Car Innovation Fund)를 조성하여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해 3:1 비율(자동차 생산기업의 각 3호주달러 투자에 대하여 1호주달러의 정부 자금 지원)로 자동차 생산기업에 자금을 지원함
- 자동차 부품산업의 합병을 통한 부품 산업의 구조 변화 및 노동인력 조정을 추구하기 위해 2009.1.1일부터 총 1억1,630만 호주달러 지원
- 호주 공급업체들의 능력 강화 및 호주 국내와 세계 공급망(supply chain)에서의 공급업체들의 통합 지원을 위해 2009~2010 회계연도부터 2,000만 호주달러 지원
- 시장 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강화를 위해 2009~2010년부터 630만 호주달러 지워
-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 자동차 생산기업, 부품 공급업체, 노조, 연구 기관 및 학계, 정부의 고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혁신위원회(Automotive Industry Innovation Council) 설립
- 신규 LPG차량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2배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LPG 차량 정책의 확대에 1,050만 호주달러 지원

이와 같은 호주 정부의 자동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 등과 같이 현지 생산투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일부 호주 언론에서도 특정산업에 대해 지나친 지원으로 보호무역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직물·의류, 신발(TCF) 산업

호주정부는 직물·의류·신발(TCF: Textile, Clothing, Footwear)에 대한 점진적 관세 인하계획에 대비하여 동 TCF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2000년부터 전략적 투자 프로그램(SIP: Strategic Investment Program)이라는 보조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였다. 동 제

도를 통해 TCF를 제조 또는 디자인하는 업체의 신규 자본투자, 연구 및 신제품 개발, 구조조정 투자비용의 20~45%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한도는 개별업체당 연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하였다. 동 제도를 통해 2000년부터 5년간(2000.7~2005.6월) 약 6.8억 호주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3.11.27일 동 제도를 추가 10년간(2005~2015년) 연장키로 하여 동기간중 약 7.5억 호주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동 SIP제도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09-10회계연도부터 의류 직물 혁신능력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 운영중에 있다.

호주 정부는 TCF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며,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008.3.8일 호주 산업기술혁신부장관의 지시로 TCF 산업의 정책 재검토를 담당한 정책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재검토를 실시하고 2009.5.12일 TCF 산업에 대한 신규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부분의 수입 TCF 제품에 대한 관세는 계획대로 2010.1.1일 부터 7.5%~10%에서 5%로 인하하고 일부 옷과 완성 제품의 경우에는 17.5%에서 10%로 인하하며, 2015년 까지 모든 TCF제품의 관세를 5%로 인하할 계획
- 2009~2010 회계연도부터 2015~2016 회계연도까지 TCF산업에 4억1백만 호주달러 투자
  - 상업적 수준에서의 기술혁신 능력과 기업의 상업적 성과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3천만 호주달러의 TCF 전략적 능력 강화프로그램(Strategic Capability Program) 시행
  - TCF SIP(Strategic Investment Program) 보조금 지원 제도를 대체할 의류 직물 혁신능력 프로그램(Clothing and Household Textile Building Innovative Capability Program)을 실시하여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추가로 2천 5백만 호주달러 투입
  - 전략적 자문 제공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 연구소, 정부,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TCF 산업혁신청(Industries Innovation Council) 설립
  - 민간기업, 산업, 연구소 및 교육기관간의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해 TCF 혁신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 구성
- TCF 소상공인 프로그램 (Small Business Program, SBP)

운영

- TCF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TCF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TCF SIP 또는 TCF Post-2005(SIP)의 도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 TCF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한 프로젝트 당 최대 5만 호주불을 보상함으로써 동종업계종사들에게 경쟁력을 고취시키려는 목적

혈장제품 (Blood Plasma Products and Fractionation)

외국기업들이 혈장제품을 호주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호주에서 부족하거나 호주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호주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2006년 미국과의 FTA협상 과정에서 상기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했었지만, 2007년 호주 보건장관은 동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 호주 정부의 혈장제품 독점계약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1.1일 미국과의 FTA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차원의 정부 조달 정책을 대폭 수정, 비차별(Non discrimination)원칙을 도입하면서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연방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 (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하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금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 우대(Domestic Preference)제도가 남아있는바, 각 주마다 국내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 상 10~20%의 우대 마진을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Western Australia의 경우 10%, New South Wales, Northern Territory, South Australia주의 경우 20%의 우대마진을 국내기업에 적용한다. Victoria 및 Queensland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국내기업 우대 마진이 없지만, 정부구매에 따른 지역고용 촉진을 고려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호주국내기업이 우대받도록 하는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호주 주정부는 조달 입찰 시 국내업체에 대해 우대마진을 부여하여 한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입찰과정에 다소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탈락 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낙찰자와 어떠한 차이로 탈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등 호주의 차별적인 정부조달 관행으로 외국 업체가 호주 국내업체와 경쟁하는 부문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도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유통 서비스는 우편과 같이 정부가 법으로 독점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 별도의 장벽은 없다. 해운의 경우 선박을 호주에 등록하려면 선박이 호주인이 소유하거나, 호주 운영권자에 의해 임차된 선박으로 제한된다.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호주에서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세 가지 세금감면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첫째, 영화제작자의 경우 호주기업이거나 해외제작자가 호주에 영화 제작사를 설립하여 호주와 관련된 영화를 촬영할

경우 Screen Australian Administers에서 판단하여 제작비의 40% 또는 총비용의 20%를 환급해준다. 둘째, 영화 제작 규모가 총 1,500만 호주달러 이상이며 영화제작비중 지출비용의 70%가 호주에서 사용된 경우 제작비의 15%를 돌려준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영화의 특수효과(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를 500만 호주달러이상 호주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비용의 15%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투자 장벽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큰 제약 없이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및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 Act 1975 및 관련 Regulation)에 의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승인 및 감독기관은 재무장관이 투자정책 결정 및 투자 승인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심의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는 재무부 자문기관으로서, 투자신청서 심사 및 승인여부 대정부 건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대정부 자문 및 외국인 투자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사전 승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호주 사업 또는 기업에 대한 231백만 호주달러 이상의 취득
  - 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민간산업(부동산, 금융업,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분야)을 제외하고 1,004백만 호주달러 이상의 취득
- 호주 부동산의 취득
  - Heritage Listing에 속하는 5백만 호주달러 이상의 비주거용 상업용 건물의 인수
  - Heritage Listing에 속하지 않는 50백만 호주달러 이상의 비주거용 상업용 건물의 인수(미국 투자자의 경우 1,004백만 호주달러 이상)
  - 유휴 비주거용 토지

· 주거용 부동산
· 호주 urban land corporations or trust estates의 지분 등

– 외국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직접 투자
–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 투자 시)

호주 정부는 외국인의 호주 기업, 사업체 및 부동산 등의 취득이 국익(national interest)에 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불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 심사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히 민감하게 취급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적합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 이외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case-by-case로 심사하여 국익에 반하지 않으면 보통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호주 국익과의 관련성 하에 외국인 투자가 국가 방위나 경제 발전에 상충되는지, 다른 정부정책이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이외 영역 중 은행, 민간 항공, 공항, Shipping, 미디어, 통신 영역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법령에 의거 추가적인 조건들이 부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인 Telstra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규정에 의거 총 외국인투자 한도는 총지분의 35%, 개별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5%를 유지한다.

업종별 구체적인 요건들은 아래와 같다.

– 광산업

호주의 광산업에 대한 외국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직접 투자 또는 정부가 기업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시에는 모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투자인 경우에는 1억 호주달러 이상의 투자인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고지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석탄, 우라늄 등의 광산물 탐사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기존 호주 탐사 업체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심사를 면제

해 주고 있다. 우라늄 탐사의 경우 호주기업 참여 없이도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나, 광산개발은 외국인 투자법과 관계없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전 Howard 정부는 1996년 기존의 3개 우라늄 광산정책(Three-Mines Policy)을 폐기하고 우라늄 광산의 추가 개발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각 주정부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우라늄 개발을 반대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어 주요 우라늄 매장지역(퀸즈랜드주, 서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에서의 우라늄 광산 개발이 사실상 제한되어 왔었다. 그러나 2007.4월 노동당은 우라늄 광산의 추가 개발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키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2007.11월 Kevin Rudd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신규 우라늄 광산 개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08.9월 서부 호주 총선에서는 자유당 연립정부가 집권하여 2008.11.17일 신규 우라늄 광산개발 금지정책을 철회함으로써 향후 서부 호주 내 우라늄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정부 중 퀸즈랜드,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는 여전히 우라늄 개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2009.7.14일 Kevin Rudd 노동당 정부는 호주의 5번째 우라늄 광산(남호주에 위치한 Four Mile 우라늄 광산) 개발을 허가한 바 있다.

현 Julia Gillard 노동당 정부는 호주가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국(23%)임에도 불구하고, Howard 정부가 우호적이었던 원자력 발전 추진에는 안전성, 비용, 풍부한 대체 부존자원 활용 등의 견지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광산의 개발 및 핵확산방지조약(NPT)와 상호안전협정(Bilaterial Safeguards Agreements)에 준한 우라늄 수출에는 찬성하고 있다.

– 언론 및 방송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5% 이상 지분을 투자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경우 모두 정부의 개별심사를 받아야 한다.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의거 상업용 TV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20%(개인 15%)이하로 제한되고 있고, 이사회의 20%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유선 TV는 35%(개인 20%)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은 상업 TV 방송 인가를 결정하는 직책에 임

명될 수 없다. 그러나 라디오방송에 대한 투자 지분 제한은 없다. 신문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하여 매 건별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며 외국인의 주요 도시 신문사 주식취득은 30%(개인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 외곽의 소규모지역 도시는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항공

국내선의 경우 호주의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기존·신규항공사 구분 없이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국제선의 경우 개별항공사의 지분한도는 25%(항공사전체 35%)까지 허용되었었으나, 2000.5.3일 항공법 개정으로 49%까지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었다. Qantas 항공의 경우 외국인지분을 49%까지 허용하되, 외국항공사가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35%를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지분소유제한은 25%이다.

공항의 경우 외국인의 보유 지분 한도는 49%이며 개별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 지분 소유가 가능하지만 시드니와 멜번, 브리스번과 퍼스 공항간은 동일인의 소유가 제한된다.

– 통신

외국인의 통신 산업 신규 투자는 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기존 회사의 참여 모두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국영통신회사인 Telstra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Howard 정부는 1997.10월 이후 정부주식의 1/3을 민간에 매각하였고(외국인 개별투자는 5%, 전체는 35% 이내로 제한), 1999년에 49.9%까지 추가로 민영화하였다.

호주정부는 2005.9.13일 Telstra에 대한 잔여보유지분(51%)을 완전 민영화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았고 2006년 하반기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다. 2006.10.9일 발표에 의하면 정부 지분(51.8%)의 약 3분의 1을 매각하는 80억 호주달러(21억5천만주) 규모의 3차 주식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연 14%의 높은 배당률에 많은 개인 투자가가 참여하여, 3분의2를 매각키로 수정하였다. 2006.10.23~11.9일까지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을 받고, 기관투자자는 11.15~17일까지 청약을 받아 11.20일 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그 결과 지분의 83%가 개인 투자자와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17%는 연방정부의 미래기금(Future Fund)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Telstra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제한규정(총 외국인투자 한도: 총지분의 35%, 개별외국인투자한도: 총지분의 5% 이하)은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호주기업으로 존속된다.

– 부동산

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주택과 땅)의 취득은 외국인 투자자가 1년 이내 개발을 시행한다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되어 판매 또는 임대된 기존의 주택구입은 사택목적의 일시적 사용의 경우(2가구 이하) 등이 아니면 승인이 안 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신규로 개발하거나 재개발한 아파트나 주택을 개발물량의 50% 이내에서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종합관광휴양지(Integrated Tourism Resort)'로 지정받은 단지 내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승인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1년 이상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비자가 만료되면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은퇴한 후 비교적 장기간 체류(Long-stay Retirees)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기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상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주택구입이 가능하나 2채 이상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매각해야 된다.

한편, 호주 FIRB가 발표한 2008-2009 회계연도(매년 6월 마감) 외국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604건의 투자를 승인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규모는 2007~2008년의 495억 호주달러에 비해 20%가량 감소한 396억 호주달러이다. 부문별로는 광물 탐사·개발 부분이 54.4%로서 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19%, 제조업이 11.6%, 금융업이 6.5%, 부동산이 5.1% 등을 기록하고 있다.

2008–09 회계연도 산업별 외국인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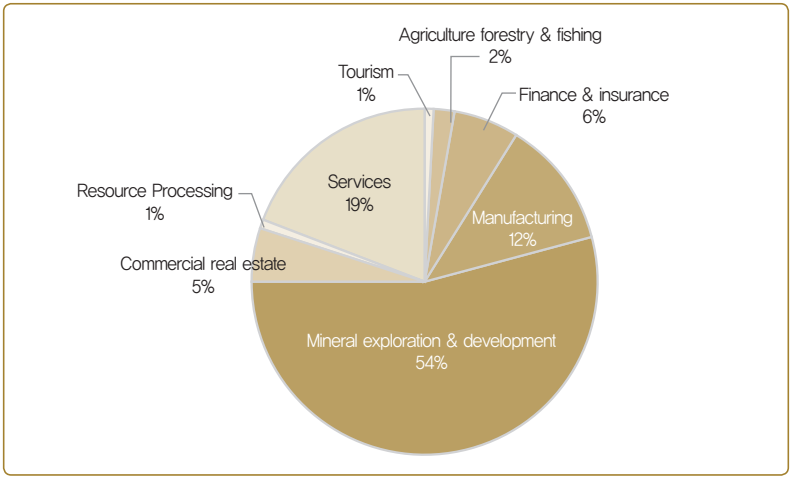

자료: FIRB

국가별로는, 미국이 396억 호주달러로 전체 1,667억 호주달러의 24%를 차지하고, 이어서 중국(266억 호주달러, 16%), 일본(221억 호주달러, 13%), 영국(203억 호주달러, 12%), 프랑스(75억 호주달러, 4.5%), 스위스(64억 호주달러, 3.8%), 캐나다(59억 호주달러, 3.5%) 등의 순위로 집계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호주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상용비자는 단기상용비자(456 Business Visa)와 장기상용비자(457 Business Visa)가 있다. 단기상용비자는 3개월 미만 방문하는 경우로 기본서류 이외에 업무활동에 관한 증거서류, 즉 초청장, 회의 등록서류, 출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장기상용비자는 최장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스폰서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호주는 한국의 운전면허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방문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 면허증과 번역 공증서류를 소지하면 운전이 가능하다.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운전면허증과 현지 주소를 보유하고, 이론, 실기시험 및 시력측정을 통과해야 한다.

노사관계

호주는 임금협상의 분권화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나, 아직도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편이다.

건설공사가 수반되는 대규모 투자 시 건설공사가 거의 완공되는 시점에서 전국단위의 강성노조가 개입하여 불법쟁의를 선동하고 Site Agreement에서 약속한 것 이상의 돈을 기업에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들 강성노조가 개입시기를 회사가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 막바지로 선택하는 전술을 구사하므로 사실상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 이 경우 불법파업이 계속되어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질서유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기업으로는 1999.3월 고려아연의 타운즈빌 건설현장에서 노사분규가 있었으며, 합작투자 기업인 포항제철도 노사분규를 경험한 바 있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 추진

호주 노동당 정부가 2007년 공약으로 내세운 신 노사관계 시스템 시행을 위한 첫 단계로 Workplace Relations Amendment(transition to forward with fairness) 법안이 2009.3.19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동 법안은 前 정부가 추구했던 노사관계법(Work Choices)을 폐지하기 위한 첫 절차로서 주요 내용은 종전 노사관계법(Work Choices) 내에서의 새로운 고용주와 노동자간 계약(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을 방지하고, 노사관계법이 폐지될 때까지 개인고용계약(Individual Transitional Employment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과 보다 나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향후 고용계약을 함에 있어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인 Fair Work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08.11.15일 Fair Work 노사관계법안을 하원 의회에 상정하여, 2009.3.11일 상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2009.7.1일부터 동 법안이 발효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노사 관계 제도

– 새로운 노사관계 중재기구 설립
  · 기존의 7개 노사관계 기구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을 관리·감독하고 노사관계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기구 역할을 할 'Fair Work Australia'를 독립적 기구로 설립 (2009.7월부터 운영)
  · 'Fair Work Australia'의 최저임금조사원단(Minimum Wages Panel)은 매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평가 및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적절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함.
  · 최저임금조사원단은 'Fair Work Australia'의 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며, 경제, 사회 등에 여러 전문인으로 구성
  · 각 산업별 기준 임금에 대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2014년 기준 임금 평가 시행 예정)

–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계약 조건의 범위 확대
  · 기존 Howard 정부의 노사관계법인 'Work Choices'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계약 조건의 범위가 더욱 폭넓어짐.

– 노동자의 쟁의행위(Industrial action)
  · 근로자의 비밀투표는 보호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시행 3일 전 통지가 필요함.
  · 불법투쟁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최소 4시간의 임금 삭감을 당할 것이며, 불법투쟁 시간 동안에 대한 근무 수당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없음.

– 노조 가입 자율화
  ·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자유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음.

– 불공정 해고 관련 조항
  ·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해고 관련 규정(Fair Dismissal Code for Small Business)
  · 총 근로 직원 수가 15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불공정 해고와 관련하여 청구할 수 있음.

– 10가지 고용핵심 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을 2010.1월부터 적용

(2) 근무제도

– 최대 근무시간(Maximum weekly hours of work)
  · 주당 38시간을 기본으로 기업 환경에 따라 추가로 정당한 근무 시간 도입 가능

– 융통성 있는 자율 근무(Flexible work)
  · 근로자가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융통성 있는 자율 근무를 요구 가능
  · 고용주는 근로자의 자율근무 요구에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휴가제도

– 출산(부모) 휴가 권리(Parental leave)
  · 부모 모두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했을 경우, 12개월의 무급 출산(부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단, 부모 모두 같은 시기에 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휴가 기간은 부모 중 한명의 출산(부모) 휴가가 끝난 후에 다른 한명이 출산(부모) 휴가를 받는 방식
  ·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12개월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 연간 휴가(Annual leave)
  · Full-time 근로자는 연간 4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shift 근로자(2~3교대 근로자)는 연간 5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연간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수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 개인적인 휴가 및 특별 휴가(Personal/Carer's leave and compassionate leave)
  · 근로자는 10일간 개인적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수가 근로자에게 지급됨.
  · 가정 문제에 대하여 2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지역사회 서비스 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 배심원 참석에 따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경우, 고용주는 첫 10일간 보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하며, 근로자는 이외에 사회 서비스를 위해 휴가를 낼 권리가 있음.

– 장기간의 근무 서비스 휴가(Long service leave)
· 장기간의 근무 서비스 휴가는 모든 직종에 부여

– 공휴일(Public holidays)
· 8개의 국가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인정하는 공휴일 인정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이 요구에 거절할 수 있음.

(4) 고용 및 해고제도

– 고용 계약 폐지 및 그에 대한 해고 수당 지급(Notice of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
·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여 해고 통보를 적정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에 대한 해고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함.
– 공정한 근무 관련 정보문서 제공(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 고용주는 모든 새로운 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무와 관련된 정보문서를 제공해야 함.

금융기관 진출 관련

호주의 금융서비스산업은 시드니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자산운용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2010.10월 55개 은행(14개 호주 은행, 11개 외국 자회사 은행, 30개 외국은행 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중 ANZ, Commonwealth Bank, NAB, Weatpack 4개 메이저은행이 총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은행 금융기관, 외국은행 현지법인과 지점 등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금융 산업의 동향은 회사 간 통합과 지점의 축소 움직임인데, 경

쟁체제 유지를 위해 4대 메이저은행간 인수합병은 정책(Four Pillars Policy)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은행들이 호주에서 은행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호주은행을 인수합병 할 경우에도 APR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투자자들이 4대 메이저은행 인수합병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는다.

국내 은행으로는 한국외환은행이 현지법인 'KEB Australia Ltd'를 설립하여 현재 유일하게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ANZ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의 합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합병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호주 국내 금융 분야에 1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정부는 96/97 회계연도 예산안의 과소자본규제(Thine Capitalization) 규정에 따라 97/98 회계연도부터 차입금/자본금 비율은 비금융기관인 경우 3:1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차입금의 범위에는 외국 지주회사(본사)가 지급 보증한 외국 차입금(offshore borrowings)도 포함된다.

특히 호주 내 현지법인이 본사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순자본금의 2배를 넘을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본지점간 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6배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사로부터 차입이나 본사의 지급 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및 은행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본점으로부터 차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계 은행들로서는 자금조달이 제약됨으로써 현지 영업활동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 투자자들이 호주와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에 접근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호주와 미국 간의 증권규정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2008.8.25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호·미 상호인정협약은 호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더 나은 진출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보호 및 시장의 신

뢰성 보장

- 일반 소규모 호주 투자자들은 호주 주식 브로커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으며, 호주 감독기관의 보호를 받게 됨
- 또한, 순응비용(Compliance Cost) 비용과 관료적 규제를 줄일 것이며, 시장은 근본적으로 각국의 관련 법규 및 규정만을 준수하면 됨.
- 동 협약은 미국으로서는 첫 협약이자, 호주로서는 제3번째 상호인정협약으로서, 호주는 이미 뉴질랜드, 홍콩과 이와 비슷한 상호인정협약을 맺었으며, 일본, 싱가포르, 중국과의 협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임.